아시아 主要國의 稅法 1994. 5 韓國租稅硏究院

內部硏究用 資料

아시아 主要國의 稅法

1994. 5

韓國租稅硏究院

內部硏究用 資料

아시아 主要國의 稅法

1994. 5

韓國租稅硏究院

第Ⅰ篇

臺灣(中華民國)

第 1 章

租稅의 種類와 特徵

概　要

中華民國은 國稅, 省稅, 縣(市)稅로 나누어져 있다. 臺北市, 高雄市는 行政院直轄市이고 基隆市, 臺中市, 臺南市, 新竹市, 嘉義市는 省直轄市이며 板橋市, 三重市(臺北縣), 宜蘭市(宜蘭縣), 桃園市, 中壢市(桃園縣), 苗栗市(苗栗縣), 豊原市(臺中縣), 彰化市(彰化縣), 南投市(南投縣), 斗六市(雲林縣), 新營市(臺南縣), 鳳山市(高雄縣), 屛東市(屛東縣), 臺東市(臺東縣), 花蓮市(花蓮縣), 馬公市(澎湖縣)는 縣轄市로 되어 있다.

Ⅰ. 租稅의 分類

中華民國의 租稅 種類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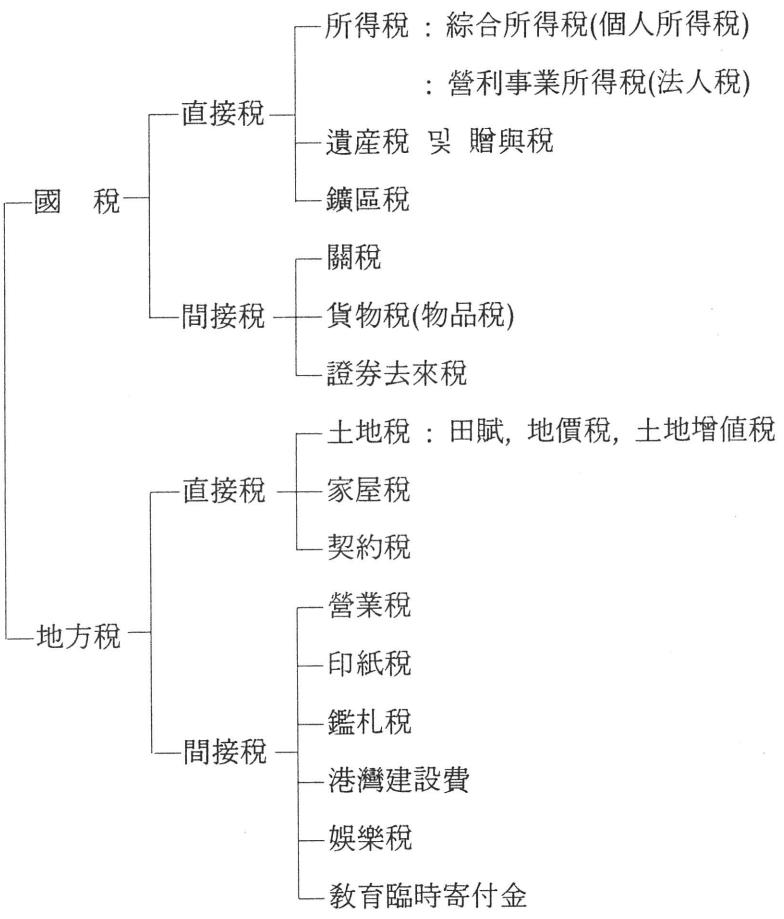

II. 1989年度 各 稅目別 稅收統計表

(單位 : 新臺幣億元)

稅　　目	金　額	直接	間接
1. 關稅(Customs Duties)	891.73		○
2. 鑛區稅(Mining Lot Tax)	0.12	○	
3. 所得稅(Income Tax)	1,573.85	○	
(1) 營利事業所得稅(Business Income Tax)	802.85	○	
① 公營(Public Enterprises)	199.25		
② 民營(Private Enterprises)	603.60		
(2) 綜合所得稅(Individual Income Tax)	771.00	○	
4. 遺産 및 贈與稅(Estate and Gift Tax)	47.88	○	
(1) 遺産稅(Estate Tax)	38.61	○	
(2) 贈與稅(Gift Tax)	9.27	○	
5. 貨物稅(Commodity Tax)	792.08		○
6. 證券去來稅(Tax on Security Transactions)	301.58		○
7. 印紙稅(Stamp Tax)	32.62		○
8. 營業稅(Business Tax)	787.52		○
9. 鑑札稅(License Tax)	140.79		○
10. 港灣建設費(Harbour Construction Dues)	137.52		○
11. 土地稅(Land Tax)	1,191.24	○	
(1) 田賦(Agricultural Tax)	0.14	○	
(2) 地價稅(Land Value Tax)	173.35	○	

稅　　目	金　額	直接	間接
(3) 土地增値稅(Land Value Increment Tax)	1,017.75	○	
12. 家屋稅(House Tax)	217.33	○	
13. 娛樂稅(Amusement Tax)	5.09	○	
14. 契約稅(Deeds Tax)	84.45	○	
15. 敎育臨時寄付金 (Temporary Surtax for Education)	43.19		○
合　　計	6,246.99		

Ⅲ. 各 稅目의 內容

所得稅 및 營業稅 以外의 稅目에 대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遺産稅 및 贈與稅

(1) 課稅標準

① 遺産稅

遺産總額에서 200萬元을 控除한 後의 金額

② 贈與稅

每年 贈與總額에서 45萬元을 控除한 後의 金額

(2) 稅率槪要

① 遺産稅

30萬元 이하 2%부터 1億 6,000萬元 이상 60%까지의 累進稅率

② 贈與稅

30萬元 이하 4%부터 1億 5,000萬元 이상 60%까지의 累進稅率

2. 地價稅

(1) 課稅標準 : 地價總額 전부(公告地價)

(2) 稅率槪要 : • 工業用地는 公示價格의 1%

• 都市計劃區域內(3a 以內)와 區域外(7a 以內)에 個人住居用地 및 政府機關이 建設하는 公團住宅用地에 대해서 0.3%

• 그 외의 用地에 대해 1% ~ 5.5%의 累進稅率

3. 關 稅

(1) 課稅標準 : CIF價格

(2) 稅率槪要 : 輸入貨物이 課稅品인가 아닌가에 따라, 課稅品인 경우 課稅를 從價課稅할 것인가 또는, 從量課稅할 것인가 등을 輸入關稅表의 規定 및 適用되는 稅率에 따라 실시한다.

4. 貨物稅

(1) 課稅標準 : 平均都賣價格(每月末에 翌月分의 品目別 價格이 公布된다)

(2) 稅率槪要 : 2%~120%

(例) 궐련, 洋酒 및 맥주 價格의 120%

주스 價格의 15% ~ 25%

電氣製品類	價格의 10% ~ 30%
自動車類	價格의 15% ~ 60%
휘발유, 디젤油	價格의 10% ~ 12%
化粧品	價格의 12% ~ 80%

5. 證券去來稅

(1) 課稅標準 : 有價證券의 去來額

(2) 稅率槪要 : 去來額의 0.6%(賣主 負擔)

6. 土地增值稅

法人이나 個人이 土地를 讓渡해도 所得稅는 非課稅되고, 別途土地增值稅가 課稅된다.

(1) 課稅標準 : 讓渡所得(土地增值所得)

(2) 稅率槪要 :

- 取得時의 公示價格(公告土地現値)과 賣却時 公示價格의 差額에 대해 課稅된다.

  土地의 增價額이 原地價의

  100% 以下 部分 ····· 40%

  100% ~ 200% 部分 ····· 50%

  200% 超過 部分 ····· 60%

- 個人住宅用地(都市計劃區域內의 3a 以內의 土地 및 區域外의 7a 以內의 土地)는 賣却時의 土地增價額의 10%

7. 家屋稅

(1) 課稅標準 : 家屋評定價格

(2) 稅率槪要 : 營業用 3.0%

住宅用 1.38%

非營業, 非住宅用 2.0%

8. 契約稅

(1) 課稅標準 : 家屋評定價格

(2) 稅率槪要 : 賣買契約 7.5%

擔保契約 5.0%

交換契約 2.5%

贈與契約 7.5%

分割契約 2.5%

占有契約 7.5%

9. 印紙稅

課 稅 文 書	稅 率
金錢領收書(營業稅의 對象이 되며, 統一發票를 發行한 것은 免稅)	表示金額의 4/1000
請負契約書類	表示金額의 1/1000
不動産의 抵當權設定, 賣買 및 分割契約書類	表示金額의 1/1000
動産賣買契約書類	NT$ 12

10. 鑑札稅

(1) 課稅標準 : 車輛(실린더의 總排氣量에 의해 計算한다), 船舶

(2) 稅率槪要 :

· 小型乘用車(自家用)	1,350元	~	75,600元
(營業用)	900元	~	56,700元
· 大型自動車(乘用車)	1,080元	~	16,200元
(트 럭)	900元	~	16,200元
· 오토바이	150元	~	5,760元

11. 娛樂稅

(1) 課稅標準 : 各種 娛樂場所, 娛樂施設 또는 娛樂活動

(2) 稅率槪要 : 5% ~ 100%(法定最高稅率)

Ⅳ. 稅務行政組織系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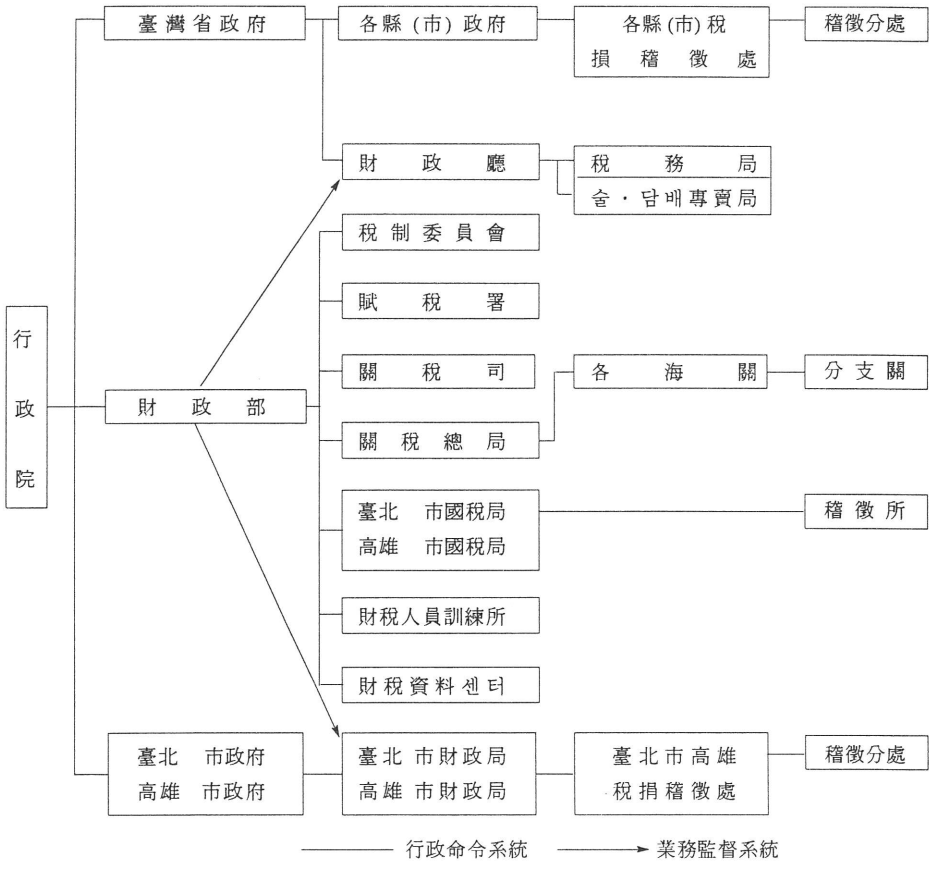
行政院
財政部
臺灣省政府
各縣(市)政府
各縣(市)稅損稽徵處
稽徵分處
財政廳
稅務局
술·담배專賣局
稅制委員會
賦稅署
關稅司
各海關
分支關
關稅總局
臺北 市國稅局
高雄 市國稅局
稽徵所
財稅人員訓練所
財稅資料센터
臺北 市政府
高雄 市政府
臺北市財政局
高雄市財政局
臺北市高雄稅捐稽徵處
稽徵分處
行政命令系統
業務監督系統

第 2 章

綜合所得稅(個人所得稅)

概　要

1. 個人의 綜合所得에 대해 最低 6%에서 最高 40%의 稅率이 적용되는 超過累進稅率에 의해 課稅된다(所5條).
2. 配當, 利子, 賃貸料, 커미션, 業務執行所得, 使用料 및 給與 等에 대해 源泉徵收制度가 設定되어 있다(所88條).
3. 給與所得뿐인 納稅義務者라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歷年基準에 따라 2月 20日에서 3月 31日 사이에 原則的으로 確定申告를 해야 한다(年末調整制度는 없다) (所71條).
4. 1990年 1月 1日부터 有價證券의 賣却益은 課稅되지 않는다(所4條의 1).

Ⅰ. 納稅義務者

所得의 源泉이 中華民國 國境內에 있는 個人은 그 源泉 所得에 대해 課稅된다. 즉, 居住者인 個人은 非課稅되는 것을 除外하고 國內에 源泉이 있는 所得을 綜合하여 各種 項目을 控除한 후 나머지 所得에 대하여

超過累進課稅한다. 또, 非居住者인 個人은 國內에 源泉이 있는 所得에 대하여 所定의 稅率로 源泉分離課稅方式에 의해 課稅된다.

居住者에게 全世界所得에 대해 課稅하지 않는 점이 特徵이다(屬地主義).

中華民國의 所得稅法上 居住者와 非居住者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所7條).

(1) 居住者 …… ① 國內에 住所가 있고, 또 항상 國內에 居住하는 者
② 國內에 住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1課稅 年度內에 國內에서 合計 183日 以上 居住한 者

(2) 非居住者 …… 居住者 以外의 者

II. 中華民國 源泉所得(所8條)

다음의 各種 所得은 中華民國 國內에 所得의 源泉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中華民國 會社法의 規定에 따라 登記設立된 會社 또는 中華民國 政府의 認可를 얻어 中華民國內에서 營業하는 外國會社로부터의 受取配當金

(2) 中華民國內 協同組合 또는 共同出資組織의 營利事業으로부터의 配當金

(3) 中華民國內에서 勞務를 提供하여 支拂된 報酬. 단, 非居住 個人으로 1課稅年度內 居住日數가 90日을 넘지 않는 경우에 國外의 고용주로부터 取得한 勞務報酬는 例外이다.

(4) 中華民國 政府, 中華民國 國內의 法人 및 中華民國에 居住하는 個人으로부터 取得한 利子

(5) 中華民國內에 있는 財産의 賃借에 의해 取得한 賃貸料

(6) 特許權, 商標權, 著作權, 노하우 및 各種 權利를 中華民國 國內에서 他人에게 提供함으로써 얻은 權利金

(7) 中華民國 國內에 있는 財産去來로 인한 利益

(8) 中華民國 政府가 國外에 派遣한 人員 및 一般雇用人이 國外에서 勞務提供한 代價로 얻은 報酬

(9) 中華民國 國內에서 工業, 商業, 農業, 漁業 等으로 獲得한 利益

(10) 中華民國 國內에서 各種의 競技, 試合, 福券에 의해 얻은 賞金 또는 給與

(11) 中華民國 國內에서 獲得한 其他 收益

III. 納付稅額의 計算(所13條)

個人綜合所得金額 — 各種 免稅額 — 各種 控除額 — 各種 特別控除額 = 課稅所得金額

課稅所得金額 × 稅率 — 累進差額 = 納付稅額

納付稅額 — 源泉徵收稅額 — 出國時의 申告納付額 = 確定申告에 의해 納付해야 할 稅額

Ⅳ. 個人綜合所得金額의 內容

㉠ 個人綜合所得金額은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다음 各種 所得의 合計額이다.

㉡ 所得의 種類와 그 計算方法(所14條)(〈表 2—1〉 參照)

㉢ 變動所得의 2分의 1 課稅

〈表 2—1〉

種 類	意 義	計 算 方 法
營利所得	受取配當, 個人經營事業者가 그 事業으로 얻은 所得을 말한다.	受取配當:收入金額 = 所得金額 其他:總收入金額－必要經費 = 所得金額
業務執行 所 得	業務執行者(辯護士, 公認會計士, 建築士, 藥劑士 등 特藝를 가지고 自力으로 生計를 꾸리고 있는 사람)가 그 業務執行에서 얻은 所得을 말한다.	總收入金額－必要經費 =所得金額
給與所得	給與, 賞與金, 手當, 補助費 및 退職金 또는 養老金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勞務提供에 의한 所得을 말한다.	收入金額 = 所得金額 (規定의 基準을 넘지 않는 出張旅費, 日當 및 殘業手當은 除外)
利子所得	公債, 社債, 各種 短期債券, 預金 및 다른 貸付金의 利子에 關聯된 所得을 말한다.	收入金額 = 所得金額
賃貸所得 및 使用料 所得	資産의 貸付에 의한 것 및 特許權, 商標權, 著作權, 노하	收入金額－必要經費 = 所得金額

種 類	意 義	計 算 方 法
	우 等을 他人에게 提供하 여 받은 使用料에 關聯된 所得을 말한다.	
農業, 漁業, 畜産業, 鑛業, 林業의 所得	農業, 漁業, 畜産業, 鑛業, 林業을 營爲하여 얻은 所得을 말한다.	收入金額－必要經費 = 所得金額
讓渡所得	資産 및 各種 權利의 거래에 관련된 所得을 말한다.	收入金額－取得原價－必要經費 = 所得金額
競技, 試合 및 추첨의 賞金인 所得	各種 競技, 試合 및 추첨에 參加해서 얻은 賞金에 관련된 所得을 말한다.	收入金額－原價 = 所得金額
其他 所得	上記 各種 所得 이외의 所得을 말한다.	收入金額－原價－必要經費 = 所得金額

前期의 個人綜合所得金額 中에서 自營에 의한 林業所得, 金額一時受領의 養老金 및 退職金, 遠洋漁業 船員으로 出漁할 때마다 一時的으로 分配되는 報酬 등의 變動所得은 그 半額만을 當該 年度의 所得으로 하고 남은 半額은 免稅된다.

Ⅴ. 現物給與課稅

日本人이 中華民國에서 勤務하는 경우, 給料·手當 等 現金으로 支給되는 項目 以外에 個人이 會社로부터 經濟的 利益을 提供받는다고 볼 수 있는 項目에 대한 法人稅 및 個人所得稅의 取扱은 아래와 같다.

	法人稅	個人所得稅
日本人이 中華民國에서 勤務하기 위한 赴任旅費 및 歸任旅費 等(家族分을 포함)	損金算入	非課稅
home leave의 費用 本人分 家族分	損金算入 損金算入(給與)	非課稅 給與所得으로 課稅
日本人의 住宅이 會社로부터 支給되는 境遇(단, 會社가 契約者로 되어 있는 것) 上記의 住宅 때문에 會社가 家具를 購入한 경우	損金算入 固定資産으로 計上하여 原價償却	非課稅 非課稅
上記의 住宅에 대해 水道光熱費, 電話料, 가정부 等의 費用을 會社가 負擔한 경우	損金不算入	非課稅
자녀의 敎育費를 會社가 負擔한 境遇	損金算入(給與)	給與所得으로 課稅
食事手當(月 1,800元 以下)	損金算入	非課稅
醫療費	損金算入(給與)	給與所得으로 課稅
個人所得稅(確定申告差額의 社會負擔分)	損金不算入	非課稅

Ⅵ. 各種 控除額(1991年度) (所17條)

1. 免稅額

(1) 本人控除額 年 50,000元

(2) 配偶者控除額 年 50,000元

(3) 扶養者控除額 1人當 年 50,000元

2. 控除額 : 다음의 ㉠ 또는 ㉡을 選擇한다.

㉠ 列擧控除

(1) 寄付金 : 教育, 文化, 公益, 慈善事業 또는 團體에 대한 寄付金은 綜合所得金額의 100分의 20까지의 金額. 단, 國防, 軍隊慰問을 위한 寄付金 및 政府에 대한 寄付金은 全額

(2) 保險料 : 納稅義務者 本人, 그 配偶者 및 直系親族의 生命保險料, 勞工保險料 및 軍人, 公務員, 船員保險의 保險料. 단, 1人當 年間 控除額은 24,000元이 限度이다.

(3) 醫療 및 産兒費用 : 納稅義務者 및 그 配偶者, 또는 同居하는 扶養親族의 醫療費 및 産兒費用으로 公立病院 또는 財政部가 認定하는 會計記錄이 正確한 病院에 지불한 것에 한함. 단, 保險給付를 받은 部分은 제외.

(4) 災害損失 : 納稅義務者가 받은 不可抗力의 災害損失. 단, 保險給付를 받은 部分은 제외.

(5) 家屋購入借入金利子 : 納稅者가 住宅을 購入할 때, 金融機關에 지불한 借入金利子는 집 한채에 한해 1人當 年間 80,000元까지 控除된다.

㉡ 標準控除

納稅義務者가 上記 (1)~(5)까지의 各種 控除에 대해 일일이 항목을 列擧하여 說明할 수 없을 경우에는 標準控除額으로 控除할 수 있다. 標準控除는 33,000元이고, 配偶者가 있는 경우에는 1.5倍인 49,500元이 된다.

3. 特別控除額

(1) 資産讓渡損失 : 納稅義務者의 資産讓渡에 의한 損失額을 다른 資産의 讓渡所得과 相殺할 수 있다. 該當 年度에 다른 資産의 讓渡所得

이 없는 경우, 또는 他의 讓渡所得이 不足한 경우에는 이 控除不足額은 3年間 移越할 수 있다.

(2) 給與所得特別控除 : 納稅義務者 및 그 納稅義務者와 合算申告하는 個人에게 給與所得이 있을 경우에는 1人當 年間 申告給與所得에서 45,000元을 控除할 수 있다. 申告한 給與所得이 45,000元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全額을 控除한다.

(3) 貯蓄投資特別控除 : 納稅義務者 및 그 納稅義務者와 合算申告하는 配偶者, 扶養親族에게 各種 利子, 貯蓄性信託預金의 收益 및 上場記名株式으로부터 受取配當金이 있을 때에는 이들 合計額의 年間 360,000元을 限度로 控除가 인정된다.

(4) 障碍者特別控除 : 納稅義務者, 그 納稅義務者와 合算申告하는 配偶者 및 扶養親族이 障碍福祉法에 의거하여 障碍者인 경우에는 1人當 每年 45,000元을 控除할 수 있다.

VII. 綜合所得稅率(1991年度 稅率條例)

級別	課稅所得金額		稅 率		累進差額	稅 額
1	300,000元 以下	×	6%	—	0	= 〃
2	300,001元 ~ 800,000元	×	13%	—	21,000	= 〃
3	800,001元 ~ 1,600,000元	×	21%	—	85,000	= 〃
4	1,600,001元 ~ 3,000,000元	×	30%	—	229,000	= 〃
5	3,000,001元 以上	×	40%	—	529,000	= 〃

Ⅷ. 非課稅所得

非課稅所得은 所得稅法 第4條에 規定되어 있으나, 보통 日本人에게 該當되는 項目은 없다.

Ⅸ. 給與所得에 관한 源泉徵收制度(所89條)

源泉徵收義務者는 居住者에게 給與를 支給할 경우에 規定의 源泉徵收率에 준하여 源泉徵收하고, 이것을 納付해야 한다.

다음 中에서 하나를 納稅義務者가 自主的으로 選定할 수 있다.

(1) 給與所得源泉徵收弁法의 源泉徵收稅額에서 源泉徵收

(2) 給與月額支拂總額의 100分의 10을 源泉徵收

源泉徵收義務者는 翌月 10日까지 源泉徵收한 前月分의 稅金을 國庫에 納付해야 한다. 同時에 每年 1月 末日 以前에 前年度에 徵收한 納付稅額에 대해 源泉徵收表를 發行하여 一括해서 該當 管轄稅務官廳에 申告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非居住者에게 給與를 支拂할 경우 源泉徵收義務者는 給與月額支給總額의 100分의 20을 源泉徵收해야 한다.

Ⅹ. 外國人의 個人所得稅 課稅標準

財政部 1971年 3月 8日(60) 臺財稅 第31685號令에 의해 許可를 얻은 臺灣省財政稅務署長會議에서 決定한 外國人 個人所得稅 課稅標準은 다음과 같다.

1. 外國人 國外所得 認定에 대하여

(1) 外國人으로 中華民國內에서 滯在日數가 90日을 넘는 者는 그 國外의 雇用主로부터 取得한 給與에 대하여 自主的으로 申告할 것을 指導하고, 그 申告에 기준하여 認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2) 自主的으로 申告하지 않는 者 또는 申告額이 너무 적을 때에는 정하여진 標準에 기준하여 調整할 수 있다.

(3) 納稅者가 調整된 所得金額에 대해 不服하여 減額申請을 할 때에는 國外의 雇用主가 發行하고 管轄 稅務署가 證明한 所得金額證明書를 提出해야 한다. 管轄稅務署가 證明할 수 없을 때에는 現地의 會計士 또는 稅理士의 證明이라도 좋다.

(4) 前項의 更正手續이 出國前에 完了되지 않을 때에는 稅務機關의 許可를 받아 中華民國內에 居住하는 個人에게 代理納稅의 責任을 委任한 後에 出國하는 것을 認定한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먼저 (3)의 所得金額證明書를 添附하여 自主申告한다.

2. 外國報酬所得標準決定에 대하여

臺北市 國稅局 調査決定의 標準에 의해 處理한다.

3. 納稅者의 國外에서의 職務認定에 대하여

먼저 書簡으로 警備總指令部 出入國管理機關에 旅客이 入國할 때에 提出하는 申請書의 「臺灣入國理由」 및 「職務名稱」欄의 有無를 調査한 後에 職務를 決定한다.

4. 停留비자로 入國한 者의 滯在期間의 計算에 대하여

停留비자로 入國한 者의 滯在期間은 各 入國日 다음날부터 出國 當日까지의 日數를 合計한다.

XI. 個人所得稅의 確定申告

1. 使用하는 申告書

國稅局에 있는 外國人用 申告書를 利用한다.

2. 申告期限 및 納付期限(所71條)

納稅義務者는 每年 2月 20日부터 3月 31日까지 確定申告書를 提出한다(外國人의 境遇는 1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 한다).

納稅는 管轄稅務機關에 대해 前年度의 綜合所得金額, 또 納付해야 할 稅額부터 出國時의 申告納稅額 및 源泉徵收稅額을 控除하여 申告期限前에 自主的으로 納付해야 한다.

居住者로 中華民國內에 있는 住所 또는 居所를 廢止하고 出國하는 者는 出國前에 當該 年度의 所得에 대해 確定申告하고 納稅해야 한다(歸任時의 確定申告).

3. 申告期限의 延長(所72條)

特殊한 事情이 있는 者는 確定申告期限 滿了前에 稅務機關의 許可를 얻어 그 申告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단, 4月 30日을 초과해서는 안 된

다(利子稅 있음).

또, 中華民國에서 出國하는 納稅義務者가 特殊한 事情 때문에 期限內에 스스로 申告할 수 없을 경우에는 稅務機關의 許可를 얻어 中華民國內에 居住하는 個人을 納稅代理人으로 選任하여 申告納稅를 代行시킬 수 있다(委託代理納稅制度).

4. 添附書類

納稅義務者가 確定申告를 할 때에 源泉徵收票, 稅金納付領收書, 會計士가 署名한 所得金額證明書, 여권 및 그 외의 關係書類나 領收書를 添附해야 한다.

5. 確定申告를 하지 않았을 경우(所79條, 108條)

稅務機關은 즉시 調査해서 얻은 資料 또는 同 業界의 所得標準에 기준하여 그 所得額 및 納付해야 할 稅額을 査定하며 指定期限內에 納付하도록 通知한다. 또 延滯金이 加算된다.

XII. 個人所得의 具體的 計算例(1991年의 경우)

【設 例】

居住者의 경우

1. 中華民國에서 받은 給料手當 1,000,000元
   (10%의 源泉을 包含한 總金額)
2. 日本에서 받은 賞與金 等 500,000元

(臺灣달러로의 換算은 國稅局이 정한 비율에 의한다.) 1,500,000元

3. 家賃은 全額會社負擔

4. 扶養家族 : 妻, 子女 2人

【計 算】

給料·賞與金 等 合計		1,500,000元
各種 控除額		294,500元
本人控除額	50,000元	
配偶者控除額	50,000元	
扶養者控除額	100,000元	
標準控除額	49,500元	
給與所得特別控除額	45,000元	
課稅所得金額		1,205,500元

課稅所得金額 × 稅率 — 累進差額 = 納付稅額

1,205,500元 × 21% — 85,000元 = 168,155元

納付稅額 — 源泉徵收稅額 = 確定申告에 의해 納付해야 할 稅額

168,155元 — 100,000元 = 68,155元

XIII. 個人所得稅 要約

1. 個人所得稅의 課稅關係 要約

在留期間의 長短에 따라 居住者와 非居住者로 區別되며 非居住者는 90日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在留期間	中華民國支拂給與	日本國內支拂給與	申告의 必要性
非居住者	90日 以下	20% 源泉徵收	非課稅	不要
	91日 以上 182日 以下	20% 源泉徵收	自主申告必要	必要
居住者	183日 以上	源泉徵收稅額表에 따르거나 또는 10%로 源泉徵收	確定申告必要	必要

國稅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이고, 在留日數는 入國 다음날부터 出國 當日까지로 計算한다. 1課稅年度에 出入國을 2回 以上한 경우에는 出入國할 때마다 같은 方法으로 計算하여 日數를 加算한다.

2. 出入國者의 手續

(1) 長期出張으로 滯在日數 合計가 90日을 超過한 경우에는 出國 1週日前에 滯在日數에 따른 所得에 대해 申告하고 納稅해야만 出國할 수 있다. 단, 各回마다 비자를 更新하여, 滯在許可日數의 延長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實務上 出國이 停止되는 일은 없다.

(2) 出入國을 頻繁하게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매번 申告 및 納付의 手續을 피하기 위해 代理人을 指定하여 委託代理納稅制度를 利用하면 便利하다. 實務上 第1回의 代理人은 會計士를 指定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

(3) 歸國前年度에 居住者로서 確定申告한 者는 歸國年度의 滯在日數가 90日 以下라도 居住者로서 出國前에 確定申告해야 한다. 단, 歸國前에 當年度中에 出入國이 있었을 경우의 居住者인가 아닌가의 判定은 日數計算에 의하기 때문에 給與의 20%를 申告하는 경우와 居

住者로서 各種 控除額을 加味하여 申告하는 경우에 어느 쪽이 有利한가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納稅를 위한 「플로우 차트」(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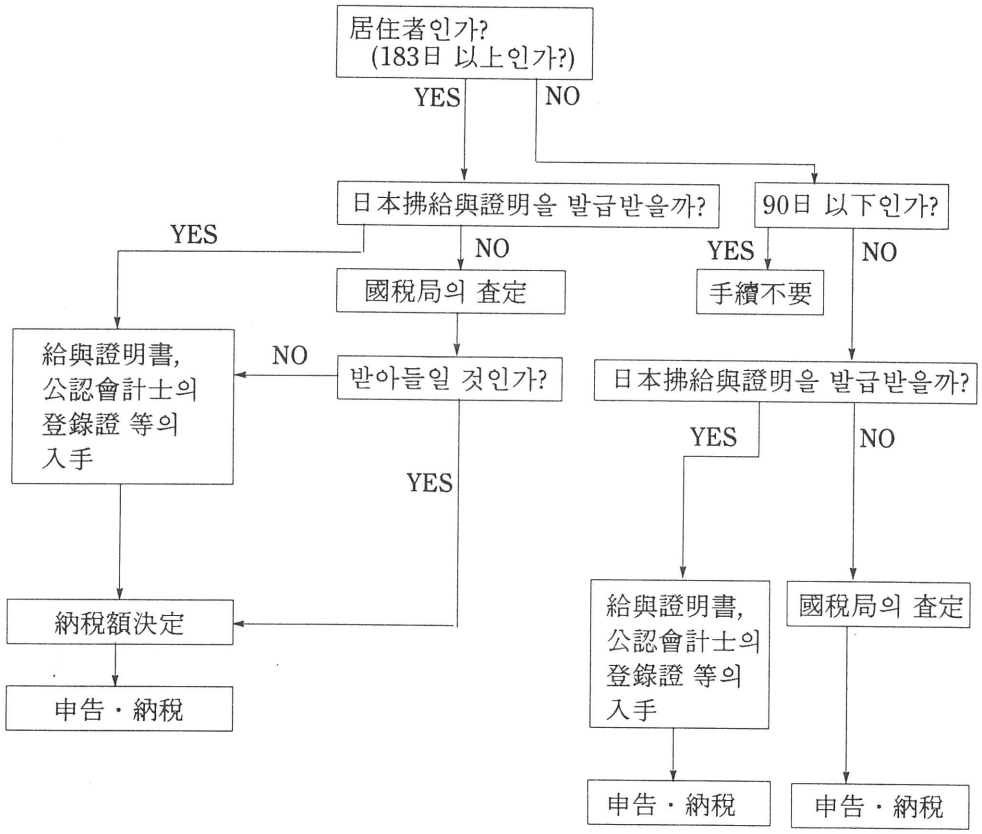

4. 提出用 資料의 樣式

日本拂給與證明書

會社名：
住　所：
代表者：　　印

××有限公司에 勤務中인 다음의 사람에게 日本에서 支給한 所得은 以下와 같다.

姓　　名：_____
本　　籍：_____
現 住 所：_____
期　　間：　　年　　月　　日 ～　　年　　月　　日
支給金額：給　與 _____ 円　　海外手當 _____ 円
賞與金 _____ 円　　家族手當 _____ 円
其　他 _____ 円　　合　　計 _____ 円

위와 같이 支給한 것을 確認합니다.

年　　月　　日

公認會計士 _____ 印

登錄證明書(公認會計士의 登錄證明書)

1. 姓名

明治・大正・昭和　　年　　月　　日生

2. 住所

3. 登錄番號　　第　　號

4. 登錄年月日　　昭和　　年　　月　　日

위 사람은 公認會計士法에 의해 公認會計士登錄名簿에 登錄되어 있는 것을 證明합니다.

公證　　第　　號

年　　月　　日

日本公認會計士協會

事務局長

第 3 章

營利事業所得稅(法人稅)

概　要

1. 營利事業所得稅는 原則的으로 屬人主義를 採擇하고 있고, 全世界所得에 대해 課稅하며, 外國稅額控除方式에 의해 國際的 二重課稅를 調整한다. 이에 비해, 綜合所得稅는 屬地主義를 採擇하고 있고, 國外源泉所得에는 課稅하지 않으며, 外國稅額控除制度는 없다.
2. 營利事業所得稅의 課稅對象은 各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이며, 貸損充當金, 退職給與充當金, 準備金 및 減價償却 等은 損金經理하지 않으면 稅務上 損金에 算入할 수 없다.
3. 確定申告는 原則的으로 事業年度 終了後 3個月 以內(申告期限이 延長되었을 경우에는 事業年度 終了後 4個月 15日 以內, 會計士의 稅務監査를 받았을 경우에는 5個月 以內)에 해야 한다.
4. 課稅所得은 確定決算과는 分離하여 計算하며, 또 企業會計上으로는 費用 또는 損失에 計上하나, 稅務上으로 損金에 計算되지 않는 項目은 申告書上에서 申告調整을 한다.
5. 營利事業所得稅率은 1991年度에 最高 25%로 되어 있다(所5條).
6. 土地의 賣却益에 대해서는 營利事業所得稅는 免稅되고, 別途土地增値稅가 課稅된다(所4條 16號).

7. 油價證券의 賣却益은 1990年 1月 1日부터 課稅가 停止됐다. 단, 別途證券去來稅가 去來額의 6/1000 課稅되게 되었다(所4條의 1).
8. 株式會社에 대해 租稅의 特別措置로서 1991年 1月 1日부터는 促進産業昇級條例가, 1990年 12月 31日까지는 投資奬勵條例에 規定된 各種 租稅減免措置가 있다.
9. 營利事業所得稅의 調査 基準은 營利事業所得稅 決算申報查核準則이고, 이 準則의 規定은 詳細하고 具體的이다. 會計擔當者는 이 規定에 留意하여 處理해야 하고, 특히 損金으로 認定받기 위하여는 必要한 證憑書類를 이 規定에 따라 準備해 두어야 한다.

Ⅰ. 納稅義務者(所3條)

中華民國 國內에서 營爲하는 營利事業은 營利事業所得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1. 營利事業의 意義

營利事業이란 公營, 民營 또는 公民共同으로 營利를 目的으로 營業名稱 또는 場所를 가진 獨立資本, 共同資本, 會社 및 그 외의 組織方法에 의한 工·商·農·林·漁·牧·鑛·冶 等에 關한 營利事業을 말한다(所11條).

營利事業의 形式的 要件은 (1) 營業場所를 가지고 있을 것, (2) 營業名稱을 가지고 있을 것, (3) 營業登記를 할 것 등이고, 實質的 要件으로는

(1) 營利를 目的으로 할 것, (2) 營利行爲에 經常性이 있을 것 등이다.

2. 固定營業場所 및 營業代理人

固定營業場所란 事業經營의 固定場所를 가리키는 것으로 管理所, 支店, 事務所, 工場, 作業場, 倉庫, 鑛場 및 建築工事 事務所를 포함한다. 단, 物品의 購入만을 위해 使用되는 倉庫 또는 貯藏所로 物品의 製造加工에 使用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所10條).

營業代理人이란 以下의 條件 中에 하나가 該當하는 代理人을 말한다(所10條).

(1) 購入事務의 代理外에 항상 代理事業을 代表하여 業務의 協議와 契約締結의 權限을 가진 者.

(2) 恒常 代理事業의 商品을 貯藏하고 代理事業을 代表하여 그 商品을 他人에게 交付하는 者.

(3) 항상 代理事業을 대신하여 商品의 注文을 받는 者.

II. 課稅對象(所3條)

(1) 中華民國 國內에서 經營하는 모든 營利事業에 所得稅의 規定에 따라 그 營利事業所得稅를 課稅한다.

(2) 營利事業의 主 事務所가 中華民國 國內에 있는 것은 中華民國 國內外의 營利事業所得 全部에 대한 營利事業所得稅를 합쳐서 課稅해야 한다. 단, 中華民國 國外의 所得에 대하여 이미 所得源泉國의 稅法 規定에 따라 所得稅를 納付한 경우에 納稅義務者가 所得源泉

國의 稅務機關이 發給한 同一年度의 納稅證憑을 提出하고 또 여기에 대하여 中華民國 大使館 또는 領事館 또는 中華民國 政府가 認可한 그 외의 機關의 査證을 取得하면 그 全營利事業所得에서 算出한 納付해야 할 稅額에서 이것을 控除할 수 있다. 控除金額은 그 國外所得을 합해서 國內의 適用稅率에 따라 計算하기 때문에 納付해야 할 決算稅額을 超過할 수는 없다.

(3) 營利事業의 主 事務所가 中華民國 國外에 있고 中華民國을 源泉으로 하는 所得이 있는 것은 中華民國 國內의 營利事業所得에 대해 所得稅法의 規定에 따라 營利事業所得稅를 課稅한다. 따라서, 外國法人의 支店은 國內에 源泉이 있는 所得에 대해 納稅義務를 진다. 支店의 稅務에 관해서는 다음 事項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① 本店과 中華民國 國內의 業者가 直接去來를 했을 경우의 課稅關係

㉠ 物品販賣 : 支店의 賣上은 아니나 本店이 當該 去來에 관해 支店에 給付한 經費補助나 手數料는 支店의 收益에 計上하며 營業稅와 營利事業所得稅의 對象이 된다.

㉡ 役務提供 : 外國法人의 本店이 中華民國의 수요자에게 直接役務를 提供한 것으로 인해 支店이 얻은 報酬는 當該 支店의 收益으로써 營業稅와 營利事業所得稅를 申告納付해야 한다.

② 外國法人의 支店이 申告納付해야 할 營利事業所得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營業上 發生한 支店의 費用이나 損失에 추가로 本店에서 發生한 管理費 中 合理

的인 基準에 의해 支店에 配賦된 費用, 소위 本店配賦經費의 控除가 認定된다(査70條).

Ⅲ. 非課稅所得(所4條)

所得稅法 第4條 및 그 외의 規定으로 정해진 非課稅所得은 다음과 같다.

(1) 敎育, 文化, 公益, 慈善機關 또는 團體의, 行政院이 規定하는 基準에 適合한 것으로, 그 自身 및 附屬業務執行機構의 所得

(2) 法에 의해 對外營業을 하지 않는 消費組合의 利益

(3) 個人 또는 營利事業이 賣却한 土地, 個人이 팔려는 家庭日常衣類, 家具의 賣却 또는 營利事業의 政府規定에 의한 戰備物資 備蓄을 위한 財産處理에 관련된 所得

(4) 各級 政府機關의 各種 所得

(5) 各級 政府公營事業의 所得

(6) 外國 國際線 輸送事業의 中華民國 國內에서의 營利事業所得, 단 當該 外國이 中華民國의 國際運送事業에 대해 같은 정도의 免稅待遇를 하고 있는 경우로 限定한다.

(7) 外國政府 또는 國際經濟開發金融機構의 中華民國 政府 또는 中華民國 國內의 法人에 대한 貸付金 및 外國金融機構의 中華民國 國內의 當該 支店 및 그 外의 中華民國에 있는 金融事業에 대한 融資의 利子

外國金融機構의 中華民國 國內 法人에 대한 主要經濟建設計畫을 위한 貸付金으로 財政部의 認可를 얻은 것의 利子

輸出의 融資提供 또는 保證을 專業으로 하는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構가 中華民國 國內의 法人에게 提供 또는 保證하는 特惠利率輸出貸付金에 관련된 利子

(8) 營利事業이 新生産技術 또는 製品의 導入, 또는 製品의 品質 向上, 生産原價의 輕減 때문에 政府의 認可를 얻어 外國營利事業이 所有하는 特許權, 商標權 및 各種 特許權利를 使用할 때 當該 外國營利事業에 支拂하는 權利金, 또 政府主官廳의 認定을 받은 主要 生産事業이 工場建設 때문에 外國營利事業에 支拂하는 技術 서비스의 報酬

(9) 贈與에 의해 取得한 財産. 단, 營利事業이 贈與하는 財産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Ⅳ. 事業年度

事業年度는 一般的으로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이다. 단, 定款에 정해져 있고, 管轄稅務機關에 申請하여 許可를 얻은 것은 事業年度를 12月 31日 以外로 할 수도 있다(所23條).

Ⅴ. 營利事業登記와 靑色申告制度

(1) 營利事業 設立後 營業開始 以前에 所定의 樣式에 따라 稅務機關에 營業登記를 해야 한다(所18條).

또, 使用하는 帳簿에 檢印을 받아야 한다(所21條).

營業登記가 完了되면 統一發票(公給領收證)를 購入·使用할 수 있다.

⑵ 靑色申告制度는 「營利事業所得稅靑色申告書實施弁法」에 準하여 靑色申告書를 提出함으로써 稅務上의 優待措置를 받을 수 있는 制度이다.

靑色申告法人은 所得稅法 規定에 의해 다음에 열거하는 優待措置를 받을 수 있다.

① 交際費의 損金不算入額을 計算할 때에 그 損金算入額의 擴大

② 缺損金의 5年間 移越控除

上記 特典은 會計士의 稅務監査를 받으면 똑같이 享受할 수 있다. 또, 靑色申告의 認可를 얻은 것은 상당히 困難하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같은 效果가 있는 會計士의 稅務監査를 받는다. 會計士의 稅務監査를 받는 경우에 國稅局의 調査는 原則的으로 會計士의 調書 調査로 끝나고 直接調査는 하지 않는다. 또 申告期限 延長이 可能하다.

Ⅵ. 營利事業所得額의 計算 … 益金

⑴ 通　　則 : 發生主義에 근거하여 모든 收入金額을 益金算入한다(所22條).

⑵ 受取配當金 : 그 投資對象會社가 中華民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會社이고, 營利事業所得稅의 減免을 받지 않은 株式會社인 경우에 그 會社로부터의 受取配當金은 100分의 20만큼 所得金額에 算入해 課稅된다. 단, 그 投資

對象會社가 投資奬勵條例의 適用을 받아 營利事業所得稅를 減免받고 있는 경우의 그 減免된 利益으로부터의 受取配當金인 경우에는 全額 所得金額에 算入한다(査30條).

(3) 換 差 益 : 稅務上 取得時 法에 의해 實現한 部分은 當期의 益金으로서 課稅對象이 된다. 단, 帳簿上의 評價益으로 增資를 할 경우에는 그 增資年度의 損益에 計上하여 課稅對象이 된다(査29條).

(4)「캐피탈 게인」: 土地의 賣却益은 所得稅法 第4條 16號에 의해 所得稅의 課稅는 없고 따로 土地增値稅가 課稅된다. 株式의 賣却益은 所得稅法 第4條의 1에 의해 1990年 1月 1日부터 非課稅로 되었다.

(5) 建設工事의 收益認識 基準 : 工事가 1年 以上 걸리는 長期工事는 工事進行基準에 따른다. 工事損益을 正確하게 見積할 수 없는 경우에는 工事完成基準을 採擇할 수 있다(査24條).

(6) 割賦販賣契約의 收益認識基準 : 다음 중 어느 것이든 選擇할 수 있으며, 繼續適用이 要件이다(査16條).

① 全部粗利益法 : 當該 販賣年度의 賣上總額에서 그 賣上原價를 控除한다.

② 粗利益百分比法 : 割賦販賣利益率과 各 事業年度의 回收割賦代金에 根據하여 그 期의 利益을 計算한다.

③ 差額利益按分法 : 割賦販賣價格과 現金販賣價格과의 差額을 未實

現利益에 計上하여 回收할 때마다 그 差額利益을 計算하여 收益에 計上한다.

④ 普通販賣法 : 現金販賣價格과 原價의 差額을 그 年度의 損益에 計上하고 割賦販賣價格과 現金販賣價格의 差는 未經過의 利子收入으로 하여 以後의 各期에 대한 利子收入을 計上한다.

(7) 受 取 利 子 : 通常의 去來에 의한 利益과 合算하여 通常의 稅率에 따라 課稅된다. 단, 短期票券의 利子所得은 分離課稅(20%)된다.

(8) 리 스 收 入 : 一定의 條件에 該當되는 것은 「캐피탈 리스」(Capital lease)方式으로 收入을 計上한다(査36條의 1).

VII. 營利事業所得額의 計算 … 損金

1. 賣上原價

(1) 購入商品 및 購入原材料

原材料 및 商品의 購入原價는 實際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實際價格이란 取得할 때의 原價 및 取得하여 營業上 使用했을 때까지 支出된 일체의 必要費用을 포함한다(査37條).

(2) 商品, 原材料, 製品, 賣掛品 및 補助材料의 期末 評價額

① 低價法. 단, 後入先出法을 採擇하는 會社는 低價法을 採擇할 수 없다(査51條).

② 資産의 種類 또는 性質에 따라 個別法, 後入先出法, 先入先出法,

移動平均法, 總平均法, 單純平均法 또는 그 외 主管機關이 정한 方法에 의해 計算할 수 있다(査51條). 評價方法을 選定하지 않을 경우에는 總平均法을 採擇한다. 上記 評價方法의 採擇은 每年 그 年度의 期間 중반까지 管轄稅務機關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正當한 理由로 評價方法을 變更하는 경우도 똑같다.

變更 申請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從來의 方法을 採擇한다.

製造業에서 稅務上 問題가 많이 發生하는 條項으로 以下를 注意해야 한다.

製造業이 原料·補助材料·賣掛品·製品 및 製造費用의 各種 分類帳簿를 만들고, 평소부터 仕入原料·受取原料·返却原料·生産品·人件費·製造費用 等을 記錄한 內部證憑이 있고, 生産日報 또는 生産通知表 및 原價計算表를 作成하며, 內部의 製造·會計·管理 및 審査 또는 指揮部門責任者의 署名과 捺印이 있다는 條件에 適合하지 않았을 경우로서, 그 使用原料가 各 業界의 通常 水準을 넘었을 때에는 그 超過部分에 대해 正當한 理由를 提出하여 調査에 의해 그것이 事實이라고 判明된 것을 빼고는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는다(査58條).

2. 費用에 관한 通則

(1) 當該 會社가 營爲하는 業務 以外에서 생긴 費用 또는 損失은 損金算入되지 않는다(査62條).

(2) 未實現의 費用 또는 損失은 貸損充當金, 退職給與充當金, 從業員定

年退職基金掛金, 勞動者定年退職準備掛金, 輸出損失充當金, 外貨債務換損失充當金 및 기타 法令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損失에 算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査63條).

⑶ 原則的으로 發生主義로 計上한다(査64條).

⑷ 營利事業에서 製造費用, 營業費用을 支出한 경우에 小規模營利事業이 發行하는 普通領收證을 取得한 部分의 年間累計金額은 稅務機關의 認定을 받은 當年度의 製造費用 및 營業費用 總額의 1,000分의 20을 超過할 수 없다.

그 超過된 部分에 대하여는 損金算入되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다(査67條).

3. 貸損充當金과 貸損損失(査94條)

⑴ 貸損充當金은 賣掛金 및 受取手形期末殘高의 100分의 1을 算入할 수 있다.

단, 貸損 發生의 比率이 높을 경우에는 過去 3個年度에 實際로 發生한 貸損平均比率에 준하여 算入할 수 있다.

⑵ 賣掛金, 受取手形 및 그 외의 各種 債權이 다음 중의 하나에 該當할 때에는 實際로 貸損損失이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事實發生年度에서 前年度의 貸損充當金으로 補塡하고 不足할 때에는 그 年度의 損失에 計上할 수 있다.

① 倒産, 逃亡, 和解, 破産의 宣告 또는 그 외의 原因에 의해 債權의 全部 또는 一部가 回收不能이 된 境遇.

② 債權을 2年 以上에 걸쳐 催促해도 여전히 元金 또는 利子가 回

收되지 않는 境遇.

4. 有形固定資産의 取得原價와 減價償却(所51條, 査95條)

(1) 有形固定資産의 減價償却方法은 定額法, 定率法 및 作業時間法 中에서 每事業年度 開始日부터 7個月 以內에 하나를 選擇하여 稅務當局에 申請해야 한다. 단, 種類가 다른 資産別로 上記 方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法定償却方法은 定額法이다(所51條).

(2) 減價償却은 「固定資産 耐用年數表」에 規定된 耐用年數보다 짧지 않는 年數에 기준하여 每年 꼭 實施해야 한다(所51條).

(3) 特別償却

詳細한 것은 「第5章 優待稅制」 參照

(4) 中古 固定資産을 取得한 경우

그 資産의 殘存年數를 耐用年數로 한다(査95條 3項).

(5) 耐用年數가 2年이 안 되는 有形固定資産

取得한 年度의 費用으로 計上된다(査77條 1項).

(6) 資本的 支出

修繕費 中에서 資本的 支出로 간주되는 것은 그 資産의 原價에 算入하고, 未使用年數를 耐用年數로 하여 정해진 償却率에 의해 減價償却해야 한다. 修繕에 의해 當該 資産의 使用可能期間이 2年 以上 延長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資本的 支出로 간주된다. 또, 修繕費가 50,000元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使用可能期間이 2年 以上 延長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費用處理된다(査77條 1項).

(7) 期間中 取得資産

有形固定資産에 대하여 定額法 또는 定率法을 採擇하여 減價償却을 행할 경우에는 1年을 計算單位로 하여 그 使用期間이 1年 未滿인 경우에는 實際로 使用한 月數에 따라 月割按分한다. 한달 미만의 日數가 있을 때에는 한달로 친다(査45條 6項).

(8) 固定資産 再評價益의 益金不算入

都賣物價指數가 1961年 1月 1日 또는 直前의 再評價時의 125%를 넘을 때에는 土地를 除外한 固定資産에 대해 再評價할 수 있고, 그 再評價益은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다. 土地의 再評價는 都賣物價指數에 따르지 않고 公示價格에 따른다(促18條).

(9) 固定資産 耐用年數表(行政院 1990年 1月 12日의 院令 拔萃)

【建 物】

番號	細	目	耐用年數
1011	事務所用, 商店用, 住宅用, 公共場所用 및 다음의 各號에 列擧하는 家屋 以外의 家屋	(1) 鐵筋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建物	55
		(2) 强化벽돌 建物	35
		(3) 벽돌 建物	25
		(4) 金屬 建物(被覆處理 있음)	25
		(5) 金屬 建物(被覆處理 없음)	20
		(6) 木造	15
1012	變電所用, 發電所用, 送受信所用, 駐車場用, 車庫用, 飛行機庫用, 貨物送所用, 公共浴場用 家屋 및 工場用 建物	(1) 鐵筋(骨)콘크리트 建物	40
		(2) 强化벽돌 建物	30
		(3) 벽돌 建物	25
		(4) 鐵骨 建物(被覆處理 있음)	20
		(5) 鐵骨 建物(被覆處理 없음)	15
		(6) 木造	10

【建物付屬 設備】

番號	細目		耐用年數
1021	遮陽設備, 消化 및 災害警報設備		5
1022	엘리베이터設備		15
1023	空調設備	(1) 창문型, 箱子型 冷暖房機	5
		(2) 센트럴·시스템 暖房機	8
1024	商店用의 簡易設備 및 簡易間仕切		3
1025	給水, 排水, 가스, 電氣, 自動門 開閉設備 및 其他		10

【陸上運送用 設備】

番 號	細目		耐用年數
2035	自 動 車	(1) 運送業用 乘用車, 트럭	4
		(2) 기타 各種 業務用 乘用車, 트럭	5

【電氣, 通信機械 및 設備】

番 號	細目		耐用年數
3141	通信設備	기타 通信設備	5

【其他 器械 및 設備】

番 號	細目	耐用年數
3181	金型	2
3182	컴퓨터 및 周邊設備, 研究用 機器設備, 測量·測定 및 檢定의 儀器設備	3
3183	工具, 器具備品 및 複寫設備	5

⑽ 殘存價格(查95條 7項, 8項)

① 定額法

$$\frac{\text{取得價格}}{\text{耐用年數表에 規定되어 있는 耐用年數 } +1} = \text{殘存價格}$$

② 定率法

取得價格 × 10% = 殘存價格

⑾ 乘用車 減價償却의 基礎가 되는 價格

乘用車의 取得價格이 1,000,000元을 넘을 때에는 稅務上 減價償却의 基礎가 되는 價格을 1,000,000元으로 計算한다(查95條14項).

5. 無形固定資産의 取得原價와 減價償却(所60條, 查96條)

無形固定資産은 購入에 의해 取得한 경우에 한해 償却이 인정된다.

償却額 計算 : ⑴ 營業權 …… 10年(定額法)

⑵ 著作權 …… 15年(定額法)

⑶ 商標權, 特許權 및 그 외의 工業所有權은 取得後의 法定 有效期間으로 한다(定額法).

6. 創業費(查96條)

創業費는 資産計上하여 每年 支拂總額의 20% 以內를 限度로 繼續償却한다.

7. 子會社株式에 대한 特分法의 適用(所63條)

長期投資로 子會社(50%가 넘는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會社)株式을 가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子會社의 財産 純價値를 評價의 基準으로 해야 한다.

8. 試驗研究費(査86條)

生産技術의 改良, 新生産의 開發로 인해 支出한 各種 研究, 開發 및 試驗費用은 以下의 區分에 따라 處理한다.

(1) 研究 또는 試驗 때문에 消耗되는 原料·材料 : 當年度의 損金에 計上

(2) 研究 또는 實驗에 쓰이는 器材設備 : 耐用年數가 2年 未滿인 것은 當年度의 損金에 計上

(3) 土地의 개량, 鑛物, 漁場 등의 審査 때문에 支出한 費用 : 3年으로 均分하여 償却

9. 交際費(所37條, 査80條)

다음의 各 項目에 따라 計算된다.

(1) 購入金額에 對한 交際費 損金算入 限度額

(2) 賣上金額에 對한 交際費 損金算入 限度額

(3) 旅客 및 貨物 運送을 業으로 하는 者의 交際費 損金算入 限度額

(4) 勞務 또는 信用提供을 業으로 하는 者(旅館, 賃貸業)의 交際費 損金算入 限度額

(5) 保險業者 : 上記 (4)와 같음.

		青色申告 또는 會計士監査	普通申告
㉠ 購入金額이	30,000,000元 以下	2/1000	1.5/1000
	30,000,001元 ~ 150,000,000元	1.5/1000	1/1000
	150,000,001元 ~ 600,000,000元	1/1000	0.5/1000
	600,000,001元 以上	0.5/1000	0.25/1000
㉡ 賣上金額이	30,000,000元 以下	6/1000	4.5/1000
	30,000,001元 ~ 150,000,000元	4/1000	3/1000
	150,000,001元 ~ 600,000,000元	3/1000	2/1000
	600,000,001元 以上	1.5/1000	1/1000
㉢ 運送收入이	30,000,000元 以下	7/1000	6/1000
	30,000,001元 ~ 150,000,000元	6/1000	5/1000
	150,000,001元 以上	5/1000	4/1000
㉣ 營業收入이	9,000,000元 以下	12/1000	10/1000
	9,000,001元 ~ 45,000,000元	8/1000	6/1000
	45,000,001元 以上	6/1000	4/1000

특히 그 外에 營利事業이 輸出業務를 하여 外國換收入을 取得했을 경우, 上記의 限度額에 추가하여 當年度 輸出에 의한 外國換取祖收入 總額의 100分의 2의 範圍內에서 特別交際費로서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예】 商社(會計士 稅務監査를 받고 있는 會社)의 交際費 限度額 計算

當年度 賣上高 150,000,000元 每年度 仕入高 100,000,000元

(그 中 輸出賣上高는 80,000,000元)

交際費 損金算入 限度額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賣上高	30,000,000元	×	6/1000	=	180,000元
	120,000,000元	×	4/1000	=	480,000元
	80,000,000元	×	2/100	=	1,600,000元
購入高	30,000,000元	×	2/1000	=	60,000元
	70,000,000元	×	1.5/1000	=	105,000元
損金算入 限度額 合計					2,425,000元

10. 寄付金(査79條)

(1) 國防建設에 贊助, 軍隊 慰問, 政府 名層에 대한 寄付金 및 財政部가 特別히 許可한 寄付金은 全額 損金으로 算入된다.

(2) 敎育, 文化, 公益, 慈善 等에 寄與하는 公認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한 寄付金은 所得額의 100分의 10까지의 限度額에 대해 損金에 算入된다.

11. 支拂利子(査97條)

(1) 中華民國 國內의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에 대한 支拂利子는 全額 損金에 算入된다. 그러나 金融機關 以外의 借入金에 대한 支拂利子는, 그 地域 商業銀行의 最高利率까지의 支拂利子는 損金에 算入되나 當該 最高利率을 넘는 部分에 대해서는 損金不算入된다.

(2) 外國으로부터의 借入金은 그 借入에 대해 中央銀行의 承認을 얻은 것이 아니면 그 借入金의 支拂利子는 損金不算入된다.

(3) 固定資産 購入을 위한 借入金에 대한 支拂利子로 借入時부터 資産取得時까지의 支拂利子는 當該 固定資産의 取得原價에 算入해야 한

다.

(4) 建物 建設을 위한 借入金에 대한 支拂利子 中, 建設期間中에 支拂해야 할 支拂利子는 當該 建物의 取得原價에 算入해야 한다.

(5) 土地購入을 위한 借入金에 對한 支拂利子는 土地의 取得原價에 算入되어야 한다. 단, 當該 土地의 名義改書에는 通常의 支拂利子로서 損金에 算入된다.

(6) 割賦販賣로 購入한 設備에 對한 支拂利子, 또는 割賦價格과 現金購入價格의 差額은 當該 設備의 取得原價에 算入해야 한다. 단, 當該 設備를 購入하기 위한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에 대한 支拂利子로 當該 設備 購入後에 支拂할 利子는 損金算入된다.

12. 租稅公課(查90條)

(1) 營利事業所得稅는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나, 그 外의 租稅公課는 損金算入된다.

(2) 科料, 延滯金, 過少申告加算金 等은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다.

(3) 土地建物 購入 때문에 納付한 契約稅, 印紙稅 等은 當該 土地 또는 建物의 取得原價에 算入된다.

13. 任員報酬(查71條 2項)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監査役의 給與는 會社의 定款 또는 株主總會에서 미리 營業利益의 有無를 따진 후에 決議된 것에 대해서만 損金에 算入된다.

14. 從業員福利厚生費(査81條)

從業員福利金條例의 規定에 따라 從業員福利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 그 委員會에 대해 一定 限度內의 金額을 醵出할 때의 醵出額은 稅務上 損金으로 인정된다. 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매달 營業收入의 0.15%까지 認定된다.

15. 로열티(査87條)

中華民國 國外의 企業, 또는 非居住者인 個人에 대해 支拂되는 로열티는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의 許可를 얻어야만 損金算入이 認定된다.

따라서, 技術提携契約締結에 앞서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에 技術合作條例에 따라 許可를 申請해야 한다.

16. 食事手當(査88條)

從業員에게 現物로 供給하는 食事, 또는 現金으로 授與하는 食費는 從業員 1人 月額 1,800元까지는 給與所得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좋다.

17. 從業員 定年退職基金掛金(査71條 8項)

「營利事業設置職工退休基金保管運用 및 分配變法」의 規定에 適合한 從業員退職基金을 設置한 會社는 當該 年度에 從業員에게 支拂한 給與 總額의 100分의 8 以內의 金額을 基金에 醵出하여 이것을 損金으로 計上하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

18. 勞動者定年退職準備金掛金(査71條 8項)

勞動基準法이 適用되는 會社는 稅務機關의 認可를 얻은 後 매년 當該 年度의 給與支給 總額의 100分의 15 以內의 金額을 釀出하여 이것을 損金으로 計上할 수 있다.

19. 換差損(査94條 1項)

實際로 實現된 換差損은 損金으로 算入할 수 있다.

20. 그 外의 充當金

(1) 退職給與充當金

從業員退職制度를 정하고 있는 會社는 稅務機關의 認可를 얻은 後 當該 年度의 從業員에 대한 給與 總額(賞與金은 包含 안함)의 100分의 4의 範圍內에서 退職給與充當金을 직접 積立할 수 있다(査71條 8項).

(2) 輸出損失充當金

生産事業이 輸出을 할 경우에는 前年度 輸出賣上高의 100分의 1 限度內에서 輸出損失充當金을 計上할 수 있다(査94條 1項, 2項).

(3) 外貨債務換損失充當金

生産事業이 機械設備를 購入함으로써 發生한 外貨債務로 그 證明書類를 添附한 경우에는 當該 外貨債務의 殘高를 期末 환율에 의해 換算한 新臺幣元 金額의 100分의 7을 限度로 外貨債務換損失充當金으로 計上하여 換損失의 補塡에 대비할 수 있다(査98條).

21. 旅費交通費(査74條)

(1) 國內出張에서 宿泊費 支拂 후에 旅館이 發行한 會社 앞으로의 統一發票 또는 普通領收證을 받을 것. 宿泊費 以外의 食事 및 雜費의 日當은 다음 標準을 넘지 않으면 證憑을 갖추지 않아도 損金으로 算入된다.

① 董事長, 總經理, 工場長은 1人 1日 500元

② 그 외 職員은 1人 1日 400元

(2) 國外出張에 드는 宿泊費 및 日當은 公務員의 國外出張旅費規則이 規定하는 日當生活費標準에 따른다. 단, 宿泊費를 實費精算하는 경우에는 宿泊費 以外의 日當에 대해 上記 標準의 50% 加算이 認定된다.

(3) 航空料는 航空豫約權 또는 航空會社가 發行한 搭乘券 등을 준비해 둘 必要가 있다.

(4) 택시費는 出張者가 記載한 明細를 準備해 두어야 한다.

22. 廣告費(査78條)

見本品의 贈答·販賣에 대해 物品이나 商品을 첨가할 경우에는 贈答品에 非賣品이라고 記載하고, 廣告의 性質을 가진 것은 帳簿上에 贈答物品의 名稱·數量 및 原價를 記載하여 贈答前에 稅務機關에 申告해야 한다.

23. 保險料(査83條)

會社가 從業員을 위해 加入하는 團體生命保險으로 會社가 保險料를 負

擔하고 會社 또는 被保險者 및 그 家族이 受取人인 경우에는 1人 1個月 2,000元 以內의 部分은 被保險者의 給料로 간주하지 않는다.

24. 專門家에 대한 報酬(査85條)

辯護士, 會計士, 建築士, 技師, 醫師, 藥劑師, 代書, 工匠 等에게 支拂하는 報酬는 支拂할 때에 源泉徵收를 할 것.

25. 커미션(査92條)

輸出 커미션이 輸出貨物 總額의 5%를 넘는 경우에는 規定에 따라 關聯된 證憑을 取得하여 正當한 理由 및 證明書類를 提出하고, 調査 結果 符合한 경우에 認定된다.

26. 在庫差損(査101條)

(1) 在庫差損의 科目은 繼續記錄法을 採擇하고 있는 경우에만 適用된다.

(2) 在庫差損은 商品의 性質에 따라 證明文書를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 만약 會計制度가 健全하고 實地在庫의 結果 그 在庫差損率이 1% 以下인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3) 在庫差損率 計算公式은 다음과 같다.

① 賣買業

$$\frac{\text{在庫差損額}}{\text{期首在庫額} + \text{當期購入高}}$$

② 製造業

在庫差損額

原料, 補助材料, 製品 및 仕掛品의 期首在庫額과 當期購入金 + 直接勞務費 + 製造費用

Ⅶ. 缺損金의 移越과 移戾

지난 年度의 移越缺損金은 靑色申告書의 使用이 認定된 會社, 또는 會計士의 監査를 받고 있는 會社로 期限內에 申告한 경우엔 管轄稅務署의 確定을 받아 認定된 5年內의 各期의 缺損金을 當期의 課稅所得에서 控除할 수 있다. 缺損金의 移戾環付制度는 없다(所39條).

Ⅸ. 留保金課稅

詳細한 것은 「第5章 優待稅制」를 參照.

Ⅹ. 稅額控除

1. 外國稅額控除(所3條, 所細2條)

營利事業의 主된 事務所가 中華民國 國內에 있는 會社(中華民國의 法律에 근거하여 設立된 會社)는 中華民國 國外의 營利事業所得 全部에 대해 營利事業 所得稅를 納付해야 한다.

단, 中華民國 國外의 場所에 대하여 所得源泉地國家에서 法人稅를 納付하고 있는 경우에는 納稅義務者가 所得源泉地國家의 稅務機關에서 發

給하는 同一 年度의 證憑을 提出하여 여기에 대한 中華民國 大使館이나 領事館, 또는 中華民國 政府가 認可한 其他 機關의 認證을 取得하면 그 全部의 營利事業所得에서 算出된 納付해야 할 稅額에서 이것을 控除할 수 있다.

단, 控除限度額은 다음 計算에 따른다.

① (國內所得額 + 國外所得額) × 稅率 − 累進差額 = 納付해야 할 稅額

② 國內所得額 × 稅率 − 累進差額 = 國內所得額에 대하여 納付해야 할 稅額

① − ② = 外國稅額控除限度額

이 控除限度額을 넘게 外國에서 納付한 法人稅는 外國稅額控除를 받을 수 없다. 또, 移越·移戾制度는 없다.

2. 投資稅額控除

詳細한 것은 「第5章 優待稅制」를 參照할 것.

XI. 稅率(T : 稅額, P : 課稅所得額)

課稅所得額	稅率	累進差額	速算公式
50,000元 以下	免稅	—	$0 < P \leq 50{,}000 \rightarrow T = 0$
100,000元 以下	15%	無	$50{,}000 < P \leq 71{,}428.56 \rightarrow T = (P - 50{,}000) \times \frac{1}{2}$

			71,428.57≤P≤100,000 →T = P×0.15 (註) 課稅所得額이 100,000元 以下의 경우 그 全課稅所得額에 15%를 곱하며 稅額은 課稅所得額의 50,000 초과 部分의 $\frac{1}{2}$ 을 넘지 않는다.
100,001元 以上	25%	10,000元	100,000 〈P→T=P×0.25−10,000

XII. 確定申告 및 納付

(1) 每年 2月 20日부터 3月 31日까지(事業年度가 12月 31日 以外인 경우에는 事業年度 終了後 3個月 以內) 管轄稅務機關에 그 年度의 課稅所得金額을 申告해야 한다(所71條).

또, 그 年度에 納付해야 할 稅額에서 豫定納付稅額 및 源泉徵收稅額을 제하고 確定稅額을 計算하여 自主的으로 納付해야 한다.

(2) 特殊한 事情이 있을 경우에는 納稅機關의 認可를 받아 申告期間을 5月15日까지 延長할 수 있다. 會計士, 또는 기타 合法代理人에게 委託하여 査定, 認證, 申告하는 것은 5月 31日(또는 事業年度 終了後 5個月 以內)까지 延長할 수 있다(所72條).

(3) 主 事務所가 中華民國 國外에 있는 營利事業(中華民國 國外에서 設立된 會社)이 中華民國 國內에서 國際運輸, 建設工事 請負, 技術서비스 提供 또는 機械設備 賃貸 等의 業務를 행하여 그 原價費用의

分擔計算이 복잡한 경우에는 中華民國 國內에 支店 또는 代理人의 設置 有無를 따지지 않고 財政部에 申請하여 그 許可에 따르든가 財政部의 査定에 의하여 中華民國 國內 營業收入의 100分의 15(國際運輸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를 中華民國 國內의 營利事業所得額으로 할 수 있다. 단, 缺損 移越은 안 된다 (所25條).

그리고 支店이 없고 營業代理人이 있을 경우에는 營業代理人이 當該 所得의 25%를 控除하고 納付한다. 또, 支店도 營業代理人도 없는 경우에는 源泉徵收方式으로 當該 所得의 25%를 納付한다(所3條, 98條 1).

(4) 確定申告를 할 때에는 源泉徵收領收書, 稅金納付領收書 및 그 외의 關係書類나 領收書 및 賃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財産目綠을 添付해야 한다.

(5) 事業年度가 1年 未滿인 경우의 所得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實際所得額×12/事業年度의 月數 = 1年分 換算所得額

1年分 換算所得額×稅率－累進差額 = 1年分 換算納付稅額

1年分 換算納付稅額×事業年度의 月數/12 = 納付해야 할 稅額

XIII. 豫定納付(所67條)

每年 7月 1日(事業年度가 12月 31日 以外의 會社는 事業年度 終了後부터 6個月을 經過한 날의 翌日)부터 1個月 以內에 다음의 方法에 根據하여 豫定納付稅額을 計算하여 納付하는 것과 함께 規定樣式에 따라서 豫定納付稅額申告書를 記入한 後 豫定納稅額領收書를 添付하여 管轄稅務官

公署에 提出해야 한다.

前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額 × 0.5＝當年度의 豫定納付稅額

XIV. 源泉徵收制度

(1) 各種 所得과 源泉徵收稅率은 以下와 같다.

	居住者 또는 固定營業場所를 가지고 있는 營利事業에 支拂하는 경우	非居住者 또는 固定營業場所를 가지고 있지 않는 營利事業에 支拂하는 境遇
① 配 當	15%	35% 단, 外國人投資條例에 근거하여 投資를 행한 境遇 20%
② 커미션	10%	20%
③ 利 子	10% (短期票券의 利子는 20%)	20%
④ 賃貸料	15%	20%
⑤ 給 料	給與所得源泉徵收表의 規定 또는 支拂 總額의 10%	20%
⑥ 業務執行 報酬	10%	20%
⑦ 로열티	15%	20%
⑧ 財産去來所得	申告納稅	35% 또는 25%의 申告納稅
⑨ 기타 所得	申告納稅	20%
⑩ 國際運輸 및 建設請負業이 源泉徵收方法으로 納稅할 경우	25%	25%

⑪ 國際映畵會社가 源泉徵收方式으로 納稅할 경우	20%	20%
⑫ 試合, 콘테스트 또는 福券賞金, 給與	15% (政府主催인 것은 20%의 分離課稅이고 綜合所得이 아니다)	20%

(2) 단, 所得稅法 第4條 21項에 의해 營利事業이 新生産技術, 또는 新製品의 導入, 製品品質의 向上이나 生産原價 輕減 때문에 經濟部의 認可를 받아 外國營利事業이 所有하는 特許權, 商標權 및 各種 權利를 使用할 경우나 當該 外國營利事業에 支拂하는 權利金 등, 또는 政府主務官廳의 認定을 받은 主要 生産事業이 工場建設로 外國營利事業에 支拂하는 技術서비스의 報酬에 대해서는 源泉徵收의 必要가 없다. 上記 免稅措置의 適用을 받기 위해서는 技術合作條例에 근거한 許可와 免稅措置에 관한 申請이 必要하다.

(3) 主된 사무소가 中華民國 國外에 있는 營利事業(中華民國 國外에 設立된 會社), 中華民國 國內에서 國際運輸, 建築工事請負, 技術서비스의 提供 또는 機械設備의 賃貸 等의 業務를 행하여 財政部의 許可에 의해 그 所得額을 中華民國 營業收入의 100分의 15(國際運輸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한 경우에는 支拂人이 源泉徵收해야 할 金額은 그 所得額의 100分의 25이다. 즉, 營業收入×15/100(10/100)×25/100 = 源泉徵收稅額

(4) 源泉徵收義務者는 翌月 10日까지(非居住者 또는 固定營業場所를 가

지고 있지 않은 營利事業에 支拂하는 경우는 徵收하고부터 10日以內에) 源泉徵收한 稅金을 國庫에 納付해야 한다. 또 每年 1月末까지는 前年度 內에 納付한 納稅義務者의 納付稅額에 대해 源泉徵收票를 發行하여 當該 稅務官公署에 一括申告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XV. 租稅條約

中華民國은 현재 싱가포르하고만 包括的인 租稅協定을 締結하고 있다. 또, 國際運輸業만 관련된 協定 또는 交換文書를 美國, 日本, 남아프리카 共和國 等 8個國과 締結하고 있다.

第 4 章

營 業 稅

概 要

1. 中華民國의 營業稅는 賣上의 附加價値에 근거하여 賦課하는 附加價値稅(Value Added Tax: VAT)와 賣上高에 대해 賦課하는 營業稅(Gross Business Receipt Tax: GBRT)의 2가지가 있다. 1986年 4月부터는 VAT가 原則的 方法으로 實施되고 있다.
2. 一般 會社는 모두 5% 稅率로 VAT가 課稅된다.

Ⅰ. 課稅範圍(營1條)

(1) 中華民國 領域內에서 物品 또는 勞務의 販賣

(2) 輸入物品(一般 VAT方式으로 課稅되는 會社는 實務上 輸入時에는 課稅되지 않는다)

販賣行爲를 課稅範圍로 하고, 그 行爲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II. 納稅義務者(營2條)

(1) 物品 또는 勞務를 販賣하는 營業者

(2) 輸入物品의 受取人 또는 所持人

(3) 中華民國 領域內에 固定된 營業所를 가지고 있지 않는 外國企業 또는 機關, 團體, 組織이 販賣하는 勞務의 買受人. 단, 外國의 國際線 運輸事業이 中華民國 領域內에 固定된 營業所를 설치하지 않고 代理人을 指定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

(1)의 營業者의 定義 中에 個人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課稅方式에 따라 다음의 3種類로 區分된다.

① 免稅營業者

② 一般稅額計算營業者

③ 特殊稅額計算營業者

通常의 會社는 전부 一般稅額計算營業者이다.

(2)의 輸入物品의 受取人 또는 所持人이란 營業者, 營業者가 아닌 個人, 機關, 團體를 가리킨다.

免稅, 課稅의 編成

		營業者			
		免稅營業者	一般稅額計算營業者	特種稅額計算營業者	個人
國內販賣		免稅 (購入項目稅額의 充當可能)	課稅 (購入項目稅額의 充當可能)	課稅 (購入項目稅額의 充當可能)	免稅
輸入	勞務	課稅	免稅	課稅	課稅
	物品	課稅	免稅	課稅	課稅

一般稅額計算營業者는 營業稅法 第41條 2項에 의해 輸入物品의 營業稅가 免除된다.

Ⅲ. 輸出의 規定

輸出物品에 대한 營業稅率은「零稅率」을 採擇한다. 즉, 購入項目稅額은 全額 還拂되고 當該 輸出品에 대한 租稅의 負擔은 없어진다.

* 零稅率 適用範圍(營7條 1項)

1. 輸出物品
2. 輸出과 關係있는 勞務와 國內에서 供給하나 外國에서 使用되는 勞務
3. 法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免稅商品으로 國境通過旅客 또는 出國旅客에게 販賣되는 物品
4. 免稅輸出加工區域內, 科學工業團地內 또는 稅關管轄의 保稅工場, 保稅倉庫에서 販賣하는 機械設備, 原料, 物料, 燃料 및 仕掛品
5. 國際線 運輸
6. 國際線 運輸用의 船舶, 航空機 및 遠洋漁船
7. 國際線 運輸用의 船舶, 航空機 및 遠洋漁船의 販賣에 使用하는 物品 또는 修繕勞務

Ⅳ. 免稅의 規定

營業稅法 第8條에서 規定하는 31項目이 있는데 크게 分類하면 農業·漁業에 관한 것, 社會福祉에 관한 것, 敎育文化에 관한 것, 政府機關·軍事에 관한 것, 類似한 稅의 課徵이 있으므로 免稅하는 것, 其他이다.

客體에 대한 免稅로서는 第1號의 賣却할 土地, 第17號의 印紙, 또는 郵票販賣의 勞務 및 第30號의 金塊金貨의 3項은 主體하고는 關係없이 客體에 대해 免稅된다.

免稅의 경우는 零稅率과는 달리 購入項目稅額의 充當은 안 된다.

그리고 免稅規定 適用의 放棄를 申請한 경우, 認可後 3年 以內에는 變更할 수 없다.

Ⅴ. 稅額의 計算

1. 一般稅額의 計算

當月分의 賣上項目稅額에서 購入項目稅額을 除한 後의 殘高를 當月分의 納付 또는 還付의 營業稅額으로 한다(稅額差引法).

賣上項目稅額이란 營業者가 物品 또는 勞務를 販賣할 때 規定에 의해 取得해야 할 營業稅額을 가리킨다.

購入項目稅額이란 營業者가 物品 또는 勞務를 購入할 때에 規定에 의해 支拂한 營業稅額을 말한다

2. 特殊稅額의 計算

特定業種(銀行業, 保險業, 特殊飮食業) 및 小規模營業者는 그 賣上額에 대해 規定의 稅率에 따라 營業稅額을 計算한다.

3. 購入項目稅額 중에서 控除되지 않는 경우(當19條)

(1) 法定의 購入證憑(統一發票)이 없는 것
(2) 本業 및 關聯業務에 관계없는 物品 또는 서비스
(3) 交際用의 物品 또는 서비스
(4) 從業員 個人의 福利를 위한 物品 또는 서비스
(5) 自家用 小型自動車

Ⅵ. 稅率(營10條, 11條)

現在는 5%이다. 最低 5%부터 最高 10%의 範圍內에서 行政院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 외의 特殊한 稅額計算에 의한 稅率은 다음과 같다.

1. 銀行, 保險, 信託投資, 證券, 短期票券 및 전당포	5%
2. 保險業의 再保險收入	1%
3. 特殊飮食業	15%, 25%
4. 小規模營業者	1%

Ⅶ. 申告 및 納付(當35條)

營業者는 賣上高의 有無에 관계없이 2個月에 한 번 다음달 15일까지 規定様式의 申告書에 還付 또는 充當稅金, 기타 關係書類를 添附하여 管轄稅務機關에 申告한다.

輸出業務로 零稅率의 適用을 받을 경우에는 每月 申告한다.

第 5 章

優 待 制 度

概 要

1. 投資奬勵條例는 中華民國 國內에서 投資를 奬勵하고, 經濟의 加速發展을 꾀하는 것을 目的으로 1960年 9月에 制定되어, 1987年 1月에 最終 決定되었다.
2. 投資奬勵條例의 施行期間은 1990年 12月 31日까지이다.
3. 1991年 1月 1日부터는 促進産業昇級條例가 施行되고 있다.
4. 促進産業昇級條例의 內容은 投資奬勵條例를 踏襲하고 있으나, 크게 다른 점은 5年 또는 4年의 營利事業所得稅의 免稅規定과 關稅의 免稅規定이 없어진 것, 適用對象이 生産事業만으로 限定되지 않고 株式會社組織으로 된 것이다.

投資奬勵條例와 實施滿期注意事項과 促進産業昇級條例와의 租稅減免措置對照表

(民國 79年 = 1990年)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1. 5(4)年 免稅	(1) 類目標準에 符合하는 新設 또는 增資擴大의 生産事業(第6條).	79年 12月 31日前에 申請書를 提出하여, 主務機關이 創立 또는 擴大를 許可하는 것과 함께, 82年12月 31日前에 그 免稅製品의 販賣 또는 勞務의 提供을 開始하는 것을 認可한 경우에는 適用된다.	없 음
	(2) 創業投資事業 또는 株式會社가 規定에 따라 國外에 投資하는 경우(第8條).	79年 12月 31日前에 申請書를 提出하여, 投資審議委員會가 國外의 投資를 許可함과 동시에 82年 12月 31日前에 그 免稅所得의 取得을 認可할 경우에는 適用된다.	政府에 의해 許可된 株式會社의 國外投資는 當該 國外投資總額의 20% 範圍內에서 國外投資損失充當金을 計上할 수 있다(第10條).
	(3) 株式會社가 世界貿易中心計劃에 따라 國際貿易빌딩을 建設하여 他人에 賃貸한다(第8條의 1).	없 음	없 음
2. 併合 免稅	5(4)年 免稅期間中에 增加한 機器設備에	79年 12月 31日前에 申請書를 提出하여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의해 增加한 生産量(第6條).	主務機關이 計劃을 許可함과 동시에 免稅期間中에 許可한 原計劃의 免稅額目 또는 機器設備의 增加를 認可한 경우에는 適用된다.	
3. 加速償却	(1) 增資에 의해 增加한 機器設備는 $\frac{1}{2}$, 建物·交通設備는 $\frac{1}{3}$로 短縮한다(第6條).	79年 12月 31日前에 申請書를 提出하여, 主務機關이 創立또는 擴大를 許可함과 동시에 82年 12月 31日前에 그 免稅製品의 販賣 또는 勞務의 提供을 開始하는 것을 認可한 경우에는 適用된다.	株式會社 固定資産의 耐用年數는 다음에 따라 短縮할 수 있다. (1) 研究開發, 實驗, 品質檢査에 專用하는 機器設備 및 에너지를 節約 또는 代替하는 機器設備는 2年의 加速償却이 된다. (2) 産業構造의 調整, 經常規模의 改善 및 生産方法의 需要에 根據하여 特定의 産業에 대해 그 機器設備의 償却年數를 $\frac{1}{2}$로 短縮하는 것을 許可한다.(第5條)
	(2) 國際貿易 빌딩을	없 음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建設하여 他人에게 賃貸할 경우에는 그 機器設備의 償却年數를 $\frac{1}{2}$로 短縮할 수 있다(第8條의 1).		
	⑶ 生産事業의 機器設備의 更新을 主務機關으로부터 許可받은 者는 耐用年數를 $\frac{1}{2}$로 短縮할 수 있다(第12條).	79年 12月 31日前에 設置가 完了된 경우에는 適用된다.	없 음
	⑷ 研究開發, 實驗, 品質檢査에 필요한 機器設備의 耐用年數를 $\frac{1}{2}$로 短縮할 수 있다(第34條).	79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의 確定申告를 할 때에는 適用된다.	없 음
	⑸ 오로지 에너지節約 또는 汚染防止 때문에 購入한 機器設備는 2年의 加速償却이 된다(第46條, 47條).	없 음	없 음
4. 1~4年의 免稅措置	資本集約 또는 技術集約型의 生産事業은 免稅据置 期間을 自主的으로 選定할	投資奬勵條例 第6條에 의해 許可된 경우에는 適用된다.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수 있다(第7條).		
5. 奬勵의 繼續	投資가 讓渡된 후, 讓受人이 免稅 또는 加速償却을 承繼한다(第9條).	계속해서 適用한다.	없 음
6. 投資의 稅額控除 (機能性奬勵)	(1) 生産 設備投資의 稅額控除 : 行政院은 生産事業이 當該 年度의 生産設備投資金額의 5～20%를 當該年度의 納付해야 할 營利事業所得稅에서 控除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 (第10條).	民營事業購買産業機械 또는 防治汚染適用投資抵減弁法에 의해 취급함.	株式會社가 다음의 用途를 위해 支出한 金額의 5～20%를 當該年度의 納付해야 할 營利事業所得稅에서 控除할 수 있다. (1) 自動化生産設備 또는 技術에 投資한다. (2) 汚染防止設備 또는 技術을 購入한다. (3) 研究開發, 人材訓練과 國際的 브랜드(Brand)確立에 投資한다. (第6條)
	(2) 研究開發의 奬勵 : 生産事業이 있는 年度의 研究開發費用이 過去 5年間 支出한 最高의 金額을 넘었을 경우에는 超過한 部分의 20%를 當該年度의 納付해야 할 營利事業所得稅에서 控除할 수 있다 (第34條의 1).	79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의 確定申告時에는 適用된다.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7. 納稅 限度額	(1) 生産事業의 營利事業所得稅와 附加稅의 總額은 全年度課稅所得額의 25%를 限度로 한다.	79年 12月 31日까지 施行한다. 曆年決算의 경우는 79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을 確定申告時에 適用한다.	없 음
	(2) 創業投資 事業, 大貿易商, 基本金屬製造工業, 重機械工業, 石油化學工業, 기타 資本이나 技術集約的인 主要生産事業 및 主要科學技術事業등의 營利事業所得稅와 附加稅의 總額은 全年度課稅所得額의 20%를 限度로 한다(第15條).	非曆年決算의 경우는 比例로 計算한다.	
8. 主要事業의 奬勵	個人 또는 營利事業이 다음 事業의 株式發行에 應募 또는 株式의 原始 引受者는 株式의 取得價額을 納付해야 할 稅額에서 控除할 수 있다. (1) 行政院의 規定標	(1), (2), (3) 모두 79年 12月 31日 前에 株金을 支拂할 原始引受者 또는 應募者에게는 適用된다.	아래 規定에 따라 記名株式을 引受 또는 應募한 者는 株式 取得價額의 20%를 限度로 當該年度의 納付해야 할 所得稅에서 控除된다(2年 以上 株式을 保有한 者에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準에 該當하는 鑛工業이나 事業(控除率 15%), (第20條).		한한다). (1) 個人 또는 創業投資事業 以外의 營利事業이 政府가 指定한 主要 科學技術事業과 投資計劃이 創立이나 擴大에 의해 發行하는 記名株式을 原始引受 또는 應募한다. (2) 個人 또는 營利事業이 創業投資事業이 創立이나 擴大에 의해 發行하는 記名株式을 原始引受 또는 應募한다(第8條).
	(2) 主要科學技術事業(控除率 30%), (第20條의 1).		
	(3) 創業投資事業(控除率 20%), (第20條의 2).		
9. 新發明의 奬勵	特許權을 生産事業에 提供 또는 賣却하는 경우의 所得은 免稅된다.	없 음	特許權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著作權을 國內會社에 提供 또는 賣却한 경우의 所得은 免稅한다(第9條).
10. 華僑와 外國資本의 奬勵	(1) 中華民國內에 非居住의 個人과 固定營業所가 없는	投資奬勵條例 第16條 2項에 의해 華僑 또는 外國人의 投資	投資奬勵條例 第16條 第1項 第1號를 本 條例 第11條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營利事業으로 中華民國의 會社로부터 받은 配當또는 파트너로서 받아야 할 配當이 있으면, 다음 規定에 의해 所得稅의 源泉徵收를 한다: 華僑歸國投資條例나 外國人投資條例에 의해 投資를 申請해 認可를 받은 者는 支給額의 20%를 徵收당한다. 同 2條例에 의하지 않는 支給額의 35%를 徵收당한다(第16條 第1項 第1, 第2號).	利益의 源泉徵收에 대해 35%로 徵收된 者는 徵收된 後, 中華民國 源泉의 所得總額에 대해 所得稅法에 근거하여, 確定申告할 수 있다. 만일, 徵收된 金額이 納付해야 할 稅額을 超過했을 때에는 還稅할 수 있다. 이 規定은 79年度의 所得稅 確定申告時에 適用된다.	第1項으로 한다(第11條)
	(2) 中華民國內의 非居住 個人이 華僑歸國投資條例 또는 外國人 投資條例에 의해 許可를 받아 投資를 하여, 當該 事業의 任員·監査役 또는 支配人을 擔當할 때 一課稅年		投資奬勵條例 第17條를 本 條例 第11條 2項으로 한다(第11條).

獎勵項目	投資獎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度에 居留期間이 183日을 넘을 때에는 받은 配當에 대해 20%의 源泉徵收를 한다(第17條).		
	(3) 國外의 營利事業이 華僑歸國投資條例 또는 外國人 投資條例에 의해 許可를 받아 中華民國內에 投資를 할 때에 任員, 支配人 또는 技術者가 一課稅年度에 居留期間이 183日을 넘지 않았을 때에는 그 給與所得을 中華民國 源泉所得으로 간주하지 않는다(第18條).		投資獎勵條例 第18條를 本 條例 第12條로 한다(第12條).
11. 合併에 의해 發生한 稅金의 減免	A. 營利事業이 合併의 許可를 얻어 生産事業으로 되었을 때에는 下述의 稅金減免을 享受할 수 있다. (1) 合併에 의해 發生한 所得稅, 印	79年 12月 31日 前에 經濟部가 個別的으로 許可한 合併案에 대해서는 合併으로 인해 發生한 所得稅는 免除한다.	投資獎勵條例 第38條의 主된 部分을 本 條例 第13條로 했으나, 主된 差異는 다음과 같다. ① 適用對象을 營利事業에서 株式會社로 變更했다.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紙稅, 契約稅는 免除한다.		② 合併에 의해 發生하는 所得稅의 免稅規定이 取消되었다(第13條).
	(2) 當該事業의 直接使用에 元來 필요한 土地가 同時에 一括하여 移轉한 때에는 그 納付해야 할 土地增値稅가 課稅猶豫가 된다.		
	(3) 合併後에 機械, 設備, 工場建設, 土地를 賣却하여 새로운 것을 購入 또는 設置할 때에는 印紙稅와 契約稅를 免除한다.		
	(4) 合併에 의해 土地를 賣却하여 새로운 土地를 購入할 경우에는 이미 納付한 土地增値稅에 대하여 그 土地 新購入에 支拂할 代價의 不足分의 返却을 申請할 수 있다(第38條).		
	B. 合併이 政府의 規定標準에 符合	79年 12月 31日前에 經濟部가 個別的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하면 合併後 2年間의 營利事業所得稅의 15%는 免除한다(第40條).	으로 許可한 合併案에 適用된다.	
12. 政策的 工場移轉의 奬勵	生産事業이 特定의 原因에 의해, 工業區 또는 政府가 編定한 工業用地 또는 都市計劃工業區域內에 工場을 移轉하여, 現有工場用地를 賣却 또는 移轉한 때에는 納付해야 할 土地增値稅는 最低의 稅率로 徵收된다.	없 음	投資奬勵條例 第39條를 本 條例 第14條로 하였으나 主된 差異는 다음과 같다. ① 適用對象을 生産事業에서 株式會社로 變更했다. ② 特定原因 中에 「經濟部에 登錄하는 中心衛星工場建設 때문에 移轉하는 것」의 規定을 削除했다(第14條).
13. 內部留保의 緩和	A. 會社組織의 營利事業은 拂入濟資本金의 $\frac{1}{2}$ 限度內에서 利益을 留保하고 配當하지 않을 수 있다. 類目과 標準에 符合하는 生産事業은 佛入濟資本金을 넘	없 음	株式會社는 拂入濟資本金의 限度內에서 利益을 留保할 수 있다. 政府가 指定한 主要産業은 拂入資本金의 2倍限度內에서 利益을 留保할 수 있다. 以上의 限度를 超過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지 않은 限度內에서 利益을 留保할 수 있다. 策略性 工業은 拂入濟資本金의 2倍를 넘지 않는 限度內에서 利益을 留保할 수 있다. 以上의 限度를 超過한 때에는 10%의 營利事業所得稅를 追加徵收한 後, 所得稅法上의 制限을 받지 않게 된다(第41條 第1項).		한 경우에는 10%의 營利事業 所得稅를 追加徵收한 後, 所得稅法上의 制限을 받지 않게 된다(第15條).
	B. 外國會社의 支店이 利益을 留保하여 事業에 使用하는 者에게는 第41條 第1項을 準用한다(第41조 第2項).	없 음	없 음
14. 未配當利益에 의한 增資配當株의 課稅猶豫	(1) 生産事業이 特定用途 때문에 未分配利益으로 增資를 행할 때에 그 株主가 取得한 新發行의 記名株式	行政院의 規定標準에 符合한 鑛工業에 投資하는 것으로 인해 取得한 新發行의 記名株式을 當該年度의 所得額에 算入	投資奬勵條例 第13條 第1項은 本 條例 第16條로 했으나 兩者間의 主된 差異는 다음과 같다.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은 當該株主의 當該年度의 綜合所得額에 算入하는 것을 免除한다 (第13條 第1項).	하는 것을 免除하는 規定은 79年度의 所得稅 確定申告를 할 때에는 適用된다.	(1) 適用對象을 生産事業에서 株式會社로 變更했다. (2) 投資奬勵條例 第1項 第3號를 削除하여 本 條例 第16條에 第3號 「第 8條가 規定하는 主要産業에 投資하는 者」의 規定을 增加했다 (3) 課稅猶豫의 增資株를 讓渡, 贈與 또는 遺産分配할 때 所得의 計算과 課稅申告에 대한 規定이 다르다(第16條).
	(2) 生産事業의 從業員이 利益分配로 增資에 의해 取得한 新發行의 記名株式에는 第13條 第1項을 準用한다 (第13條 第2項).	없 음	投資奬勵條例 第13條 第2項, 第3項을 本 條例 第17條로 한다(第17條).
	(3) 創業投資事業의 未分配利益으로 增資에 의해 株主		

獎勵項目	投資獎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또는 出資者가 取得한 新發行의 記名株式에는 第13條 第1項을 準用한다(第13條 第3項).		
	⑷ 外國會社의 支店이 未配當利益을 中華民國內의 營業資金으로 充當하여, 第13條 第1項 第1, 2號의 用途로 使用할 때 當該年度의 中華民國源泉所得額에 算入하지 않는다. 단, 支店의 資金이 減少, 撤回 또는 認可가 取消되었을 때에는 追加徵收되어야 한다(第13條 第4項).	79年 12月 31日前에 增資登記를 完了한 者는 適用된다.	없 음
15. 資産再評價	資産再評價에 의한 增加는 收益으로 課稅하지 않는다(第42條 第2項).	없 음	投資獎勵條例 第42條 第2項을 本條例 第18條로 한다(第18條).
16. 株式의 額面超過額을 準備	生産事業이 株式을 額面 以上의 價格으로 發行하여, 그 額		株式會社가 株式을 額面 以上의 價格으로 發行해, 그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金에 算入할 때 所得額으로의 算入 免除	面超過額을 準備金으로 移越할 때 그 超過額은 所得額에 算入하지 않는다(第25條).		額面超過額을 準備金으로 移越할 때 그 超過額은 所得額으로 算入하지 않는다(第19條).
17. 再投資의 重複課稅 除去	會社組織의 營利事業을 創業投資事業에 投資하는 者는 그 投資收益의 80%가 免稅된다(第16條의 3)	없 음	株式會社가 創業投資事業에 投資하는 者는 그 投資收益의 80%가 免稅된다(第20條).
18. 貯蓄의 奬勵 및 資金市場發展의 促進	(1) 利子所得 및 上場會社의 配當所得의 定額免除(第23條).	36萬元 以內의 利子나 配當金의 免稅, 超過部分의 分離課稅의 選擇 : (1) 79年度의 確定申告時에는 適用된다. (2) 79年度 以後에 利子를 受領하거나 79年 12月 31日 以前의 利子에 屬하는 部分에는 適用할 수 있다.	없 음
	(2) 株式을 公開上場하거나 또는 公開上場株式을 記名式으로 變更할 때에는 所得稅의	許可된 者는 79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 79年 12月 31日前에 上場의 確定申告를 한 때에는 適用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15%가 減額徵收된다(第24條).	된다. 非曆年決算의 경우에는 比例로 計算한다.	없 음
	(3) 有價證券을 1年以上 保有할 때에는 그 去來所得稅가 減額徵收된다(第26條).	없 음	없 음
	(4) 證券去來稅와 證券去來所得稅의 徵收는 一時停止된다(第27條).	없 음	없 음
	(5) 證券去來報告書와 契約書는 免稅된다(印紙稅), (第28條).	없 음	없 음
19. 機器設備의 變更奬勵	(1) 生産事業이 機器設備를 輸入할 때에는 輸入稅金의 分割納付 또는 免除를 받는다(第21條).	(1) 關稅免除部分: 79年 12月 31日 前에 申請書를 提出하여, 主務機關이 創立 또는 擴大를 許可함과 동시에 82年 12月 31日前에 輸入하는 機械設備 및 오로지 當該機械設備의 製造에 필요한 部品 및 材料로 輸入할 때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國內에서 아직 製造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認可된 것에는 適用된다. (2) 分割納稅部分: 79年 12月 31日 以前에 主務機關이 發行하는 國內未製造證明書를 取得한 者 또는 79年 12月 31日 以前에 輸入하여, 關稅法 第5條의 1 第3項에 따라 保證金을 納付하고, 稅關 規定期限內에 主務機關이 發行하는 國內未製造證明書를 取得한 者에게 適用된다.	
	(2) 生産事業이 機器設備를 購入할 때에는 外貨債務換損失準備金을 計上할 수 있다(第43條).	(1) 79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를 確定申告할 때에는 適用된다. 非曆年決算의 경우에는 比例로 計算한다. (2) 帳簿上의 準備金의 殘額을 80年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度 終了時에 收入으로 調整하여, 實際發生時에 再度計上한다.	
20. 輸出奬勵	産業事業은 輸出損失準備金을 計上할 수 있다(第31條).	(1) 79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를 確定申告할 때에는 適用된다. 非曆年決算일 때에는 比例로 計算한다. (2) 帳簿上의 準備金의 殘額을 80年度 終了時에 收入으로 調整하여, 實際發生時에 再度計上한다.	없 음
21. 土地投資增値稅의 分割納付	土地를 가지고 生産事業에 投資할 때에는 土地增値稅를 5年分割納付할 수 있다(第19條).	79年 12月 31日前에 契約을 締結한 者에게는 適用되지만 規定期間內에 申告한 것에 한함.	없 음
22. 不動産契約稅의 納付	生産事業이 生産用의 不動産을 取得한 때에는 不動産去來稅가 半減徵收된다(第22條).	79年 12月 31日前에 契約을 締結한 者에게는 適用되나 規定期間內에 申告한 것에 한함.	없 음
23. 印紙稅免除	國際航路로 航行하는 船舶, 航空機, 遠洋漁船을 建造 또는	(1) 印紙稅法으로 國際船路로 航行하는 船舶에 관한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檢查修理할 때에는 締結한 契約書의 印紙稅 免除(第32條).	契約書는 非課稅文書로 한다. (2) 國際航路로 航行하는 航空機, 遠洋漁船에 대해서는 79年 12月 31日前에 締結한 契約書에는 適用된다.	
24. 研究開發의 奬勵	(1) 研究開發設備의 加速償却(第34條).	(1), (2), (3), (4) 모두 79年度의 營利事業所得稅의 確定申告를 할 때에는 適用된다.	第 5 條
	(2) 生産事業의 研究開發實驗費用을 當該年度의 課稅所得에서 控除할 수 있다(第34條).		없 음
	(3) 研究開發費用의 稅額控除(第34條의 1).		
	(4) 研究開發費用은 規定된 營業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下廻하지 않을 것(第35條).		없 음
25. 外國子會社를 支店으로 變更할 경우	(1) 外國子會社를 支店으로 組織變更할 때의 免稅繼承(第38條의 1).	(1), (2), (3), (4), (5), (6) 모두 79年 12月 31日前에 解散淸算을 完成한 것에는 適用된다.	없 음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2) 外國子會社를 支店으로 變更할 때에 생긴 所得稅, 印紙稅와 契約稅의 免除(第38條의 1).		
	(3) 外國子會社를 支店으로 變更할 때 土地增値稅의 課稅猶豫(第38條의 1).		
	(4) 外國子會社를 支店으로 變更할 때 購入한 土地의 土地增値稅의 控除 또는 還付(第38條의 1).		
	(5) 外國子會社를 支店으로 變更할 때 土地, 工場建物의 賣却의 印紙稅, 契約稅의 免除(第38條의 1).		
	(6) 外國子會社를 支店으로 變更할 때 機器設備賣却의 印紙稅 免除(第38條의 1).		

奬勵項目	投資奬勵條例	實施滿期注意事項	促進産業昇級條例
26. 工業區域內에 標準工場建物을 建設하는 奬勵	(1) 工業區域內의 標準工場建物을 購入할 때 契約稅의 免除(第48條).	79年 12月 31日前에 契約을 締結하는 것에는 適用되나 期限內에 申告한 것에 한한다.	
	(2) 工業區域內의 標準工場建物을 建設하여 他人에게 빌려 줄 때에는 家屋稅 5年 減免(第48條).	79年 12月 31日前에 主務機關이 建設을 許可하는 標準工場建物에는 適用된다.	없 음
	(3) 工場區域內의 標準工場建物을 建設하여 建物의 未使用期間의 家屋稅 免除(第48條).	79年 12月 31日前에 主務機關이 建設을 許可하는 標準工場建物에는 適用된다.	없 음
27. 國際觀光호텔의 家屋稅 半減	國際觀光호텔의 家屋稅 半減徵收(第48條의 1).	79年 12月 31일 以後 適用 안함.	없 음
28. 世界貿易센터의 家屋稅 免除	世界貿易센터 計劃에 의해 建設한 展覽館 및 國際會議센터에 投資할 때 그 家屋稅를 免除한다(第48條의 2).	79年 12月 31일 以後 適用 안함.	없 음

第II篇

홍　　콩

第 1 章

租稅의 種類와 特徵

槪 要

1. 所得稅率은 個人이 15%, 法人이 16.5%다.
2. 日本의 地方稅에 該當하는 것은 없다.
3. 홍콩 外에 源泉이 있는 所得이나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은 無稅이다.
4. 日本 稅法上 홍콩은 輕課稅國에 該當하여 「택스 헤이븐」(Tax Haven) 稅制의 對象이 된다.

Ⅰ. 種類

國內歲入法에 根據하여 所得稅와 그 外의 稅金이 있다.

日本의 住民稅, 事業稅 등의 地方稅에 該當하는 稅金은 存在하지 않는다. 또 源泉徵收되는 稅金(예를 들어 給與所得稅의 源泉徵收, 貸付金이나 預金의 利子 및 配當金의 源泉稅)은 없다.

그 외의 稅金으로 消費稅나 附加價値稅는 存在하지 않는다.

稅金의 種類		課 稅 對 象	稅 率
所得稅	事業所得稅	홍콩 內에서 이루어진 營業에 관련된 所得	個人 15%, 法人 16.5%
	給與所得稅	홍콩 內에서 提供한 勞動役務 등의 代價	2%～25%의 累進課稅 (最高는 總所得의 15%)
	資産所得稅	홍콩에서의 賃貸料收入 × 80%	15%(法人은 事業所得)
	利子所得稅	1989年 4月 1日 以後 廢止	
其他稅金	事業登錄稅	會社, 支店, 駐在員事務所, 個人商店	年 1,000달러
	印 紙 稅	不動産 및 株式의 賣買契約書	不動産 2.75%(最高), 株式 0.6%
	固定資産稅	土地·建物의 課稅評價額	7.5%(단, 新界에서는 4%)
	相 續 稅	홍콩居住者의 死亡에 따른 個人財産의 遺贈	6% ～ 18%
	遊 興 稅	競馬場, 映畵館의 入場料	競馬場 28.4%, 映畵 9.4%
	賭 博 稅	競馬의 賭金	10.5% ～ 17%
	宿 泊 稅	호텔 등의 宿泊料金	5%

II. 特徵

1. 全般

가. 域內所得(On－Shore所得)과 域外所得(Off－Shore所得)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은 홍콩 內에서 發生 또는 源泉이 있는 所得(On－Shore所得)만이고, 홍콩 外에서 發生 또는 源泉이 있는 所得(Off－Shore所得)은 課稅되지 않는다. 이때 Off－Shore所得에는 當然히 Off－Shore損失도 포함된다.

域內와 域外의 區分判定에 있어서, 홍콩에 事務所 등의 恒久的 施設이

있는지의 여부는 하나의 要件이 되지만, 重要한 要件은 어디에서 營業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나.「캐피탈 게인」

營業活動 以外에서 發生한 資本資産의 賣却損益은 課稅되지 않는다.

다. 賦課制度

納稅者는 稅務局에 課稅所得의 算出에 必要한 情報를 提出하고, 稅務局이 그 情報에 의해 稅額을 決定하여 支拂을 通知하지만, 日本과 마찬가지로 必要한 情報로서 申告書를 提出하기 때문에 申告書를 提出한 경우에는 日本의 申告納稅制度와 큰 差異가 없다. 또한, 原則的으로 日本과 같은 稅務調査는 없으며, 公認會計士의 監査로 代用하고 있다. 申告書의 作成은 一般的으로 稅務代理人인 會計事務所가 擔當한다.

라. 課稅上의 判斷

日本과 같은 法人稅法·所得稅法·施行令·基本通達 等에 의한 條文解釋에 의한 判斷이 아닌 判例法에 따르므로, 英國·호주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判例를 參考하여, 個個의 경우를 判斷하기 때문에 時間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2. 資産所得稅

홍콩 內에 土地나 建物 등의 不動産을 所有하는 個人이 그 不動産을 賃貸한 경우에는 納稅義務가 생긴다. 이 稅金은 所得稅이고, 日本의 固定資産稅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資産所得稅의 計算은 다음과 같다.

總賃貸收入(4/1~3/31)	HK$ 120,000
總費用(總賃貸收入 × 20%)	(24,000)
純課稅價額	96,000
資産所得稅(純課稅價額 × 15%)	14,400

總費用은 原則的으로 實際 發生費用에 관계없이 總賃貸收入의 20%로 한다. 따라서, 個人이 銀行借入에 의해 賃貸用 建物을 購入한 경우에 總賃貸收入의 20%를 넘는 支拂利子가 發生해도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는 점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法人의 경우는 賃貸收入이 事業所得稅의 對象이 되며, 資産所得稅는 免除된다. 法人 以外의 者가 그 營業의 一部로서 賃貸收入을 얻은 경우에는 資産所得稅를 免除할 수 없으나, 賃貸收入에 관련된 事業所得稅를 賦課한 경우에는 支拂한 資産所得稅와 相殺하여 二重課稅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때, 總賃貸收入의 20% 以外에 建物의 所有者가 支拂한 固定資産稅가 있으면 全額 損金되지만, 賃借人이 있는 경우에는 通常的으로 賃借人이 固定資産稅를 支拂하게 된다.

Ⅲ. 「택스 헤이븐」稅制

홍콩은 標準稅率이 15%로 日本의 實效稅率 約 50%에 比하여 매우 낮고, 全所得 輕減課稅國으로 指定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會社를 홍콩에 設立하면 親會社의 利益과 홍콩關係會社의 利益을 合算하여 日本에 申告할 必要가 있다.

(1) 日本의 居住者 및 國內法人이 直接 또는 間接으로, 홍콩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50%를 넘는 株式을 保有하고, 또한 그 國內法人 및 그의 同族株主 그룹에 속하는 國內法人의 直接·間接의 株式保有比率이 10% 以上의 경우.

① 日本의 株主가 全員 그 持分이 10% 未滿인 獨立한(同族關係나 資本關係가 없다는 意味) 居住者 또는 國內法人인 경우,
株主의 合算課稅는 없다.

② 홍콩會社가 設立後 얼마되지 않아서 缺損이 생긴 경우,
缺損金은 合算되지 않는다.

③ 日本과 홍콩의 50 : 50의 合併會社인 경우,
홍콩의 株主가 日本 株主의 꼭두각시가 아닌 한 「택스 헤이븐」 稅制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2) 適用除外

上記 (1)의 경우라도 아래의 條件 全部를 명료하게 하면 適用除外되어 合算課稅는 없지만, 持株會社나 工業所有權·著作權 등을 提供하는 會社 및 船舶 또는 航空機의 貸付를 主된 業務로 하는 會社는 除外함.

㈀ 홍콩에 그의 主된 事業을 하기 위해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事務所 등을 保有하고, 또한 그 事業의 管理, 支配 및 運營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것. 홍콩에 事業의 責任者되는 任員이 駐在하고, 그 任員의 判斷과 管理에 따라 獨立한 會社로서 運營될 必要가 있음. 經營의 重要한 決定에 대하여 親會社의 事前承認 등을 얻을 경우에 任員會議 등을 日本에서 開催하는 境遇, 또는 會計帳簿

의 作成 및 保管 등을 日本에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條項에 抵觸될 可能性이 있다.

㈏ 當該 會社의 株主와 資本關係가 없는 第三者(持分比率이 10% 未滿의 獨立된 居住者 및 內國法人을 包含)와의 去來가 다음과 같은 경우

① 都賣業 : 買上, 購入 中 어느 한 쪽의 50% 以上을 第三者와 去來하고 있다.

② 銀行業 : 受取利子·支拂利子 중 어느 한 쪽의 50% 以上을 第三者와 去來하고 있다.

③ 信託業, 證券業, 保險業, 水運業 또는 航空運送業 : 收入의 50% 以上을 第三者와 去來하고 있다.

㈐ 不動産業의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不動産을 賣買·賃貸하고, 物品賃貸業의 경우에는 홍콩에서 使用되고 있는 物品을 賃貸하고 있다.

홍콩에 있는 日本系의 現地法人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제외하고는 上記 條件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最近에는 適用除外의 ㈎ 支配管理基準의 適用이 嚴格하게 되었으므로 注意할 必要가 있다. 게다가 홍콩에서 「페이퍼 컴퍼니」의 預金口座를 日本系銀行의 홍콩支店에 開設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특히 名義株主나 名義任員을 利用하고 있는 경우(홍콩會社法에서 認定됨)에 홍콩의 現地系銀行에서도 實質株主名의 開示 등을 要求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第 2 章

給與所得稅

概　要

1. 홍콩에 60日 以上 滯在하여 일을 하면 給與所得稅의 對象이 된다.
2. 홍콩 外에서 役務提供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홍콩에서 給與所得稅를 支拂할 必要가 없다.
3. 日本에서 支給되는 不在家族手當이나 賞與金도 課稅對象이 된다.
4. 會社가 負擔하는 社宅의 家賃은 給與總額의 10%를 現物給與로 간주한다.
5. 日本人은 通常 給料가 높기 때문에 累進課稅(人的控除를 제한 후 2%～25%의 稅率을 適用)가 아니고, 總所有額(人的控除 前)의 15%가 課稅된다.
6. 給與所得稅의 支拂은 課稅年度分과 翌年度分(課稅年度와 原則的으로 同額의 所得으로 본다)의 豫納分을 從業員이 2回에 나누어 納附하므로 會社가 每月 所得稅를 源泉徵收할 必要는 없다.

個人所得稅에는 事業所得稅와 給與所得稅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給與所得稅에 관해 說明하며, 事業所得稅는 「第3章 事業所得稅」를 參考할 것.

Ⅰ. 納稅義務者

個人이 홍콩에서 4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課稅對象期間中 60日을 초과하여 勞務를 提供하면 給與所得稅를 支拂할 義務가 생긴다. 이 경우, 給料 支拂人의 住所나 支拂地에 關係없이 홍콩에서 勞務를 提供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重要한 점이 된다.

1. 出張베이스로 通算 60日이 超過된 경우

現在의 通關 體系에서는 그 事實을 稅務局이 把握하는 것은 困難하다고 여겨지나, 앞으로도 같은 狀況이 계속되리라는 保證은 없으며, 課稅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2. 就業 비자(Working Visa)를 入手한 境遇

비자의 所有者는 將來 1年 以上 홍콩에 滯在하여 勞務를 提供할 것이므로, 예를 들어 2月 1日 以後에 홍콩에 와서 滯在日數가 60日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給與所得稅를 支拂할 必要가 있다.

3. 硏修 비자로 홍콩에 滯在할 경우

日本에서 홍콩會社 등에 硏修 目的으로 轉出된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홍콩에서 營業利益을 생기게 하지 않으므로 給與所得稅를 支拂할 必要는 없으나, 硏修 名目으로 實際로는 營業活動을 하는 경우(다른 從業員과 같은 業務를 하는 경우)에는 問題가 된다.

4. 任員의 境遇

任員의 職務는 會社의 業務執行·管理이므로 만약에 그 會社의 주된 事業·管理가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설사 非常勤任員으로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경우라도 任員報酬를 받고 있으면 給與所得稅의 對象이 된다. 그 때문에 非常勤任員은 報酬를 支拂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II. 所得의 種類 및 控除項目

1.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

㉠ 賃金, 給料, 休暇手當, 報酬, 手數料, 賞與金, 祝儀金, 臨時手當, 出張手當, 食事手當 等

이들의 收入은 홍콩의 現地法人에서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親會社 등의 外國會社에서 받아 現地法人의 費用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勞務가 홍콩에서 提供된 이상 홍콩의 課稅對象이 된다. 따라서, 日本에서 支給된 不在家族手當이나 賞與金을 홍콩稅務局에 報告하지 않으면 脫稅行爲가 되지만, 報告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稅務當局이 認定한 適格退職年金 以外의 年金 등에서 雇用期間中, 또는 退職 後에 被雇用者가 받는 金額으로 雇用主가 醵出한 部分

홍콩會社의 退職年金은 主로 適格한 Provident Fund를 採擇하고 있어 不適格年金은 많지 않으나, 日本系 現地法人에서 現地從業員에 대해 日本人과 같은 退職金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會社負擔의 家賃

家主와의 契約을 會社가 아니고 個人이 한 境遇에도 그 家賃을 會社가 負擔하면 給料로 간주하며, 會社가 所有하는 社宅에 대해서도 取扱은 같다. 다만, 給料로 간주되는 金額은 家賃總額이 아니고 아래와 같다.

① 호텔 등의 1室인 경우 : 給與總額의 4%

② 호텔 등의 2室인 경우 : 給與總額의 8%

③ 그 외의 경우(通常은 이 경우) : 給與總額의 10%

또, 會社가 從業員으로부터 社宅使用料를 徵收할 경우에는 上記 ①, ②, ③에서 간주된 給料에서 差減할 수가 있으나 社宅使用料 쪽이 간주되는 給料보다 많아져도 간주된 給料를 限度로 한다. 上記와 같은 家賃補助로서 家賃을 會社負擔으로 하는 方法이 아니고, 家賃補助分을 住宅手當으로 個人의 給料에 포함시키면 住宅手當은 全額 課稅對象이 되므로 注意할 必要가 있다.

㉣ 會社負擔의 給與所得稅

日本系 現地法人의 駐在員給料 決定方法은 各 會社에 따라 여러 가지이나, 綜合商社나 大手銀行 등과 같이 現地給料의 支拂 目錄을 各國別로 作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一般的으로는 從業員이 日本에서 支給받는 稅後給料에 海外手當을 더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從業員은 稅後의 給料를 받기 때문에 現地의 給與所得稅는 會社負擔이 된다. 이 方法은 勤務地의 稅率에 따른 不平等을 없애며 申告所得이 日本의 稅後支給額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홍콩의 給與所得稅가 적어

진다. 會社負擔의 給與所得稅는 會社가 支拂한 課稅對象年度에 各 個人 給與 總額의 一部를 構成하게 되며, 事業所得의 計算上 會社負擔의 給與所得稅는 損金處理가 認定된다.

㉤ 其他 看做給料

① 會社負擔의 任員·從業員 子女의 學校關聯費用

② 會社負擔의 個人이 雇用한 가정부의 給料 등

2. 課稅對象이 되지 않는 所得

(1) 홍콩總督이 받는 報酬

(2) 領事 등이 받는 報酬

(3) 適格退職年金에 따른 一時金

(4) 홍콩 以外에서 勞務를 提供하여 받는 代價

各各의 경우에 따라 홍콩에서의 課稅有無에 대한 判斷이 다르다고 여겨지나, 홍콩과 勞務를 提供한 나라에서 二重課稅되지 않도록 雇用契約 등을 決定할 必要가 있다.

3. 控除項目

(1) 人的控除

① 基礎控除	39,000HK$
② 配偶者控除	80,000 〃

(2) 追加控除

追加控除와 그 「크로바크」는 1990年 4月 1日 以後 廢止되어 (1)에 包含되었다.

(3) 子女控除

① 第1子 控除 14,000HK$

② 第2子 控除 10,000 〃

③ 第3子 控除 3,000 〃

④ 第4, 5, 6子 控除 各 2,000 〃

⑤ 第7, 8, 9子 控除 各 1,000 〃

子女控除는 18歲 未滿의 子女 또는 課稅年度에 全日制의 學校에 다니고 있는 18歲 以上 25歲 未滿의 未婚의 子女에 適用된다. 또한, 身體障碍 또는 精神障碍에 의해 勤務가 不可能한 18歲 以上의 子女에 대해서도 이 控除가 認定된다.

(4) 扶養父母控除

① 本控除 12,000HK$

② 同居의 境遇 追加控除 3,000 〃

이 控除는 扶養父母가 홍콩 在住者이면서 60歲 以上 등의 細密한 條件이 있어, 日本系 現地法人의 駐在員인 경우에는 거의 適用되지 않는다.

(5) 偏母控除

子女가 있는 未亡人 등에 適用된다.

여기서, 人的控除 등은 課稅年度의 途中에 赴任하거나 歸任한 경우에도 期間按分이 아닌 全額控除되는 점에 有意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減算項目

所得을 獲得하기 위해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費用으로 私的 또는 家庭

的인 性格이 아닌 것은 所得에서 控除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日本系 現地法人의 駐在員에게는 該當事項이 없고, 能力給의 세일즈맨 등이 適用받고 있다. 또한 指定된 慈善團體에 대한 100HK$ 이상의 寄附金은 費用控除後 所得의 10% 範圍內에서 控除할 수 있다.

Ⅲ. 稅率表

給與所得稅에 대하여 다음의 稅率表가 1990/91年度(90年 4月 1日 ~ 91年 3月 31日)부터 適用된다.

所得階層 (HK$)	稅率 (%)
10,000 未滿	2
10,000 ~ 20,000	4
20,000 ~ 30,000	9
30,000 ~ 40,000	12
40,000 ~ 50,000	15
50,000 ~ 60,000	18
60,000 ~ 70,000	21
70,000 以上	25

上記의 稅率은 各 所得階層別로 計算하여 累計되나, 給與所得稅의 限度는 人的控除를 하기 前의 純所得에 대하여 標準稅率의 15%를 곱한 金額이다.

參考로 15%의 標準稅率과 累進稅率適用의 分岐點을 計算하면 다음과

같다.

(1) 獨身者, 其他 人的控除가 없는 경우

標準稅率에 의한 稅額 = 70,000HK$까지의 累進稅率을 適用한 稅額
+ 70,000HK$를 초과한 部分의 稅額

$0.15x$ = 8,100달러 + 0.25(x − 39,000달러 − 70,000달러)

課稅所得 x = 191,500달러

稅額 28,725달러

(2) 旣婚者, 子女 2人, 其他 人的控除가 없는 경우

$0.15x$ = 8,100달러 + 0.25 (x − 80,000달러 − 24,000달러 − 70,000달러)

課稅所得 x = 354,000달러

稅額 53,100달러

Ⅳ. 課稅所得과 稅金의 合算例

給與所得稅는 夫婦가 각각 申告하게 되어 있다.

日本系 現地法人의 駐在員의 경우를 前提로 하여 計算例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前提)

A 氏 給料 (年) 150,000달러

子女 없음, 妻의 所得 없음

會社負擔의 家賃 (3LDK) 年 240,000달러

(그 중 A 氏가 會社에 支拂한 金額 年 12,000달러)

B 氏　　給料 (年) 480,000달러

子女 2人, 妻의 所得 없음

會社負擔家賃 (4LDK) 年 480,000달러

會社負擔의 前年給與所得稅　62,700달러

指定寄附金 10,000달러

〈A 氏의 경우〉

總給與額	150,000달러
看做給與	15,000 (150,000 × 10%)
自己負擔家賃	△12,000
純 所 得	153,000달러
控除	
基　礎	△39,000
配偶者	△41,000
小　計	△80,000
課稅所得	73,000달러

(稅金의 計算)

10,000달러까지	200달러
10,000 ～ 20,000	400
20,000 ～ 30,000	900
30,000 ～ 40,000	1,200
40,000 ～ 50,000	1,500
50,000 ～ 60,000	1,800

60,000 ～ 70,000	2,100
	8,100달러
(73,000 － 70,000) × 0.25	750
合 計	8,850달러

〈B 氏의 경우〉

總給與額	480,000달러	
看做(稅金)	62,700	
看做(家賃)	54,270	(480,000 ＋ 62,700) × 0.1
總所得	596,070	
寄附金	△10,000	
純所得	586,970	
控除		
基 礎	△39,000	
配偶者	△41,000	
子 女	△24,000	
小 計	△104,000	
課稅所得	482,970달러	

(稅金의 計算)

ⓐ 10,000 ～ 70,000까지	8,100달러
(482,970 －70,000) × 0.25	103,242달러
計	111,342달러
ⓑ 586,970 × 0.15 =	88,045달러

ⓐ ⓑ 중 적은 편　　88,045달러

Ⅴ. 申　告

雇用主 및 從業員이 홍콩稅務局에 提出한 書類와 稅務局에서의 通知書는 다음과 같은 關係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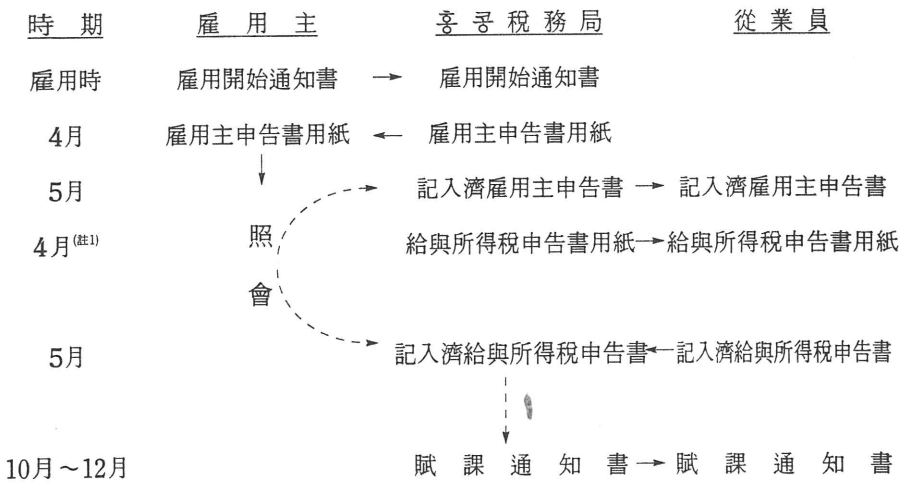

(註 1) 홍콩에 온 初年度는 상당히 늦어진다.

(註 2) 雇用開始通知書에 의해 豫納의 賦課通知書가 오는 일은 거의 없다.

1. 雇用主의 手續

㉠ 雇用時

홍콩에 있는 現地法人 및 支店·駐在員事務所 등은 任員 또는 從業員을 雇用하면 雇用開始通知書를 被雇用者에게 給與 등을 支拂하게 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홍콩稅務局에 提出해야 한다. 이 通知書에는 雇用

者·被雇用者의 住所, 姓名이나 雇用開始日, 月給與額, 住宅補助 등의 內譯을 記入한다.

㉡ 課稅年度末

課稅對象期間은 4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이며, 4月初頃에 홍콩稅務局으로부터 雇用主申告書用紙가 보내져오므로, 申告書用紙의 發送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記入하여 提出할 必要가 있다. 다만, 期限은 다시 1個月 延長이 可能하며, 期日 前에 文書로 延長을 要請하게 되어 있다. 申告書에는 被雇用者의 姓名, 住所, 雇用期間, 同 期間中의 給與 等의 總額, 會社負擔의 給與所得稅, 住宅補助의 內譯, 홍콩 外에서의 所得有無(不在家族手當 등 親會社가 支拂한 것을 記錄함) 등을 記入하여 홍콩稅務局에 提出한다.

㉢ 從業員 등이 退職한 경우

被雇用者가 會社를 退職한 후 홍콩 內에 머무를 경우에는 給與 等의 支拂을 停止하는 날부터 1個月 以前에 雇用終了通知書를 홍콩稅務局에 提出해야 한다. 다만, 退職하여 홍콩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通知書를 提出한다.

2. 被雇用者의 手續

홍콩稅務局은 雇用者에게 雇用主申告書를 發送하는 동시에, 各 被雇用者에게도 每年 4月末에 給與所得稅申告書를 發送한다. 各 被雇用者는 必要事項을 記入하여 申告書의 發送日부터 1個月 以內에 홍콩稅務局에 提出한다. 申告書를 記入할 때 다음과 같은 點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1) 總收入은 雇用主가 提出한 雇用主申告書의 數値와 一致해야 한다.

(2) 日本의 親會社가 支給한 不在家族手當 등도 雇用主申告書에 記入한 金額(期中의 平均「레이트」(rate)를 홍콩달러로 換算할 수 있다)과 同額을 Other Office or Employment欄에 記入한다. 또한, 이 欄에는 轉職한 경우 前의 雇用主로부터 支拂받은 收入도 記入한다.

(3) 會社負擔의 給與所得稅도 Sources of Income의 該當欄에 記入한다.

(4) 家賃補助는 B2에 總收入의 10%(4%와 8%의 경우도 있음)에서 被雇用者負擔 家賃을 뺀 金額을 記入한다(다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음).

3. 稅務調査와 更正決定

事業所得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調査官이 雇用主의 事務所를 訪問하여 書類를 調査하는 것이 아니고, 稅務局이 雇用主에게 質問書를 發送하여 그 質問에 雇用主가 文書로 回答하는 方法으로 調査가 이루어지며, 更正 事項이 있으면 更正通知書가 發送된다. 一般的으로 質問事項이 되는 것은 홍콩 外에서 支給받은 給與, 賞與의 有無나 被雇用者에게 준 敎育費負擔 등 看做給料의 有無 등이다. 또한, 故意로 不當한 申告를 하면 支拂稅額의 3倍를 罰金으로 請求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注意할 必要가 있다.

Ⅵ. 納 稅

給與所得稅는 每年 10月～12月頃에 各 被雇用者 앞으로 보내오는 賦課通知書에 따라 支拂하게 되는데, 支拂方法은 課稅對象年度分과 翌年度

의 見積給與所得(年額이 前年과 同額이 되도록 計算된다)分을 합하여 2年度分에 대해서 當年度分의 100%와 豫納分의 75%를 2月에, 나머지 25%를 4月에 支拂한다. 翌年度의 賦課通知書에는 翌年度의 實際所得에 根據한 稅額에서 前年에 豫納한 稅額의 差額과 翌翌年度의 見積給與所得에 合當한 豫納額을 支拂하게 되나, 翌年度分의 豫納額이 過多支拂된 境遇에는 翌翌年度의 豫納額과 相殺하며, 그래도 過多支拂된 경우에는 返還된다. 만약 給與所得稅를 會社가 負擔하는 경우에는, 會社가 홍콩稅務局에 手票를 보내고, 個人負擔의 경우에는 舊正月前에 받는 1個月分의 賞與(Double Pay)로 充當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賦課通知書를 받아, 그 內容에 異議가 있으면, 入手後 1個月 內에 文書로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Ⅶ. 赴任時와 歸任時의 手續

1. 赴任時의 手續

申告된 雇用主가 手續할 때 기입한 雇用開始通知書를 홍콩稅務局에 提出할 必要가 있다. 또, 그 以外에 해야 할 總務的인 手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就業 비자의 再入國手續

(2) 홍콩 ID 카드(身分證明書)의 入手

(3) 홍콩의 日本領事館에 제출하는 在留届

(4) 日本과 같은 健康保險制度가 없으므로 保險會社에 旅行者保險 등을 加入한다.

2. 歸任時의 手續

日本系 現地法人의 轉出者가 日本에 歸國할 경우에는 雇用終了通知書가 아니고 出國通知書를 出國 1個月 前에 홍콩稅務局에 提出하게 되나, 이 通知書를 제출하면 곧바로 歸國年度의 給與所得申請書나 賦課通知書가 發行되므로 歸國年度의 前年에 歸國이 豫想되는 경우에는 前年 賦課通知書의 支拂期日 14日 前에 文書로 歸國年度의 所得이 前年의 90% 以下인 것을 理由로 文書에 의해 歸國年度의 豫納稅額의 一部를 支拂猶豫할 수가 있다. 또, 給與所得稅를 個人이 負擔하는 경우 이 通知書를 提出하면 歸國年度의 給與所得稅 支拂證明이 없으면 出國할 수 없으므로 미리미리 手續할 必要가 있다.

第 3 章

事業所得稅

概　要

1. 홍콩에서 營業活動을 하는 法人(支店도 包含)은 16.5%의 事業所得稅가 賦課되며, 個人商店 및 組合에 參加하는 個人은 15%의 稅率이다.
2. 所得의 源泉이 홍콩 以外에 있는 域外所得은 홍콩에서 非課稅이다.
3. 「캐피탈 게인」은 홍콩에서 非課稅이다.
4. 受取配當金은 홍콩에서 非課稅이다.
5. 投資有價證券取得을 위한 借入金利子는 損金으로 되지 않는다.
6. 課稅對象期間은 原則的으로 4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나, 會社의 事業年度에 맞추어 稅務申告할 수 있다.
7. 事業所得稅申告書의 申告期限은 會社의 事業年度에 따라 다르나, 決算日로부터 5個月 以上 1年 以內여서, 日本에 比較하여 매우 늦다.
8. 原則的으로 홍콩稅務局의 稅務調査는 없으므로 公認會計士의 監査로 代用하는 동시에 文書에 의한 質問과 그 回答에 의해 更正決定을 하고 있다. 따라서, 稅務申告書에는 꼭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附決算書類를 添附한다.
9. 事業所得稅의 支拂은 課稅年度分과 翌年度分(課稅年度와 原則的으

로 同額의 所得이 된다)의 豫納을 2回에 나누어 納付한다.

10. 金融機關 以外의 홍콩非居住者에게서 빌린 借入金利子는 損金이 되지 않는다.
11. 固定資産의 減價償却은 會計와 稅務上에서 각각 計算하여 申告書에 加減算한다.
12. 産業用 建物이나 機械, 工具備品 등은 稅務上 取得時에 初年度特別償却을 할 수 있다.
13. 外貨建借入金의 換差損益은 資本的 性格이 있다고 생각되어 稅務上 損金이나 益金이 되지 않는다.
14. 移越缺損金은 永久히 移越할 수 있다.
15. 外國稅額控除制度는 存在하지 않는다.

事業所得稅는 法人稅와 個人事業所得稅를 포함하나, 兩者는 단순히 適用稅率이 다를 뿐이고 內容의 差異는 없다.

Ⅰ. 納稅義務者

個人, 法人, 組合 및 其他 團體가 商業, 專門業 또는 事業에 의해 홍콩에서 所得의 源泉이 발생한 경우에 事業所得稅의 對象이 되나, 重要한 것은 홍콩에서 所得의 源泉을 만드는 事業活動을 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며, 個人 및 法人 등이 홍콩에 居住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른 課稅取扱上의 差異는 없다. 또, 홍콩의 會社登記所에 外國會社로 登記하지 않고, 商業登記만을 入手한 駐在員事務所는 홍콩에서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므로, 事業所得은 原則的으로 없으나 多數의 駐在員을 두고 홍콩의 고객과 賣買 交涉 등의 營業類似行爲를 하면 홍콩稅務局으로부터 課稅를 당할 可能性이 있다.

한편, 支店의 경우는 外國會社로서의 등기는 마쳤으므로 納稅義務者가 된다.

Ⅱ. 課稅對象

原則的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個個의 경우에 따라 각각의 判斷이 다르므로 見解가 엇갈리는 경우에 홍콩의 會計事務所 專門家에게 直接 具體的으로 문의해 볼 必要가 있다.

1. 域內所得과 域外所得

홍콩에서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은 홍콩에서 이루어진 事業에 의해 發生하고, 그 所得의 源泉도 홍콩에 있는 경우로서 一般的으로 域內所得이라고 불린다. 그 以外의 所得은 域外所得이라고 하며 홍콩에서 非課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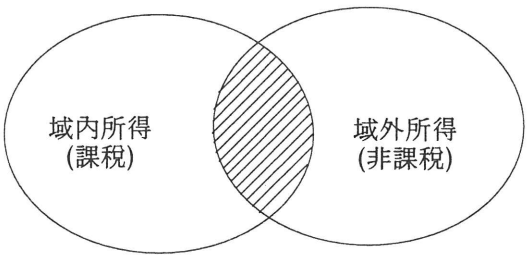

域內所得과 域外所得은 相互 重疊되어 어느 쪽인지 判定이 어려운 部分이 있고, 實務上이 部分에 대한 稅務局과 納稅者의 解釋 差異로 最高裁判에서까지 다툰 경우가 있다.

判斷基準

域內所得과 域外所得을 區分함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그 所得의 源泉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며, 具體的인 判斷基準은 다음과 같다.

(1) 所得을 實質的으로 發生시키는 作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作業이란 다음의 4가지 요건으로 성립된다.

① 契約準備 및 管理

② 購入契約締結

③ 買上契約締結

④ 契約 後의 作業 및 管理

이 중 ①과 ④의 作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가 重要하다.

(2) (1)에 더하여 會社의 設立場所나 一般管理費의 發生場所, 帳簿의 作成場所가 어디인가?

(3) 最近의 判斷에는 受注, 發注가 이루어진 場所가 重視되고 있다.

(4) 有價證券賣買와 같이 그 賣買의 決定이나 지시가 電話로 이루어져 文書에 남지 않는 去來에는 賣買契約의 締結場所(市場)가 重視된다.

(5) 役務提供의 경우에는 役務가 提供된 場所에 會社의 事務所나 代理人의 事務所 등 恒久的 施設이 存在하는가 아닌가.

2. 「캐피탈 게인」과 「로스」

홍콩稅法의 또 하나의 特徵인 「캐피탈 게인」 非課稅는 그 去來가 홍콩 內에서 이루어져도 그 거래의 性格이 資本·投資去來이므로 課稅對象 外가 된다.

「캐피탈 게인(로스)」과 그 以外의 損益이 相互重疊되어 어느 쪽인지 判定이 어려운 部分이 있는 점은 域內所得과 域外所得의 경우와 같다. 「캐피탈 게인(로스)」 以外의 損益으로 홍콩 內에 所得의 源泉이 있는 域內所得은 當然課稅되나, 域外所得이면 非課稅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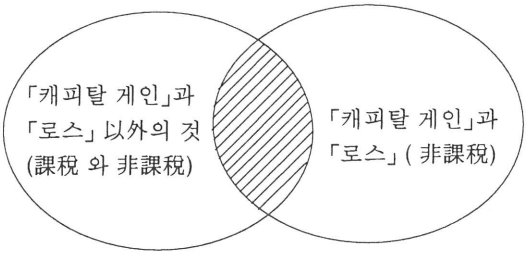

判斷基準

一般的으로 「캐피탈 게인(로스)」은 有形固定資産의 賣却이나 投資有價證券의 賣買에 의해 發生하나, 그 去來를 營業活動의 一環으로 하는 경우에는 營業損益이어서 「캐피탈 게인(로스)」으로 되지 않는데 그 區分을 하기 위한 要素는 다음과 같다.

(1) 去來對象의 性格

예를 들어, 所有者가 남에게 賃貸하지 않는 固定資産이나 自己가 利用하고 있지 않는 固定資産의 賣却은 당초부터 賣却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營業損益으로 간주된다.

(2) 所有期間

短期間에 賣買한 경우는 營業活動이라고 判斷된다.

(3) 去來의 頻度

同種의 去來가 몇 번이고 계속되는 경우는 營業去來라고 判斷된다.

(4) 賣却關聯作業의 有無

固定資産의 賣却時에 新聞廣告를 내는 경우에는 營業去來로 간주된다.

(5) 賣却時의 環境

緊急히 資金이 必要하게 된 경우 등은 「캐피탈 게인(로스)」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6) 動機

代替購入 등의 動機라면 「캐피탈 게인(로스)」으로 간주된다.

(1) ~ (6)의 項目을 稅務局이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最終結論을 내린다.

「캐피탈 게인(로스)」이라고 判斷되는 例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홍콩에서 不動産賃貸業을 運營하여 他社에 5年 程度 賃貸하고 있는 物件을 不動産市況이 좋았기 때문에 賣却하여, 利益을 計上한 경우

建物一棟 등의 大型 不動産을 賣買하는 경우에 홍콩의 印紙稅(不動産의 경우 最高 2.75%, 株式의 경우 0.6%)를 節約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에게 그 不動産을 所有하게 하고, 不動産의 賣買를 「페이퍼 컴퍼니」의 株式賣買의 形式을 취하게 하고 있

다. 이런 경우에도 그 建物의 保有期間이나 去來의 頻度 등을 보고 「캐피탈 게인」인가 아닌가를 判定하게 된다.

② 會社에서 적어도 5年 程度는 使用하였던 社宅을 轉賣하고, 새로운 社宅을 購入한 경우

③ 工場建物이나 機械, 車輛 등을 賣却한 경우에 賣却價格이 取得原價를 넘는 部分은 「캐피탈 게인」이 되지만, 賣却價格 — 稅務上의 帳簿價가 全額 「캐피탈 게인」이 되지 않는 점에 注意할 것. 다만, 商業用 建物의 경우에는 賣却價格 — 稅務上의 帳簿價가 全額 「캐피탈 게인」이 된다.

④ 會社에서 保有하는 關係會社株式을 他社에 賣却한 경우

이때, 當然한 것이지만 「캐피탈 로스」는 損金이 되지 않는다.

3. 費用收益對應에 의한 取扱

會計上의 費用收益對應의 原則과 같이 稅務上에도 收益面이 非課稅라면 費用面도 損金이 되지 않지만, 一般的인 것은 다음과 같다.

㉠ 投資用 借入金利子의 損金 不算入

投資用 株式 購入을 위해 銀行에서 借入한 경우, 原則的으로 銀行借入利子는 損金이 되지만, 收益面의 受取配當金이 非課稅이기 때문에 費用收益對應의 見地에서 該當 支拂利子는 損金이 되지 않는다. 株式購入資金과 銀行借入金의 關係가 明確하지 않은 경우에는 實務上 支拂利子를 投資用과 運轉資金用으로 接近하든가, 異常하지 않다면 支拂利子를 전부 運轉資金用으로 보아 全額損金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自社使用 또는 賃貸用 固定資産을 購入하기 위해 銀行에서 借入하는 경우

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會社의 收益獲得을 위한 것이므로, 그 收益도 홍콩에 益金이 되기 때문에 支拂利子는 損金으로 認定된다.

㉡ 域外收入에 對應하는 費用

(1) 域外收入과 直接原價

金融機關을 제외한 一般企業의 경우에 貸付金(運用)이 域外이고, 借入金(調達)이 域內라도 貸付金의 受取利子가 홍콩에서 非課稅되기 때문에 借入金利子는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는다. 金融機關의 경우는 50% 域外去來가 된다.

(2) 域外去來와 域內去來를 하고 있는 會社의 共通費用

共通費用은 域內와 域外 양쪽에 關聯하여 發生하므로 通常 域內收入과 域外收入의 金額으로 按分하고, 域外收入에 按分된 費用은 損金不算入 된다.

Ⅲ. 所得의 種類

課稅의 對象에서 說明한 域內所得과 域外所得은 아래의 去來分類에 따라 檢討하면 알기 쉽다.

1. 物品의 賣買에 의한 所得

이 경우에 重要한 것은 賣買의 對象이 된 物品의 移動經路에 홍콩이 들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례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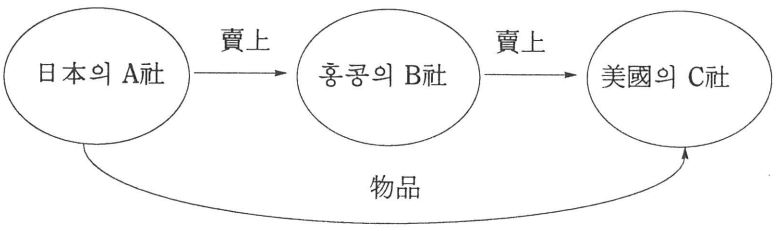

B社가 「페이퍼 컴퍼니」로 事務所나 駐在員도 없고, 「레인 보이스」(Rein Voice)를 홍콩의 業者에게 委託한 境遇는, 明白하게 所得이 實質的으로 발생하는 作業은 홍콩 以外에서 이루어지지만 홍콩에서 이루어진 「레인 보이스」業務는 홍콩 業者의 域內所得이 되므로, B社의 所得은 域外所得이 되나 B社 株主의 50% 以上이 日本系 企業인 경우에 日本에서 合算課稅의 問題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最近의 判例(「엑손(Exxon)」 홍콩의 경우)에 의하면 「레인 보이스」를 홍콩에 있는 B社의 事務所에서 B社의 從業員이 하였다면 重要한 業務인 受注·發注가 홍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域內去來가 되므로 注意해야 한다.

〈사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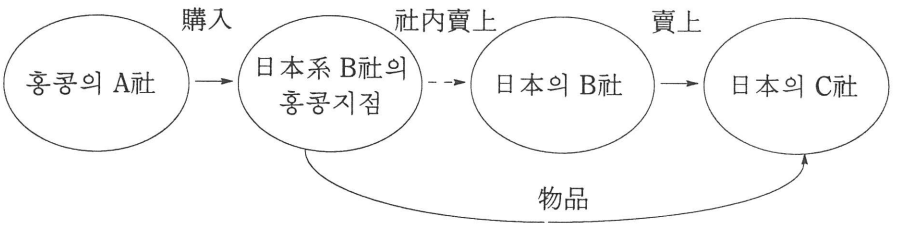

위의 사례와 같이 홍콩 內의 業務가 購入뿐인 경우는 收益實現의 重要한 要素인 顧客과의 交涉이나 契約은 當然히 日本에서 이루어지므로

日本系 B社의 홍콩支店의 홍콩에서의 課稅所得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③〉

홍콩 內에 工場을 所有하고 거기서 生産한 製品을 販賣하는 경우나, 中國의 深圳 등에 工場을 所有하고 홍콩에서 原材料를 支給하여 製品을 全部 홍콩에서 인수하고(中國에 保稅工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홍콩 以外에 販賣하는 경우도 홍콩에 販賣部門을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域內 去來가 된다.

2. 役務提供에 의한 所得

이 경우에 重要한 요소가 되는 것은 그 役務가 어디에서 提供되었는가이다. 域內와 域外의 判定에 자주 參考되는 判例로서 Whampoa Dock의 사례가 있다. Whampoa Dock은 홍콩의 海上近海에서 船舶의 補修作業을 했었는데 그 作業에 의해 발생한 所得은, 그 所得을 實質的으로 생기게 한 作業이 일어난 場所가 홍콩 以外이기 때문에 域外所得으로 인정되었다. 단, 最近의 判例에 의하면 所得의 源泉을 決定할 때 直接 個個의 去來에 關聯이 없는 會社의 設立場所나 一般管理費의 發生場所, 帳簿作成場所 등도 考慮하는 것 같다. 또, 홍콩稅務局은 質問書에 의해 域外로서 會社가 申告書上 減算한 거래에 대해 同種去來의 發生에서 決濟終了까지의 一連의 書類 寫本이나 會社의 組織圖와 職務權限의 範圍 등의 資料를 要求하고 그 資料에 의해 當該 去來가 實際로 域外인가를 判定한다.

3. 貸付金利子

貸付金利子에 대해서는 金融機關(銀行 및 Deposit · Taking · Company)과 그 以外의 會社에 따라 取扱이 다르다.

(1) 金融機關 以外의 경우는, 借主가 資金을 最初에 받은 場所가 어디인가가 核心이 된다. 예를 들어, 홍콩會社가 他社에 資金을 貸付할 경우, 그 資金이 最初에 入金되는 銀行口座를 홍콩 以外(日本, 美國, 싱가포르 등)에 開設하고 그 通貨가 홍콩달러 以外라면, 當該 貸付去來는 域外로 인정된다. 한편, 域外 預金에 대해서도 싱가포르나 뉴욕에 있는 日本系 銀行에 定期預金(홍콩달러 以外)을 預置할 경우에도 直接 홍콩에서 싱가포르 등의 홍콩 외의 銀行口座에 送金할 必要가 있다.

(2) 金融機關의 경우는 金錢의 貸借를 主된 營業活動으로 하기 때문에 資金의 運用面과 調達面의 兩面에 대하여, 그 去來의 開始 등(具體的으로는 當該 去來의 問議나 期間 · 金利 등의 條件의 交涉, 契約의 締結 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가 重要하며, 運用面과 調達面의 On－Shore와 Off－Shore에 따라 다음과 같이 取扱된다.

運用面	調達面	最終面
On	On	100% On-Shore
Off	Off	100% Off-Shore
On	Off	50% Off-Shore
Off	On	50% Off-Shore

50%가 域外란 當該 去來에 의해 發生한 損益(受取利子 － 支拂利子

등)의 2분의 1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金融機關이라 함은 홍콩의 「라이선스」(License)銀行, 「라이선스」(License) DTC, 「레지스터」(Register) DTC이며 單純한 投資會社나 「리스」(lease)會社 등은 包含되지 않는다.

4. 有價證券의 賣買에 의한 損益

有價證券의 賣買는 通常 電話 등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賣買의 判斷을 했는가에 대한 客觀的인 資料가 없으므로 通說로는 賣買契約의 締結이 어느 市場에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다.

㉠ 營業活動으로서의 賣買

投資會社가 株式이나 債券을 賣買하거나, 證券會社가 自己勘定으로 株式 등의 賣買를 할 경우는 그 株式이나 債券이 어느 市場에서 賣買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사례 ①〉

日本이나 美國의 上場株를 홍콩의 證券會社(broker)를 통하여 日本市場이나 美國市場에 賣買한 경우는 域外去來로 認定된다.

〈사례 ②〉

홍콩의 上場株를 賣買하는 경우는 域外去來가 된다.

〈사례 ③〉

日本의 上場株를 所有하고 있는 홍콩會社가 중개인(broker)을 통하지 않고, 日本市場의 終値로 賣買한 경우는 賣買契約이 홍콩에서 이루어졌다고 認定될 可能性은 있으나, 株式 自體가 日本의 上場株이므로 日本市場을 통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홍콩의 證券會社가 중개인으로부터 委

託받은 賣買를 行하여 받은 委託手數料는 그 委託서비스가 提供된 場所인 홍콩의 課稅對象이 된다.

㉡ 投資有價證券의 賣買

投資有價證券의 경우는 域內와 域外의 區分뿐만 아니라 「캐피탈 게인(로스)」의 問題가 생긴다.

〈사례 ①〉

홍콩의 株式會社 또는 個人이 홍콩의 上場株를 長期에 걸쳐 保有하고 있다가 買收에 關聯하여 當該 株式을 全部 賣却한 경우는 域內去來이지만 「캐피탈」(Capital)去來로 된다. 단, 印紙稅는 課稅된다.

〈사례 ②〉

홍콩會社의 海外에 있는 100% 子會社의 株式을 홍콩 外에서 賣買한 경우는 域外去來, 「캐피탈」去來가 된다.

5. 受取配當金

홍콩에는 稅額控除制度가 없으므로 稅後의 未處分 利益剩餘金을 處分한 配當金은 非課稅이며, 그 配當金이 홍콩 內에서 發生했는가 海外에서 發生했는가의 區分은 없다. 따라서, 持株會社와 같이 收益源이 受取配當金에 限定되어지는 會社의 경우는 홍콩에서의 課稅所得은 永久히 零이 되고, 受取配當金 以上의 費用이 發生해도 稅務上의 缺損金은 存在하지 않는다.

6. 其他 所得

다음과 같은 所得도 홍콩에서 發生한 營業上의 所得으로 간주된다.

(1) 映畵, 텔레비전 필름, 테이프 錄音 등을 홍콩에서 展示하거나 使用하여 얻은 收入

(2) 特許權·意匠權·商標權, 노하우(know－how), 그 외 여기에 준하는 權利를 홍콩에서 使用함으로써 얻은 收入

(例) 홍콩會社가 海外에 있는 親會社로 부터 特許나 노하우를 받아, 그것에 대하여 로열티를 支拂한 경우 親會社는 홍콩에서 所得이 있었다고 간주되며, 總受取金額(未收分도 包含)의 10%를 課稅對象으로 하므로 利率은 法人의 경우는 1.65%가 된다. 이 事業所得稅는 親會社가 홍콩稅務局에 支拂하게 되는 것으로 納稅 代理人인 홍콩子會社가 稅金分을 맡아서 처리할 수는 있으나 稅法上 源泉徵收해야 할 것은 아니다.

(3) 홍콩에서 商業이나 專門業 또는 事業을 함에 있어 補助金 또는 기타의 財政的 援助로 受領한 金額(未收分 包含). 단, 資本的 支出에 의하여 얻은 金額은 제외.

(4) 홍콩에서 動産의 使用 또는 使用하는 權利에 대한 使用料·賃貸料 등의 金額, 홍콩 以外에 있는 動産의 使用은 Off－Shore로 된다.

(5) 個人의 商業·事業에 關聯된 資金의 受取利子.

단, 駐在員이 餘裕資金을 銀行에 預金한 것과 같은 경우는, 商業·事業에 關係가 없으므로 非課稅이다.

(6) 適格退職年金에 대한 雇用主의 醵出金의 還附로서 受領한 金額(未收分 包含). 단, 課稅所得의 算定에서 損金으로 인정된 醵出金의 範圍內이다.

(7) 課稅所得의 算定에 있어서, 以前損金으로 인정된 貸倒損失 中 後에

回收된 金額.

Ⅳ. 稅 率

納稅義務者	稅 率
法人 (支店 包含)	16.5%
個人	15.0%

組合은 個人과 마찬가지로 15%나, 組合員이 法人인 경우 法人所得과 合算하므로 16.5%가 된다. 또, 組合員이 20名 以上인 組合은 會社로 取扱한다. 한편, 支店의 경우는 會社法上 外國會社 全體의 一部로 認定되므로, 原則的으로 課稅는 支店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會社 全體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다음 중의 한 가지 方法에 의해 課稅된다.

(1) 支店의 會計帳簿가 홍콩稅務局의 査定官에 의해 承認된 경우는 支店의 會計帳簿에 근거하여 算定된 課稅所得.

(2) 全社베이스의 課稅所得을 全社賣上高와 支店의 賣上高와의 比率로 算出한 課稅所得.

(3) 全社베이스의 合計利益에 홍콩稅務局에 의해 정해진 比率을 곱한 것.

단, 通常은 (1)의 方法으로 支店의 決算書와 會計士의 證明 및 支店의 稅務申告書를 제출한다.

또한, 駐在員事務所는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므로 홍콩의 稅金은 駐在

員의 給與所得稅나 事業登錄稅 등이다.

Ⅴ. 事業年度

홍콩의 課稅對象期間은 4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이나 事業所得稅의 申告는 各 會社의 事業年度에 맞추어 할 수 있다. 會計期間은 通常 創立總會에서 決定하나 日本과 같이 定款에 明記할 必要는 없으며, 會社設立初年度는 18個月決算이 可能하다.

Ⅵ. 事業年度의 變更

最近 親會社의 決算期 變更이나 連結決算의 迅速化를 위해 홍콩子會社의 決算期를 變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稅務上의 取扱은 다음과 같다.

1. 1974年 4月 1日 以後 開業한 會社

㉠ 新決算期 末日이 舊決算期 末日보다 前인 경우

課稅對象期間은 事業年度를 變更한 해의 新決算期 末日까지의 1年間이 되나, 그렇게 하면 한 期間이 二重課稅되므로, 홍콩稅務局은 連結決算을 위한 것 등 正當한 理由가 있으면, 1年 以內의 짧은 事業年數를 課稅對象期間으로 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고, 前事業年度의 課稅所得 修正도 必要하지 않다.

㉡ 新決算期 末日이 舊決算期 末日보다 後인 경우

課稅對象期間은 事業年度를 變更한 해의 新決算期 末까지의 1年을 넘는 事業年度가 되며, 前事業年度 課稅所得의 修正은 必要하지 않다.

2. 1974年 3月 31日 以前 開業한 會社

㉠ 新決算期 末日이 舊決算期 末日보다 前인 경우

課稅對象期間은 事業年度를 變更한 해의 新決算期 末日까지의 1年間이 된다. 그래서 前事業年度와 重複되는 期間은 課稅所得의 修正이 必要하다.

(例) 3月 31日 決算을 12月 31日 決算으로 變更한 경우

前事業年度('89/ 4/ 1 ~ '90/ 3/31) 所得 $ 60,000

當事業年度('90/ 4/ 1 ~ '90/12/31) 所得 $ 140,000

當事業年度의 課稅所得

$$\$\ 140{,}000 + (\$\ 60{,}000 \times \frac{3}{12}) = \$\ 155{,}000$$

단, '90年 1月 1日 ~ 3月 31日의 所得이 缺損인 경우는 當事業年度의 所得에서 控除할 수 없다.

㉡ 新決算期 末日이 舊決算期 末日보다 後인 경우

課稅對象期間은 事業年度를 變更한 해의 新決算期 末日까지의 1年間이 되며, 前事業年度의 課稅所得을 修正할 필요가 있다.

(例) 12月 31日 決算을 3月 31日 決算으로 變更한 경우

前事業年度 ('89/ 1/ 1 ~ '89/12/31) 所得 $ 60,000

當事業年度 ('90/ 1/ 1 ~ '91/ 3/31) 所得 $ 140,000

當事業年度의 課稅所得

$ 140,000 × $\frac{12}{14}$ = $ 120,000 ──┐

前事業年度의 修正 │

A) 前期確定分 $ 60,000 ──→ $ 135,000

B) '89/ 4/ 1 ~ '90/ 3/31 75,000

差減追加分 $ 15,000 ──┘

追加分은 A), B) 중 많은 편이 基準이 되며, A)가 B)보다 큰 경우라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Ⅶ. 申告 및 納稅手續

1. 時期

事業所得稅의 申告期限은 原則的으로 申告書의 날짜로부터 1個月이나, 다음과 같은 延長이 認定된다.

決 算 日	申告期限
4月 ~ 11月	4月末
12月	7月末
1月 ~ 3月	10月末

또, 上記 申告期限 前까지 다시 한번 1個月間의 延長申請을 文書에 의해 要請할 수 있으나, 最近에는 相當히 合理的인 理由가 아니면 認定되지 않는다.

2. 方法 및 手續

申告에는, 設立 初年度의 豫定申告와 決算年度의 確定數値에 의한 申告의 2種類가 있다.

㉠ 豫定申告

會社를 設立하여 商業登記證을 入手하면 홍콩稅務局에서 보낸 申告用紙에 設立日로부터 6個月間의 賣上高 및 同 期間의 利益見積額(課稅所得의 見積額이라도 좋다)과 會社의 明細 등을 記入하여 申告書의 發送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提出할 必要가 있으며, 賣上高 등은 會社作成의 月次決算書를 添附하면 되며 監査의 必要는 없다. 한편 會社의 明細는 社名, 登記場所, 任員·部長名, 會社設立日, 商業登記證番號, 他社에서 資産·負債 등의 讓渡를 받은 경우 相對方名, 事業의 目的, 事業開始日과 그 決定要因, 決算日을 記入한다. 事業開始日 以前에 發生한 開業準備費用은 稅務上 損金으로 되지 않으므로 注意할 必要가 있다. 또, 會社의 任員 또는 部長은 書類의 內容이 事實이라는 취지의 宣誓 사인(sign)과 稅務代理人의 住所·姓名을 記入하며, 稅務代理人은 通常 會計事務所가 擔當하며 申告書나 添附資料를 會社를 대신하여 作成하고, 稅務局과의 交涉 등이 主된 業務이다. 이 申告書에 의해 豫定納付해야 할 課稅所得이 있는 경우는 홍콩稅務局에서 賦課通知書가 오고 稅金을 豫納하게 되나, 通常的으로 利益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 決算期 末의 確定數値의 申告

會社는 決算 終了後 公認會計士에 의해 監査를 받고, 會計事務所의 稅

務部門에 申告書 作成에 필요한 情報를 提供하며, 會計事務所가 作成한 稅務申告書와 添附計算資料의 內容을 점검한 후에 會計事務所에서 홍콩 稅務局에 稅務申告書와 添附計算資料, 監査證明書를 添附한 決算書 등을 提出한다. 稅務申告書 등의 作成은 會社에서 해도 좋으나 日本과는 稅法도 다르고 또, 稅務實務에 밝은 經理職員도 적기 때문에 會計事務所가 擔當하는 경우가 많다. 稅務申告書는 最終賦課 1990/1991('90/ 4/ 1~'91/ 3/31)로 當事業年度의 課稅所得을 計算하고, 그 課稅所得에 근거하여 稅務局이 賦課通知書에 의해 1990/1991의 確定稅額과 1991/1992의 豫納額을 通知한다. 稅務申告書에는 上記 課稅所得 이외에 資産所得稅의 免除에 대한 質問(法人이 不動産을 賃貸하여 收入이 있는 경우에는 資産所得稅가 아니고 事業所得稅의 對象이 된다) 및 會社와 홍콩非居住者와의 去來 등의 有無에 대한 質問欄이 있다. 또, 事業年度의 途中에 稅率이 變更된 경우, 예를 들어 8月 31日 決算인 경우에 4月 1日부터 新稅務會計年度로 稅率이 變更된 때의 適用稅率은 會社의 事業年度 末이 屬하는 新稅務會計年度의 것이 된다.

㉡ 見積賦課通知書

會社가 申告書를 期限까지 홍콩稅務局에 提出하지 않는 경우는 稅務局에서 見積에 의한 賦課決定이 되지만, 이 見積의 根據는 會社의 規模 등이라고 생각되나 明確한 基準은 없는 것 같다. 當該 賦課通知書를 入手한 경우는 通知書의 發行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申告書와 添附計算資料, 會計士의 監査證明書가 添附된 決算書를 홍콩稅務局에 提出하지 않으면 그 見積賦課가 確定되며, 後에 決算이 確定되어 申告書를 提出해도 納附完了의 稅金(豫納分 除外)은 還付되지 않으며 課稅所得도 變更되

지 않으므로 注意할 必要가 있다. 또, 一般的으로 홍콩稅務局의 作業은 느리나 이 通知書의 發行은 매우 迅速하게 하므로 期日까지 申告書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體制를 整備하는 것이 重要하다.

3. 稅金의 支拂

㉠ 納付

申告書를 提出期限까지 홍콩稅務局에 提出하면, 通常 5月에서 7月에 最終賦課通知書가 會社에 보내진다. 이 通知書의 內容에 不滿이 있는 경우는 빨리 稅務代理人인 會計事務所의 稅務擔當者와 相談하여 文書로 異意申請을 하도록 한다. 支拂해야 할 稅金은 當年度의 確定稅額(前期의 豫納이 있으면 確定稅額 － 豫納額)과 翌年度의 豫納額(當期와 同額의 課稅所得이 發生한다고 假定하여 計算한다)이며, 그 支拂 期日과 金額은 通知書에 明記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따라 支拂하게 되며 第1回가 確定稅額의 100%와 豫納額의 75%, 第2回가 豫納額의 25%가 된다.

㉡ 豫納額의 支拂延期

最終賦課通知書에 依한 翌年度의 豫納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一部 또는 全部를 支拂延期할 수 있다.

(1) 翌年度의 課稅所得이 當年度 課稅所得의 90% 以下라고 見積이 나온 경우

最終賦課通知書의 支拂 期日까지는 翌年度의 事業年度가 6個月 以上 經過되어 있으므로 月次計算에 의해 翌年度의 課稅所得을 豫想한다.

(2) 相殺해야 할 稅務上의 缺損金이 計算上 省略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

(3) 翌年度中에 事業을 停止할 計劃이 있는 경우

(4) 前課稅年度의 異意申請이 未解決狀態로 남아 있는 경우

이 支拂延期手續은 豫納稅 支拂 期日 14日前에 文書에 의해 홍콩稅務局에 提出해야 한다.

4. 稅務調査와 更正決定

홍콩稅務局은 日本의 國稅局·稅務署와 달리 調査官이 적으므로 原則的으로 調査官이 各 會社를 訪問하여 帳簿類를 調査하는 일은 없고 그 대신에 公認會計士가 모든 會社의 帳簿類를 調査하고, 監査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다시 말해 會計監査가 稅務調査를 兼하고 있다.

㉠ 更正決定

홍콩稅務局에 의한 帳簿 등의 調査는 없으나, 稅務局은 會社에서 提出한 稅務申告書와 添附計算資料 및 決算書의 內容을 再檢討하여, 疑問點에 대해 文書로 會社와 稅務代理人에게 送付한다. 이 質問書에는 修繕費의 內譯(支拂處, 金額, 費用의 性格 등)이나 域外去來로 처리한 것에 대해 受注에서 代金回收에 이르기까지의 一連의 書類 寫本, 會社의 組織圖와 各人의 職務權限 등 具體的인 內容이 적혀 있으며, 文書에 의한 回答은 通常 1個月後 정도가 된다. 홍콩稅務局은 이 回答을 根據로, 다시 한 번 追加質問을 할 것인가 또는, 곧바로 更正決定의 通知를 會社에 發送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 更正稅金의 支拂

更正決定에 의한 賦課通知書를 받은 경우는 期日까지 更正稅金을 支

拂하고, 1個月 以內에 不服申請을 하게 되나, 不服申請을 받으면 홍콩稅務局은 아래의 方法 中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1) 無條件 更正稅金의 支拂을 延期한다.

(2) 銀行 등의 支拂保證書를 提出하게 한다.

(3) 稅金證書를 購入하게 한다.

(1)과 (2)의 경우로 不服申請이 却下되었을 때는 金利와 함께 稅金을 支拂하게 되며, (3)의 경우 不服申請이 受理되면 金利를 더하여 返還받게 된다.

5. 稅金의 還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稅金의 還付를 請求할 수 있다.

(1) 잘못에 의한 稅金의 過多支拂

(2) 不服申請의 受理 등에 따른 稅金의 減額

(3) 會社가 支拂한 資産所得稅의 還付 등

또한, 豫納稅額이 翌期의 確定稅金보다 많을 경우는 翌年度의 豫納稅額에서 控除되고 그래도 過拂한 경우에는 還付된다.

6. 會計士의 監査證明書付 決算書類

事業所得稅의 申告書에 添附된 決算書는 會社의 會計帳簿에 根據하여 作成된다.

㉠ 表示通貨

決算書의 表示通貨는 會社의 去來通貨 中 主된 것을 選擇하여 決定하며, 去來實態에 따라 2 ~ 3年後에 表示通貨를 變更할 수도 있어, 홍콩

달러 表示가 要件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購買나 賣上도 日本엔貨 베이스이고 現地 發生費用만 홍콩달러인 경우에는 決算書를 日本엔으로 表示하는 편이 換率變動에 따른 差損益이 적고 合理的이다. 또, 홍콩달러 以外의 通貨에 의해 決算을 한 경우, 稅務申告書도 홍콩달러 以外가 되나, 稅金의 支拂은 홍콩稅務局이 所定의 換算 레이트를 適用하여 稅額을 通知한다.

㉡ 樣式

홍콩會社法의 要求에 一致한 財務諸表 報告樣式의 見本을 다음 페이지에 表示한다.

㉢ 帳簿의 言語

會計帳簿 등은 原則的으로 英語로 作成할 必要가 있으나, 中國語라도 問題는 없다. 日系의 「페이퍼 컴퍼니」 중에 會計帳簿를 日本語로 作成하는 경우가 있으나 監査를 擔當하는 會計士가 홍콩인이므로 監査 以外에 쓸데없는 時間이 많이 걸려 非經濟的이므로 먼저 日本에서 監査法人이 監査를 한 다음, 그 提携先인 홍콩會計事務所에 監査報告書를 提出하기도 한다.

㉣ 監査의 必要性

(1) 法人(Company Limited)

홍콩法人은 필히 홍콩의 會計士에 의한 監査를 받아, 稅務申告書에 監査證明書添附의 決算書類를 添附할 것이 義務로 되어 있다. 會計士의 監査意見이 無限定 適正이라면 問題가 없으나, 만약 限定事項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홍콩稅務局이 그 內容을 상세하게 質問해오므로, 無限定 意見을 받을 수 있는 決算이 바람직하다.

Tram (홍콩) Limited

任員의 報告書

任員은 年 月 日에 끝나는 年次報告書와 監査가 끝난 決算書를 提出합니다.

1. 主된 事業活動

當 年度 會社의 主된 事業活動은 _____이었다. 當 年度의 事業活動에 變更은 없다.

2. 그룹 財務諸表(連結財務諸表)

會社는 다른 會社의 100% 子會社이므로, 連結財務諸表를 作成하지 않았음.

3. 營業成績과 配當

稅後의 年間利益 $ _____

前年度에서 移越된 留保利益 _____

處分可能한 金額 _____

이 중 任員이 提案하는 金額 _____

_____中間配當의 支拂 ——

(1株當)

_____期末配當의 支拂 ——

(1株當)

移越해야 할 留保利益 $_____

4. 寄附金

當 年度에 慈善 및 其他 目的으로 會社는 合計 $_____를 寄附했음.

5. 固定資産

當 年度 固定資産의 移動에 대해서는 註記 8에 記述함.

6. 株式資本

當 年度에 會社는 1株當 $_____ 價格으로 _____株를 發行하였음.

會計拂入額은 $____이었음. 이 發行은 ____의 目的이었음.

7. 任員

當 年度 任員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_____

_____ 選任 (選任日)

_____

_____ 辭任 (辭任日)

8. 任員退任

會社의 定款 條項에 따라, 와 는 次回의 年次株主總會에서 任員職을 退任하게 되나 適格者이므로 再選을 申請하였음.

9. 當 期間에 任員이 重要한 利害關係가 있는 會社와 約定한 重要契約의 說明.

10. 會社가 當事者가 된 契約에 根據하여, 會社 또는 다른 法人組織의 株式 또는 社債를 任員이 取得할 수 있는 權利에 대해 설명.

11. 監査人

退任하는 監査人 _____는, 適格者이므로 再指名을 申請하였음.

任員을 대표하여

會 長

年 月 日

홍 콩

監査報告書

Tram (홍콩) Limited의 株主에게

우리들은 ××페이지에서 ××페이지에 提示된 財務諸表에 대하여 認定된 監査基準에 따라 監査를 實施했다.

우리들의 見解로, 財務諸表는 會社法에 따라 適正하게 作成되어 있고, (貸借對照表日)現在의 財政狀況 및 當該 事業年度의 損益 및 財政狀態의 變動을 事實대로 또 適正하게 表示하고 있다.

XY△· Co·

公認會計士

報告書日

홍 콩

Tram (홍콩) Limited

貸借對照表

年 月 日 現在

	註 記	當年度 홍콩달러	前年度 홍콩달러
流動資産			
現金·預金		$	$
在庫資産			
賣上債權			
前拂費用 및 去來保證金			
親會社에의 債權			
任員에의 貸付金	(7)		
		$	$

流動負債			
銀行借入金		$	$
購入債務			
支拂費用			
支拂稅金			
支拂配當金			
		$	$
純流動資產			
固定資產	(1)(8)		
投資	(11)		
子會社株式	(12)		
長期借入金	(10)		
順延稅金	(1)(13)		
		$	$
資本및剩餘金			
資本金	(14)	$	$
未處分利益			
		$	$

任員(sign)

任員(sign)

決算書註記參照

Tram (홍콩) Limited

損益計算書

年　　月　　日 終了 事業年度

	註　記	當 年 度 홍콩달러	前 年 度 홍콩달러
賣　上　高	(1)(2)	$	$
稅 前 利 益			
下記控除後			
減 價 償 却 費	(1)	$	$
監 査 人 報 酬			
任 員 報 酬	(3)		
支 拂 利 子	(4)		
工場設備賃借料			
貸損準備金算入			
下記加算後			
上場投資證券收益		$	$
非上場投資證券收益			
受 取 利 子			
稅　金	(5)		
稅 後 利 益		$	
期首未處分利益			
處分可能利益			
配　當　金	(6)		
次期移越利益		$	$

決算書註記參照

Tram (홍콩) Limited

財政狀態變動表

年　月　日　終了 事業年度

	當 年 度	前 年 度
	홍콩달러	홍콩달러
稅金의 源泉		
稅前利益	$	$
資金의 移動이 없는 事項 修正		
減 價 償 却 費		
固 定 資 産 賣 却 損		
營業에서 發生한 資金合計		
其他의 資金源泉		
固 定 資 産 處 分		
投 資 의 賣 却		
	$	$
稅金의 用途		
固定資産의 購入		
新 規 投 資		
長 期 借 入 金 返 濟		
配 當 金 支 拂		
稅 金 支 拂		
運 轉 資 金 의 增 加		
	$	$
運轉資金의 增加		
賣 上 債 權		
在 庫 資 産		
前拂費用 및 保證金		
親 會 社 에 의 債 權		
任 員 에 의 貸 付 金		
銀 行 借 入 金		
購 入 債 權		
未 拂 費 用		
小 計		
現 金 預 金		
	$	$

Tram (홍콩) Limited

決 算 書 註 記

年 月 日 終了 事業年度

1. 重要한 會計方針

(a) 그룹 財務諸表는 이 會社가 他社의 100% 子會社이므로 作成하지 않음.

(b) 在庫資産은 原價나 正味實現可能價額의 두 가지 중 낮은 價額으로 表示되어 있다. 原價는 原材料費, 直接勞務費 또는 妥當한 製造間接費로 되어 있다.

(c) 固定資産의 償却費는 資産의 見積耐用年數에 걸쳐 每年 均等額을 計上한다. 償却率은 다음과 같다.

建物附屬設備	賃借期間
機械및器具	年 %
什器備品	年 %
車輛運搬具	年 %

(d) 研究開發費

研究開發을 위한 支出은 發生한 年度에 償却된다.

(e) 外貨去來는 發生時의 換率 레이트로 外貨 베이스에 의한 金錢債權 및 金錢債務는 貸借對照表日의 換算 레이트에 의해 홍콩달러로 換算하였음.

(f) 子會社는 그 發行濟議決權株式의 50% 以上을 保有하고 있는 會社이다. 子會社株式은 取得原價 또는 만약 있다면 評價減을 控除한 金額으로 表示하고 있다.

(g) 移越稅金은 會計上과 稅務上의 期間差異에 대해 義務法을 採擇하여 豫知할 수 있는 將來에 資産·負債로의 實現 範圍內에서 當期 稅率에 따라 計上되어 있다.

2. 賣上高

賣上高는 販賣된 物品 및 提供된 役務의 純請求金額이다.

3. 任員의 報酬

	當年度	前年度
給　　料	$	$
其他의 報酬		
任員의 年金		
退職手當		
	$	$

4. 支拂利子

銀行借入金當座借越 및 5年以內返濟의 借入金	$	$
其他借入金		
	$	$

5. 稅金

年間見積課稅利益에 根據하여 實效稅率에 따라 所得稅에 대한 準備金이 計上되어 있다.

損益計算書上의 稅金은 다음의 內譯과 같다.

	當年度	前年度
當期稅金準備	$	$
順延稅金－PL		
當年度分		
稅率變更에 따른 修正		
	$	$

6. 配當金

中間支拂額	株當	의 率에 의함.
最終支拂案	株當	의 率에 의함.

7. 任員에 대한 貸付金

	當年度	前年度
期首殘高	$	$
當期中前拂額		
當期中返濟額		
期末殘高	$	$

8. 固定資産

	建物 附屬設備	機械工具	什器備品	車輛運搬具	合計
期首取得原價					
期中增加高					
期中減少高					
期末取得原價					
期末償却累計額					
期末簿價					
期首簿價					

9. 未履行資本支出契約

	當年度	前年度
未計上契約額		
承認濟未契約額		

10. 長期借入金

	當 年 度	前 年 度
5年以內返濟借入金		
5年以上의 借入金		
差減 : 流動負債에 포함되어 있는 1年 以內 返濟額		
返濟方法		

11. 投　資

	當 年 度	前 年 度
홍콩上場株式 —— 評價減後原價		
홍콩上場株式 —— 評價減後原價		
非上場株式 ——評價減後原價		
上場株式 等의 市場價額		

非上場株式 等의 時價는 任員의 意見으로는 貸借對照表의 帳簿價額과 적어도 同額이다.

12. 子會社株式

	當 年 度	前 年 度
未上場株式期首簿價	$	$
當期取得額		
當期賣却額		
未上場株式期末簿價		

(a) 任員의 意見으로는 子會社株式의 時價는 簿價 以上이다.

(b) 子會社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會社名	設立國	持分割合	主된 營業活動

13. 順延稅金

	當 年 度	前 年 度
前期殘高		
當期算入(返濟)	_____	_____
當期殘高	═══	═══
殘高內譯		
貸損準備金算入		
減價償却費	_____	_____
	═══	═══

14. 資本金

				當年度	前年度
授 權 株 式	株	1株當	달러	═══	═══
發行되어 拂入完了된 株式	株	1株當	달러	═══	═══

15. 偶發債務

割引貿易手票		
其他	_____	_____
	═══	═══

16. 持株會社

當社의 最終 持株會社는 _____國에 設立된 ×××會社라고 任員은 理解하고 있음.

(2) 支店

홍콩의 會計士에 의한 監査가 法律上 要求되지는 않으나, 一般的으로는 會計士의 監査 또는 調査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 會社가 홍콩의 公的會社(株主 50人 以上, 株式의 讓渡制限 없음 등)에 該當하는 경우는 홍콩會社登記所에 每年 監査證明을 添附한 事業報告書나 連結決算書(本國의 것)를 提出할 必要가 있다. 支店의 決算에서 특히 注意할 點은 本店에서 發生한 共通費用의 配賦 등에 대해 홍콩稅務局과의 사이에 意見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合理的인 配賦基準을 繼續 適用해야 한다.

(3) 其他

組合이나 個人商店(「컴퍼니」(Company)만 있고 「리미티드」(Limited)가 없는 것은 會社가 아니다)에 대해서는 監査를 받을 必要는 없으나, 組合의 組合員이 法人인 경우는 監査를 받는 것이 一般的이다.

Ⅷ. 課稅所得의 計算

1. 損金不算入 項目

(1) 家族內 또는 私的인 支出

(2) 課稅所得을 算出하는 目的 외에 사용된 支出, 예를 들어 創立費나 그의 償却, 營業權의 償却 등

(3) 資本的 支出이나 「캐피탈 로스」

(4) 改良費

(5) 保險이나 契約의 補償으로 補塡할 수 있는 損失

(6) 營業 目的 以外에 使用된 家屋의 支拂家賃이나 그것에 附隨하는 經費

(7) 會社負擔의 給與所得稅를 除하고, 홍콩稅法에 근거하여 支拂한 稅金

(8) 適格退職年金의 賦金支拂分으로 從業員의 總給與收入의 15%를 넘는 金額

(9) 個人商店의 所得主나 組合의 組合員 또는 그 配偶者에 대한 給料, 資本에 대한 利子

(10) 1989年 4月 1日부터 利子所得稅가 廢止됨으로써, 金融機關 以外의 非居住者로부터 借入한 借入金 利子는 損金이 되지 않는다.

(11) 日本의 稅法에 準한 一定率의 貸損準備金 移越損. 단, 個別準備金은 損金이 된다.

(12) 退職給與充當金 算入損. 단, 退職金은 損金이 된다.

2. 損金算入 項目

原則的으로 課稅所得을 算出하기 위해 支出한 經費는 損金이 되며, 主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營業 目的으로 使用하는 家屋의 家賃

(2) 營業債權 등의 貸損損失(단, 域外去來에 關聯된 것은 제외)

(3) 事業用으로 쓰고 있는 固定資産의 修繕費 및 取替資産의 取替費用

(4) 홍콩에서 課稅所得을 算出하는 特許權·商標權의 買入費用

(5) 事業에 關聯된 科學調査를 위해, 稅務局이 承認한 機關에 대한 支

出

⑹ 適格退職年金의 通常 年間醵出金과 特別醵出金의 1/5(5年間에 醵出한다)

⑺ 100홍콩달러 以上의 指定寄附金(단, 缺損會社는 제외)

⑻ 1984年 4月 1日 以後에 發生한 下記 支拂利子

① 金融機關이 借入한 것의 利子

② 特別公益法人이 借入한 것의 利子

③ 홍콩의 事業所得稅를 支拂한 者로부터의 借入利子

④ 홍콩 또는 海外의 金融機關에서의 借入利子(단, 關係會社 등에 의한 預金擔保가 없을 것)

⑤ 事業用의 機械나 工場用 設備借入 또는 홍콩에서 課稅所得을 算出하기 위해 利用된 在庫資産을 購入하기 위한 借入에 關聯된 利子

⑥ 上場社債이나 商業어음의 支拂利子

⑼ 稅務上 認定된 減價償却費(會計上의 減價償却費는 全額 自己否認한다)

⑽ 營業 目的으로 使用된 交際費는 日本과 달리 損金으로 한다.

3. 益金不算入 項目

⑴ 受取配當金

⑵ 域外 利益

⑶「캐피탈 게인」

⑷ 稅金證書나 政聽債에서 생긴 受取利子

4. 課稅所得의 計算

帳簿上의 稅前利益		$ 800,000
(加算項目)		
① 會計上의 減價償却費		200,000
② 換差損 中 域外分		70,000
③ 共通費 中 域外分		50,000
④ 貸損充當金 算入損否認		8,000
	小 計	328,000
(減算項目)		
① 稅務上의 減價償却費		△300,000
② 域外 賣買益		△600,000
③「캐피탈」		△48,000
	小 計	△948,000
純課稅所得		$ 180,000

稅金 $ 180,000×0.165 = $ 29,700

損益計算書

賣上高(50%가 域外)	$ 12,000,000
社宅賣却益	48,000
賣上原價(50%가 域外)	△10,800,000
減價償却費(100%가 域內)	△200,000
販賣費 一般管理費	△108,000
換差損	△140,000

稅前利益	800,000
稅　金	△29,700
當期純利益	$ 770,300

域外去來에 關聯된 共通費나 換差損은 域外와 域內의 賣上費로 按分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5. 減價償却

有形固定資産의 減價償却은 日本과 달리 會計上의 減價償却費와 稅務上의 減價償却費로 각각 計算하여 稅務申告書上에서 加減算한다.

또, 10%의 殘存價格은 償却上 考慮하지 않으며, 期中 取得分의 償却도 月數按分하지 않고, 100% 償却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 資産의 種類와 償却方法 및 償却率

資　産	償却方法	償却費 初年度	償却費 年次
産業用 建物	定額法	20%	4%
商業用 建物	定額法	없음	2
機械設備 等	定率法	60	10～30
土地(借地權)	償却되지 않음		

會計士의 減價償却은 資産의 見積耐用年數에 따라 定額法이나 定率法으로 計算된다.

(1) 産業用 建物

工場 또는 運送, 물, 가스, 電氣工事 등을 目的으로 使用한 建物, 商品·製品 등을 保管하는 倉庫나 農業用 建物 등의 建物 原價는

自己가 建設한 경우는 그 建設 原價가 되고, 他人에게서 購入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支拂한 金額이나 實際의 建物 原價 中 적은 편이 된다.

(計算例)

工場建物의 取得原價		$ 100,000
減價償却		
初年度特別償却		20,000
年次償却		4,000
	計	24,000
第2年度 年次償却		4,000
2年度末 簿價		$ 72,000

⑵ 商業用 建物

事務所, 社宅, 賃貸用 「플랫」(Flat:공동주택) 등이 商業用 建物에 該當한다. 商業用 建物의 償却은 減價償却이 아니고 再建償却이며, 現物이 있는 限에는 永久償却이 可能하다. 또, 建設 코스트(cost)는 土地(借地權)를 제외한 建築 코스트고, 事務所나 社宅 등의 取得原價를 建物과 土地로 區分해서 處理할 必要가 있다.

⑶ 機械設備 等

工場의 機械裝置, 工具器具, 什器備品, 車輛 등이 該當되며 會計上의 減價償却은 各各 計算하나 稅務上으로는 각 種類別로 區分하며, 綜合償却에 따라 10%, 20%, 30%의 年次償却과 60%의 特別償却이 認定된다.

(計算例)

機械의 購入原價		$ 50,000
減價償却		
初年度 特別償却		30,000
年次償却 (50,000—30,000)×0.3		6,000
	計	36,000
初年度 簿價		14,000
2年度 年次償却(14,000×0.3)		4,200

第1部는 機械設備 等 稅務上의 減價償却率表이며, 第2部는 取替資産에 해당하는 物件의 明細이다.

第 1 部

	償却率
1. 室內用 에어컨 以外의 工場用 에어컨	10%
2. 銀行의 金庫, 門, 격자문	〃
3. 放送用 通信機	〃
4. 電氣用 케이블(cable)	〃
5. 街燈(가스 또는 電氣)	〃
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7. 가스, 水道의 本管	〃
8. 石油 탱크	〃
9. 船舶 — 小型船, 「정크」(junk), 산팡(손으로 젓는 배), 거룻배, 引船	〃
10. 散水器	〃
11. 室內裝置	20%

12. 家具(커튼, 양탄자 등과 같이 取替資産으로 되는 것은 제외)	20%
13. 室內用 에어컨	〃
14. 船舶 진수대, 「페리」(ferry), 水中翼船	〃
15. 택시 미터	〃
16. 타자기, 字型(取替資産으로 取扱하지 않는 경우)	〃
17. 航空機(엔진 포함)	30%
18. 「사이펀」(siphon)	〃
19. 自轉車	〃
20. 漂白 및 仕上機械設備	〃
21. 콘크리트 파이프 流型	〃
22. 電氣調理器·湯沸器	〃
23. 컴퓨터	〃
24. 電子製品機械 및 設備	〃
25. 自動車	〃
26. 플라스틱 製造機械 및 設備(金型 包含)	〃
27. 船舶—모터보트	〃
28. 絹製造機械 및 設備	〃
29. 硫酸, 硝酸製造設備	〃
30. 「탱크로리」(tank lorry)	〃
31. 纖維, 衣料製品機械 및 設備	〃
32. 트랙터, 불도저, 그라인더	〃
33. 紡織機, 編物機, 裁縫機	〃
34. 1~33에 該當하지 않는 機械設備로 運送, 터널, 도크(dock), 水道·가스, 電氣工事 및 公共電話·電報서비스에 利用된 것	10%

35. 1～34에 該當하지 않는 기타 機械設備	20%

第 2 部

1. 벨트類
2. 도자기, 칼
3. 調理用 器具
4. 시트(sheet)
5. 세트(set)로 되어 있지 않은 工具
6. 커튼, 양탄자 등 軟式家具
7. 外科 및 齒科用 器具
8. X線, 赤外線機械用 튜브(Tube)

(4) 其 他

홍콩의 土地는 英國女王이 所有하고 있고, 土地 使用者는 그것을 빌리고 있다. 減價償却은 會計上에도 稅務上에도 認定되지 않는다. 한편, 工業團地의 土地賃借에 關聯하여 支拂하는 토지 프리미엄(Land Premium)도 無形固定資産으로서 賃借期間에 償却하나, 稅務上으로 損金이 되지 않는다.

(5) 資本的 支出의 範圍

日本의 稅法과 같이 明確한 規定은 없으나 通常 1,000홍콩달러 以上이고, 1年 以上 使用하는 것은 稅務上 資本的 支出로 보아 固定資産으로 된다. 한편, 會計士는 會社의 規模 등에 따라 一定의 基準을 정하여 固定資産에 計上하고, 稅務上 否認을 받을 可能性이 있는 것은 少額資産으로 申告加算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差額償却과 差額賦課(商業用 建物은 除外)

産業用 建物이나 機械設備 等을 賣却 또는 廢棄했을 때, 賣却代金 등이 稅務上의 未償却殘高보다 적은 경우는 差額償却이 認定되고, 많은 경우는 過去에 이루어진 減價償却을 修正하는 방식으로 差額賦課하여 課稅所得에 加算하나, 만약 賣却代金 등이 取得原價를 초과하여 발생한 賣却益 部分은 「캐피탈 게인」으로 看做하여 無稅로 된다.

(計算例 1)

前述한 ㉠ (1)의 産業用 建物을 第3年度中에 50,000달러 또는 120,000달러에 賣却했다.

〈사례 ①〉

第2年度末 未償却殘高	$ 72,000
賣却額	50,000
控除 差額償却	$ 22,000

〈사례 ②〉

第2年度末 未償却殘高	$ 72,000
賣却價格	120,000
控除 賣却益	$ 48,000
賣却益의 內譯	
「캐피탈 게인」(120,000—100,000)	20,000
差額賦課(48,000—20,000)	28,000

差額賦課는 減價償却累計를 限度로 한다.

(計算例 2)

綜合償却을 한 경우

① 項目 1에 포함된 車輛(取得原價 $ 50,000)을 當期 $ 50,000에 賣却

② 項目 2에 해당하는 備品을 當期 $ 10,000에 購入

③ 項目 2에 포함되지 않는 타자기(取得原價는 $ 10,000)를 當期 $ 5,000에 賣却

④ 項目 4에 포함되는 工場用 에어컨(取得原價 $ 100,000)을 當期 $ 40,000에 賣却

		項目 1 (30%)	項目 2 (20%)	項目 3 (10%)	當期減價償却費
期首 未償却殘高		100,000	50,000	36,000	
當期取得					
備品	10,000				
特別償却	(6,000)				6,000
	4,000		4,000		
當期賣却					
車輛		(50,000)*			
타자기			(5,000)**		
工場用 에어컨				(40,000)***	
差額賦課				4,000	(4,000)
年次償却前 未償却殘高		50,000	49,000	0	2,000
年次償却		(15,000)	(9,800)	—	24,800
期末 未償却殘高		35,000	39,200	0	
				減價償却 合計	26,800

* 未償却殘高에서 減算되는 賣却代金은 「캐피탈 게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取得原價를 限度로 한다.

** 綜合償却이므로 個個의 未償却殘高를 알 수 없어 賣却代金을 減算한다.

*** 이 경우처럼 賣却代金을 減算하면 未償却殘高가 마이너스가 되면 差額賦課가 이루어진다.

上記와 같이 差額償却과 差額賦課가 이루어지나 會計上의 減價償却費는 見積耐用年數에 따라 計算되므로 會計上의 固定資産賣却損益은 일단 課稅所得의 計算上 自己否認한다.

㉢ 「캐피탈 리스」(Capital Lease)의 取扱

以前은 「캐피탈 리스」〔「파이낸스 리스」(Finance Lease)〕에 관련된 會計規則은 없었으나, 1988年부터 리스(lease)料 總額의 現在價値가 當該 리스資産 時價의 90%를 넘을 경우는 리스資産과 그것에 對應하는 리스未拂金을 貸借對照表에 計上하도록 되었다. 리스資産의 減價償却에 대한 稅務上의 取扱은 初年度 特別償却의 對象이 事業年度에 支拂된 리스料元本이고, 每年 初年度特別償却할 수 있으며, 한편 年次償却은 리스元本總額을 根據하여 計算할 수 있다.

㉣ 投資用 不動産의 取扱

1989年부터 建物의 大部分을 第三者에게 賃貸하고 있는 投資用 不動産의 減價償却은 會計上 認定되지 않고 當該 不動産을 投資 計定으로 判斷하여 每 期末에 再評價하여 時價에 의해 計上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稅務上의 取扱은 變更이 없고 産業用·商業用 建物의 區分에 따라 稅務上의 減價償却이 된다고 解析한다.

6. 換差損益의 稅務上 取扱

홍콩달러와 美國달러는 現在 연계되어 있고, 大體的으로 US$ 1=HK$ 7.8로 一定하기 때문에 換差損益이 多額으로 發生하지는 않으나, 最近 특히 日本엔貨의 高騰에 따라 달러表示의 決算書에서 多額의 換差損益이 發生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換差損益은 課稅對象의 「域內所得과 域外所得」 및 「캐피탈 게인·로스」와 關聯하여 稅務上의 取扱이 다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營業債權·債務의 換差損益

域內去來와 關聯하여 發生한 實現換差損益은 損金 또는 益金으로 되나, 域外去來와 關聯한 것은 課稅對象 外로 된다. 단, 期末의 外貨베이스 債權·債務의 評價를 바꿈으로써 생긴 換評價損益은 期末 時點에 實現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申告書上 自己否認하고 翌期認容의 處理를 한다.

㉡ 資本的 性格의 去來에 의해 發生한 換差損益

(1) 外貨建定期預金 등의 直接營業에 關係없는 餘裕資金의 運用에 의해 생긴 換差損益은 課稅對象 外로 된다.

(2) 홍콩 內外의 銀行에서 日本엔貨로 借入하여, 返濟時에 換差損이 發生한 경우도 損金으로 되지 않으므로 注意할 必要가 있다.

原則的인 取扱은 上記와 같으나, 實際의 會計處理는 多通貨會計 體系를 採擇하고 있는 會社 등이 있어, 換差損益의 內譯을 分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홍콩稅務局과 交涉하여 換差損益을 域內와 域外의 賣上比로 按分하는 簡便法이 採擇되나, 資本的 性格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換差損益은 金額으로도 많아서 個別的으로 計算하는 일이 많다.

7. 缺損金

會社의 營業活動에 의해 發生한 稅務上의 缺損金은 將來에 發生하는 課稅所得에서 充當하므로, 永久히 移越이 可能하다. 단, 會社設立 後 전혀 營業收入이 없고 費用만을 支拂하는 狀況에서 發生한 會計上의 缺損金은 홍콩稅務局이 營業目的 때문에 發生한 것으로 認定하지 않아 稅務上의 缺損金이 되지 않는다. 또, 組合에서 發生한 缺損金은 各 組合員의 所得과 合算하여 申告할 수 있으나, 連結納稅와 같이 關係會社의 課稅所得을 合算할 수는 없다.

Ⅸ. 外國稅額控除

홍콩은 어느 나라와도 租稅條約을 맺지 않아 外國稅額控除制度와 같은 二重課稅排除의 制度는 없다. 원래 홍콩은 稅率이 낮고, 受取配當金의 益金不算入, 域外所得 非課稅 등의 制度가 있으므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없어도 그렇게 支障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例外的으로 舊英聯邦國家間의 稅金에 대하여 一部免除가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에서 홍콩法人이 支拂한 稅金은, 아래와 같이 홍콩에서 支拂하는 稅金에서 控除할 수 있다.

(1) 홍콩居住者에 대한 控除는 다음 중 적은 쪽

① 課稅所得 × 外國稅率

② 홍콩에서 課稅對象이 되는 소득 × 0.165 × $\frac{1}{2}$

(2) 홍콩非居住者에 대해서는 ①, ② 中 하나를 適用한다.

① 홍콩稅率의 16.5%가 外國의 稅率보다 높은 경우는, 16.5%와 外國稅率 × $\frac{1}{2}$ 의 差額이 控除된다.

② 그 외의 경우는 外國稅率 × $\frac{1}{2}$ 이 控除된다.

이 控除適用時에 當該所得이 域外인 경우는 外國에서 法人稅를 支拂했어도 二重課稅로 되지 않기 때문에 上記 免除는 없다.

X. 移轉價格稅制

홍콩稅法 20條에 홍콩居住者와 資本關係에 있는 非居住者와의 거래에 있어서, 不當하게 홍콩居住者의 利益이 적게 되어 있는 경우, 非居住者가 얻은 不當利益도 合算되어 居住者에게 課稅되나, 홍콩의 稅率이 낮기 때문에, 上記와 같은 例는 非居住者가 缺損을 낸 경우나 非居住者가 다른 輕減稅率國에 있는 경우 以外에는 長點이 없고, 따라서 美國 등의 同種 規定에 比較하여 엄격하게 適用되지 않는 것 같다.

第 4 章

其他 主된 稅金

概 要

1. 事業登錄稅는 每年, 商業登記證(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更新함으로써 支拂.
2. 印紙稅는 不動産이나 홍콩 株式의 賣買 및 不動産賃貸借에 대해 所定의 比率로 計算한 稅金을 支拂.
3. 固定資産稅는 홍콩島, 九龍, 新界에 따라 다르나, 홍콩稅務局의 不動産評價額에 所定의 比率로 計算한 稅金을 每年 四半期마다 支拂.
4. 贈與稅는 홍콩에 存在하지 않으나, 贈與한 후 3年 以內에 贈與한 사람이 死亡한 경우는, 相續稅의 對象이 된다.

Ⅰ. 事業登錄稅

홍콩의 會社, 홍콩支店 및 駐在員 事務所, 個人商店은 每年 홍콩稅務局에 商業登記證 更新을 위해 1,000홍콩달러를 支拂해야 한다. 商業登記證은 會社 등의 登記場所로 되어 있는 事務所의 入口 가까이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둘 필요가 있으며, 商業登記證番號는 會社의 登錄番

號이고, 여러 書類에 個人의 身分證明書番號와 마찬가지로 記入하게 되어 있다. 또, 本社 以外에 홍콩 內에 支店 또는 賣場 등을 설치할 때도 支店의 商業登記證이 必要하며, 그 料金은 115홍콩달러로 조금 적다.

II. 印紙稅

다음에 드는 書類의 種類마다 一定額의 稅金이나 從價稅을 賦課한다.

1. 不動産의 販賣契約

賣買價格	稅率
$ 250,000까지	$ 20
$ 250,000 ~ $ 500,000	0.75%
$ 500,000 ~ $ 1,000,000	1.5
$ 1,000,000 ~ $ 1,500,000	2.0
$ 1,500,000 超過	2.75

위 수준을 약간 넘은 賣買의 경우는, 그 超過額의 10%가 適用된다.

예를 들어, HK$ 1,050,000의 경우

HK$ 1,050,000 × 0.02 = $ 21,000

HK$ 1,000,000 × 0.15 + 50,000 × 0.1 = $ 20,000

양 쪽 중 적은 편인 $ 20,000로 된다.

(註) 1. 印紙稅의 支拂은 讓渡한 날부터 30日 以內이다.

2. 裁判에 의한 解散이나 任意解散에 따라 發生한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은 印紙稅가 免除된다.

2. 홍콩會社가 發行하는 株式賣買 契約

賣買總額의 0.6% 中 0.3%씩 買收人과 賣渡人이 折半씩 負擔하는 경우가 많으나, 負擔比率은 當事者 사이의 合議에 따른다. 홍콩에서는 不動産賣買의 印紙稅가 높기 때문에 不動産만을 保有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設立하여 不動産 賣買를 대신하여 不動産을 保有하는 會社의 株式을 賣買함으로써 印紙稅를 節約하는 것이 一般的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페이퍼 컴퍼니」의 貸借對照表는 資産으로, 有形固定資産에 상당하는 負債로서는 長期借入金과 資本金(通常 2HK$)이 되고, 그 賣買價格은 資本金 + 有形固定資産의 含益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去來에 따른 賣却益은 原則的으로 「캐피탈 게인」이나,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個別的으로 判斷할 必要가 있다.

(註) 1. 株式에는 轉換社債도 包含된다.

2. 印紙稅의 支拂은 홍콩 內의 賣買는 賣買 後 2日 以內, 홍콩 外의 賣買에는 30日 以內이다.

3. 不動産의 리스契約

(1) 期限이 明記되지 않은 것

100HK$마다 25센트 또는 年賃貸料 平均의 一部

(2) 1年 以內의 契約

100HK$마다 25센트

(3) 1年 以上 3年 以內의 契約

100HK$마다 50센트

(4) 3年 以上의 契約

100HK$마다 1달러

Ⅲ. 固定資産稅(rates)

홍콩의 固定資産稅는, 홍콩에 있는 建物을 數年마다 政廳이 評價를 하여 課稅標準을 決定하고, 그것에 一定率을 곱한 것을 4月 1日까지 支拂하며, 日本과 마찬가지로 25年마다 支拂하는 것이 認定되고, 賃借用「플랫」(flat)인 경우는 賃借人이 固定資産稅를 支拂한다.

稅率은 地域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다.

홍콩島	7.5%
九龍	7.5
新界	4.0

Ⅳ. 相續稅

홍콩에는 贈與稅는 없으나, 相續稅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홍콩에 存在하는 死亡者의 稅金의 對象이 되는 모든 遺産에 대해 相續稅를 支拂한다.

課稅 標準	稅 率
$ 2,000,000 以下	非課稅
$ 2,000,000 超過 $ 2,500,000까지	6%
$ 2,500,000 超過 $ 3,000,000까지	8
$ 3,000,000 超過 $ 3,500,000까지	10

$ 3,500,000 超過	$ 4,000,000까지	12
$ 4,000,000 超過	$ 4,500,000까지	14
$ 4,500,000 超過	$ 5,000,000까지	16
$ 5,000,000 超過		18

단, 다음의 경우는 면제된다.

(1) 홍콩 外의 不動産의 相續

(2) 公共 또는 慈善 目的의 處分

(3) 死亡日에서 3年 以上 前의 증여

(4) 結婚할 예정으로 贈與한 경우

(5) 結婚하여 살고 있는 집

第 5 章

優 待 制 度

홍콩은 東南아시아 중에서 가장 低稅率(法人이 16.5%, 個人 15%)이고, 또한 담배, 술 등을 제외하고는 關稅도 없으며, 또 外換管理도 없는 自由貿易港이기 때문에, 特別한 優待措置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稅務上의 有利한 點이 있다.

(1) 홍콩 外 源泉의 所得(域外所得)이 無稅이다.

(2) 「캐피탈 게인」은 無稅이다.

(3) 受取配當金은 無稅이다.

(4) 有形固定資産의 初年度 特別償却이 60% 認定된다.

(5) 稅務上의 缺損金은 永久히 移越可能하다.

(6) 贈與稅가 없다.

(7) 日本과 같은 地方稅가 없다.

(8) 源泉稅도 없다.

第Ⅲ篇

싱 가 포 르

第 1 章

租稅의 種類와 特徵

概 要

1. 法人稅率은 31%, 個人所得稅率은 3.5%~33%의 累進稅率이다.
2. 日本의 住民稅 및 事業稅와 같은 地方稅는 없다.
3. 法人 및 個人 모두 賦課課稅制度이다.
4. 「캐피탈 게인」은 非課稅이다.
5.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政策的 側面에서 여러 가지 優待措置가 定해져 있다.

Ⅰ. 租稅의 種類

(1) 法人稅

(2) 個人所得稅

(3) 相續稅

(4) 固定資産稅

(5) 印紙稅

(6) 車兩 및 道路稅 等

(7) 消費稅

II. 法人稅 및 個人所得稅의 槪要

(1) 法人稅 및 個人所得稅 모두 「The Income Tax Act」에 같이 規定되어 있다. 「The Income Tax Act」는 第1條부터 第106條까지의 規定이 있고, 日本에서 말하는 國稅通則法, 國稅徵收法, 法人稅 및 所得稅法이 規定되어 있다. 日本의 施行令, 施行規則, 基本通達, 個別通達 및 租稅特別措置法 等의 詳細한 規定이 없고, 또한 반드시 모든 것이 「The Income Tax Act」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詳細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判例나 慣習에 의해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獨自的 判斷에 근거하여 稅務行政을 施行하고 있는 것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다.

(2) 法人稅는 法人의 所得에 대해 原則的으로 31%의 稅率에 의해, 또 個人所得稅는 賦課課稅年度(以下 간단하게 課稅年度) 1987年(1986年 1月~1986年 12月)부터 3.5%~33%의 累進稅率에 의해 果稅된다.

(3) 日本의 都道府縣民稅, 市町村民稅 및 事業稅와 같은 地方稅는 없다.

(4) 日本과 같이 稅務調査官이 各 會社에 調査 때문에 가는 일은 거의 없다. 會計事務所의 監査를 信用하고, 申告書 等에 疑義가 있을 경우에는 質問狀이 送付되고, 거기에 各 會社 또는 Tax Agent인 會計事務所가 편지로 返答하여, 疑問點을 解決하는 形態를 취한다.

(5) 日本은 自主納稅申告制度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 納稅者가 提出한 申告書 및 資料 等을 근거로 稅務當局이 賦課하는 賦課課稅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6) 法人稅의 경우, 課稅年度는 會社 決算期에 관계없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曆年基準이고, 個人所得稅도 똑같이 曆年基準이다. 日本에서는 1990年度의 所得에 대한 課稅書類는 1990年度라고 表示되어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1990年의 所得에 대한 課稅書類는 課稅年度(Year of Assessment) 1991年이라고 表示되어 있어, 1年이 어긋나 있다.

(7) 「캐피탈 게인」은 非課稅이고 또 個人所得稅의 最高稅率은 33%이기 때문에, 金持優待稅制라고 말할 수 있다. 法人稅도 31%로서 日本과 比較하면 低率이고, 또 「캐피탈 게인」은 非課稅이다.

(8)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政策的 側面에서 經濟擴大奬勵法이 制定되었고, 稅務上 여러 優待措置가 강구되어 있고, 日本도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에 의해, 稅制面에서 싱가포르를 應援하고 있다.

第 2 章

個人所得稅

概　要

1. 原則的으로 60日 未滿의 滯在者는 非課稅, 60日 以上 183日 未滿의 滯在者는 非居住者로 하고, 183日 以上 滯在者는 居住者로서 課稅된다.
2. 國外源泉所得은 居住者인 경우 싱가포르에 送金했을 때에 課稅되나, 非居住者의 境遇는 送金의 여하에 關係없이 非課稅된다.
3. 日本과 같이 給與所得에 대한 源泉徵收制度는 없다.
4. 會社가 個人의 所得稅를 負擔할 경우에는, Tax on Tax方式과 보너스方式에 의해 所得에 加算된다.

Ⅰ. 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

(1) 納稅義務者는, 싱가포르의「居住」狀況에 의해 區分되고, 各各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의 範圍 및 適用되어야 할 稅率도 다르다.

「居住」關係에 의한 區分	課稅의 對象이 되는 所得의 範圍	適 用 稅 率	申告 및 納稅方法
1) 居住者 : 課稅年度의 直前年度(曆年)에, 合計 183日 以上 싱가포르에 滯在하든가 또는 人的勞務를 提供한 者.	모든 國內 (싱가포르)에 送金된 모든 國外(非싱가포르) 源泉所得	累進稅率 (「稅率表」 參照)	通常의 方法에 의함.
2) 非居住者 (外國에 居住하는 싱가포르 法人의 任員을 除外)			
① 課稅年度의 直前年度 (曆年), 合計 60日 以上 183日 未滿, 싱가포르에 滯在한 者	모든 國內 (싱가포르) 源泉所得	15%를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各種 控除 適用 없음)또는 居住者와 똑같은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된 稅額中 어느 것이든 많은 쪽의 金額(단, 日·싱가포르 租稅條約에 의한 例外 있음)	通常의 方法에 의함.
② 課稅年度의 直前年度 (曆年)에 싱가포르에서의 滯在日數가 60日 未滿인 者	없음	非課稅(단, 싱가포르에 曆年을 걸쳐 계속해서 체재하든지, 3년 이상 계속해서 체재한 경우에는 예외 있음).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申告
3) 非居住任員 : 싱가포르 法人의 任員으로 課稅年度(曆年)에 싱가포르 合計 滯在日數가 183日 未滿인 者	모든 國內 (싱가포르) 源泉所得	31% (註)	源泉徵收方法에 의함.

(註) 實務上으로는 外國에 居住하는 任員에게 報酬를 支拂하는 경우에만 31%의 源泉徵收를 행하고 싱가포르에 居住하는 任員에 대해서는, 上記 2)①이 適用된다.

「居住」關係에 의한 區分	課稅의 對象이 되는 所得의 範圍	適 用 對 象	申告 및 納稅方法
4) 地域駐在員(Area Representative) : 싱가포르에 駐在하여 複數國을 담당하는 任務를 가진 駐在員.			
① 課稅年度의 直前年度 (曆年)에 싱가포르 合計滯在日數가 183日 以上인 者	모든 國內(싱가포르) 源泉所得, 단 給料·賞與金 等에 대해서는 다음의 ①② 中 어느 것이든 많은 쪽의 金額 ① 給料·賞與 等 싱가포르 $\times \frac{\text{合計滯在 日數}}{365}$ ② 給料·賞與 等의 싱가포르에 送金額	累進稅率 (「稅率表」參照)	通常의 方法에 의함
② 課稅年度의 直前年度(曆年)에 싱가포르 合計滯在日數가 60日 以上 183日 未滿인 者	上記 ①에 따라 計算된 金額	15%를 適用해서 算出한 稅額 (各種 控除 適用 없음) 또는 居住者와 똑같은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된 稅額의 어느 쪽이든 많은 쪽의 金額.	通常의 方法에 의함
③ 課稅年度의 直前年度 (曆年)에 싱가포르에 合計滯在日數가 60日 未滿인 者	없음	非課稅 (단, 싱가포르에 曆年에 걸쳐 繼續해서 滯在하든지, 3年 以上 繼續해서 滯在한 경우에는 例外가 있음).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申告

	入國年度	2年째	3年째	
케이스 1	59日 課稅(15%)*	59日 課稅(15%)*		· 入國年度 또는 2年째 모두 60日 未滿이지만, 싱가포르에 繼續해서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돼 非居住者로 課稅될 염려가 있다.
케이스 2	59日 非課稅	59日 非課稅		· 勤務期間 및 勤務狀況이 繼續되는 것이 아니고, 또 各各의 期間이 싱가포르에 繼續해서 居住하지 않는다고 認定된 경우에는 課稅된다.
케이스 3	59日 課稅(15%)*	182日 課稅(15%)*		· 入國한 해는 非居住者로서 課稅된다.
케이스 4	59日 課稅(15%)*	183日 課稅(累進)*		· 入國한 해는 非居住者로서 課稅된다.
케이스 5	59日 課稅(15%)*	365日 課稅(累進)*	59日 課稅 (累進)	· 入國한 해에 대해서는 우선 15%로 課稅되나, 2年째 또는 3年째에 累進稅率에 의한 課稅로 調整된다. 3課稅年度 이상 계속해서 싱가포르에 滯在할 경우에는, 아무리 入國한 해 또 3年째의 滯在日數가 60日 未滿이라도 居住者로서 累進課稅를 받는다.

(2) 2曆年 以上에 걸쳐 滯在하는 境遇의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關係

The Income Tax Act上 「居住者」, 「非居住者」의 定義는 上記와 같으나, 이 境遇 曆年을 걸쳐 滯在한 境遇의 課稅關係 및 適用稅率은 各各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單純히 滯在日數가 60日 未滿이기 때문에 非課稅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림〉과 같은 경우에 맞추어서 說明한다.

* (15%)라고 記載되어 있지만, 實際는 15%를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各種 控除 適用 없음) 또는 居住者와 똑같은 計算에 의한 稅額 중 많은 金額이 納付稅額이 된다.

以上은, 現在 稅務當局이 채택하고 있는 課稅方法이고, 60日 未滿의 滯在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非課稅라고 單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日本·싱가포르 租稅條約 第13條와의 關係

日本과 싱가포르의 租稅條約 第13條에 의해, 다음과 같은 3개의 條件을 모두 充足시킬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의 課稅를 免除받는다.

① 그해의 싱가포르 滯在期間이 183日을 넘지 않을 것.

② 給與 等의 支拂者가 日本 居住者 또는 日本法人일 것.

③ 給與 等이 日本 居住者 또는 日本法人이 싱가포르에 있는 恒久的 施設에 의해 負擔되지 않을 것.

이 免稅措置를 받기 위하여는 Form IR 585에 日本의 稅務署로부터 證明을 받아 싱가포르의 稅務當局에 提出해야 할 必要가 있다.

Ⅱ. 싱가포르 國內源泉所得과 國外源泉所得

前述한 바와 같이, 個人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居住」狀況에 따라, 課稅對象 및 稅率이 다르나,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納稅義務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各種 所得 중에서

① 싱가포르에서 생긴 所得(Accruing in) 또는,

② 싱가포르에서 稼得하는 所得(Derived from) 및

③ 싱가포르에서 受領하는 所得(Received in)(싱가포르 國外源泉所得 중에서, 싱가포르에 送金되지 않는 金額은 非課稅)이 課稅對象으로 된다.

非居住者의 경우에는 上記 ① 및 ②가 課稅對象이 된다.

(2) 上記의 關係를 日本의 親會社에서, 싱가포르의 子會社에 나가 있는 日本人從業員(居住者)을 例로 들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所得의 內容	所得의 受領地	所得의 源泉地	所得의 싱가포르에 대한 送金有無	싱가포르에서의 納稅義務
本　　給	싱가포르	싱가포르	—	있음
不在住宅手當 等	日　本	〃	있음	〃
〃	〃	〃	없음	〃
賞 與 金	〃	〃	있음	〃
賞 與 金	〃	〃	없음	〃
預金利受取配當	〃	日　本	있음	〃
〃	〃	〃	없음	없음
家賃收入 (不動産所得)	〃	〃	있음	있음
〃	〃	〃	없음	없음

위에서 제시한 것같이, 이 從業員의 所得 중에서 本給, 不在住宅手當 및 賞與金은, 所得의 受領地 여하를 불문하고, 그의 싱가포르에서의 人的勞務 提供에 대한 代價이며, 싱가포르 國內源泉所得이 되며, 따라서 싱가포르에 送金 有無를 따지지 않고 課稅된다.

한편, 日本에서 銀行 等에 預金함으로써 생기는 利子收入, 株式 所有로 생기는 受取配當, 또 日本의 不在住宅 等을 賃貸함으로써 생기는 不動産所得은, 日本의 國內源泉所得이고 日本에서 納稅義務가 생기지만 만일, 이것이 싱가포르에 送金된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課稅對象이 된다. 이 경우, 日本에서 納付한 所得稅는 싱가포르의 所得計算上 外國稅額控除對象이 되어, 原則的으로 二重으로 課稅되는 일은 없다.

일본에 住所를 두고 있던 者가 「國外에서 繼續해서 1年 以上 居住할 것을 通常 必要로 하는 職業을 가졌다」라는 前提로 國外에 居住하게 된 境遇에, 그 者는 日本國內에 住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推定되어, 出國時點에 、日本에선 非居住者로, 不在住宅手當 및 賞與金은 日本國外源泉所得이기 때문에, 日本에서는 非課稅된다.

Ⅲ. 課稅所得의 種類

1. 課稅所得

課稅所得은 「總所得金額—各種 控除金額」에 의해 計算된다.

2. 總所得金額의 主된 項目

(1) 給料·賞與金 等의 合計金額 및 住宅手當, 通勤手當, 海外勤務手當

等 各種 手當

(2) 個人所得稅의 會社負擔分

① 日本系 企業에서는 會社가 個人의 所得稅를 負擔하고, 실수령액으로 本人의 給料를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다.

會社가 支拂하는 個人所得稅는 個人에겐 所得으로 되어, 여기에 대해 다시 所得稅가 부과되고, 그만큼 또 所得에 算入되어 課稅되는 것이 되풀이된다.

이와 같이 會社가 從業員의 所得稅를 負擔할 경우, 個人의 課稅所得計算方法에는 2種類가 있다. Tax on Tax方式과 보너스(Tax Reimbursement)方式이다.

㉠ Tax on Tax方式

이것은 本人에게 支拂된 실수령액의 給料를 근거로, 그 稅包含金額을 計算하여(gross up한다), 이것을 근거로 算出된 所得稅額을 翌年의 賦課時에 會社가 直接支拂하는 方法이다. Tax on Tax方式은 所得稅를 發生基準에 根據하여 計算하는 方法이다.

㉡ 보너스方式

보너스方式은 現金基準에 근거하여 計算하는 方式인데, 예를 들어 1986年은 本人의 실수령액을 總所得金額으로 納付稅額을 計算하여, 1987年에 이것을 本人이 納稅하고, 同時에 會社가 本人에게 이 納稅額을 1987年分 보너스로 支給하는 方法이다.

싱가포르의 稅務當局은, 會社가 個人의 所得稅를 負擔한다고 하는 規定이나 個人과 了解가 있으면, Tax on Tax方式을 採擇

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이 Tax on Tax方式과 보너스方式 중 어느 쪽이 有利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稅率의 變更이 없으면 몇월에 싱가포르에 赴任하는가, 몇월에 日本에 歸國하는가에 따라, 또 몇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勤務하는가에 따라, 보너스方式이 有利한가 Tax on Tax方式이 有利한가가 달라진다.

㉡ 將來 減稅가 있을 豫定일 때에는 보너스方式이 有利하다.

㉢ 金利效果를 생각하면, 會社는 Tax on Tax方式쪽이 먼저 稅金分을 費用으로 計上할 수 있으니까 有利하지만, 個人의 稅金은 Tax on Tax方式쪽이 보너스方式보다도 먼저 多額을 支拂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不利하다. 단 赤字會社 및 파이어니어企業 等 免稅企業의 경우, 法人稅를 支拂할 必要性이 없기 때문에 보너스方式이 有利하다.

(3) 現物給與

給料·手當 等 現金으로 支給되는 項目 以外로, 個人이 會社로부터 經濟的 利益供與를 받고 있다고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項目.

① 從業員의 住宅이 會社로부터 支給되는 境遇, 즉 會社의 賃貸社宅을 從業員이 使用하든지, 또는 會社所有의 社宅을 從業員이 使用할 境遇 다음의 ㉠ 또는 ㉡ 어느 쪽이든 낮은 金額이 課稅對象이 된다.

㉠ 本人 總所得金額의 10% 相當額

㉡ 家賃의 實際支拂額 또는 當該 家屋의 年度評價額

② 任員의 住宅이 會社로부터 支給되는 境遇

㉠ 當該 住宅이 「The Control of Rent Act」範圍 內에 있을 境遇 — 當該 家屋의 年度評價額이 課稅對象으로 된다.

㉡ 當該 住宅이 「The Control of Rent Act」範圍 外에 있을 경우 上記 ①과 같다.

③ 會社로부터 支給된 住宅에 家具 等이 딸려 있는 경우, 또는 家具 等이 會社로부터 支給된 경우에는, 下記의 基準金額이 課稅對象이 된다.

㉠ 하드 퍼니처(격자, 테이블, 침대 等)
: 個數에 상관없이 月 5달러

㉡ 소프트 퍼니처(쿠션, 커튼, 카펫 等)
: 個數에 상관없이 月 5달러

㉢ 冷藏庫 : 1臺에 月 10달러

㉣ 天井扇 : 1臺에 月 1달러

㉤ 레인지 : 1臺에 月 2.5달러

㉥ 에어컨 : 1臺에 月 10달러(0.745/Kw 以下)
1臺에 月 15달러(0.745/Kw 超過)

㉦ 洗濯機 : 1臺에 月 15달러

㉧ 乾燥機 : 1臺에 月 15달러

㉨ 盤洗機 : 1臺에 月 15달러

㉩ 集中 에어컨 設備付 住宅 : 居間·食堂 — 1룸에 月 15달러
寢室·其他룸 — 1룸에 月 10달러

㉪ 풀 : 月 100달러

㉣ 텔레비전 : 月 30달러

㉤ 水道光熱費, 電話料,

가정부에 支拂 : (實際支拂額)

④ 會社가 從業員에 社宅을 提供하는 대신 호텔에 宿泊시켜, 그 호텔費를 會社가 負擔할 境遇에는, 다음 ㉠ 및 ㉡의 合計額이 課稅對象으로 된다.

㉠ 어른 1人에 대해 月 250달러

7歲 以上의 어린이 1人에 月 100달러

3歲 以上 7歲 未滿의 어린이 1人에 月 50달러

3歲 未滿의 어린이 1人에 月 25달러

㉡ 本人의 호텔 滯在期間中의 給料·賞與金 等의 2% 相當額

⑤ 社用車(car)를 本人의 私用目的으로 使用할 경우, 다음 部分에 따라 그 各各의 金額이 課稅對象으로 된다.

㉠ 자기가 運轉할 境遇

· 本人이 휘발유비를 負擔하는 경우 … 1마일에 10센트부터 15센트

· 會社가 휘발유비를 負擔하는 경우 … 1마일에 20센트부터 30센트

㉡ 會社의 運轉手가 딸린 境遇

· 上記 ㉠과 같다.

· 運轉手의 給料를 社用分과 私用分으로 按分한다.

⑥ 從業員 및 그 家族이 日本에 home leave를 위해 會社로부터 支拂되는 旅費, 具體的으로 夫婦는 1年에 1回分, 어린이는 1年에

2回分에, 그 旅費의 20% 相當額이 課稅對象이 된다. 즉 夫婦가 1年에 2回 以上 home leave했을 경우에는, 1回째는 그 旅費의 20%가 課稅對象이 되나, 2回 以上은 그 全額이 課稅對象으로 된다.

⑦ 子女의 敎育費를 會社가 負擔한 境遇에, 그 金額이 課稅對象이 된다.

3. 各種 控除項目

居住者는 總所得金額에서 다음을 控除할 수 있다.

(1) 基礎控除 2,000달러

(2) 給與所得控除

本人이 55歲 未滿의 경우 1,000달러

本人이 55歲 以上 60歲 未滿의 境遇 3,000달러

本人이 60歲 以上의 境遇 4,000달러

(3) 配偶者控除 1,500달러

(4) 扶養控除(子女)

① 1973年 8月 1日 以後에 3人 以下의 子女를 가진 境遇

第1子 및 第2子에 대해 750달러

第3子에 대해 500달러

② 1987年 1月 1日 以後에 3人 以下의 子女를 가진 境遇

第1, 第2 및 第3子에 대해 各 750달러

③ 1989年 1月 1日 以後에 3人 以下의 子女를 가진 境遇

第1, 第2 및 第3子에 대해 各 1,500달러

例外로 16歲 以上의 子女가 日本에서 日本學校에 通學하고 있을 경우, 즉 싱가포르에서 日本과 같은 敎育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日本學校에 通學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上記의 2倍의 控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日本 또는 外國에서 子女가 外國人學校에 通學할 경우에는 아무리 16歲 以上이라도 2倍의 控除를 받을 수는 없다.

(5) CPF賦金控除

CPF賦金은 通常 賃金의 40%를 限度로 課稅所得計算上 全額控除된다.

(6) 其他

生命保險料(싱가포르의 保險會社에 支拂하고 있는 것에 한함)控除, 障害者子女控除, 障害者控除(55歲 以上), 分娩費 및 그 關聯醫療費 等의 控除가 認定된다.

4. 非課稅所得

(1) 退職金

退職金이 非課稅所得으로 되기 위해서는 病患 또는 55歲 以上이 되어 常時勤務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만이다.

(2) 死亡退職金

(3) 死亡 또는 障害에 대한 慰問金

(4) 中央厚生年金(Central Provident Fund)에서 脫退時에 받는 賦金의 返濟金(利子를 포함)

(5) 郵便貯金에서 생기는 利子(居住者, 非居住者)

(6) 싱가포르 滯在日數가 60日 未滿인 非居住者(싱가포르 會社의 非常勤任員, 芸能人, 音樂家 및 職業運動家 等은 제외)의 給與所得

(7) 非居住者가 싱가포르 政府承認의 銀行으로부터 받는 預金의 利子

(8) 非居住者가 싱가포르 國外源泉所得을 싱가포르에 送金한 境遇의 當該 送金額

(9) 非居住者가 保有하는 아시아 달러債에서 생기는 利子

(10) 會社가 個人의 醫療費 및 定期健康診斷費用을 支拂했을 경우 그 金額

(11)「캐피탈 게인」

(12) 파이어니어企業 等으로부터 受取配當金

Ⅳ.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1. 計算方法

(1) 居住者가 샐러리맨일 境遇, 納付해야 할 稅額은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總所得金額	給料·賞與金 等의 合計金額
	個人所得稅의 會社負擔分 等 各種 手當
	現物給與
	預金利子·受取配當金 等

— (差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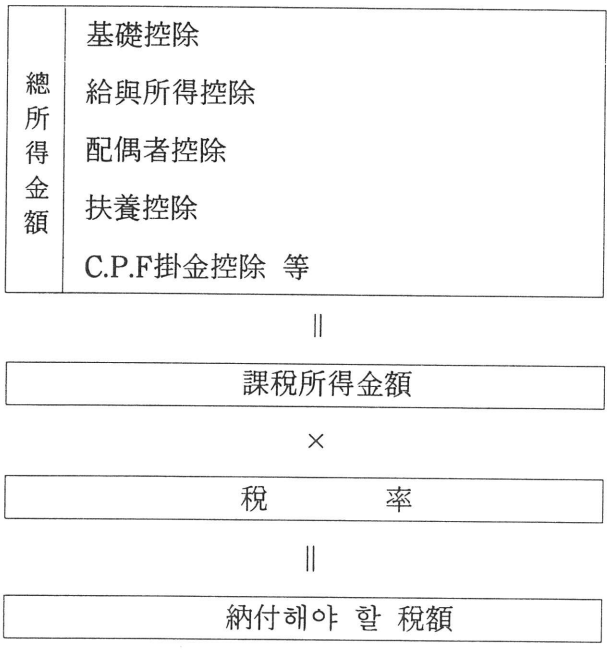

⑵ 非居住者인 境遇에는 居住者와 똑같이 計算된 稅額과 總所得金額에 一定 稅率(15%)을 곱하여 계산된 稅額 중 많은 金額이 納付해야 할 稅額이 된다.

2. 納付稅額의 計算例(居住者의 境遇)

前提 ① 싱가포르에서의 給料手當(1988年度) S$ 52,000

② 日本에서 받은 賞與金 15,000

67,000

③ 家賃은 全額 會社負擔 月 S$ 3,000×12=S$ 36,000

④ 扶養家族 妻, 子女 2人(國民學生)

⑤ 家具付 (하드와 소프트)

(冷藏庫 1)

(레인지 1)

(에어컨 3)

(1) 稅金이 自己負擔일 境遇

給料·賞與金

現物給與

家具(하드와 소프트)	S$ 10×12個月=S$ 120	
냉장고	10×12個月=120	
레인지	2.5×12個月=30	
에어컨	15×3×12個月=540	810
		67,810
家賃(36,000와 67,810×10% 어느 쪽이든 낮은 쪽)		6,781
		74,591

控除

基礎控除	S$ 2,000	
給與所得控除	1,000	
配偶者控除	1,500	
扶養控除(750×2人)	1,500	6,000
課 稅 所 得		S$ 68,591
納 付 稅 額		
最初의 S$ 50,000(稅率表에서)		5,846.25
18,591(18,591×21%)		3,904.11
S$ 68,591		S$ 9,750.30

(2) 稅金이 會社負擔인 境遇

・우선 稅金은 自己負擔인 것으로 計算한다.

納付稅額은 最初의 S$ 50,000		S$ 5,846.25
다음의	18,591	3,904.11
	S$ 68,591	S$ 9,750.36
25,000－(68,591－50,000)＝6,409×21%＝1,345.89		
9,750.36－6,409＝3,341.36×24% ＝	801.92	2,147.81
2,147.81×24/76		678.25
給料, 賞與金 및 家具 等에 대한 稅金負擔分		12,576.42
家賃에 대한 稅金負擔分		
12,576.42×10%×24/76		397.15
397.15×10%×24/76		12.54
12.54×10%×24/76		0.39
稅金의 會社負擔分 合計		S$ 12,986.50

・稅金의 會社負擔分을 考慮한 課稅所得을 근거로 稅金을 計算한다.

給料・賞與金		S$ 67,000
現物給與		
家具 等 ((1)과 같음)	810	
稅金의 會社負擔分 合計	12,986	13,796
		80,796
家賃 (36,000과 80,796×10% 중 적은 쪽)		8,079
		88,875
控除 ((1)과 같음)		6,000
課稅所得		S$ 82,875

納付稅額	
最初의 S$ 75,000 (稅率表에서)	S$ 11,096.25
다음의 7,875 × 24%	1,890
S$ 82,875	S$ 12,986.25

Ⅴ. 申告書의 提出·納付

1. 申告書의 入手

通常의 境遇 每年 1,2月경 國內歲入廳(Inland Revenue Department)으로부터 納稅者인 各 個人 앞으로 申告書(Income Tax Return)樣式이 送付된다. 申告書 樣式을 보내는 時期에 대해서는 各 個人에 따라 相當히 차이가 있다.

어떻든 納稅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課稅年度의 3月 31日까지 申告書 樣式을 보내오지 않았을 境遇에는 4月 14日까지 申告書 樣式의 送付를 申告書에 記入하여 請求해야 한다.

또한 使用해야 할 申告書 樣式은,

居住者의 境遇 Form B

非居住者의 境遇 Form M이다.

2. 申告書의 作成·提出

申告書 樣式이 도착하면 樣式의 發行日부터 21日 以內에 必要事項을 記入하여, 또 Form IR8A(日本의 源泉徵收票에 該當함)를 添附하여, 署名後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게 提出(送付)해야 한다.

所得의 計算對象期間은 샐러리맨의 경우,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曆年이고, 그 曆年의 所得에 대해 그 翌年度(이것을 課稅年度〈Year of Assessment〉라고 부른다)에 稅額이 賦課되어, 納付하지 않으면 안된다.

3. 所得稅 納付

申告書 提出後 얼마 있다가(그 時期는 各 個人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通常은 2~3個月後), 課稅通知書(Notice of Assessment)가 보내진다.

이 課稅通知日부터 30日 以內에 記載된 稅額을 納付해야 한다.

納付해야 할 稅額은 꼭 申告額과 同額은 아니고,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의해 얼마간의 修正이 있을 수도 있다.

通知된 課稅額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대해 異議申請書를 提出하여 再審査, 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단, 稅金의 納付는 異議 여부에 상관없이 課稅通知日부터 30日 以內에 納付해야 한다.

更正에 의해 稅額이 減額된 境遇, 差額은 後日 還付되든가 또는 翌年度의 要納付稅額과 相殺된다.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않는 경우에는 納付해야 할 稅額의 5% 相當額의 延滯稅가 붙는다.

4. 分割納稅制度를 利用하는 境遇

위와 같이 個人所得稅의 納付는 原則的으로 課稅通知日부터 30日 以內에 納付해야 하지만 申請에 의해 分割로 納稅하는 것도 인정된다.

所定의 分割條件은 없고,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의 裁量에 의해 決定되지만 承認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標準的인 分割納稅의 例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支拂開始月日	支 拂 方 法
1月 31日	同年 10月까지의 10回 均等拂
2月 28日	同年 10月까지의 9回 均等拂
3月 31日	同年 10月까지의 8回 均等拂
4月 30日	同年 10月까지의 7回 均等拂
5月 31日	同年 10月까지의 6回 均等拂

또 課稅通知書를 받은 후에도 申請하면 10月末까지 分割納稅가 인정된다.

通常은 10月末 以後의 分割支拂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分割支拂을 해도 利子稅는 賦課되지 않는다.

Ⅵ. 着任時와 歸任時의 手續

1. 着任時의 手續

(1) 싱가포르에 새로 赴任해 온 사람은 到着日부터 1個月 以內에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勤務한다는 취지의 通知를 해야 한다.

(2) 또 Employment Pass 取得後 수개월 지나서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로부터 當該 個人에 대해 質問狀이 送付되므로 여기에

대해 返答을 해야 한다.

(3) 會社는 새로 從業員을 雇用했을 경우에는 雇用開始日부터 3個月 以內에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앞으로 「Notification by Employer of an Employee's Commencement of Employment(Form IR 22)」를 提出해야 한다.

2. 歸任時의 手續

(1) 싱가포르에서 年의 途中에 歸國할 境遇에는 그해의 1月 1日부터 歸國日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를 納付해야 한다.

(2) 會社는 從業員의 歸國豫定日보다 1個月 以上 前에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Notification by an Employee's Cessation of Employment or Departure from Singapore」(Form IR 21)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된다. 提出後 얼마 후에 課稅通知書가 送付되므로 이 金額을 納付하고 歸國할 수 있다.

VII. 居住者의 稅率表(課稅年度 1987年 以後)

	課稅所得	稅 率	稅 額
最初의	S$ 5,000	3.5%	S$ 175
다음의	2,500	6	150
最初의	7,500		325
다음의	2,500	8	200
最初의	10,000		525

다음의	5,000	8	400
最初의	15,000		925
다음의	5,000	9	450
最初의	20,000		1,375
다음의	5,000	12	600
最初의	25,000		1,975
다음의	10,000	14	1,400
最初의	35,000		3,375
다음의	15,000	17	2,550
最初의	50,000		5,925
다음의	25,000	21	5,250
最初의	75,000		11,175
다음의	25,000	24	6,000
最初의	100,000		17,175
다음의	50,000	26	13,000
最初의	150,000		30,175
다음의	50,000	28	14,000
最初의	200,000		44,175
다음의	200,000	31	62,000
最初의	400,000		106,175
	400,000 超過	33%	

(註) 1. 新稅率은 課稅年度 以後에 適用되고, 이 境遇도 S$ 78.75(最初의 S$ 10,000에 대한 稅額 S$ 525의 15%)의 리베이트가 인정된다.

2. 賦課年度 1990年 및 1991年에 한해 納稅額의 5% 리베이트가 認定된다.

第 3 章

法 人 稅

概 要

1. 居住法人의 判定은 日本의 本店所在地 基準과 달리 소위 管理支配地基準이고, 設立國이 어딘가를 불문하고 management와 control이 싱가포르에 있으면 居住法人으로 認定된다.
2. 國外源泉所得은 싱가포르에 送金되지 않는 한 非課稅이다.
3. 曆年基準에 근거한 賦課課稅制度 때문에 3月決算의 會社에서는 稅의 確定까지 2年 程度의 期間이 걸린다.
4. 企業會計와 稅法이 完全히 分離되어 있어 日本과 같이 企業會社가 稅法을 追從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會計上의 損益計算書의 稅前利益으로부터 시작하여 , 稅法上의 加算, 減算을 하는 방법으로 課稅所得을 算定한다.
5. 配當金의 國外送金에 대한 源泉徵收制度는 없으나, 法人稅相當額을 控除하는 源泉控除가 實施된다.
6. 二重課稅 排除는 外國稅額控除制度에 의하고 있으나 日本보다 控除범위가 좁다.

Ⅰ. 納稅義務者

(1) 法人稅의 納稅義務者는 法人이다.

法人이란 싱가포르 또는 外國에서 싱가포르 또는 當該 外國의 法律에 근거하여 設立된 會社이다.

(2) 納稅義務者의 區分

納稅義務者는 管理支配地 基準에 따라 居住法人과 非居住法人으로 나누어진다.

① 居住法人 — 싱가포르의 會社法을 근거로 設立되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任員會議가 싱가포르에서 開催되며, 싱가포르에서 任員이 當該 會社의 業務執行 運營 및 管理를 하고 있으면, 當該會社는 싱가포르 稅法上 싱가포르 居住法人이 된다.

② 非居住法人 — 居住法人 이외의 法人이며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會社法에 근거하여 設立되고, 싱가포르에서 營業活動을 하고 있어도 任員會議가 外國에서 開催되고, 任員이 外國에서 該當 會社의 業務執行을 運營 및 管理를 할 경우에는 該當 會社는 싱가포르 稅法上 非居住法人이 된다.

Ⅱ. 課稅對象

居住法人, 非居住法人 모두 原則的으로

(1) 싱가포르에서 생긴 所得(Accruing in), 또는

(2) 싱가포르에서 稼得하는 所得(Derived from) 및

(3) 싱가포르에서 受領하는 所得(Received in) (싱가포르 國外源泉所得 중에서 싱가포르에 送金되지 않는 金額은 非課稅이다)이 課稅對象이 된다.

Ⅲ. 所得의 種類

다음의 4가지이다.

(1) 事業所得

(2) 配當, 利子 또는 割引料

(3) 賃貸料, 使用料 等 資産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4) 其他所得의 性質을 가진 利得 또는 利益

Ⅳ. 稅率

: 31%

(1) 國稅에만 있고, 地方稅는 없다.

(2) 日本에서와 같은 同族會社인 留保金課稅 및 土地重課 等 特別한 課稅는 없다. 단, 다음의 所得 等에 대해서는 輕減稅率이 適用된다.

① 金融機關의 ACU(Asian Currency Unit) 거래에서 생긴 所得 ……10%

② 保險會社의 Off—Shore 所得 …10%

③ 金去來業者의 Off—Shore 金去來에서 생긴 所得 …10%

④ Monetary Authority Singapore(MAS)에서 Fund Management로

認可를 얻은 會社의 手數料에서 생긴 所得 …10%

⑤ 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SIMEX)會員의 Off—Shore 去來에서 생긴 所得 … 0～10%

⑥ EDB로부터 OHQ(經營統轄本部)의 認可를 얻은 會社가 一定 條件 아래서 받는 Management Fee, 利子 및 로열티 … 10%(配當收入은 免稅)

⑦ MAS의 認可를 얻은 證券會社의 싱가포르 以外의 證券去來 및 仲介 等에 의해 獲得한 所得 … 10%

⑧ TDB로부터 AIT(承認된 國際貿易業者)의 許可를 얻은 會社가 一定한 條件 아래서 얻은 所得 … 10%

⑨ 財政金融센터(Finance and Treasury Centre)에 의한 Finance Service로 생긴 所得 … 10%

Ⅴ. 事業年度

會社는 自由롭게 決算日을 選定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親會社에 맞추어 3月 31日을 決算日로 하든지, 12月 31日을 決算日로 하는 것은 可能하다. 단, 싱가포르 稅法은 曆年基準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2月 31日 以外의 決算日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課稅所得 計算上 特別한 手續이 必要하다.

Ⅵ. 賦課課稅

싱가포르 稅法은 日本과 같이 自主納稅申告制度가 아니고, 納稅者로부터 提出된 資料를 근거로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가 賦課되는 賦課課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이 賦課課稅는 曆年(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基準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事業年度가 1990年 1月 1日부터 1990年 12月 31日인 會社의 境遇

이 會社는 12月 31日이 決算期이기 때문에 稅務上의 曆年基準과 一致한다. 이 1990年 12月 31日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대하여, 1991年에 法人稅의 課稅가 이루어진다. 1990年 12月 31日期는 稅務上 基準年度(Basis Year), 1991年은 賦課年度(Year of Assessment)로 불린다.

(2) 事業年度가 1989年 4月 1日부터 1990年 3月 31日인 會社의 경우

이 會社의 基準年度는 1990年 3月 31日期이고 賦課年度는 (1)의 會社와 같은 1991年이다.

納稅義務者의 各 賦課年度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은 基準年度에 稼得한 所得金額이다.

이 境遇에 上記 (2)의 會社의 基準年度 所得 金額은 1989年 4月 1日부터 1990年 3月 31日까지의 事業年度의 事業所得 金額에 1990年 1月 1日부터 1990年 12月 31日까지의 曆年에 稼得한

① 配當, 利子 또는 割引料

② 賃貸料, 로열티, 그외 다른 資産에서 생기는 所得을 加算한 金額

이다.

즉 事業所得은 曆年基準에 의하지 않고 當該 會社의 事業年度에 근거하여 그 翌年에 賦課되나, 事業所得 以外, 즉 上記 ① 및 ②는 當該 會社의 事業年度에 相關없이 曆年基準를 근거로, 그 翌年에 賦課된다.

Ⅶ. 申告期限

1月이나 2月경에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로부터 法人稅申告書(Form C)가 送付된다. 이 Form C가 2月 1日 以前에 發行된 境遇에는 2月 21日까지, 2月 1日 以後에 發行되었을 경우에는 發行日로부터 21日 以內에, Form C에 監査證明付의 決算書 等, 課稅所得金額 및 納付稅額의 計算明細書를 添附하여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앞으로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合理的인 理由가 있으면 提出期限의 延長이 認定된다.

課稅所得金額 및 納付稅額의 計算明細書의 添附는 The Income Tax Act上 要求하지는 않으나 添附하는 것이 實務上 慣習이다.

만일 Form C가 3月 31日까지 送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4月 14日까지 申告書의 送付를 請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Ⅷ. 法人稅의 納稅

Form C를 提出한 後 數個月 있으면 課稅通知書(Notice of Assessment)가 送付된다. 이 課稅通知書 發行日부터 30日 以內에 當該 稅額을 納付

해야 한다. 단, 分割納付도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의 承認에 따라 認定된다.

IX. 豫定納稅

決算期가 9月 30日이나 또는 그 以前인 會社는 當該 決算期 終了後 3個月 以內에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當該 決算期의 見積課稅所得을 通知해야 한다.

이 通知後 얼마 있으면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가 課稅通知書를 送付한다. 이 課稅通知日付부터 1個月 以內에 當該 稅額을 豫定納付해야 한다.

그러나, 通常 다음 分割豫定納付를 認定한다.

① 決算日의 翌日부터 10回 分割支拂

② 決算日의 2個月後부터 8回 分割支拂

③ 決算日의 3個月後부터 6回 分割支拂

④ 決算日의 4個月後부터 4回 分割支拂

⑤ 決算日의 5個月後부터 10回 分割支拂

이 賦課課稅는 暫定的인 것이고 正式 申告 및 여기에 대한 賦課課稅는 決算期에 屬하는 曆年의 翌年에 이루어지고 豫定納稅額과 確定賦課額과의 差額調整, 즉 還付 또는 追徵은 이 時點에서 하는 것이 原則이다.

X. 利子稅, 延滯稅

分割納付로 納稅해도 利子稅가 課稅되는 일은 없다.

단, 確定稅額 및 分割稅額을 納期限까지 納稅하지 않는 境遇에는, 納付해야 할 稅額의 5%의 延滯稅 支拂이 要求된다.

延滯稅 支拂請求日부터 60日 經過後의 未拂稅金에 대해 매달 追加 1%의 延滯稅(最高 12%)가 더 加算되어 合計 17%가 最高延滯稅率이 된다.

XI. 課稅所得의 計算

1. 原則

(1) 稅法上 특히 要求되는 會計處理

日本에서는 예를 들어 減價償却費의 損金算入과 같이 一定한 項目에 대해 損金에 算入하기 위해서는 損金經理(確定된 決算에서 費用 또는 損失로 經理하는 것)가 要件이기 때문에 企業會計가 稅法에 追從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없고, 企業會計와 稅法은 完全히 分離되어 있어 企業會計가 稅法에 追從하는 일은 없다.

The Income Tax Act에는 稅法 獨自의 會計處理는 規定되어 있지 않고, 一般的으로 公正妥當이라고 認定되는 會計基準에 따라 財務諸表가 作成되고, 公認會計士(Certified Public Accountant)가 該當 財務諸表는 適正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意見表明을 하고 있으면 當該會社의 會計處理는 稅法上으로 適正하다고 간주된다.

또한 稅務當局은 直接·間接을 따지지 않고, 下記를 意圖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當該 去來를 修正하며 또한 收益 또는 利益의 再計算 等을 포함한 所得 等을 認定하는 權限이 稅務當局(The Comptroller)에 주어져 있다(行爲·計算否認規定).

① 納付해야 할 稅金의 範圍를 變更하려는 者

② 稅金의 納付義務 또는 申告義務로부터 피하려는 者

③ 稅法에 근거하여 賦課된 義務를 回避 또는 減하려는 者

(2) 課稅對象

課稅對象은 前述과 같이

① 싱가포르에서 생긴 所得(Accruing in), 또는

② 싱가포르에서 稼得하는 所得(Derived from) 및

③ 싱가포르에서 受領하는 所得(Received in) (싱가포르 國外源泉所得 중에서 싱가포르에 送金되지 않은 金額은 非課稅이다)은 課稅對象이 된다.

즉 上述의 所得金額은 收入合計에서 이 收入을 얻기 위해서만 發生한 支出 및 費用(outgoings and expenses wholly and exclusively incurred in the production of the income), 즉 必要經費를 控除하고 算出한다. 具體的으로 損益計算書의 稅前利益으로부터 시작하여 加算·減算을 하여서 計算된다.

(3) 配當, 利子 等 收入에 대한 特別 課稅制度

前述과 같이 싱가포르는 賦課課稅制度이고 또 課稅年度는 各 會社의 事業年度에 관계없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曆年基準을 채택하고 있다.

이 曆年基準은 會社의 事業所得에 대해서는 適用되지 않으나,

① 配當, 利子 또는 割引料

② 賃貸料, 使用料 等 資産에서 생기는 所得에 대해서는 曆年基準에 근거하여 課稅되는 것이 原則이다.

즉 1989年 4月 1日～1990年 3月 31日期의 會社를 例로 들면, 當該期 事業所得은 當會社의 事業年度에 맞춰서 1991年에 賦課되나 上記 利子 等은 會社의 事業年度에 관계없이 1990年 1月 1日부터 1990年 12月 31日까지 稼得한 收入에 대해 1991年에 賦課된다.

이와 같이 利子 等에 대해서는 曆年基準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課稅所得計算에 대해 特別한 配慮를 할 必要性이 있다.

2. 益金

(1) 未送金 國外源泉所得

法人의 境遇, 싱가포르 國外源泉所得은 싱가포르에 送金된 事業年度에 課稅對象이 된다. 따라서 會計上 國外源泉所得을 收益으로 計上했다고 해도 稅務上엔 送金되지 않으면 課稅되지 않는다.

(2) 未實現 換差益(損)

外貨베이스債權·債務에 대해 期末時 레이트에 따라 評價를 바꿈으로 생긴 換差損益은 會計上엔 그 期의 費用 또는 收益으로 認識되나, 稅務上으로 그 期의 損金 또는 益金으로 認識하지 않고 이것이 實現된 때, 즉 現金으로 回收된 期 또는 現金으로 決濟한 期의 損金 또는 益金이 된다. 따라서, 未實現 換差損 또는 差益은 當期의 申告書上 加算 또는 減算되고, 翌期에 實現되었을 때에, 翌期의 申告書上 前期分

에 대해 減算 또는 加算된다.

(3) 資本去來에서 생긴 實現 換差益(損)

예를 들어 固定資産을 日本에서 円베이스로 購入한 경우 等 資本的 去來로 생긴 實現換差損 또는 差益은 稅務上은 損金 또는 益金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申告書上 加算 또는 減算된다.

(4)「캐피탈 게인(로스)」

싱가포르에서는 예를 들어 固定資産賣却損과 같은「캐피탈 로스」및 固定資産賣却益과 같은「캐피탈 게인」은 會計上은 損失 또는 利益으로 認識해도 稅務上으론 損金 또는 益金으로 되지 않고, 該當 去來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申告書上에「캐피탈 로스」는 加算,「캐피탈 게인」은 減算한다.

3. 損金

(1) 減價償却費

싱가포르에서는 會計上의 減價償却과 稅務上의 減價償却은 완전히 별도로 생각하고 있다. 즉 會計上은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은 전부 會社의 判斷을 근거로 決定되고 이것을 公認會計士가 承認하면, 當該 會社의 減價償却은 適正하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해, 稅務上은 The Income Tax Act에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이 法定되어 있어, 이 Act에 근거하여 算出된 減價償却費만이 損金에 算入된다.

따라서 會計上의 減價償却費는 稅務上의 課稅所得計算上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고 일단 全額 加算하여 會計上의 減價償却費의 計上이 없

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稅法 規定에 準據하여 計算된 金額이 損金에 算入된다. 稅務上의 減價償却制度에 대해서는 後述하는 「XII. 稅務上의 減價償却制度(Capital Allowance)」의 項을 參照할 것.

(2)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

日本에서는 取得價額이 20萬円 未滿의 減價償却資産은 使用한 事業年度에 一時로 損金經理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이와 같은 金額의 基準은 없고, 使用可能期間이 1年 以上인 減價償却資産은, 稅務上 전부 資産計上하여 稅法의 規定에 따른 減價償却費를 損金에 算入한다.

(3) 貸損充當金과 貸損

會計上의 必要性에서 貸損充當金을 計上하는 것은 當然하나, 稅務上엔 實際로 貸損이 確定된 때에 損金으로 認定된다. 따라서 會計上 算入한 貸損充當金은 申告書上 加算된다.

(4) 寄付金

政府 및 特定 團體에 대해 現金에 의한 寄付만이 稅務上에 損金으로 認定된다. 그 以上의 寄付金은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申告書上 加算된다.

(5) 社用乘用車에 드는 費用의 稅法上 損金算入限度額

싱가포르에서 乘用車는 "SB" 및 "E" number plate(個人車)를 붙인 車와 "Q" number plate(社用車)를 붙인 車 및 "SZ" car(rent car) 3종류로 分類되어 있다.

이 중에서 個人車에 대한 휘발유代, 修繕費, 保險料 等의 關聯 諸費用은 稅務上 전부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는다. 또 社用車에 대한 關聯

諸費用은 그 金額이 損金으로 認定되는 것이 아니고, 該當 社用車의 取得價額 중에서 1982年 4月 1日 以後에 取得한 社用車에 대해서는 S$ 35,000(1982年 3月 31日 以前 1979年 4月 1日 以後에 取得한 社用車에 대해서는 S$ 25,000)에 對하는 部分만이 損金으로 認定된다.

예를 들어, 1982年 4月 1日에 取得價額 S$ 50,000의 社用車를 購入하여 이 社用車에 대한 關聯 諸費用이 S$ 2,000로 할 경우,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는 金額은 S$ 2,000 全額이 아니고, S$ 2,000 × S$ 35,000 / S$ 50,000 = S$ 1,400이다. 따라서 S$ 2,000−S$ 1,400 = S$ 600를 申告書上 加算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렌트카에 대해서는 賦課年度 1984年 以後 會社가 會計年度(會社의 事業年度)에 183日 以上 賃借했을 경우, 賃借料, 휘발유代 等의 모든 費用의 損金算入이 認定되지 않게 됐다.

⑹ 創業費 償却額 및 開業費 償却額

日本에서는 創業費(法人設立을 위해 支出하는 費用) 및 開業費(法人設立後 營業을 開始하는 사이에 開業準備를 위해 特別히 支出하는 費用)는, 順延資産으로 計上하고, 任意償却에 의해, 또는 支出時에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나, 싱가포르에서는 營業을 開始할 때까지 필요한 費用은 稅務上 一切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加算한다.

⑺ 新株發行費

會社設立後에 株券을 發行하는 增資에 의해 新株券을 發行했을 경우에 드는 費用은, 稅務上 損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⑻ 罰金·延滯稅 等

소위 penalty 等은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加算한다.

(9) 其他 收入을 얻기 위해 든 費用 以外에 발생한 費用

固定資産에 대한 資本的 支出인 데도 불구하고, 會計上 修繕費로 計上한 경우(稅務上의 減價償却費는 下段에서 損金으로 算入된다) 資本的 去來 때문에 支拂된 辯護士費用, 印紙稅 等, 該當 會社의 營業活動에 無關한 目的 때문에 支出된 交際費 等, 리스 契約上 支拂한 프리미엄 等은 收入을 얻기 위해 든 費用에 發生한 費用으로 申告書上 加算된다.

4. 缺損金의 移越

(1) 前期에서 移越된 稅務上 減價償却費의 未控除金額(Unabsorbed Capital Allowance Brought Forward) 및 前期에서 移越된 稅務上 減價償却費 控除前의 移越缺損金(Unabsorbed Loss Brought Forward)

調整後所得(Adjusted Profit)欄이 마이너스인 境遇에는 調整後缺損(Adjusted Loss)으로 되어 稅務上의 減價償却費가 控除되지 않게 된다. 이 控除되지 않았던 金額은 翌期 以後 控除될 때까지 移越되어, 翌期 以後의 課稅所得(Chargeable Income)과 相殺된다. 즉 稅務上 移越缺損金은,

① 稅務上 減價償却費의 未控除金額(Unabsorbed Capital Allowance)

② 稅務上 減價償却費 控除前의 移越缺損金(Unabsorbed Loss)의 2가지로 分類된다.

이 稅務上 移越缺損金을 利用하기 위해서는 Continuity of Beneficial Ownership Test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稅務上의 移越缺損金은 다음의 條件을 滿足하면, 無期限으로 移越할 수 있어, 將來의 課稅所得과 相殺에 利用할 수 있으나, 만일 株主가

各各의 判定基準에 50% 以上 移動한 境遇에는, 그 移動한 後의 判定基準日 時點에서 過去의 移越缺損金은 消滅되어, 將來 課稅所得이 생긴 境遇에도 相殺할 수 없게 된다.

㉠ 稅務上 減價償却費의 未控除 金額

稅務上의 減價償却費를 控除할 수 없었던 課稅年度의 12月 31日 現在 株主(예를 들어 3月 31日이 決算日인 會社의 境遇에는, 그 翌年의 12月 31日)와 該當 Unabsorbed Capital Allowance를 損金으로 利用하는 課稅年度의 1月 1日 現在 株主가 50% 以上 移動하지 않았을 것.

㉡ 稅務上 減價償却費 控除前의 移越缺損金

調整後缺損(Adjusted Loss)이 發生한 基準年度의 12月 31日 現在 株主(예를 들어 3月 31日이 決算日인 會社의 境遇는 그 해의 12月 31日)와 그 Unabsorbed Loss를 損金으로 利用하는 課稅年度의 1月 1日 現在 株主가 50% 以上 異動하지 않았을 것.

⑵ 設例

① 1985.4.1～1986.3.31期에 調整後缺損이 S$ 1,000 發生하고 1987.4.1～1988.3.31期에 調整後所得이 S$ 1,000 생긴 경우, 該當 會社가 調整後缺損과 調整後所得과의 相殺을 認定받기 위해서는 1986年 12月 31日 現在의 株主와 1989年 1月 1日 現在의 株主가 50% 以上 異動하지 않을 것을 條件으로 한다. 設例의 境遇에는 株主는 A, B, C가 계속 該當 會社의 株主로 있기 때문에 相殺이 認定된다.

事 業 年 度	判定 基準日	株主 (各 株主는 1株씩 保有하고 있음)	調整後所得 (調整後缺損)
1985. 4. 1 ~ 1986. 3. 31		A,B,C	(S$ 1,000)
1986. 4. 1~ 1987. 3. 31		A,B,C	(2,000)
1987. 4. 1~ 1988. 3. 31	1986. 12. 31 1989. 1. 1	A,B,C A,B,C	1,000
1988. 4. 1~ 1989. 3. 31	1982. 12. 31 1990. 1. 1	A,B,C A,D,E	1,500

② 1986.4.1~1987.3.31期에 調整後缺損이 S$ 2,000 發生하고, 1988. 4.1~1989.3.31期에 調整後所得이 S$ 1,500 생긴 境遇, 該當 會社가 그 相殺을 認定받기 위해서는 1987年 12月 31日 現在 株主와 1990年 1月 1日 現在 株主가 50% 以上 異動하지 않을 것을 條件으로 한다.

設例의 境遇에는 1987年 12月 31日 現在 株主는 A,D,E이고, 1990年의 1月 1日 現在 株主는 A,D,E이면 株主는 66.6% 異動했으므로 相殺은 認定되지 않는다. 1987年 3月 31日期의 S$ 2,000의 調整後缺損은, 만일 株主가 將來 A,D,E에서 A,B,C로 다시 바뀌었다고 해도 永久히 將來의 調整後所得과 相殺은 認定되지 않는다.

③ 위의 說明에서 說明의 簡素化를 위해, 調整後所得과 調整後缺損의 相殺만을 예로 들었으나 實際로는 調整後所得과 Unabsorbed

Capital Allowance Brought Forward와의 相殺, 또는 調整後所得에서 稅務上의 減價償却費, 差額償却, 差額賦課 및 Unabsorbed Capital Allowance Brought Forward를 控除한 金額과 Unabsorbed Loss Brought Forward와의 相殺時에 各各의 株主構成이 比較된다.

④ 該當 會社가 Unabsorbed Capital Allowance Brought Forward와 Unabsorbed Loss Brought Forward의 2가지가 있고, 어떤 期에 調整後所得이 생긴 경우에는, 當該 調整後所得은 Unabsorbed Capital Allowance Brought Forward가 最初에 相殺된다.

⑤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는 上記와 같이 移越缺損金과 調整後所得을 相殺할 境遇에는 判定基準日의 株主가 50% 以上 異動하지 않았다는 證明書(外部監査人이 作成한 것)의 提出을 要求한다.

즉 設例의 境遇, 該當 會社의 株主 A,B,C가 日本會社인 境遇에는 該當 A,B 및 C會社의 日本 公認會計士 또는 稅理士가 該當 A,B 및 C會社의 株主가 各各의 判定基準日에서 50% 以上 異動하지 않은 것을 證明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證明書가 없으면 移越缺損金과 調整後所得과의 相殺은 認定되지 않는다.

⑥ 이와 같이 싱가포르 會社의 株主가 會社인 경우에는 싱가포르 會社의 株主가 異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會社의 日本 新會社의 株主構成이 各各의 判定基準日에서 50% 以上 異動하지 않은 것의 證明書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規定의 立法主旨는, 缺損會社를 tax－shelter로 利用하는 것 防止에 있으나, 國家의 要請 等 强制的으로 株主構成을 바꿔버리

는 경우나 上場 및 上場 後의 去來擴大 結果로 생기는 株主構成의 變化 등은 該當 企業에 있어서는 자신의 管理統制 또는 稅務對策의 範圍 밖에 있는 것으로 本來의 主旨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課稅年度 1988年부터 國稅當局은 그 載量에 의해, 아무리 重要한 株主構成에 異動이 있는 境遇에도 그것이 稅務對策과는 無關係한 合理的인 理由로 생긴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예를 들면 株式公開 또는 私有化를 위해 일어나는 異動)에는 同一事業에서 생긴 課稅所得과의 相殺에 한해 移越缺損金의 相殺을 認定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XII. 稅務上의 減價償却制度(Capital Allowance)

1. 會計上의 減價償却과 稅務上의 減價償却

前述과 같이 싱가포르에서는 會計上의 減價償却과 稅務上의 減價償却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한다. 즉 會計上,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은 모두 會社 任員의 判斷에 의해 決定되고 이것을 公認會計士가 承認하면, 當該 會社의 減價償却은 適正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稅務上은 The Income Tax Act에 減價償却資産,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이 法定되어 있고 이 Act에 根據하여 算出된 減價償却費만이 損金에 算入된다. 따라서 會計上의 減價償却費는 稅務上의 課稅所得 計算上, 損金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대신 特定 範疇에 屬하는 固定資産에 대해 Capital Allowance라는 稅法所定의 償却費를 損金에 算入하는 것은 인정된다.

2. 稅務上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稅務上, 減價償却(Capital Allowance)은

(1) 産業用 建設 및 構築物

(2) 機械 및 設備

(3) 「플랜테이션」(Plantation)에 관련된 資本的 支出

(4) 鑛山에 관련된 資本的 支出에 대해 認定된다.

3. 減價償却(Capital Allowance)의 種類

(1)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

通常의 償却 — 取得時償却(Initial Allowance)

通常의 償却 — 年次償却(Annual Allowance)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Balancing Allowances or Balancing Charges)

(2) 機械 및 設備(車輛運搬具를 제외)

通常의 償却 — 取得時償却

通常의 償却 — 年次償却

特別償却(Accelerated Allowance)

割增償却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

(3) 車輛運搬具(社用車로 登錄된 것에 한함)

通常의 償却 — 取得時償却

通常의 償却 — 年次償却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

(4) 去來法(Replacement Basis)에 의한 償却

小型, 少額의 工具·器具·備品 等 耐用年數가 比較的 짧은 資産에 適用된다.

4. 産業用建物 및 構成物의 減價償却

(1)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定義

① 다음과 같은 「産業用」에 使用되고 있는 建物 및 構築物을 말한다.

㉠ 工業 또는 그것과 類似한 施設 때문에 使用되고 있는 建物 및 構築物

㉡ 運送, 독(dock), 水道 및 電氣事業을 위해 使用되고 있는 建物 및 構築物

㉢ 製造 및 加工業(試驗研究 포함)을 위해 使用되는 建物 및 構築物

㉣ 캔틴, 休憩, 娛樂室 等에서 上記 ㉠~㉢에 關聯되는 企業이 雇用하고 있는 從業員의 福祉厚生에 使用되는 建物 및 構築物

㉤ 觀光助成, 旅行業 振興을 위해 使用되는 建物 및 構築物(호텔을 除外)

㉥ 農耕技術, 園藝, 水産 및 그외 承認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使用되는 建物 및 構築物

㉦ 特定의 倉庫業에 使用되고 있는 建物 및 構築物

ⓞ 橋, 댐, 道路, 排水梁, 휀스(fence), 우물 및 터널 等의 附屬設備로 上記 ㉠~㉢의 目的에 使用되고 있는 것

② 따라서 住宅, 店鋪, 쇼룸, 호텔, 事務所用建物 및 거기에 附隨하는 建物 및 構築物은 「産業用」으로는 認定되지 않고 償却對象도 되지 않는다.

③ 한 建物의 一部만을 産業用으로 使用하고 나머지를 非産業用으로 使用할 경우(예를 들어 工場建物의 一部에 事務所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非産業用으로 使用되는 部分의 코스트가 當該構築物 코스트의 10% 以下인 境遇에는 該當 建物 및 構築物 全體가 「産業用」으로 간주된다. 10%를 넘는 경우에는 産業用部分에 대해서만 償却對象이 된다. 또한 産業用 및 非産業用部分의 코스트 算定이 實務上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全體 코스트를 使用面積比로 按分하는 等 代替的 方法도 認定된다.

⑵ 償却對象이 되는 支出

① ⑴의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에 대한 支出이고 下記에 該當할 때만 減價償却對象이 된다.

㉠ 所有者인 納稅義務者 自身의 營業 때문에 該當 建物 또는 構築物을 使用하는 境遇

㉡ 納稅義務者가 所有하는 建物 및 構築物이 그 賃借人에 의해 ⑴에 설명된 「産業用」으로 使用되는 境遇. 즉 工場用 建物이지만 그것이 賃借人에 의해 實際로는 「産業用」으로 使用되지 않는 한, 所有者의 課稅所得計算上, 該當 建物에 대한 減價償却은 認定되지 않는다.

② 償却對象이 되는 支出의 內容

稅法上의 規定은 없으나 通常 아래와 같이 建物 및 構築物 取得에 直接 使用된 支出이 包含된다.

㉠ 建物 및 構築物 建設 때문에 發生한 整地費用

㉡ 建築家에 대한 報酬

㉢ 建築承認을 얻기 위한 關聯 諸費用

㉣ 旣存建物을 허는 費用

㉤ 建物 自體의 建築 코스트

㉥ 配管·排水·電氣 等 建物 建設에 附隨하는 工事에 대한 支出

㉦ 法的 諸費用, 印紙稅 等으로 該當 建物에 直接關聯하는 것

③ 建賣의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을 購入한 境遇

建設業者 等으로부터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을 購入한 境遇에는, 稅務上 다음을 條件으로 自家建設의 建物 및 構築物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의 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이 인정된다. 단 償却對象이 되는 支出은 建設業者의 建設 코스트(利益을 포함하지 않음), 또는 實際 購入價格 中 어느 쪽이든 낮은 쪽이다(現在 J.T.C의 建設에 의한 建物의 境遇, 購入價格의 95%가 建設 코스트로 간주된다).

㉠ 該當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이 그 建設業者로부터 購入되었든지, 또는 該當 建物 等에 대해 25年을 넘는 Lease Hold Interest가 設定되어 있을 것.

㉡ 該當 建物이 지금까지 어떤 者에게도 使用된 일이 없을 것.

㉢ 該當 建物 等의 建設業者가 該當 建物 等에 대해 取得時償却

을 自己의 所得計算上 計上한 일이 없을 것.

(3) 償却

① 取得時償却(Initial Allowance)

支出이 있었던(또는 債務가 確定한) 年度에 支出額(債務確定額)의 25%를 償却한다. 建物 및 構築物의 完成은 取得時償却 條件으로 치지 않는다. 또한 新築建物에 대한 支出만이 아니고 既存建物의 增改築으로 간주된 支出도 取得時償却 對象이 된다.

② 年次償却(Annual Allowance)

取得價額의 3% 相當額의 償却을 各 課稅年度에 실시한다. 따라서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償却期間은 年次償却 開始後 25年(즉 100—25÷3)이다.

또한 償却計算을 할 때, 建物 및 構築物의 殘存價額을 考慮할 必要는 없다. 또 建物 等의 取得月 또는 使用開始日에 의한 償却費의 月(日)數按分을 할 必要는 없다. 즉 事業年度의 末日 現在, 다음 條件을 滿足하고 있으면 1年分의 償却費 計上이 認定된다.

年次償却을 하기 위한 條件으로

㉠ 事業年度의 末日 現在, 該當 建物 및 構築物이 이미 完成되어 使用되고 있을 것.

㉡ 事業年度의 末日에 納稅義務者가 該當 建物 等에 대해 法律上의 權利(Relevant Interest)를 가지고 있을 것. 예를 들어 보면 建築 코스트가 S$ 1,000,000인 A社 所有 工場用建物을 B社가 貸借하여 B社가 이것에 더 S$ 500,000을 改築하여 「産業用」으로 使用한 경우, A社는 S$ 1,000,000에 대하여, B

社는 S$ 500,000에 대하여 各各 法律上 權利를 가지고 있어 各各 所得計算上 償却할 수 있다.

③ 中古建物 및 構築物을 購入한 境遇의 年次償却

이 境遇, 取得時償却 適用은 없고, 다음의 ㉠ 또는 ㉡ 中 어느 쪽이든 많은 쪽의 金額이 年次償却으로 計上된다.

㉠ [當該 建物 및 構築物의 購入時에 稅務上의 未償却殘高] × $\frac{1}{25 - \text{前所有者에 의해 이미 年次償却이 이루어진 課稅年度의 數}}$

㉡ 該當 建物 및 構築物의 購入時에 이루어진 未償却殘高의 3% 相當額

(4) 賣却·除却 等이 행해진 境遇의 稅務上 取扱

① 다음 事實이 發生한 境遇에 「差額償却」 및 「差額賦課」라고 불리는 稅務上의 取扱은 認定되고 있다.

㉠ 所有權의 移轉

㉡ Lease Hold Interest의 終了

㉢ 建物 및 構築物을 허는 것

단, 建物 또는 構築物이 最初로 使用된 課稅年度부터 起算하여 26年째의 課稅年度 以後에 위와 같은 事實이 생겨도 「差額償却」 및 「差額賦課」는 適用되지 않는다.

② 差額償却(Balancing Allowances)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賣·除却 收入이 稅務上 未償却殘高를 下廻할 境遇, 그 差額은 過年度의 減價償却不足額으로 간주되어 償却額의 追加計上이 認定된다(設例 參照). 會計上 생긴 固定資産의

賣·除却損益은 稅務上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稅務申告書上에 調整된다.

③ 差額賦課(Balancing Charges)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賣·除却 收入이 稅務上의 未償却殘高를 넘는 境遇, 그 超過額은 過年度에서 減價償却이 過多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課稅對象이 된다. 賣·除却 收入이 建物 等의 取得價額을 넘는 境遇에는, 그 넘는 部分에 대해서는 「캐피탈 게인」으로 간주되어 非課稅된다(設例 參照).

④ 稅務上의 讓渡價額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建物 等의 賣却價額이 取得價額을 넘는 部分에 대해서는, 稅務上 「캐피탈 게인」으로 간주되어 課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稅務上의 특혜를 惡用하여 不當하게 課稅所得의 減額을 시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稅務上 建物 等의 讓渡價額에 관한 어떠한 規制가 必要해진다. 뒤에 살펴볼 機械 等의 稅務上 讓渡價額에 대해서는 The Income Tax Act 第20條(1)에서 公正한 市場價格(Open- Market Price)에 의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나 建物 및 構築物에 대해서는 規定이 없다. 단 The Income Tax Act 第33條에서 不當하게 課稅所得의 減額을 꾀하려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 稅務調査官은 의심가는 去來行爲는 否認하고, 있을 만한 所得金額에 대해 課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具體的으로 建物 및 構築物의 稅務上의 讓渡價額은 機械 및 設備와 같이, 市場價額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建物 等의 讓渡가 關係會社間에 이루어졌을 境遇에는 建物

等의 稅務上 未償却殘高를 稅務上의 讓渡價格으로 하는 것도 認定된다(The Income Tax Act 第24條). 이 境遇 購入側은 該當 建物等의 殘存耐用年數에 근거하여 償却計算을 引繼하게 된다.

(5) 設例

싱가포르法人 A社(決算日 12月 31日)는 1986年 自社 工場用建物의 建設에 着手하여, 1988年 6月 完成後 즉시 使用을 開始했다.

年度別 建設費 支出額은 다음과 같았다.

1986年	S$ 1,000,000
1987年	800,000
1988年	1,200,000
合 計	S$ 3,000,000

A社는 위 建物을 1989年 8月, B社에 賣却處分했다.

위의 例에서 A社의 稅務上의 減價償却費는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1987年 課稅年度)(Year of Assessment 1987)	
取得時償却(S$ 1,000,000의 25%)	S$ 250,000
(1988年 課稅年度)	
取得時償却(S$ 800,000의 25%)	200,000
(1989年 課稅年度)	
取得時償却(S$ 1,200,000의 25%)	300,000
年次償却(S$ 3,000,000의 3%)	90,000
償却累計額	S$ 840,000

(1990年 課稅年度)

① 賣却額 S$ 3,500,000의 境遇

稅務上의 賣却益은 S$ 1,340,000(즉 S$ 3,500,000와 稅務上의 未償却殘高 S$ 2,160,000와의 差額)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S$ 840,000는 過年度의 減價償却의 修正益으로 課稅된다. 差額賦課가 S$ 500,000에 대한 「캐피탈 게인」이고 課稅되지 않는다.

② 賣却額 S$ 2,000,000의 境遇

稅務上으로는 未償却殘高 S$ 2,160,000와 賣却收入額 S$ 2,000,000와의 差額 S$ 160,000에 대해 追加償却이 認定된다(差額償却).

5. 機械 및 設備의 減價償却

(1) 機械 및 設備에 包含되는 것

通常의 機械裝置, 船舶, 航空機, 工具, 器具 및 備品 以外에 事務用機器 및 備品 및 家庭用品(冷藏庫, 에어컨, 라디오, TV세트 等)도 包含된다. 단 커튼, 카펫 等은 뒤에 記述하는 取替法의 對象이 되어, 稅務上 減價償却은 認定되지 않는다.

(2) 償却의 對象이 되는 지출

① 自己 營業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機械 및 設備에 대한 支出

② 機械 및 設備의 設置 때문에 생긴 支出

③ 機械 等의 購入에 直接關聯하여 發生한 換差損에 대해서는 資本的 去來에서 생긴 實現換差損으로 本來 「캐피탈 로스」로서 課稅所得에서 控除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으나 이 境遇 機械 等의 取

得價格을 構成하여 償却의 對象이 된다. 반대로 差益이 發生한 境遇에는 本來「캐피탈 게인」으로 非課稅所得이나 이 境遇 機械等 取得價額에서 控除되기 때문에 換差益分만큼 將來의 減價償却損額은 적어진다.

(3) 償却

① 取得時償却

支出이 있었던 事業年度에 關聯된 課稅年度에 支出額의 20% 償却이 認定된다(債務의 確定으로 支出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② 年次償却

事業年度의 末日에 機械 等이 使用되었다는 것을 條件으로 (9)에 제시하는 償却年數表에 따라 定額法에 의한 償却이 認定된다(1981 課稅年度부터 從來의 定率法을 고쳐, 定額法이 채택되었다).

後述하는 것과 같이 機械 및 設備에 대해서 取得時償却을 實施하는가 안하는가는 파이어니어企業이 아닌 한 企業 任意이다(「8. 減價償却實施의 任意性」參照). 取得時償却을 實施한 境遇에는 機械 等의 取得價額에서 取得時償却額을 控除한 殘額이 年次償却 對象이 되고, 또 取得時償却을 適用하지 않는 境遇에는 機械 等의 取得價額 全額이 年次償却 對象이 된다. 또한 償却計算할 때 機械 等의 殘存價額을 考慮할 必要가 없는 것은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일 境遇와 똑같다.

또 機械 等의 取得日에 의한 償却額의 日(月)數按分을 할 必要는 없다. 즉 取得日이야 어떠하든지 事業年度의 末日 現在, 該當 機械等이 使用되고 있으면 1年分의 償却費 計上이 認定된다.

③ 設例

A社(決算日 12月 31日)는 1988年 11月 타자기를 購入하여 곧 使用을 開始했다(取得價額 S$ 2,000). A社는, 該當 타자기에 대해 稅務上, 取得時償却을 適用하기로 했다.

上例 A社의 償却計算은 다음과 같다.

取得價額	S$ 2,000
(1989課稅年度)	
取得時償却(S$ 2,000×20%)	(400)
年次償却 S$ (2,000- 400)/8年(註)	(200)
(1990 課稅年度)	
年次償却	(200)
1990年 1月 1日 現在 稅務上의 未償却殘高	S$ 12,000

(註) 後揭「(9) 機械 및 設備의 償却年數(年次償却)」參照.

(4) 賣却·除却 等 稅務上의 取扱

① 아래의 事實이 생긴 境遇,「差額償却」및「差額賦課」라는 稅務上의 取扱이 認定된다.

㉠ 機械 等이 納稅義務者의 所有로 돌아갈 수 없게 된 境遇, 즉 賣却 等.

㉡ 機械 等이 歸屬된 企業 營業이 永久히 中止된 境遇

㉢ 機械 等을 永久히 營業에 使用할 수 없게 된 境遇

② 差額償却

前記「4.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減價償却」參照.

③ 差額賦課

前記「4.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減價償却」參照.

④ 稅務上의 讓渡價格

機械 等의 實際 讓渡價格이 該當 機械 等의 公正한 市場價格(Open- Market Price)을 下廻할 境遇, 稅務調査官은 上記의 差額償却 및 差額賦課 計算上 該當 去來가 公正한 市場價格으로 행하여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The Income Tax Act 第20條(1)). 이 規定의 趣旨는 먼저 「4.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減價償却」에서 記述한 것과 같다.

또한 讓渡가 關係會社間에 이루어졌을 때는 讓渡가 이루어진 年度 直前의 課稅年度末 現在 稅務上의 未償却殘高를 讓渡價格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의 境遇와 똑같다(The Income Tax Act 第24條).

⑸ 特別償却(Accelerated Allowance)

① 課稅年度 1985年부터 從來의 製造·加工業에 더해 그 以外의 業種에 從事해도 新規購入資産(예를 들어, 事務所用設備, 都賣業 및 小賣業用의 業務用資産 等도 包含)에 대해 取得價額의 1/3의 비율로 特別償却을 認定하게 되었다.

단, 上記 資産에는 自動車, 오토바이 및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現在 싱가포르에서는 機械 및 設備 범주에 屬하는 資産에 대해서는 3年間에 全額償却이 可能하다. 또 컴퓨터 및 오토메이션 設備(Automation Equipment)에 대해서는 取得한 年度에 一時償却하는 것이 可能하다.

② 申告

特別償却 適用에 대해서는 稅務當局에 事前 申請할 必要는 없고, 稅務申告書上에 課稅所得의 計算에 包含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償却의 開始時期

支出이 이루어진(債務를 確定했다) 年度에 關聯된 課稅年度로부터 開始할 수 있다.

④ 設例

製造業을 하는 싱가포르 法人 A社(非파이어니어企業)는 라인(line) 擴張을 위해, 1987年 2月에 機械設備를 S$ 600,000에 購入하여, 1987年 3月 運轉을 開始했다. A社는 當機械 設備에 대해 特別償却을 適用하기로 했다(決算日 12月 31日).

위의 例에서 各 課稅年度의 A社 稅務上 減價償却費의 計算은 다음과 같다.

取得價額	S$ 600,000
特別償却	
1988課稅年度 (S$ 200,000)	
1989課稅年度 (S$ 200,000)	
1990課稅年度 (S$ 200,000)	(S$ 600,000)
1990年 1月 1日 現在 稅務上 未償却殘高	S$ 0

(6) 割增償却

所得稅法 第19條(2)는 稅務調査官에 대해 稅務所定의 償却率에 따라 高率의 減價償却을 認定하는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割增

償却이 制度化되어 있지는 않으나, 交代制 채택, 높은 使用頻度 等에 의해 機械設備 等의 摩耗가 보통 以上으로 심한 等의 事實이 있을 때에는 申請에 의해 割增償却이 認定되는 可能性도 있다. 이것은 製造·加工業에 限定되지 않는다.

(7) 少額資産의 稅務上의 取扱

少額固定資産에 대해 取得時에 費用處理를 認定하는 것과 같은 稅務上의 特別 取扱(예를 들어 日本의 20萬円 基準과 같은)은 없다. 原則的으로 支出額의 大小에 관계없이 使用可能期間이 1年 以上인 減價償却資産은 稅務上 固定資産으로 處理할 必要가 있다. 물론 實務上 少額資産에 대해 固定資産에 計上 않고 購入時에 損金處理될 可能性도 없지는 않으나 稅務調査官의 重要性 등에 關한 判斷에 의해 경우에 따라 處理된다.

(8) Hire Purchase 條件으로 購入한 機械 等의 減價償却

소위 Hire Purchase 條件(最終割賦金의 支拂完了까지 物品의 所有權이 購入者側에 移轉되지 않는 一種의 割賦販賣契約)으로 購入된 機械 등에 대해서는 契約價格 중에서 現金購入價格(Cash Price)部分과 手數料(Hire Charges)部分은 稅務上 取扱을 따로 한다. 즉,

取得時償却 : 割賦金 支拂이 일어난 事業年度에 關聯된 課稅年度의 該當 割賦金 중에서 現金購入價額部分에 대해 取得時償却이 適用된다. 手數料部分에 대해서는 支拂年度에 費用計上이 된다.

年次償却 : 割賦金 支拂狀況 여하를 불문하고 該當 機械 等의 現金購入價格을 베이스로 償却된다. 事業年度의 末日 現在 當該 機械 等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 必要하다.

(9) 機械 및 設備의 償却年數(年次償却)

稅務上, 機械 및 設備에 대해서는 그 種類別로 다음과 같이 償却年數가 規定되어 있다(1981 課稅年度부터 適用되는 定額法에 의한 償却年數).

航空機	5年
銀行用 地下貯藏室	16年
建設用機械 및 設備(롤러, 믹서, 堀鑿用設備, 불도저 및 그 附帶構築物을 包含)	6年
케이블카 및 그 關聯設備	12年
케이블 및 그 關聯設備	16年
物品輸送用容器	10年
電氣, 가스, 水道 및 熱氣用設備(탱크 및 發電機를 包含)	16年
電氣機器(産業用 電氣機器, 家庭用 및 業務用 電氣器具, 冷房 및 通風設備를 包含)	8年
電子機器(探知, 誘導, 管制, 冷却, 計算, 試驗, 操縱을 위한 電子裝置를 包含)	8年
人的 및 專門的 서비스를 위한 機械設備	10年
農機具	8年
防火用設備	10年
浮독(dock) 및 乾독(dock)	16年
製造工程用機械 및 設備	6年
가스실린더	16年
物品 및 人員輸送用機械裝置(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이어, 포크리프트, 크레인을 包含)	6年
映畵用필름	5年
樂器 및 그 關聯設備	10年
事務用機器	
家具 및 什器(建物 構造上 그 構成要素가 아닌 것)	10年
事務用機器(타자기, 計算機, 會計機, 複寫器 包含)	8年
電信, 電話設備	10年
레크레이션 및 娛樂設備	10年
鐵道用貨車, 線路 및 關聯設備	16年
交通用設備	
버스	6年
營業用人員輸送車輛(business service passenger vehicle)	6年
택시	5年
트럭, 롤러, 트레일러 및 van	6年
오토바이 및 自轉車	8年
船舶, 거룻배, 曳船 및 類似한 水上輸送用機械設備	16年
都賣業 및 小賣業用의 業務用資産(레스토랑 및 茶房用을 包含)	8年

6. 乘用車의 減價償却

稅務上 減價償却은 業務用乘用車(business service passenger vehicle) 즉 "Q number plate" (社用車)를 붙인 車만 認定된다. 단 償却 對象이 되는 金額은 取得價額과 S$ 35,000(1982年 3月 31日 以前 1979年 4月

1日 以後에 購入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S$ 25,000) 중 어느 것이든 낮은 쪽의 金額이다. 또한 特別償却의 適用은 없다.

(1) 取得時償却

支出이 발생한 年度에 償却對象額의 20%를 償却할 수 있다.

(2) 年次償却

償却年數 6年, 定額法에 의해 償却이 認定된다(1981課稅年度 以後).

(3) 差額償却 및 差額賦課

基本的인 방침은 機械 및 設備時와 같으나 取得價額이 S$ 35,000를 넘을 때에는 取得價額의 S$ 35,000에 대한 比率에 따라 計算된다.

(4) 設例

車輛登錄 : business service passenger vehicle

取 得 日 : 1988年 8月 1日

取得價額 : S$ 40,000

會社決算日 : 12月 31日

(1989課稅年度)

償却對象額	S$ 35,000
取得時償却 (S$ 35,000의 20%)	(7,000)
年次償却 (S$ 35,000—7,000)÷6年	(4,666)
1989.1.1 現在의 稅務上 未償却殘額	23,334

(1990課稅年度)

年次償却	(4,666)
1990.1.1 現在의 稅務上 未償却殘高	S$ 18,668

7. 取替法(Replacement Basis)에 의한 償却

The Income Tax Act 第14條(1)은 機械器具 等을 交換하면서 생긴 支出에 대해서는 該當 機械器具 等이 以前에 稅務上 減價償却의 對象이 된 적이 없었던 것을 條件으로 該當 交換 때문에 생긴 支出을 稅務上 費用으로 計上하는 것을 認定한다.

따라서 機械器具 等에 대해 購入後 減價償却을 하지 않고 交換時에 代替機械 等에 대한 支出을 損金處理하는 方法, 즉 取替法을 採擇하느냐 또는 通常의 償却方法을 採擇하는가는 企業 任意이다. 그러나 通常은 損金의 早期計上이라는 점에서 通常의 償却方法이 有利하므로 實務上은 通常의 償却이 稅務上 認定되지 않는 項目에 대해 去來法을 適用한다.

具體的으로 드라이버 等의 小型工具, 카펫, 커튼, 鑄型, 金型, 유니폼 等, 比較的 耐用年數가 짧은 것에 대해서는 稅務上 通常의 償却方法의 採擇은 認定되지 않고 去來法의 對象이 된다.

8. 減價償却實施의 任意性

(1) 原則

①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 機械設備에 대해 稅法所定의 償却, 즉, 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은 任意이다.

단, 償却의 對象이 되는 建物 等에 대해 支出이 있었던(또는 支出에 關한 債務가 確定된) 年度에 取得時償却을 행하지 않았을 境遇, 그 以後 年度에 행할 수는 없다. 이 境遇는 建物 및 構築物은 물론 機械 및 設備에 대해서도 支出 金額이 年次償却 對象

이 된다. 또 어떤 機械設備에 대해서는 取得時償却을 행할 權利를 포기하고 어떤 機械設備에 대해서는 取得時償却을 행하는 選擇的 適用도 認定된다.

② 建物 等에 年次償却을 實施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企業 任意이다.

즉 取得한 建物 等에 대해 전혀 償却을 하지 않아도 되고 償却을 中斷하는 것도 可能하다. 단 中斷한 年次償却을 再開할 境遇, 中斷期間의 償却을 거슬러 올라가 一時에 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1課稅年度에 計上되는 것은 1年分의 償却費이다.

③ 어떤 機械 및 設備에 대해 特別償却, 다른 機械 및 設備에 대해서는 通常의 償却이라는 選擇的 適用도 認定된다. 단 한번 特別償却을 適用한 資産에 대해 通常의 償却으로 바꾸는 것 또는 그 반대는 認定되지 않는다.

④ 特別償却을 일단 適用한 機械 및 設備에 대해서는 償却 中斷은 認定되지 않는다. 즉 特別償却은 連續되는 3課稅年度에 걸쳐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파이어니어企業과 減價償却

經濟擴大奬勵法에 의해 認定되는 소위 파이어니어 企業에 關聯된 파이어니어 利益(免稅)의 計算上, 稅務申告書에 記載의 有無에 關係없이, The Income Tax Act 第16條부터 第22條에 規定되어 있는 通常의 償却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經濟擴大奬勵法 第10條(1)). 즉 파이어니어企業이 영위하는 소위 파이어니어비지니스에 대해서는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 機械 및 設備(車 포함)를 雙方에 대해 稅法所定의 減

償償却 適用이 强制된다.

① 파이어니어 期間中엔 所得計算上, The Income Tax Act에 정해진 方法에 의해 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을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前記의 機械設備에 대한 特別償却 適用은 認定되지 않는다(實際 파이어니어 企業에서는 特別償却을 採擇할 merit가 없다).

③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 購入한 資産에 대해서는 다음의 파이어니어企業 減價償却 原則에 따른다. 파이어니어期間中에 購入하여 通常 償却을 행해온 資産에 대해서는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라고 해도 同一의 償却方法을 계속해서 適用할 必要가 있다.

XIII. 源泉徵收制度

싱가포르에서는 日本과 같이 從業員의 給料에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會社가 이것을 稅務署에 納付하는 制度는 없다. 단,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의해 特히 要求될 境遇에는 그렇지 않다.

源泉徵收는 以下의 項目을 非居住者 및 非居住法人에 대해 支拂하는 境遇에 要求되며, 該當 項目 支拂日보다 7日 以內에 源泉徵收稅額을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納付해야 한다.

(1) 利子 31% — 단, 日本 居住者 및 居住法人에 支拂할 境遇에는 日·싱租稅條約에 의해 15%로 輕減된다.

또 非居住者 및 非居住法人에 支拂되는 利子라도 ACU(Asian Currency Unit)預金, 싱가포르 銀行에 預金한 定期預金, CD

(Certificate of Deposits)에서 생긴 것은 싱가포르에서는 非課稅이기 때문에 또 金融先物去來 및 金先物去來의 預託證據金에 關聯된 SIMEX 會員이 支拂하는 利子, 또 銀行의 ACU預金과 非居住者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왑去來로 싱가포르와 關係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源泉徵收할 必要가 없다.

⑵ 로열티(使用料) 31% — 단, 日本 居住者 및 居住法人에 支拂하는 境遇에는 日·싱租稅條約에 의해 10%로 輕減되며, 또 日本에서는 15%로 源泉徵收된 것으로 간주되어 5%分에 대해 看做外國稅額控除의 適用을 받을 수 있다.

日·싱租稅條約에서는「使用料」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이 條約에 있어서「使用料」란 學術上 著作物의 著作權, 特許權, 商標權, 意匠, 模型, 圖面, 秘密方式 또는 秘密工程의 使用 또는 使用權의 代價로 産業上 , 商業上 또는 學術上 設備 使用 또는 使用權利의 代價로써 受領하는 모든 種類의 支拂金을 말한다」

⑶ Management Fee 31% — Management Fee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 判斷되므로 어려운 問題이나 ① 新會社 等 싱가포르 外國의 者에 의해, ② 싱가포르 居住者 또는 恒久的 施設을 위해, ③ 싱가포르 國外에서 勞務가 提供되고, ④ 또 實費精算 때문에 支拂된 金額이라면, 源泉徵收의 必要는 없다. 단, 實費精算이 아니고 利益要素가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그 支拂總額에 대해 31%의 源泉徵收가 必要하다. 이 源泉徵收된 31%는 最終確定稅額이 아니고, 受領한 非居住者는 그 收入을 얻기 위해 소요된 費用을 損金으로 計上하여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申告書를 提出함으로써 源

泉稅額의 還付를 請求할 수 있다.

(4) 技術서비스料 31%

(5) 非居住任員에 대한 報酬 31%

(6) 定期傭船料, 裸傭船料 1%부터 3%

XIV. 配當課稅制度

1. 課稅의 構造

싱가포르의 支拂配當金에 대한 課稅는 日本과 다르다. 싱가포르의 法人稅는 法人擬制說의 立場을 취한다. 즉 法人稅는 株主되는 個人이 支拂해야 할 所得稅의 先拂이라는 생각, 換言하면 法人稅는 最終的으론 配當에 대한 課稅制度를 통해 株主에게 轉嫁한다는 制度이다.

日本에서는 法人이 稼得한 利益은 먼저 法人 그 자체에 課稅된다. 이 課稅된 後의 利益에서 配當을 支拂한다. 配當을 받은 株主는 이 受取配當金에 대해 또 課稅되는 것과 같이, 企業이 稼得한 利益에 대해 法人段階와 個人段階로 二重課稅된다. 단 法人이 配當을 받은 境遇에는 受取配當金의 益金不算入制度, 個人의 境遇에는 配當控除制度에 의해, 二重課稅를 排除하고는 있으나 完全히 排除되지는 않고 있다. 단, 싱가포르에서는 完全히 二重課稅가 排除된다.

2. 配當에 관한 會社法(The Companies Act付則 第4)上의 規定

98條 : 會社는 그 定期總會에서 配當을 宣言할 수 있다. 단 任員으로부터 勸告된 金額을 넘을 수는 없다. → Final Dividends

99條 : 任員은 언제나 株主에 대해 會社의 利益에 비추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期中配當을 支拂할 수 있다. → Interim Dividends

100條 : 어떠한 配當도 會社의 利益 以外를 源泉으로 支拂할 수는 없다. → 會社法上의 配當可能利益

3. 配當에 관한 法人稅法(The Income Tax Act)上의 規定

(1) 44條(1)項에 의하면 싱가포르 居住者인 모든 法人은 株主에게 支拂되는 配當金에서 31%의 稅率에 따른 稅額을 控除할 權利가 있다.

(2) 44條(2)項에 의하면 配當을 支拂하려는 會社는 實際로 稅金이 控除되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各 株主에 대해 配當支拂金額 및 會社가 이 配當에서 控除한 또는 控除할 權利가 있는 稅額을 表示한 證書(Certificate)를 各 株主에게 發行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44條(7)項 및 (8)項에 의하면 配當을 實施하며 또 44條의 適用을 받는 企業은 賦課年度로부터 3個月 以內에 所定의 書類(Section 44 Statement)를 稅務當局에 提出할 必要가 있다. 이 書類는 싱가포르 公認會計士協會가 정한 樣式에 따르도록 要求하고 있다. 또한 1988年 3月 14日 以後에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부터 이 書類는 適用된다.

(4) 44條(3)項에 의하면 支拂配當金에 따른 源泉控除額이 第44條 勘定(Section 44 Account)의 殘高(Section 44 Balance)를 넘을 경우에는 該當 超過額(Section 44 Charge)은 追徵稅額으로서 配當金 支拂日부터 14日 以內에 稅務當局에 納付할 必要가 있다. 더욱 同 配當金 支拂日에서의 未納付法人稅는 즉시 納付해야 한다.

(5) 44條(4)項에 의하면 過去에 納付해야 할 것이 確定된 法人稅額이 支拂配當金에 따른 源泉控除額을 넘을 境遇에는 當該 差額은 다음의 配當金에 따른 源泉控除額과 相殺하도록 移越된다.

(6) 그러나 44條(6)項에 의하면 過去에 納付할 것이 確定된 法人稅額이 源泉控除額을 上廻할 境遇에도 이 超過額은 즉시 稅務當局에 納付해야 한다.

(7) 44條(9)項에 의하면 各 課稅年度에 最初로 생긴 第44條 超過額(Section 44 Charge)으로 納付된 法人稅額은 將來 發生하는 賦課課稅額과 相殺할 수 있다. 이 境遇 賦課課稅에 따른 納付法人稅額은 當然 將來에 第44條 勘定의 相殺 可能額을 同額만큼 減少하게 한다.

(8) 第44條(12)(b)項에 의하면 44條(3)項의 超過額 또는 44條(6)項의 法人稅納付額(上記 (6) 參照)이 配當金 支拂日부터 14日 以內에 또는 그 配當金이 支拂된 해의 12月 31日까지 納付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納付遲延의 境遇에는 配當金 受領者에 대해 配當控除 適用은 없고, 正味受取配當金이 課稅所得이 된다(단, 파이어니어利益 等의 免稅所得에서 나온 配當에 대해 44條의 適用은 없다).

4. 具體的 課稅方法

(1) 44條(1)에 規定된 것같이 싱가포르法人이 配當을 支拂하는 境遇에는 支拂할 때 支拂配當額으로부터 31%의 稅率로 稅金을 控除할 權利가 부여된다. 이것을 「源泉控除」라고 하며 日本의 「源泉徵收」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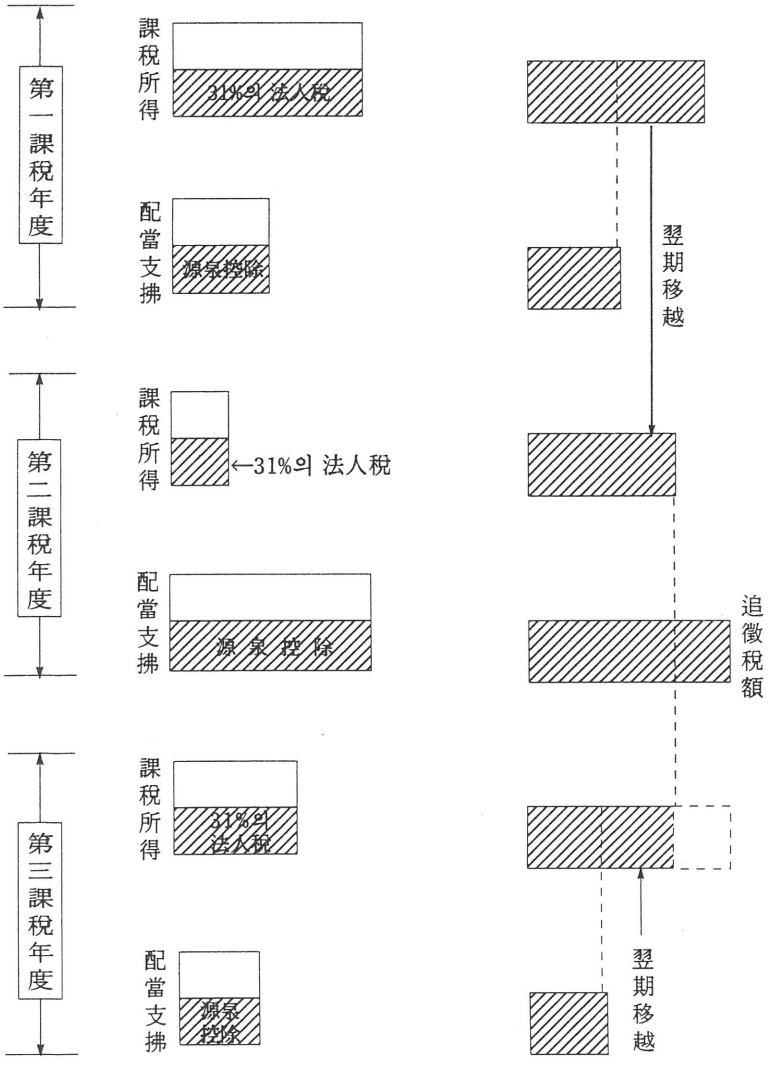

전혀 다른 것이다.

(2) 「源泉控除」를 하는 理由

싱가포르에서는 株主總會의 配當支拂決議는 決算日後 6個月 以內에 하기 때문에 通常은 當該 決算年度 法人稅의 賦課에 앞서 행하여진다. 따라서 配當宣言을 하는 時點에서는 最終的인 課稅通知書(Notice of Assessment)를 받지 않았으므로 會計上의 稅前利益에 근거하여 配當決議가 이루어진다. 즉 法人稅가 포함된 配當宣言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配當支拂時에 하는 31%의 源泉控除는 法人이 納付해야 할 法人稅를 確保한다는 意味를 가지고 있는 制度이다.

(3) 法人稅와 源泉控除와의 關係

싱가포르의 法人稅는 前述과 같이 法人이 支拂하는 法人稅는 最終的으로 配當에 대한 課稅制度를 통하여 株主에게 轉嫁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法人稅와 源泉控除와의 關係를 圖示하면 위와 같다.

(4) 以上을 例題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法人稅率이 賦課年度 1990年부터 32%로, 또 賦課年度 1991年부터 31%로 변경되었고 여기에 따른 經過措置에 留意할 必要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說明을 簡便化하기 위해 改正前年度로(즉 33%) 說明한다. 1988年 1月 1日에 A社의 第44條 勘定의(期首) 移越高(Section 44 Balance)는 S$ 1,000이었다고 한다.

① 1988年 2月 1日에 A社는 總額 S$ 1,000의 配當을 했다.

1988. 1. 1 現在 移越高	S$ 1,000
1988. 2. 1 源泉控除 — S$ 1,000×33%	(330)
1988. 2. 1 現在 移越高	S$ 670 (註 1)

② 1988年 3月 1日, A社는 總額 S$ 500의 賦課通知書를 受領했다(納稅는 分割로 하고, 1988年 3月 1日과 5月 1日의 2日 均等拂로 한다).

1988. 2. 2 現在 移越高	S$ 670
1988. 3. 1 納稅義務가 생긴 法人稅	500
1988. 3. 1 現在 移越高	1,170
(1988. 3. 2 現在 分割未納付法人稅額	S$ 250)

③ 1988年 4月 1日, A社는 總額 S$ 3,000의 配當을 행했다.

1988. 3. 2 現在 移越高	S$ 1,170
1988. 4. 1 源泉控除 — S$ 3,000×33%	(990)
1988. 4. 1 現在 移越高	180
(1988. 4. 1 現在 未納付法人稅의 必要納付額	S$ 70) (註 2,11)

④ 1988年 4月 20日, A社는 總額 S$ 1,200의 配當을 했다.

1988. 4. 2 現在 移越高	S$ 180
1988. 4. 20 源泉控除－S$ 1,200×33%	(396)
1988. 4. 20 現在 超過額	(S$ 216) (註 3,11)
(1988. 4. 20 現在 未納付法人의 必要納付額	S$ 180) (註 4,11)

⑤ 1988年 6月 1日, A社는 總額 S$ 3,000의 賦課通知書를 受領했다(納稅는 通知書 受領後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988. 4. 21 現在 移越高		S$ 0
1988. 6. 1 納稅義務가 생긴 法人稅	3,000	
第44條(9)項에 의한 相殺額	(216)	2,784 (註 6)
1988. 6. 1 現在 移越高		S$ 2,784

1988. 6. 1 納稅義務가 생긴 法人稅 S$ 3,000

第44條(9)項에 의한 相殺額 (216) (註 5)

1988. 6. 1 期日 法人稅 必要納付額 S$ 2,784

⑥ 1988年 10月 1日, A社는 總額 S$ 4,000의 賦課通知書를 受領했다 (納稅는 通知書 受領後 신속하게 한 것으로 한다. 또한 1988年末까지는 上記 以外의 配當支拂 및 法人稅의 賦課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

1988. 6. 2 現在 移越高 S$ 2,784

1988. 10. 1 納稅義務가 생긴 法人稅 4,000

1988. 12. 31 現在 移越高 S$ 6,784 (註 7)

⑦ 1989年 4月 15日, A社는 總額 S$ 25,000의 配當을 했다.

1989. 1. 1 現在 移越高 S$ 6,784

1989. 4. 15 源泉控除 — S$ 25,000×33% (8,250)

1989. 4. 15 現在 移越高 (S$ 1,466) (註 8,11)

⑧ 1989年 7月 31日, A社는 總額 S$ 1,000의 賦課通知書를 受領했다 (이 중 S$ 700에 대해서는 源泉徵收에 의해 徵收완료).

1989. 4. 16 現在 移越高 S$ 0

1989. 7. 31 納稅義務가 생긴 法人稅 1,000

第44條(9)項에 의함

相殺額 (1,466)

第44條(3)項에 의함

超過額 (466) —

1989. 7. 31 現在 移越高 S$ 0

1989. 7. 31	納稅義務가 생긴 法人稅		1,000
	第44條⑼項에 의한 相殺額		(1,466) (註 5)
			(466)
	源泉徵收에 의한 法人稅 旣納付額		700
	還付可能 法人稅額	S$	234 (註 9)

⑨ 1989年 9月 31日, A社는 總額 S$ 500의 賦課通知書를 受領했다.

1989. 8. 1	現在 移越高	S$	0
1989. 9. 31	納稅義務가 생긴 法人稅	500	
	第44條⑼項에 의한 相殺額 (466)		34 (註 6)
1989. 9. 31	現在 移越高	S$	34
1989. 9. 31	還付되어야 할 法人稅	S$	0 (註 10)

(註)1. 第44條⑷項 — 이 殘高는 將來에 配當支拂에 따른 「源泉控除」와 相殺하기 위해 移越할 수 있다.

2. 第44條⑹項 — Section 44 Balance에 不足額은 없으나 以下의 計算에 따라 S$ 70는 즉시 納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配當에 따른 「源泉控除」額			S$ 990
差引 : 1988年 2月 1日付 配當後의			
(第44條 勘定)移越高	670		
1988年 2月 1日 以後의			
賦課法人稅額	500		
	1,170		
差引 : 1988年 4月 1日 現在			
未納付 法人稅額	(250)		(920)

第44條(6)項에 의한 法人稅 必要納付額 S$ 70

3. 第44條(3)項 — 第44條 超過額은 S$ 1,200의 配當을 한 날부터 14日 以內에(즉 1988年 5月 4日까지) 稅務當局에 納付해야 한다.

4. 第44條(3)項 — 法人에 대해서는 새로운 賦課決定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88年 4月 20日 現在의 未納付 法人稅는 즉시 納付해야 한다.

例解에서의 S$ 180는 以下와 같이 計算된 것이다.

1988年 3月 1日付 賦課決定額		S$ 500
3差引 : 納付額 1988年 3月 1日	250	
1988年 4月 1日	70	320
第44條(3)項에 근거한 必要納付額		S$ 180

5. 第44條(9)項 — 第44條 勘定이 借方殘高(超過額)로 된 境遇 同 超過額은 우선 그후에 納付義務가 確定된 法人稅額과 相殺된다.

6. 第44條(9)項 — 第44條 超過額의 境遇, 그후에 納付義務가 確定된 法人稅額은, 第44條(9)項에 근거한 相殺額 相當分만 減算된 것이 第44條 殘高로 된다.

7. 第44條(12)(d)項 — 1989 課稅年度에 移越된 第44條 殘高는 다음 計算에 의한다.

1988 課稅年度의 最終 配當金		
支拂後의 同 勘定 移越高		S$ 0
1988年 4月 20日부터 1988年 年度末까지		
納付義務가 확정된 法人稅額		
1988年 6月 1日	3,000	
1988年 10月 1日	4,000	7,000
1988年 4月 20日부터 1988年 年度末까지		

第44條(9)項에 근거한 相殺

1988年 6月 1日	(216)
1989 課稅年度로의 移越高	S$ 6,784

8. 第44條(3)項 — 上記 註4와 같음. 이 第44條 超過額은 S$ 25,000의 配當支拂日부터 14日 以內(즉 1989年 4月 29日까지)에 稅務當局에 納付해야 한다.

9. 第93條(1)項 — 納稅者에게의 還付額은 還付해야 할 事實이 생긴 날 現在 第44條 超過額을 減額한 것이 된다. 여기서 第44條 超過額이란 第44條(9)項에 근거하여 納付義務가 確定된 法人稅額과의 相殺後 殘高를 말한다.

10. 第93條(1)項 — 第93條(1)項에 근거하여 還付法人稅는 생기지 않는다. 비록 源泉徵收된 S$ 700 中 S$ 466에 대해 아직 還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還付되어야 할 金額 S$ 466는 還付되어야 할 事實이 생긴 1989年 7月 31日에서의 第44條 超過額과 相殺되므로 結果로는 還付法人稅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

11. 第46條 — 이들 必要納付額이 稅法 所定期日 以內에 納付되지 않을 境遇에는 配當金 受領者는 어떠한 配當控除도 받을 수 없다. 第44條(12)(b)項에 의하면 正味配當額(net dividend)이 配當金 受領者에게 課稅對象으로 된다. 덧붙여서 稅法所定의 納付期限이란 課稅對象으로 된 配當金 支拂日부터 14日 以內 또는 配當金 支拂日이 屬한 해의 年度末까지를 말한다.

(5)파이어니어企業 等의 配當에 관한 經濟擴大奬勵法上의 取扱

① 各 賦課年度의 所得에 관한 計算書가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서 파이어니어企業 等에 發行된다.

이 計算書는 法人稅法上 課稅通知書와 똑같이 取扱된다.

② 該當 計算書에 提示된 稅額은 免稅된다.

③ 上記의 免稅所得으로부터 支拂된 配當에 대해서는 株主의 所得稅 計算上 非課稅로 된다. The Income Tax Act Section 44는 免稅所得에서 支拂되는 配當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XV. 外國稅額控除

1. 外國稅額控除制度란 무엇인가

企業이 國際化되어 世界 各國에서 營業活動을 하고 있는 現在, 各 나라들이 課稅權을 主張하여 同一 所得에 대해 2個國 以上 課稅를 한다고 하면 企業으로서는 過重한 租稅負擔을 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國際貿易의 發展을 沮害하게 된다. 이 國際的인 二重課稅를 排除하는 方法의 하나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있다.

2. 日本의 外國稅額控除制度

(1) 概要

① 外國稅額의 直接稅額控除制度

日本의 企業이 外國에 있는 支店 等에서 생긴 事業所得에 대하여 該當 外國에서 課稅된 法人稅 및 外國의 會社로부터 받은 利子·配當 等에 대해 該當 外國에서의 源泉徵收稅額과 같이 자신의 國外所得에 대해 外國 納稅者가 되어 外國에 納付한 稅金에 대해 日本에서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② 外國稅額의 間接稅額控除制度

日本 企業이 外國에 子會社를 設立하여 그 子會社로부터 配當을 受領한 境遇에 그 外國子會社에 課稅된 外國稅額 中에서 그 受領한 配當에 對應하는 部分에 대해 新會社인 日本의 企業이 納付한 것으로 看做되어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③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Tax Sparing Credit System)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經濟擴大奬勵法에 의해 파이어니어企業은 그 事業所得에 대해 非課稅되며 이 非課稅所得으로부터 配當으로 日本에 送金한 境遇, 日本에서 課稅된다고 한다면 싱가포르에서의 特別 免稅措置는 그대로 日本에서 稅收增加가 되어 인센티브로서의 意味가 없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特別減免稅額에 대해 설혹 싱가포르에서 稅金을 支拂하지 않았어도 支拂한 것으로 간주하여 日本에서 國稅額控除를 認定하려 하는 制度이다. 이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는 國際的인 二重課稅의 排除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日本에서 後進國으로의 投資를 稅制面에서 積極的으로 促進하기 위한 制度이다.

④「택스 헤이븐」稅制의 一環으로서의 外國稅額控除制度

「택스 헤이븐」에 있는 子會社나 孫會社의 留保所得에 對해서는 一定한 要件 아래서 이것을 親會社인 日本法人의 所得에 合計하여 日本에서 課稅하나 이 境遇 特定外國子會社 等이 納付한 外國法人稅에 대해 外國稅額控除받는 制度이다.

(2) 直接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① 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

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는 法人의 所得(Income)에 대해 賦課되는 稅이며 싱가포르의 境遇에는 支店이 支拂한 法人稅, 利子, 로열티 및 Management Fee 等에 대한 源泉徵收額이 該當된다.

② 外國稅額의 控除金額

外國稅額의 控除는 外國法人稅의 納付가 確定된 날을 包含한 事業年度에 適用받을 수 있다. 단 納付한 外國稅額金額이 控除되는 것이 아니고 一定 限度가 設定되어 있다. 具體的으로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된 金額을 限度로 한다.

$$\text{該當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額} \times \frac{\text{該當事業年度의 國外所得金額 (단, 外國에서 非課稅되는 國外所得의 2分의 1 除外)}}{\text{該當事業年度의 所得金額}}$$

(註) 1. 1989年 4月 1日～1991年 3月 31日 사이에 開始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이 算式의 2分의 1의 部分은 3分의 1이 된다.

2. 또 여기서 國外所得의 金額이란 다음 中 큰 金額이다(法令142③ 단書 · 142의 2).

① 該當事業年度의 所得金額(國內所得과 國外所得의 合計額)의 100分의 90에 相當하는 金額 … 全所得 $\times \frac{90}{100}$

② 該當事業年度의 所得金額×期末에 있는 國外使用人 비율을 곱한 金額 … 全所得 $\times \frac{\text{國外使用人數}}{\text{全使用人數}}$

③ 全所得—(全所得—外國稅額) $\div \frac{\text{外國稅額}}{\text{全所得} \times 50\%} \times \frac{20}{100}$

또 當期에 納付가 確定된 外國稅額이 當期의 法人稅 控除限度額보다 많기 때문에 全額 法人稅에서 控除할 수 없는 境遇에는 地方稅 控除限度額의 範圍 內에서 地方稅에서 控除되며 또 控除하고 남는 金額은 그

후 3年 以內에 控除限度額에 餘裕가 생겼을 때 그 餘裕額의 範圍 內에서 控除된다.

(3) 間接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① 外國稅額의 間接控除制度는 外國子會社로부터 配當의 支拂을 받은 親會社인 內國法人이 그 配當의 支拂確定日 以前 6個月 以上 계속하여 그 外國子會社의 發行株式 總額의 25% 以上의 株式을 가지고 있는 外國子會社로부터 利益 配當의 支拂을 받은 境遇에 適用이 된다. 단 優先株式에 대한 優先配當은 適用이 안 된다.

② 싱가포르에서는 前述과 같이 配當에 대한 源泉徵收制度는 없고 源泉控除方式을 採擇한다. 따라서 日本의 株主에게는 直接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에는 해당하지 않고 싱가포르 子會社가 法人稅의 納付가 確定된 段階에서 間接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 이 境遇의 間接稅額控除 對象이 되는 配當金額은 源泉控除의 實受領金額에 따라 計算한다.

③ 親會社인 日本法人이 納付한 것으로 看做되는 外國 法人稅額

$$= \text{外國子會社의 配當에 事業年度의 外國法人稅額(A)} \times \frac{\text{親會社인 日本法人이 外國子會社로부터 받은 配當額}}{\text{外國子會社의 配當에 關聯된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4)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日本·싱가포르 租稅條約은 다음의 看做外國稅額控除를 規定하고 있다.

① 租稅條約에 근거한 減免(第21條3項)

㉠ 産業的 事業에 從事하는 企業이 支拂하는 社債 또는 貸付金의 利子 免稅(第11條5項) … 日本에서는 15%로 支拂된 것으로 간주된다.

㉡ 使用料의 輕減(第12條2項) … 日本에서는 15%로 支拂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租稅條約에 근거한 免稅이고 또한 議定書에 근거한 것(第21條4項) … 經濟擴大奬勵法에 근거한 免稅額

㉠ 파이어니어企業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 및 파이어니어企業의 免稅所得에서 支拂되는 配當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

㉡ 投資控除를 認定받은 會社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 免除 및 이들 會社의 免稅所得에서 支拂되는 配當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

[外國子會社의 配當에 關聯된 事業年度의 實際納付한 外國法人稅額(A)] + [左의 事業年度에 減免稅額으로 看做 外國稅額控除가 適用되는 것]

親會社인 日本法人이 外國子會社로부터 받은 配當額 / 外國子會社의 配當에 關聯된 事業年度 -(A)의 稅入所得金額 × (A)

= 親會社인 日本法人이 納付했다고 看做되는 外國法人稅額.

위와 같은 適用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子會社로부터 配當을 受領한 境遇에는 위의 算式에 의해 計算된 金額이 看做外國稅額

控除의 對象이 된다.

3. 싱가포르의 外國稅額控除制度

國際的인 二重課稅를 피하기 위하여 日本과 같이 싱가포르에서도 外國稅額控除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外國稅額控除制度는 日本과는 달리 租稅條約의 締結 여부에 따라 그 適用範圍가 달라진다.

(1) 싱가포르와 租稅條約을 締結하고 있는 나라에 納付한 法人稅 等의 外國稅額控除 — 싱가포르의 實效稅率, 즉 31%의 範圍內에서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또한 日本과 달리 控除하고도 남는 外國稅額의 順延은 認定되지 않는다. 또 稅額控除의 申請은 該當 外國稅額이 課稅된 年度부터 2年 以內에 할 것을 要한다. 더욱 外國稅額控除는 國別로 適用되어 다른 外國所得에 關聯된 稅額에서 該當 國家의 外國稅額을 控除할 수는 없다.

(2) 英聯邦諸國(Commonwealth Countries) 以外의 나라에서 싱가포르와 租稅條約을 締結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納付한 法人稅 等의 外國稅額控除 — 外國稅額控除는 認定되지 않는다. 단 租稅條約을 締結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源泉徵收된 稅額은 該當 所得을 課稅所得에 參入하는 것을 條件으로 損金算入하는 것이 認定된다. 즉 正味受取額이 課稅所得이 된다.

(3) 英聯邦諸國으로 싱가포르와 租稅條約을 締結하고 있지 않은 나라로서 또 相手國이 同一한 外國稅額控除를 認定하고 있을 경우,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되며, 그 範圍는 다음과 같다.

① 싱가포르 居住法人

- 英聯邦諸國 法人稅의 實效稅率이 싱가포르의 實效稅率의 2分의 1 以下일 때 — 全額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 上記 以外의 境遇 — 싱가포르 實效稅率의 2分의 1까지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② 싱가포르 非居住法人

- 英聯邦諸國 法人稅의 實效稅率이 싱가포르의 實效稅率을 넘지 않는 境遇 — 英聯邦諸國 實效稅率의 2分의 1까지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 上記 以外의 境遇 — 싱가포르의 實效稅率에서 英聯邦諸國의 實效稅率 $\times\frac{1}{2}$을 控除한 率까지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⑷ 싱가포르는 現在 다음의 25個國과 租稅條約(正式으로는 「所得에 대한 租稅의 二重課稅 回避 및 脫稅 防止를 위한 條約」)을 締結하고 있다.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대만,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서독,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日本, 韓國,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英國, 인도네시아

第 4 章

其他 稅制

概 要

1. 固定資産稅는 不動産所得에 대해 課稅되고, 日本에서와 같은 不動産取得稅는 없다.
2. 稅金은 아니지만 中央厚生年金掛金의 會社負擔이 從業員의 給與·賞與金 等에 대해 18%를 必要로 한다.

Ⅰ. 賃金稅(Payroll Tax)

會社 또는 雇用者는 싱가포르에 勤務하고 있는 從業員의 每月 給料, 賃金, 보너스 等에 現金으로 支拂된 金額에 대해 2%의 賃金稅를 그달 末日後 14日 以內에 納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1985年의 豫算演說로 1985年 4月 1日부터 이 賃金稅가 休止되었다.

Ⅱ. 外國人勞動者稅(Foreign Workers Levy)

政府는 從來 1992年까지 外國人勞動者(Work Permit 對象者만으로

Employment Pass 保有者는 對象 外)를 一掃할 예정이었으나 經濟委員會의 勸告를 받아 1992年 以後도 製造業, 호텔業, 建設業 및 國內서비스業에 外國人勞動者가 從事하는 것을 認定하게 되었다.

한편 1987年 4月 1日 以後 新規로 雇用되는 이들 外國人勞動者는 모두 CPF의 對象에서 除外되는 대신에 Levy Scheme이 適用되어 1991年 1月 以後 月 S$ 300의 外國人勞動者稅(建設業從事者 中에서 熟練工은 月 S$ 250, 그 外는 月 S$ 350, 또 國內서비스業 從事者는 月 S$ 250)를 納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Ⅲ. 技能開發基金說(Skills Development Fund Levy, SDF)

會社 또는 雇用者는 月 S$ 750 以下의 從業員의 給料에 대하여 當該給與의 4%의 SDF를 納付해야 한다. 단, 1986年 4月부터 1%로 되었다.

Ⅳ. 中央厚生年金掛金 (Central Provident Fund Contributions, CPF)

CPF는 日本의 厚生年金 또는 國民年金에 該當되고 會社 또는 雇用者 및 從業員이 每月 給料·賞與金 等에 대해 各各 25%의 比率로 政府에 據出하게 되어 있었으나 不況對策으로 1986年 4月 以後 會社가 10%, 個人이 25%로 되고 그후의 政府의 政策目標인 各各 20%의 移行措置로서 1988年 7月부터 各各의 負擔率이 隨時變更되어 1990年 7月부터 會社가 18%, 個人이 22%로 되었고 또 1991年 7月부터는 會社가 17.5%, 個人이

22.5%로 變更될 豫定이다. 또한 1985年 7月 1日부터 月 賦金 據出額의 最高額 및 月 據出額의 上限은 各各 S$ 1,500로 되었다.

第 5 章

優 待 制 度

概 要

1. 經濟擴大奬勵法이 정한 種類의 인센티브 중에서 日系企業이 享受하고 있는 것은 파이어니어企業과 投資控除이다.

   파이어니어企業은 一定期間의 法人稅가 免除되기 때문에 操業 當初부터 利益計上이 豫見되는 企業에게 有利하고 投資控除는 一定金額의 法人稅가 免除되기 때문에 資本集約的인 프로젝트 또는 利益計上까지 相當한 期間을 要하는 企業에 有利하다.

2. 經濟擴大奬勵法 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認定되고 있다.

   ① 試驗研究開發에 대한 優待制度

   ② 工業用로봇 및 오토메이션 設備의 導入에 대한 優待制度

   ③ Fund Management에 대한 優待制度

   ④ 統轄經營本部에 대한 優待制度

   ⑤ 國際石油去來業者 및 國際貿易業者에 대한 優待制度

싱가포르에서는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政策的 側面에서 經濟擴大奬勵法이 制定되어 있어 稅法上의 優待措置가 강구되어 있다.

Ⅰ. 經濟擴大奬勵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經濟擴大奬勵法에는 다음 種類의 企業에 대한 優待措置가 規定되어 있다.

(1) Pioneer Industries(파이어니어企業)

(2) Pioneer Service Companies(파이어니어서비스會社)

(3) Post-Pioneer Companies(포스트파이어니어企業)

(4) Expansion of Established Enterprises(擴大企業)

(5) Expanding Service Companies(擴大서비스會社)

(6) Production for Export(輸出企業)

(7) Export of Services(서비스輸出企業)

(8) Foreign Loans for Productive Equipment(生産設備 購入을 위한 外國借款)

(9) Royalties, Fees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로열티, 技術援助料 및 開發分擔金)

(10) International Trade Incentives(國際貿易)

(11) Investment Allowances(投資控除)

(12) Warehousing and Servicing Incentives(倉庫業 및 서비스業)

(13) International Consultancy Services(國際컨설턴트서비스)

(14) Investments in New Technology Companies(新테크놀리지會社의 投資)

(15) Veture Capital Incentive(벤처캐피탈企業)

여기에서는 日系企業이 가장 適用을 많이 받고 있는 파이어니어企業

과 投資控除에 대해 說明한다.

1. 파이어니어企業(Pioneer Industries)

(1) 許可要件

파이어니어製品의 製造를 希望하는 會社는 主務大臣에게 所定의 樣式에 明細를 記入하여 파이어니어企業으로서의 承認을 申請할 수 있다.

主務大臣은 이 申請에 대해 이 會社가 公衆의 便益과 함께 또 現在 싱가포르의 經濟的 必要性에 卽應한 商業的 規模로 事業이 進行되고 있고 또한 産業으로서 將來의 發展이 良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該當 會社를 파이어니어企業으로 認定하고 그 企業의 特定 製品을 파이어니어製品으로 認定함과 同時에 파이어니어證明書를 發行한다.

(2) 免稅措置의 內容

① 免稅期間

主務大臣의 判斷에 의해 5年 以上 10年 以下의 免稅期間이 認定된다. 免稅期間의 開始는 파이어니어製品의 生産開始日(production day)로 指定된 날부터 起算한다.

② 免稅所得

免稅期間中에 파이어니어製品에 關聯된 去來에서 생긴 所得(關聯된 免稅措置가 없는 것으로 해서, The Income Tax Act에 定한 바에 따라 計算한 所得金額)이 免稅所得으로 된다.

免稅期間中 파이어니어企業은 主務大臣의 承認 없이는 파이어니어製品에 關聯된 去來 以外의 去來를 할 수 없다.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파이어니어製品에 관한 去來와 그 以外의

去來를 따로 分離하여 經理處理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其他 留意事項

① 파이어니어企業은 免稅期間中의 各 賦課年度에 파이어니어製品으로 생긴 所得計算時에 The Income Tax Act上 規定된 減價償却費(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의 控除가 原則的으로 强制된다(資本支出이 S$ 150,000,000인 企業에 대해서는 減價償却費의 控除가 强制되지 않는다는 例外規定이 있다).

② 主務大臣의 承認을 얻어 파이어니어製品 以外의 去來를 했을 境遇 이 去來로 인해 損失이 생겼을 때에 그 損失은 그 期間의 파이어니어製品의 所得과 相殺하여 파이어니어利益을 減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③ 主務大臣의 承認을 얻어 파이어니어製品 以外의 去來를 했을 境遇에, 그 去來에서 利益이 생겼을 때에 그 利益이 賣上高所得率(賣上高에 對한 調整後 所得의 比率)이 5% 未滿의 경우에는 法廷所得은 5%로 看做되어 差額 相當額의 파이어니어利益이 減額되고 따라서 파이어니어所得이 增額되어 課稅된다.

④ 株主가 免稅利益에서 受取配當金을 受領한 境遇에는 非課稅이다. 日本의 親會社가 싱가포르 子會社로부터 免稅利益에서 나온 配當을 受領한 境遇에는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

⑤ 파이어니어期間中에 생긴 파이어니어製品에 관한 稅務上의 缺損金(Pioneer Loss)에 대해서는 同 期間中에 생긴 利益(Pioneer Profit)과 相殺만이 認定되고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의 利益과의 相殺은 認定되지 않는다. 단, 缺損金 중에서 減價償却(Unabsorbed

Capital Allowance)에 관한 金額에 대해서는 그렇치 않다.

實務上은 經濟開發廳(EDB)에 대한 申請에 의해, Pioneer Loss는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의 利益과 相殺가 인정되는 것 같다.

파이어니어期間 終了의 企業에 대해서도 一定 追加投資를 要件으로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 最高 5年間(1986年 4月 1日 以後의 承認企業에 대해서는 10年間)에 걸쳐 最低 10%(實際 運用上은 15%)의 輕減稅率이 適用된다.

具體的으로 該當 企業이 投資計劃을 EDB에 提示하여 이 優待措置를 받을 수 있다.

2. 投資控除(Investment Allowances)

(1) 認可要件

會社가 다음 各號의 計劃, 즉

① 어떤 製品의 製造 또는 增産

② 特殊技術 또는 技術서비스의 提供

③ 硏究 및 開發

④ 建設活動

⑤ 食料用水의 消費節約

⑥ 其他「파이어니어서비스會社」의 項에 規定된 活動에 關聯된 業務

때문에 固定資産 支出을 하려고 할 境遇, 主務大臣에게 所定의 樣式에 의해 投資控除를 申請할 수 있다.

固定資産支出이란 工場用建物(土地를 除外), 노하우 또는 特許權의

取得, 新規生産設備(中古生産設備에 대해서는 主務大臣의 承認을 必要로 한다)에 대해 支出되는 金額을 말한다.

⑵ 免稅措置의 內容

5年을 限度로 承認된 期間內에 일어난 上記 固定資本支出의 一定比率(50%를 限度로, 主務大臣에 의해 認定된 比率)의 金額을 投資控除勘定으로 貸記하고 法人에 課稅所得이 생긴 경우, 그 課稅所得의 範圍內에서 投資控除勘定을 借記하여, 즉 課稅所得을 投資控除의 範圍內까지 減少시켜 納付稅額을 제로로 하든가 또는 減少시킬 수 있다.

投資控除勘定은 翌年 以後에 移越할 수 있다.

또한 該當 投資控除의 適用을 認定받은 建物, 生産設備에 대해서도 稅法上의 減價償却費(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 또는 機械設備에 대해서는 特別償却 選擇適用)가 認定된다.

⑶ 其他 留意事項

① 上記의 認定된 期間內 또는 當該 期間 終了後 2年 以內에 投資控除의 適用對象으로 된 資産의 賣却, 貸與, 其他의 處分을 할 때에는 主務大臣의 書面에 의한 許可를 必要로 하고 또 上記 免稅措置의 特典을 政府에 返還할 手續이 必要하다.

② 免稅利益(投資控除額)에서 日本의 親會社에 支拂된 配當金에 대해서는 日本에서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

3. 파이어니어企業과 投資控除의 比較

파이어니어企業과 投資控除의 認定取得을 比較하면 파이어니어는 一

定期間 法人稅가 免除되기 때문에 操業 當初보다 利益計上이 豫見되는 企業에게는 有利하고, 投資控除는 一定金額의 法人稅가 免除되기 때문에 資本集約的인 프로젝트 또는 利益計上까지 相當期間을 要하는 企業에는 有利하다.

따라서 會社의 事業計劃, 利益計劃에 비추어서 어느 쪽의 인센티브를 申請할 것인가 判斷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其他 優待制度

1. 試驗研究開發에 대한 優待制度(Research and Development)

(1) 1981賦課年度부터 試驗研究, 開發에 대해 여러 가지의 優待措置가 부여되었다. 目的은 製造業者의 新製品 開發 및 現製品의 改良을 促進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試驗研究·開發費用의 二重控除

② 試驗研究·開發을 위한 建物 및 機械에 대한 3年間의 特別減價償却

③ 試驗研究·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50%까지의 投資控除

④ 試驗研究·開發을 위한 建物에 대한 25%의 取得時償却 및 3% 年次償却

⑤ 노하우 및 特許權의 取得價額을 5年間에 걸쳐 費用化

(2) 試驗研究·開發의 定義

原材料, 裝置, 製品 또는 工程의 製造 또는 改良을 위한 組織的,

意圖的 試驗研究·調査이다. 그러나 다음 各號는 包含되지 않는다.

① 原材料, 裝置 또는 製品의 品質管理 또는 日常的으로 實施하는 檢査

② 社會科學 또는 人間性의 調査

③ 日常 實施하는 資料募集

④ 效率調査 또는 管理研究

⑤ 市場調査 또는 販賣促進

1988課稅年度부터 이 適用對象者의 範圍가 擴大되어 다음의 承認된 서비스 産業에도 二重控除가 適用되게 되었다.

① 컴퓨터·소프트웨어

② 情報서비스

③ 農耕技術서비스

④ 研究所 및 實驗에 關聯된 서비스

⑤ 醫療調査서비스

⑥ 其他 서비스(大藏大臣으로부터 指定된 것)

(3) 二重控除를 받기 위한 要件

① 主務大臣 等에 의해 承認된 試驗研究·開發일 것

② 1980年 4月 1日 以後에 費用이 發生한 것일 것

③ 1980年 4月 1日 以後에 試驗研究·開發團體 또는 組織에 支拂된 것일 것.

(4) 課稅年度 1987年부터 主務大臣 等에 의해 承認된 企業은 研究開發費用으로 課稅所得의 20%를 留保할 수 있고 이것을 3年 以內에 研究開發費用으로 使用한 境遇 그 課稅가 免除된다. 단 3年 以內

에 使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未使用額에 대해 그 利子와 함께 課稅된다. 또 前述의 二重控除와의 同時適用은 認定되지 않는다.

2. 輸出促進費用의 二重控除

싱가포르에서 生産된 製品의 輸出促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費用 중 一定 金額은 課稅所得의 計算上, 二重으로 控除할 수 있다.

(1) 싱가포르의 居住法人이나 또는 싱가포르에 恒久的 施設을 가지고 있는 製造業者, 商社 및 銀行은 政府에 의해 承認된 海外에서의 展覽會, 展示會 또는 貿易派遣團에 소요되는 費用은 二重으로 控除할 수 있다(2人까지 든 費用을 上限으로 한다.)

(2) 싱가포르의 居住法人이나 또는 싱가포르에 恒久的 施設을 가지고 있는 製造業者는 政府에 의해 承認된 國內에서의 展覽會 또는 展示會에 소요되는 費用을 二重으로 控除할 수 있다.

(3) 製品의 輸出業務를 영위하는 싱가포르의 居住法人이 海外에 駐在員事務所를 가지고 있을 境遇에 該當 駐在員事務所의 運營에 소요되는 費用은 다음 條件을 充足할 境遇에는 二重으로 控除할 수 있다.

① 該當 會社는 싱가포르 法人이면서 居住法人이어야 한다.

② 該當 會社는 싱가포르에서 生産된 製品의 製造 및 또는 輸出業務를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該當 會社는 經濟擴大奬勵法上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海外駐在員事務所는 싱가포르에서 生産된 製品의 輸出促進業務만을 전적으로 取扱하는 者이어야 한다(싱가포르에서 生産된 製

品이란 Trade Development Board에 의해 原産地證明 또는 다른 證明을 받은 製品을 意味한다).

⑤ 海外駐在員事務所는 外國에서 그 나라의 恒久的 設備로 간주되어 課稅되어서는 안 된다.

⑥ 該當 會社는 海外駐在員事務所를 設置하기 前에 Trade Development Board에 Form EP－1을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⑦ 다음 費用이 二重控除의 對象이 되고 期間은 海外駐在員事務所 設置日부터 2年間이다. 또 輸出促進費用은 S$ 200,000 上限이다.

㉠ 事務所 維持費用

- 家賃 및 事務所維持費
- 싱가포르에서 海外駐在員事務所에의 飛行機代, 移徙費用 및 海外駐在員事務所로부터 싱가포르에의 歸國費用(어느 것이건 3人까지를 限度로 한다)
- 3人까지의 駐在員에 대한 給料, 住居費用 等
- 車輛費
- 其他

㉡ 輸出促進費用

- 定期的으로 싱가포르에 輸出促進會議 때문에 소요되는 駐在員 3人까지의 歸國費用
- 海外駐在員事務所에 輸出促進 때문에 소요되는 駐在員 3人까지의 飛行機代

· 海外駐在員事務所에서의 쇼룸(showroom), 市場調査, 카다로그 作成費用 및 廣告宣傳費, 交際費 等

(4) 輸出市場開拓費用에 대해서도 主務大臣의 承認을 얻어 1979年 4月 1日 以後에 發生한 費用에 대해 二重控除를 認定받는다.

3. 工業用로봇 및 오토메이션 設備의 導入에 대한 優待制度

經濟擴大奬勵法의 優待措置를 받고 있지 않는 會社가 勞動力을 節約하기 위하여 工業用로봇 또는 다음 오토메이션 設備를 導入한 境遇에는 優待措置가 주어진다.

· Text Data處理機器 · CAD 및 CAM
· 音聲處理機器 · 自動加工機器
· 이미지 映像處理裝置 · 自動操縱車輛
· 情報處理機器 · 自動檢査 · 分析裝置
· 情報通信機器 · 自動儉素 · 挿入裝置
· 오피스시스템 소프트웨어

(1) 1年間 減價償却한다.

(2) 投資額의 50%까지 投資控除(Investment Allowances)가 認定된다.

(3) 小企業融資制度(Small Industries Finance Scheme)에 의해 經濟開發廳(Economic Development Board)으로부터 로봇 또는 오토메이션 設備購入을 위한 借入을 할 수 있다.

(4) Skills Development Fund를 利用할 수 있다.

4. Fund Management에 대한 優待制度

(1) 投資家 또는 資金 受益者가 싱가포르 居住者가 아닐 것

(2) 資金이 MAS의 ACU License 保有者의 ACU를 통해 또는 MAS 承認을 받은 fund manager를 통해 運用되고 있을 것

위의 條件을 충족했을 境遇, 그 投資家 等이 該當 資金運用으로부터 稼得하는 所得에 대해서는 免除 取扱되고 또 ACU License 保有者 및 承認된 fund manager에 대해서도 그 資金運用에 의해 얻은 fee에 대해 10%의 輕減稅率이 適用된다.

5. 統轄經營本部(Operational Headquarters)에 대한 優待制度

이것은 OHQ로서 承認된 會社에 대해 그 海外子會社에서 受領하는 所得을 免稅함으로써 多國籍企業이 싱가포르에 이 地域을 總括하는 經營本部機構를 갖는 地域本部를 設置하도록 推進할 것을 企劃한 것이다.

(1) 認可要件

OHQ로서 必要한 資本金 및 人材를 保有하고 또한 다음에 기술하는 業務活動 全部 또는 一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條件으로 EDB의 承認을 받은 것.

① 經營管理, 事業企劃 및 coordination

② 原材料 및 部品 調達에 관한 情報提供

③ 製品開發 및 研究開發 서비스

④ 技術援助서비스

⑤ 마케팅 및 販賣促進

⑥ 人事管理

⑦ 財務管理

⑧ 資本調達을 包含한 treasury 機能

⑨ 그외 싱가포르에 대해 經濟的인 利益을 가져오는 業務活動

(2) 免稅措置의 內容

OHQ가 싱가포르에서 海外子會社 等에 上記 서비스 提供에 의해 얻은 所得에 대해 5年에서 10年間에 걸쳐 10%(受取配當 免稅)의 輕減稅率이 適用된다.

또한 特定 租稅條約 非締結國에서 源泉稅를 徵收당한 境遇도 싱가포르에서 外國稅額控除가 適用된다.

6. 海外投資의 奬勵

1988年 課稅年度부터 地場企業의 海外投資를 促進하기 위해 海外投資에 관하여 新테크놀리지會社의 投資와 같은 奬勵策의 導入을 決定했다. 즉, 다음 事項의 1개 以上 經濟的 利益을 싱가포르 經濟에 준다고 EDB에 의해 承認된 海外投資로 싱가포르에 設立된 會社는 將來 該當 投資株式을 賣却한 境遇에 생기는 賣却損을 그 投資額을 限度로 하여 稅務上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認定하는 것이다.

(1) 海外의 技術導入이 可能한 投資, 對象 技術로는 Design 및 Engineering 設備, 裝置, Engineering 및 科學技術分野에 關聯된 Staff, Design, 特許 또는 그외의 特殊 노하우.

(2) 高附加價値를 招來하는 技術者 雇用에 관한 投資.

(3) 海外市場에의 參入을 容易하게 하는 投資, 즉 싱가포르 會社에 活氣를 實質的으로 增進시키든가 營業範圍를 擴大시킬 것 같은 投資.

7. 承認 國際貿易業者(Approved International Trader, AIT)에 대한 優待制度

國際貿易센터로서의 싱가포르의 地位를 높이기 위해 1989年 1月에 導入된 「承認된 石油去來業者(Approved Oil Trader, AOT)」에 대한 優待措置를 擴大·發展시키는 것으로 AIT에 대한 優待措置를 追加했다.

(1) AIT 資格要件

① 認定된 5개 범주의 商品을 取扱하는 年商 S$ 2億 以上의 貿易業者일 것.

② 싱가포르에서 人件費, 賃借料 等의 年間經費가 S$ 200萬 以上일 것.

③ 銀行 그외 싱가포르의 facility를 십분 利用할 것.

④ 3人 以上의 貿易專門家를 雇用할 것.

⑤ 싱가포르의 貿易關聯機關에 支援을 할 것.

위의 要件을 충족시킨 것을 TDB에 申請하여 承認을 받을 수 있다.

(2) AIT의 認定去來商品

① 農産物

② 工業製品

③ 鑛産物

④ 建材

⑤ 機械部品

(3) AIT의 對象이 되는 去來

① Off－Shore去來

② 다른 AIT와 去來

③ Off－Shore 市場에서 買入하여 싱가포르 附加價値를 붙여 다시 Off－Shore 市場에 販賣하는 去來

(4) AIT에 대한 輕減稅率適用所得

① 上記의 去來에 의해 獲得하는 所得

② 上記의 去來 中介로 受領하는 커미션

③ 上記의 去來에서 생기는 換差益

(5) AIT에 대한 輕減稅率 및 適用期間

賦課年度 1991年부터 通常의 稅率 31%가 10%로 輕減되어 適用期間은 5年間이나 期間經過後 再申請이 可能하다.

第Ⅳ篇

泰　　國

第 1 章

租稅의 種類와 特徵

概 要

1. 法人稅率은 上場會社가 30% 그 외는 35%, 個人所得稅率은 5%~55%의 累進稅率이다.
2. 營業稅(Business Tax)는 總收入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當該 事業의 區分에 따라 0.1%~50%의 稅率로 課稅한다.
3. 日本의 住民稅 및 事業稅와 같은 地方稅는 없으나 上述한 營業稅의 10% 相當額이 地方稅로서 賦課된다.
4. 法人 및 個人 모두 賦課課稅制度이다.
5.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側面에서 各種 優待措置가 정해져 있다.
6. 1991年 1月 1日부터 改正租稅條約이 效力을 나타내고 있다.

Ⅰ. 租稅의 種類

	所 管
1. 個人所得稅	大藏省國稅局
2. 法人稅	〃
3. 營業稅(Business Tax)	〃
4. 印紙稅	〃
5. 旅行者 出國稅	〃
6. 關 稅	大藏省關稅局
7. 消費稅	大藏省消費稅局
8. 營業稅(註)	地方自治體
9. 土地家屋稅	〃
10. 土地開發稅	〃
11. 看板稅	〃

(註) 國稅에는 營業稅의 10% 相當額이 地方稅로서 賦課된다.

Ⅱ. 國稅의 特徵

(1) 위의 國稅는 전부 稅法(The Revenue Code)에 規定되어 있다. 稅法은 第1條에서 第129條까지의 規定이 있고, 日本에서 말하는 國稅通則法, 國稅徵收法, 法人稅法, 個人所得稅法 等이 規定되어 있다. 日本에서의 施行令, 施行規則, 基本通達 및 個別通達 等에 대신하는 것으로는 勅令(Royal Decree), 省令(Ministerial Regulation) 및

長官告示(Directors General's Notification) 等이 있으나 體系的인 것이 아니고, 實務上은 경우에 따라 稅務當局의 裁量에 根據하여 稅務行政이 施行되고 있는 것을 各所에서 볼 수 있다.

(2) 法人稅는 法人의 課稅所得에 대해 原則 35%(上場會社는 30%)의 稅率로, 個人所得稅는 5%~55%의 累進稅率로 課稅된다.

또, 營業稅(Business Tax)는 總收入金額을 課稅基準으로 해서 該當事業의 內容區分에 따라 0.1%~50%의 稅率(製造業에서 가장 一般的인 稅率은 9%)로 賦課된다.

(3) 地方稅로서는 上述한 營業稅의 10%가 賦課된다.

(4) 日本은 自主納稅申告制度이나, 태국은 納稅者로부터 提出된 申告書等에 根據하여 稅務當局이 賦課하는 賦課課稅制度이다.

(5) 法人稅의 경우, 課稅年度는 會社가 채택하는 事業年度이나 個人所得稅는 曆年主義에 따른다.

(6) 稅務調査는 日本과 마찬가지로 調査官이 直接 會社 等을 訪問하여 調査한다. 調査範圍는 넓고 個人所得稅, 法人稅 및 營業稅 等 모든 國稅를 포함한다.

(7)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政策的 側面에서 投資奬勵法이 制定되어 있으며, 稅務上 各種의 優待措置가 강구되어 있고, 日本도 「看做外國稅額控除」 制度로 稅制面에서 태국을 지원하고 있다.

(8) 會計帳簿 等을 外國語(예를 들어 英語)로 記錄하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도 當局의 命令이 있으면 태국어로 飜譯해야 한다.

(9) 1990年에 日·泰國租稅條約의 全面 改正이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

에 대해서는 「第6章 日·泰國租稅條約의 全面 改正에 대하여」에 說明하였다.

第 2 章

個人所得稅

概　要

1. 180日 未滿의 滯在者는 非居住者, 180日 以上 滯在者는 居住者가 된다.
2. 國外源泉所得은 居住者의 경우 태국에 送金했을 때 課稅되지만, 非居住者의 境遇는 送金 與否에 관계없이 非課稅이다.
3. 給與所得에 대해 源泉徵收制度가 있다.
4. 出國할 때에 納稅證明書가 必要하다.

Ⅰ. 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

(1) 納稅義務者는 泰國에서의 「居住」 狀況에 따라 區分된다. 居住者란 同一課稅年度中에 通算 180日 以上 태국에 滯在한 者를 말한다.

(2) 納稅義務者가 居住者인 境遇에는 다음의 ① 및 ②가 課稅對象이 된다.

① 稅法 第40條에 정해진 모든 國內源泉所得

② 國外源泉所得 중 泰國에 送金된 所得

(3) 納稅義務者가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上記의 ①이 課稅對象이 된다.

(4) 泰國의 居住者 취급을 받는 日本人 從業員의 本給, 不在手當 및 賞與金은 所得의 受領地가 어디인가를 不問하고 泰國에 人的 勞務의 提供에 對한 代價이고, 泰國 國內 源泉所得으로 되어 泰國으로의 送金 有無에 관계없이 泰國에서 課稅된다.

(5) 日本·泰國 租稅條約 第14條에 의한 短期滯在者 免稅措置.

日本과 泰國과의 租稅條約 第14條에 따라, 다음의 3가지 條件을 모두 充足할 境遇에는 泰國에서의 課稅는 免除된다.

① 當該 課稅年度(曆年)를 通하여 泰國의 滯在期間이 180日을 넘지 않을 것

② 給與 等의 支拂者가 日本의 居住者 또는 居住法人일 것

③ 給與 等이 태국에서 租稅를 負擔하는 企業에 의해 負擔되지 않을 것

II. 課稅所得의 種類

1. 課稅所得

課稅所得은 「總所得金額—各種 控除金額」에 의해 計算된다.

2. 總所得金額의 主된 項目

(1) 給與, 賞與金 等 勞動雇用에 의해 생기는 모든 所得

(2) 住宅家賃, 會社가 無償提供하는 住宅施設의 家賃相當額 等 現物給

與[註]로 看做되는 것

(註) 業務上의 出張旅費 및 日當에 대해서는 政府가 定하는 金額 또는 實費(適正한 金額으로 證憑書類를 添附한다) 中 金額이 적은 쪽을 現物給與로 간주한다. 여기서 政府가 정하는 金額이란 다음과 같다.

國內出張手當	1日當 70바트
海外出張手當	
北美·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1日當 31US달러
라오스, 미안마 및 캄보디아	〃 23US달러
其他國	〃 26US달러

(3) 태국에서 受領하는 預金利子 및 配當金 等(단 居住者가 태국의 會社 等에서 配當을 받을 경우 그 총액의 30%가 課稅所得에서 控除된다).

(4) 기타의 課稅對象所得

3. 各種 控除金額의 主된 項目

(1) 基礎控除

前述한 所得金額의 (1) 및 (2)에 대해서는 30%의 基礎控除가 認定되나, 控除額은 50,000바트가 限度이다.

(2) 本人控除 15,000바트

(3) 配偶者控除 15,000바트

(4) 扶養控除(子女)

① 賦課年度 1979年 以前에 出生 또는 養子가 된 者, 各 7,000바트

② 賦課年度 1980年 以後에 出生 또는 養子가 된 者, 第3子까지 各

7,000바트

(註) 1. 1979年 以前에 出生 等에 의해 子女가 3人 以上 있는 境遇에는 1980年 以後에 出生 等에 의해 자녀가 있어도 控除對象이 안 된다.

2. 滿25歲 未滿으로 就學中인 者는 控除對象이 된다.

3. 子女에게 7,000바트 以上의 課稅所得이 있는 경우 이 控除는 認定되지 않는다.

4. 子女가 泰國의 法律下에 있는 學校에 在學中(日本人學校를 包含)인 境遇는 合計 2,000바트의 追加控除가 認定된다.

5. 本人은 非居住者인 경우에도 配偶者 및 子女가 泰國에 在住하고 있으면, 上記의 (3) 및 (4)의 控除가 認定된다.

(5) 生命保險料

泰國에서 營業하고 있는 保險會社와의 契約으로 保險期間이 10年以上인 것은 7,000바트를 限度로 保險料의 控除가 인정된다.

(6) 寄附金

政府關係診療所 및 教育關係機關에의 寄附金은 課稅所得의 10%를 限度로 控除가 認定된다.

4. 非課稅所得

(1) 會社가 業務遂行에 必要하여 支出한 旅費

(2) 勅令에 의해 政府가 정한 範圍에서 支出된 日當

(3) 赴任 및 歸任을 위해 支出한 實費(단, 歸任부터 365日 以內에 再赴任한 경우는 適用되지 않는다)

(4) 遺産 또는 營利目的 以外에 取得한 資産의 賣却代金

(5) 赤十字社의 抽籤 賞金

(6) 投資信託受託證券을 賣却하여 얻은 所得

(7) 投資信託으로부터 생긴 所得

Ⅲ.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泰國에 居住하는 日本人 從業員의 境遇 納付해야 할 稅額은 다음과 같다.

納付해야 할 稅額 = 課稅所得 (總所得金額 − 各種 控除金額) × 稅率

Ⅳ. 所得稅의 源泉徵收納付

1. 源泉徵收納付

(1) 給與所得者의 個人所得稅는 源泉徵收制度에 의해 支拂할 때마다 支拂者가 源泉徵收하여 納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源泉徵收稅額은 課稅所得 支拂日로부터 7日 以內에 當局(The Amphur Office)에 納付해야 한다고 稅法에 정해져 있으나, 給與所得 等에 대해서는 1978年의 大藏省告示에 의하여 翌月 7日까지 納付하면 되도록 되었다.

(3) 給與所得 等에 관한 源泉徵收稅額은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① 各人의 月給與額 等을 基礎로 年間推定所得額을 算出한다.

② 年間推定所得額에서 各種 控除를 한 후 年間推定課稅所得을 算出한다.

③ 年間推定課稅所得과 稅率表에 따라 年間推定所得稅額을 算出한다.

④ 年間推定所得稅額을 支給回數로 나누어, 1回當의 源泉徵收稅額을 算出한다.

(4) 12月에 支給하는 給與 또는 賞與金에 의해 소위 年末調整을 한다.

2. 源泉徵收稅 證明書(Certificate of Tax Deduction) 및 源泉徵收稅 申告書(Annual Withholding Return)

(1) 源泉徵收稅 證明書

會社 等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稅額에 關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樣式에 의해 源泉徵收稅額 證明書를 各人에게 交付해야 한다.

① 給與所得者에게는 翌年 2月 15日까지

② 給與所得者가 途中 退職한 境遇는 最後의 源泉徵收日에서 1個月 以內

③ 그 외의 境遇는 所得을 支拂할 때마다 즉시

(2) 源泉徵收稅申告書

會社 等 源泉徵收義務者는 國稅廳長이 정한 書式의 申告書에 의해 當該給與所得 等에 關한 資料를 明示하여 翌年 1月 末日까지 當局(Assessment Officer)에 提出해야 한다.

Ⅴ. 申告書의 作成·提出

다음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每年 3月 末日까지 前課稅年度中에 생긴

所得에 關해 國稅廳長이 定한 書式에 의해 申告書를 기타 必要事項과 함께 當局에 提出해야 한다.

(1) 給與所得 等인 境遇

① 配偶者 없이 總所得金額이 21,500바트를 넘는 境遇

② 配偶者가 있고 總所得金額이 43,000바트를 넘는 境遇

(2) 給與所得 等 以外의 所得이 있는 境遇

① 配偶者 없이 總所得金額이 15,000바트를 넘는 境遇

② 配偶者가 있고 總所得金額이 30,000바트를 넘는 境遇

Ⅵ. 所得稅의 賦課

(1) 源泉徵收된 稅額은 稅金의 計算上 豫納稅金으로 取扱된다.

(2) 申告書 提出後, 當局은 必要에 따라 追加資料의 提出을 要求하든가(納稅者는 이 通知 受領日부터 15日 以內에 回答해야 한다)하여 賦課를 하고, 이것에 따라 納稅通知書(Notice of Amount of Tax and Duty)를 交付한다. 納稅者는 이 通知書 受領日로부터 30日 以內에 要納付額이 있으면 이것을 納付해야 한다. 納付의 結果, 領收書가 入手되고 이에 의해 納稅가 完了된다.

단, 賦課의 結果, 追加徵收 또는 還付해야 할 稅金이 없는 境遇에는 納稅通知書의 交付는 不必要하다.

(3) 通知된 課稅額에 異議가 있는 境遇는, 通知를 受領한 날부터 15日 以內에 Amphur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에도 稅金은 納稅期限 內에 納付할 必要가 있다.

(4) 過納源泉徵收稅에 대해서는, 3年 以內에 還付請求書를 提出하여 還付請求할 수 있다.

VII. 赴任時와 歸任時의 手續

1. 赴任時의 手續

(1) 태국의 會社에서 근무하기 위해 태국에 入國할 경우에는 入國을 위한 비자(visa)가 必要하다. 아울러 勞動許可證의 入手가 要求된다.

(2) 課稅所得이 發生한 날부터 60日 以內에 納稅者番號를 申請하여, 同番號(Tax Payer Identification Card No.)를 入手해야 한다.

2. 歸任時의 手續

(1) 태국에서 年의 途中에 歸國할 境遇는 그 해의 1月 1日부터 歸國日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를 納付해야 한다.

(2) 出國前 15日 以內에 納稅證明書의 下附申請을 하여, 이 納稅證明書를 出國時에 飛行場 等의 出入國管理 擔當官에게 여권(passport)과 함께 提示해야 한다.

(3) 이 納稅證明書는 納稅義務의 有無에 關係없이 必要하므로 注意할 必要가 있다.

태국 滯在日數와 納稅證明書의 要否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泰國滯在日數	泰國源泉所得의 有無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	納稅義務	納稅證明書
90日 以內	없 음	非居住者	없 음	不要
90日 以內	있 음	〃	있 음	要
91～180日 以內	없 음	〃	없 음	要
91～180日 以內	있 음	〃	있 음	要
180日 超過		居住者	있 음	要

(註) 1. 日·泰國租稅條約에 따라 180日 以內의 滯在로 非課稅인 경우에도 納稅證明書는 必要하다.

2. 居住者인 駐在員의 家族에 대해서도 所得의 有無에 관계없이 各人別로 納稅 證明書가 必要하다.

Ⅷ. 個人所得稅率

	課稅所得(바트)	稅率(%)	稅額(바트)
最初의	50,000	5	2,500
다음의	150,000	10	15,000
最初의	200,000		17,500
다음의	300,000	20	60,000
最初의	500,000		77,500
다음의	500,000	30	150,000
最初의	1,000,000		227,500
다음의	1,000,000	40	400,000
最初의	2,000,000		627,500
	2,000,000 초과	55	

第 3 章

法 人 稅

概 要

1. 居住法人의 判定은 本店所在地主義에 의한다.
2. 課稅對象은 事業에 關聯하여 생긴 全世界所得이다.
3. 外國會社의 泰國支店이 法人稅金納付後의 利益을 本店에 送金하는 境遇 別途 20%가 追加課稅된다.
4. 泰國에 代理人(agent)이 있는 外國會社는 PE認定을 받아 納稅義務가 發生한다.
5. 二重課稅의 排除는 外國稅額控除에 의하나 現在에는 稅法上의 明文規定은 없으며 當局의 內規로 그의 取扱을 定한다.

Ⅰ. 納稅義務者

다음과 같이 泰國에서 事業을 運營하는 者가 納稅義務者이다.

(1) 泰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會社

(2) 外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會社로 泰國에 登錄된 支店

(3) 外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會社로 泰國內에서 事業을 하기 위해

代理人(agent)을 둔 者

II. 課稅對象

泰國에서 운영하는 事業 및 그 事業에 關聯하여 생긴 全世界所得.

III. 所得의 種類

(1) 事業所得
(2) 營業權, 著作權, 其他의 權利에 대한 所得
(3) 配當金, 利子 또는 割引料
(4) 賃貸料, 使用料 等 資産에서 생긴 所得
(5) 其他 所得의 性質을 가진 것

IV. 稅率

① 上場會社 30%
② 其他 會社 35%

단, 外國會社의 泰國支店에는 그의 課稅所得에 대해 35%의 法人稅가 課稅되고, 그후의 稅後利益을 外國의 本店에 送金하는 境遇에는 上記 法人稅 外에 當該 利益送金에 대해 20%가 追加課稅된다(送金日로부터 7日以內에 所定의 申告書와 함께 納付해야 한다).

Ⅴ. 事業年度

會社는 자유롭게 決算日을 選定할 수 있다. 決算日을 變更할 때는 國稅廳長에 申請하여 許可를 받는 것을 條件으로 하고 있다.

會計期間은 設立時, 決算期 變更時 및 淸算時를 제외하고 12個月間이 아니면 안된다.

Ⅵ. 申告期限

事業年度 終了日부터 150日 以內에 申告書에 다음 書類를 添附하여 納稅해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課稅所得金額 및 納付稅額의 計算明細書

또, 이들 書類는 國稅廳長의 認可를 얻은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Ⅶ. 豫定納稅

(1) 事業年度를 6個月 經過한 날부터 2個月 以內에 會社는 年間課稅所得을 見積하여 그 折半에 相當하는 稅額을 申請書와 함께 納付해야 한다(設立 初年度 等 事業年度가 12個月 未滿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2) 下記의 경우에는 支拂해야 할 稅額의 20%~100% 相當額 또는 不足稅額을 加算稅로 支拂해야 한다.

① 豫定申告 및 豫定納稅를 게을리 한 경우

② 見積課稅所得이 實際課稅所得의 75% 相當額보다 적은 경우

Ⅷ. 法人稅의 賦課

(1) 豫告納稅된 稅額은 稅金의 計算上 豫納稅金으로 取扱된다.

(2) 申告書 提出後, 當局은 必要에 따라 追加資料의 提出을 要求하든가 (納稅者는 通知書 受領日부터 15日 以內에 回答해야 한다) 하여 賦課를 하고, 納稅通知書(Notice of Amount of Tax and Duty)를 交付한다. 단, 賦課의 結果 追加徵收 또는 還付해야 할 稅金이 없는 경우 納稅通知書의 交付는 不必要하다.

(3) 納稅者는 通知書 受領日부터 30日 以內에 要納付額이 있으면 그것을 納付해야 한다. 納付의 結果, 領收書가 入手되고, 納稅가 完了된다.

(4) 認定賦課

① 會社가 申告書 및 添附書類인 決算書 等의 一部 또는 全部의 提出을 등한히 하거나 혹은 當局이 要求하는 資料의 提出을 등한히 한 경우에 當局은 總賣上高 또는 總收入의 5%를 稅金으로 賦課할 수 있다.

② 會社가 要求받은 會計記錄을 不備 또는 虛僞로 記錄하여, 納稅를 면제 또는 過少納稅했다고 認定되는 境遇, 當局은 通常의 稅額

을 賦課함과 동시에 그 2배의 加算稅를 부과할 수 있다.

(5) 通知된 賦課額(上記의 認定賦課額을 포함)에 異議가 있을 경우는 當該 通知를 受領한 날부터 15日 以內에 Amphur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에도 稅金을 納稅期限內에 納付할 必要가 있다.

IX. 泰國에 代理人(agent)이 있는 外國會社의 納稅義務

(1) 泰國의 稅法 第76條의 2(bis)에 의하면 外國의 法律에 의해 設立된 會社가 泰國內에서 事業을 하기 위해 使用人(an employee), 代理人(a represen-tative) 또는 仲介者(go-between)를 두어 所得이 생긴 경우, 該當 外國會社는 泰國에서 事業을 運營했다고 간주하여 使用人等을 該當 外國會社의 代理人으로 取扱하여 申告 및 納稅의 義務를 가지게 되어 있다.

(2) 태국의 駐在員事務所와의 關係

駐在員事務所는 營業活動을 하지 않고 그 活動이 情報蒐集, 市場調査 等에 限定된 경우에는 恒久的施設(permanent extablishment, P.E.)로 보지 않아 法人稅 課稅가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泰國의 稅法上 다음 行爲는 營業活動으로 본다

① 顧客의 勸誘

② 顧客과 會社와의 仲介連絡

③ 會社를 대신한 契約書의 締結, 見積書, 送狀, 計算書 및 領收書의 代理發行

④ 商品의 保管, 管理

만약 泰國 駐在員事務所가 上記의 行爲를 했다고 認定되는 境遇, 恒久的施設을 保有한 것으로 간주되고, 當該 行爲에 의해 會社가 얻은 所得에 대해 당연히 課稅問題(소위 P.E. Tax)가 생긴다.

이 경우 당연히 無申告, 無記帳으로 되어 認定賦課를 당하게 되므로 특히 注意가 必要하다.

X. 課稅所得의 計算

(1) 課稅所得의 計算上 要求되는 會計處理가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基準(註)에 따라 財務諸表가 作成되고, 公認會計士가 當該 財務諸表가 적절하게 作成되었다는 趣旨의 意見表明을 했다면 當該 會社의 會計處理는 稅法上으로도 適正하다고 여겨진다.

(註) 泰國에는 一般의 會社가 準據해야 할 體系的인 會計原則으로서 獨自的인 것은 特別히 制定되어 있지 않고, 國際會計基準(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이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原則으로 자리잡고 있다.

(2) 會計處理의 變更은 國稅廳長 앞으로 申請하고, 그 許可를 條件으로 認定한다.

1. 益 金

(1) 受取配當金 等

居住者인 會社 相互間에 받는 配當所得 等에 대해서는 配當金 등의

支拂時에 源泉徵收制度의 適用은 없고, 또 個人의 境遇와 같은 稅額控除制度도 없는 대신, 다음과 같은 特例가 있다.

配當金等의		課稅上의 取扱
受領者	支拂者	
上場會社	上場會社 非上場會社	全額 非課稅된다.
非上場會社	上場會社 非上場會社	$\frac{1}{2}$을 課稅取得으로 한다.

단, 이 特例는 다음의 境遇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① 當該 株式 等이 配當金 支拂通知日(company announce to pay dividend)의 直前 3個月 以內에 取得되었거나, 直後 3個月 以內에 讓渡된 境遇

② 當該 收益이 總收益의 15%를 넘는 경우

(2) 非課稅所得

① 投資信託受益證券의 賣却으로부터 생긴 所得

② 農産物의 販賣에서 생긴 所得

2. 損　金

(1) 減價償却費

① 資産의 取得價額에 대해 勅令(Royal Decree No. 145)에 정한 다음 分類의 比率에 根據한 償却額을 限度로 하여 損金算入이 認定된다.

建 物

恒久的 建物	5% (20年)
臨時的 建物	100% (1年)
天然資源權利金, 賃貸權 等	5% (20年)
契約期間이 정해 있는 것 $\frac{100\%}{\text{契約期間}}$ (契約期間) (更新條件이 없는 것에 限함)	
其他	10% (10年)
特許權使用料 等의 無形固定資産	
期間이 정해져 있는 것	$\frac{100\%}{\text{契約期間}}$(契約期間)
其他	10% (10年)
其他의 設備(土地 및 販賣商品을 除外)	20% (5年)

② 上記의 償却率에서 구한 期間을 短縮하지 않는 한 定額法 外에 定率法 및 生産高 比例法 等도 認定된다.

③ 會計上, 上記의 期間보다 긴 期間의 償却도 認定되나, 稅務申告上의 조정은 認定되지 않는다.

④ 乘員 10人 未滿의 버스 및 乘用車는 取得價額 中 1,000,000바트를 上限으로 하여 償却이 인정된다(會計上은 當然하게 100% 償却의 對象이 된다).

⑤ 割賦購入의 境遇 그 支拂合計額이 取得價額이 되고, 償却이 認定되나, 1事業年度中의 支拂額을 넘어서 償却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는다.

⑥ 殘存價額의 規定은 없고 100% 상각이 可能하나, 會計上 1바트의

備忘價額을 남겨둔다.

⑦ 期中 取得資産에 대해서는 當該 資産取得日로부터 日割計算을 할 必要가 있다.

⑧「캐피탈 리스」(Capital Lease)로 固定資産計上한 것은 當該 資産의 性格에 따라 各各의 耐用年數가 適用된다.

(2)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

日本은 取得價額이 100,000엔 未滿의 減價償却資産은 使用된 事業年度에서 一時에 損金經理하는 것이 認定되어 있으나, 泰國에는 이와 같은 金額基準은 없고, 使用可能期間(耐用年數)이 1年 以上인 것은 稅務上 全部 資産計上하고, 稅法의 規定에 따라 減價償却費를 損金에 算入한다.

또, 修繕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維特을 위한 單純한 修理가 아닌 것, 즉 資産增說, 改變, 擴張 또는 改良을 위한 支出은 損金不算入으로 되어 있어 이 점은 日本의 規定과 類似하나 一定 金額以下의 것은 自動的으로 修繕費로 보는 金額基準이 없으므로 留意할 必要가 있다.

(3) 外貨建資産·負債 및 去來의 換算

期中에 外貨베이스去來 즉 賣上, 購入 및 그 代金의 決濟 等은 그의 取得時 또는 發生時의 換率에 의해 換算되어야 한다.

期末時의 外貨베이스資産은 泰國 中央銀行의 計算에 따라 確定된 商業銀行의 平均買入換率과 取得時의 換率 중 낮은 쪽에, 또 期末時의 外貨베이스 債務는 泰國 中央銀行의 計算에 의해 確定된 商業銀行의 平均賣渡換率에 의해 換算되어야 한다.

(4) 在庫資産의 評價方法

在庫資産은 取得原價와 市場價格 中 낮은 쪽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5) 貸損充當金과 貸損損失

① 會計上의 必要性에서 貸損充當金을 計上하는 것은 當然하나, 稅務上 課稅의 公平負擔原則에서 貸損處理는 省令(Ministerial Regulation No. 159)의 要件을 具備한 것에 한해서만 認定한다. 따라서 그 差額은 稅務計算上 自己否認하게 된다.

② 省令에 정한 要件은 다음과 같다.

㉠ 當該 債權이 그 營業行爲에 의해 發生하고, 營業收益에 計上된 것일 것.

㉡ 訴訟을 提起하기에 充分한 證據資料가 있을 것.

㉢ 適時督促을 한 記錄이 있거나, 또는 訴訟을 제기해도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回收할 수 없는 것.

- 債務者가 死亡하고, 回收에 必要한 資産이 없다.
- 債務者가 淸算을 開始하고, 他의 優先的 債權者의 債權을 辨濟하기에 必要한 資産도 없다.
- 債務者가 이미 다른 債權者로부터 訴訟을 당하고 있으나 當該 債務를 辨濟하기에 必要한 資産도 없다.
- 債務者가 이미 다른 債權者로부터의 要請에 따라 裁判所에서 破産宣告를 받았고, 모든 資産이 그의 家族에게 割當되어 있다.

㉣ 모든 債權者의 債權의 合計가 20,000바트 未滿의 境遇에는 上

記 ㉢의 要件 없이도 貸倒處理된다.

또, 回收를 위한 費用이 債權額을 넘는다고 認定된 境遇에도 마찬가지로 貸倒處理할 수 있다.

(6) 各種 充當金 및 準備金

日本에는 法人稅法에 의해 退職給與充當金 等이, 또 租稅特別措置法에 의해 各種 準備金이 一定한 條件 아래서 損金算入하는 것이 認定되어 있으나 태국에는 保險會社의 特例를 除外하고는 認定되지 않는다.

(7) 退職年金基金

省令(Ministerial Regulation No. 162)에 정해진 다음의 要件을 具備한 경우, 會社負擔分의 損金算入이 認定된다.

① 태국에서 營業하고 있는 銀行, 金融會社, 生命保險會社 또는 投資顧問業 經營免許를 保有한 證券會社를 「펀드 매니저」(Fund Manager)로 할 것.

② 會社의 負擔金은 從業員負擔分과 同額 以上이고 從業員의 給與等(賞與金은 包含, 諸手當은 包含하지 않음)의 3% 以上이면서 15%를 넘지 않을 것.

③ 賦金支拂은 給與 等의 支拂日에서 3日 以內에 할 것.

(8) 寄附金

公共的 寄附金으로 課稅所得의 1% 以內의 것에 한해 損金算入이 認定된다.

(9) 交際費

省令(Ministerial Regulation No. 143)에 정하는 範圍 內에서 損金

算入이 認定된다.

① 通常의 事業에서 慣行的으로 必要한 것, 단 同一會社 社員의 접대는 認定되지 않는다.

② 營業上 有益한 것으로 1回 1人當 500바트 以下의 飮食代, 遊興費 또는 스포츠에 관한 것.

③ 交際費의 合計가 總收益 또는 期末時의 拂入資本金 中 더 큰 金額에 대하여 아래의 퍼센트일 것.

總收益 또는 期末拂入資本金額 중에서 더 큰 金額	%
5百萬바트 以下	2.0
5百萬바트 超過 千2百萬바트 以下	1.0
千2百萬바트 超過 5千萬바트 以下	0.5
5千萬바트 超過	0.3

④ 交際費는 전부 任員 等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原則的으로 領收書 등이 受領되는 것이어야 한다.

⑽ 罰金 等

租稅上의 科料 및 加算稅, 刑法上의 罰金 等 소위 「페널티」(Penalty)는 稅務上의 損金으로 되지 않는다.

⑾ 其他

다음과 같은 支出은 稅務上 損金不算入이 된다.

① 事業目的 또는 利益目的 以外의 事由로 支出된 經費

② 泰國內에서의 事業目的 以外로 支出된 經費

③ 受領者를 立證할 수 없는 支出, 소위 用途 不明金

3. 缺損金의 移越

稅務上의 缺損金은 翌 5事業年度에 限하여 移越이 認定되고, 當該 期間의 課稅對象利益과 相殺할 수 있다.

XI. 源泉徵收制度

(1) 個人所得稅에서 說明한 것같이 給與 等을 支拂하는 會社는 그 給與等에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稅務當局에 納付해야 한다(「第2章 Ⅳ. 所得稅의 源泉徵收納付」參照).

(2) 政府機關에 의한 源泉徵收稅

政府 또는 關係機關이 會社에 대해 課稅所得이 되는 支拂을 할 때는 當該 支拂金額의 1%를 源泉徵收한다. 이는 會社로서는 豫納稅金으로 取扱된다.

(3) 不動産賣却所得의 源泉徵收稅

不動産의 賣買에 關하여 그 購入代金을 支拂하는 個人 또는 會社는 當該 賣買金額의 1%를 源泉徵收하고, 登記時에 登記官에게 納付해야 한다. 이것도 賣却한(源泉徵收된) 會社에게는 豫納稅金으로 取扱된다.

(4) 非居住者 또는 非居住法人에 대한 支拂에 關한 源泉徵收稅

태국의 居住者가 非居住者 또는 非居住法人에 대하여 以下의 項目을 支拂할 경우 源泉徵收가 要求되며, 支拂日이 속하는 달의 翌

月 7日까지 所定의 申告書와 함께 納付해야 한다. 또 配當, 利子 및 로열티에 대해서는 日·泰國租稅條約의 全面改正이 있으므로 「第6章 日·泰國租稅條約의 全面改正」을 參照할 것.

① 配當 20%

稅法(Revenue Code)에는 25%로 되어 있으나, 1980년의 勅令(Royal Decree No. 92)에 의해 1981年 以後 20%로 되었다.

단, 日本의 居住者 또는 居住法人에 支拂할 境遇에는 日·泰國租稅條約에 따라 當該 居住者 또는 居住法人이 配當金을 支拂하는 法人의 株式을 配當金 支拂日의 直前 6個月間 以上의 사이에 25% 以上 保有하고, 또, 支拂者가 産業的 事業에 從事할 境遇 15%로 輕減된다. 이 境遇 看做外國稅額控除가 適用된다.

② 利子 25%

단, 金融機關에 대한 利子의 支拂인 경우는 10%이다. 또, 日本의 居住法人에게 支拂하는 境遇에는 日·泰國租稅條約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政府 또는 그의 關係機關 또는 그들이 所有하는 金融機關에 利子를 支拂하는 경우는 0%

㉡ 金融機關(保險會社를 包含)이 받는 것은 10%

③ 로열티(使用料) 25%

단, 일본의 居住者 또는 居住法人에 支拂할 境遇는, 日·泰國租稅條約에 의해 15%로 輕減되고, 10%의 看做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日·泰國租稅條約에는 「使用料」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이 條約에서 「使用料」란 文學上, 美術上 또는 學術上의 著作物(映畵 필름 및 라디오 放送用 또는 텔레비전 放送用의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意匠·模型·圖面·秘密方式 또는 秘密工程의 使用 또는 使用 權利의 代價로, 또는 産業上·商業上 또는 學術上의 經驗에 관한 情報의 代價로서 受領하는 모든 種類의 支拂金을 말한다.

(4) Management Fee, 仲買手數料 等(稅法 第40條(2)에 規定된 것) — 所得의 20% 또는 20,000바트 중 적은 쪽을 控除한 후의 金額에 대해 25%

(5) 公認會計士, 辯護士에 대한 報酬 및 技術서비스료 — 所得의 70% 相當額에 대하여 25%

(6) 泰國의 輸出業者가 外國의 代理店에 支拂하는 手數料 — 10%

(7) 賃借料 等 — 所得의 90% 相當額에 대하여 25%

XII. 外國稅額控除

1. 外國稅額控除制度란 무엇인가

企業이 國際化하여 世界 各國에서 營業活動을 運營하는 現在, 各各의 나라가 課稅權을 主張하여 同一한 所得에 대하여 2個國 以上에서 課稅를 당하게 되면 企業으로서는 過重한 租稅負擔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國際貿易의 發展을 妨害하게 된다. 이러한 國際的인 二重課稅를 排除하는 方法의 하나로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있다.

2. 日本의 外國稅額控除制度

(1) 概要

① 外國稅額의 直接稅額控除制度

日本企業이 外國에 있는 支店 等에서 생긴 事業所得에 대해, 當該 外國에서 課稅된 法人稅 및 外國의 會社에서 받은 利子, 配當等에 대하여 當該 外國에서의 源泉徵收稅額같이 자신의 國外所得에 대해 外國에서 納稅者로 되어 外國에 納付한 稅金에 대해 日本에서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② 外國稅額의 間接稅額控除制度

日本의 企業이 外國에 設立한 子會社에서 配當을 受領한 境遇에 그 外國子會社에 課稅된 外國稅額 中 受領한 配當에 對應하는 部分에 대해 親會社인 日本企業이 納付한 것이라고 보아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③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Tax Sparing Credit System)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投資奬勵法에 의해 許可를 받은 企業은 그 事業所得에 대해 全部 또는 一部가 非課稅로 되어 있어 이 非課稅所得을 配當으로서 日本에 送金한 경우에 日本에서 課稅된다면 泰國에서의 特別免稅措置는 그대로 日本에서의 稅收增加가 되고, 誘因으로서의 意味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泰國의 特別減免稅額에 대해 설령 泰國에서 稅金을 支拂하지 않았어도 支拂한 것으로 看做하여 日本에서 外國稅額控除를 認定한다는 制度이다. 이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는 國際

的인 二重課稅의 排除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日本에서 後進國에 대한 投資를 稅制面에서 積極的으로 促進하기 위한 制度이다.

④「택스 헤이븐」稅制의 一環으로서의 外國稅額控除制度

「택스 헤이븐」에 있는 子會社나 孫會社의 留保所得에 대해서는 一定한 要件 아래, 그것을 親會社인 日本法人의 所得에 合算하여 日本에서 課稅하나, 이 경우 特定 外國子會社 等이 納付한 外國法人稅에 대해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2) 直接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① 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

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는 法人의 所得에 대하여 賦課되는 稅이고, 태국의 境遇에는 支店이 支拂한 法人稅 및 會社가 支拂한 配當金, 利子 및 로열티 등에 대한 源泉徵收稅가 該當한다.

② 外國稅額의 控除金額

外國稅額의 控除는 外國法人稅의 納付가 確定된 날을 포함하는 事業年度에 適用을 받을 수 있다. 단, 納付한 外國稅額의 全額을 控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限度가 設定되어 있다. 具體的으로는 다음의 算式에 의해 計算된 金額을 限度로 한다(法令142①).

$$\text{當該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額}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의 國外所得金額(단, 國外에서 非課稅로 된 國外所得의 2분의 1을 除外)}}{\text{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註) 1. 1989年 4月 1日 ~ 1991年 3月 31日까지의 기간에 開始하는 事業年度에서는, 上記 算式의 2分의 1의 部分이 3分의 1로 된다.

2. 또, 여기서 國外所得의 金額이란 다음 중 큰 쪽의 金額이다. (法令142③ 단서, 142의 2)

①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國內所得과 國外所得과의 合計額)의 100分의 90에 相當하는 금액 —— 全所得 $\times \frac{90}{100}$

②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 期末에서의 國外使用人 比率을 곱한 金額 —— 全所得 $\times \frac{\text{國外使用人數}}{\text{全使用人數}}$

③ 全所得 − (全所得 − 外國稅額) ÷ $\frac{\text{外國稅額}}{\text{全所得} \times 50\%} \times \frac{20}{100}$

또, 當期에 納付가 確定된 外國稅額이 當期 法人稅의 控除限度額보다 많아서 全額 法人稅에서 控除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地方稅 控除限度額의 範圍內에서 地方稅로부터 控除하고, 그래도 남는 金額은 그후 3年 以內에 控除限度額에 餘裕가 생긴 경우에 그 餘裕額의 範圍內에서 控除할 수 있다.

(3) 間接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① 外國稅額의 間接控除制度는 外國子會社에서 配當을 支拂받은 親會社인 內國法人이 그 配當의 支拂確定日 以前 6個月 以上 계속하여, 그 外國子會社의 發行株式 總數의 25% 以上의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外國子會社로부터 利益의 配當支拂을 받은 경우에 適用된다. 단 優先株式에 대한 優先配當은 適用되지 않는다.

② 配當에 대한 源泉徵收稅에 대해서는 前述한 直接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나, 泰國子會社가 支拂한 法人稅에 대해 納付가 確定된

段階에서 間接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

③ 外國稅額控除의 適用對象이 되는 金額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親會社인 日本法人이 納付한 것이라고 看做된 外國法人稅額

$$= \text{外國子會社의 配當에 賦課된 事業年度의 外國法人稅額(A)} \times \frac{\text{親會社인 日本法人이 外國子會社에서 받은 配當額}}{\text{外國子會社의 配當에 賦課된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 (A)$$

3. 泰國의 外國稅額控除制度

(1) 泰國의 居住者인 會社가 稼得한 外國所得에 關하여 國際的인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租稅條約締結國으로부터의 所得에 대해 태국에서의 課稅(非公開株式會社이면 35%)를 限度로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이 外國稅額控除에 대해 現在로서는 稅法上의 條文規定은 存在하지 않으나, 當局은 內規로 그의 取扱을 정하고 있다.

또, 日本과 같이 間接稅額控除의 適用은 없다.

(2) 泰國은 다음의 23개국과 租稅條約(正式은「所得에 대한 租稅에 관한 二重課稅의 回避 및 脫稅의 防止를 위한 條約」)을 締結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서독,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중국 및 호주.

第 4 章

營 業 稅

概 要

1. 居住者, 非居住者에 관계없이 納稅義務가 있다.
2. 總收入이 課稅對象이 된다.
3. 營業稅는 日本에서 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4. 該當 營業稅의 10% 相當額을 別途 地方稅로서 納付해야 한다.

Ⅰ. 納稅義務者

태국에서 營業稅의 稅率表(Business Tax Schedule,「Ⅲ. 收入의 種類와 稅率」참조)에 정하는 事業을 運營하는 者(이것을 事業主(trader)라 한다) 및 本法에 의해 事業主라고 간주되는 자는 居住者, 非住居者를 不問하고 納稅義務者가 된다.

또, 營業稅는 日本의 外國稅額控除制度에서 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日本에서 外國稅額控除는 받을 수 없는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II. 課稅對象

(1) 事業主가 얻는 總收入이 課稅對象이 된다.

(2) 總收入이란 事業으로 인해 泰國 國內 및 國外에서 받는, 또는 받아야 할 金錢, 資産, 代價 또는 其他 便益의 價値를 말한다.

III. 收入의 種類 및 稅率

收入의 種類와 稅率은 아래와 같다.

(방콕 日本人 商工會議所)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第1分類 物品販買	下記 種類의 物品 販賣 第1種		
	(a) (b)와 (c) 또는 第2種부터 第8種까지 또는 기타의 分類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物品 또는 副産物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9.0
	(b) 精米業 또는 製材業의 製品 또는 副産物로서 輸入된 것	輸入業者	5.0
	(c) 第8種에 表示된 物品으로 輸入된 것.	輸入業者	1.5
	(d) (a)에 根據한 物品 또는 副産物로 製造業者가 (a)에 根據하여 納稅의 義務가 없는 것.	輸出業者	2.0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第1分類 物品販賣	第 2 種		
	(a) 冷藏庫, 冷凍庫, 空調機, 溫度調整機, 空氣淸淨機 또는 名稱은 다르나 同一한 性質을 가진 其他 物品.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30.0
	(b) 마사지器, 送風機, 粉碎機 또는 乾燥機, 洗濯機, 眞空淸掃機, 床淸除機, 床磨機, 調理機, 湯沸機 또는 토스터, 스토브 및 오븐, 또는 電氣·기름·가스를 사용하는 기타의 器具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20.0
	(c) 時計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20.0
	(d) TV受信機, 라디오 受信機, 蓄音機, 테이프 리코더 증폭기 또는 調整器,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또는 名稱은 다르나 同一性質의 物品, 단 眞空管 4本 이하 또는 트랜지스터 6本 以下의 라디오 受信機는 包含 안함. 그것은 第1種의 稅率로 課稅된다.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30.0
	(e) 樂器, 단 泰國固有의 樂器는 第1種으로 課稅된다.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15.0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第1分類 物品販賣	(f) 映畵用카메라, 普通카메라, 複寫機슬라이드 또는 映畵映寫機, 필름卷取機, 編輯機, 現像印畵, 擴大機, 文書用 또는 映畵用 필름, 未使用 필름, 寫眞, 文書類, 映畵用의 現像 또는 撮影用의 기타 器具, 단 X線機械 및 필름은 포함 안됨. 이것은 第1種의 稅率로 課稅된다.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15.0
	(g) (a), (b), (c)와 (f)의 物品의 附屬品, 部分品 (a)에서 (g)까지의 物品으로 醫療用으로 使用하는 것은 大臣이 認可할 경우 第1種으로 課稅된다.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15.0
	(h) 化粧用打粉(talcum powder), 입술연지, 매니큐어, 클리너, 毛髮用染料, 헤어크림, 클렌싱크림(cleansing cream), 其他 化粧品, 美容用品 또는 같은 性質의 物品, 香水, 로션, 芳香油, 香料에센스, 精油. 단, 第1種으로 課稅되는 製造用으로 사용되는 香料, 에센스, 精油는 除外.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20.0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第1分類 物品販賣	(i) 第1分類 第2種(a)의 物品의 構成部分附屬品, 部分品으로 標準寸法의 것으로 受信, 送信, 增幅 또는 配電用의 部分 또는 其他의 部分으로 「모듈」(Module)形體의 것.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20.0
	第 3 種		
	(a) 照明用 器具, 扇風機, 電氣다리미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15.0
	(b) 原動機 부착 自動車 또는 그 엔진		12.0
	第 4 種		
	(a) 定員 10人 以內의 乘用車 또는 버스로 (b)에 표시되지 않은 것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40.0
	(b) (a)에 준한 自動車로 디젤엔진을 사용한 것.	輸入業者 또는 製造業者	50.0
	第 5 種 (削除)		
	第 6 種		
	圖書, 文書 또는 印刷物	第一段階의 販賣者	1.5
	第 7 種		
	(a) 金, 白金, 「화이트 골드」(White Gold), 銀, 赤金, 이들의 合金, 이들의 製品, 또 이들의 모조품과	全段階의 販賣者	3.0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稅義務者	稅 率
第1分類	그 製品.	販賣者	
物品販賣	(b) 다이아몬드, 寶石, 루비, 에메랄드, 토파즈, 아메지스트, 오팔, 사파이어, 지르콘, 청보석, 비취, 진주, 기타 同一性質의 貴石 및 이들의 製品, 이들의 모조품과 그 製品	全段階의 販賣者	3.0
	(c) 古物品取扱法에 定한 古器로 考古學上 또는 美術上의 對象이 되는 것에 한함.	全段階의 販賣者	3.0
	第 8 種		
	(a) 망간을 제외한 모든 金屬鑛物 또는 鑛石, 단 第1種으로 課稅되는 金屬鑛物 또는 鑛石의 製品은 포함 안함.	輸出業者	4.0
	(b) sheet rubber 또는 고무나무에서 생산 또는 抽出된 其他 種類의 고무. 망간 鑛物 또는 鑛石으로 金屬인지 非金屬인지를 不問함. 단, 고무 製品, 망간 鑛物 또는 鑛石의 製品은 포함 안함. 이들은 第1種의 稅率로 課稅된다.	輸出業者	1.5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第2分類 精米 또는 製材	下記 事業의 經營 第 1 種 멥쌀, 찹쌀의 精米 第 2 種 모든 種類의 製材	精米業者 製材業者	3.5 4.0
第3分類 證券販賣	泰國證券去來에 關한 法律에 根據하여 證券의 販賣가 泰國證券去來所를 通해 이루어진 것. (註) 1987年 1月 1日～1988年 12月 31日間은 免除	賣 主	0.1
第4分類 請 負	下記에 列擧한 請負業으로 部分品 또는 副産物의 賣却 및 서비스의 提供. 第 1 種 (a) 印刷, 製本, 表紙의 製作. (b) 寫眞撮影, 필름 現像印畵, 擴大, 그라비아 印刷의 凸版印刷, 映畵撮影 製作. (c) 모든 種類의 建築 및 建設. (d) 모든 手段의 廣告. (e) 調髮, 理髮 또는 옷단장, 또는	請負者	3.0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美容. (f) 기타 種類의 請負. **第 2 種** 接客業에 關한 法律에 基한 沐浴, 마사지 사우나 또는 객실 또는 기타의 사우나 객실에서의 서비스 提供.	經 營 者	10.0
第5分類 資産賃貸	不動産이 아닌 下記 資産의 賃貸 **第 1 種** (a) 錄畵, 錄音된 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의 物品 (a)의 資産賃貸에는 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의 物品에의 錄畵, 錄音, 事業主 自身에 의하지 않은 錄畵, 錄音된 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의 物品을 使用하는 權利를 갖는 會員의 登錄을 包含. (b) (a) 또는 第2種에 표시되지 않은 資産 **第 2 種** 資産의 賃貸. 단, 大臣의 決裁를	資 産 의 貸 出 人 資 産 의	2.5 3.0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얻어 長官이 制定하고 官報에 公示한 기준, 手續, 條件 및 賃貸期間에 따라서 移行된 것.	貸 出 人	
第6分類 倉庫	倉庫業, 建物保管 또는 冷藏倉庫 서비스의 提供 또는 駐車場의 提供.	經 營 者	2.5
第7分類 호텔 레스토랑	下記에 표시한 事業 (a) 나이트클럽 또는 캬바레 (b) 호텔 (c) 레스토랑에서 顧客에게 서비스를 提供하거나 또는 休息을 위한 睡眠設備가 있거나 또는 顧客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 (d) (c) 以外의 레스토랑 課稅月의 總收入이 5,000바트를 넘지 않는 部分 課稅月의 總收入이 5,000바트를 넘는 部分	 經 營 者 經 營 者 經 營 者 經 營 者	 15.0 10.0 15.0 2.0 7.5
第8分類 運送	모든 種類의 運送 및 車輛에 의한 請負運送	經 營 者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1) 旅客運送		2.0
	(2) (1)以外의 行爲		0.5
第9分類 전당포	전당포에 관한 法律에 의한 전당포 事業	經 營 者	2.5
第10分類 仲介業과 代理業	中介人, 代理人, 競賣人 또는 다른 事業分類에 정해져 있지 않은 他人 事業의 管理者로서의 서비스 提供	仲介人,代理人, 競買人,서비스 提供者	5.5
第11分類 不動産去來	事業 또는 利益追及을 위한 不動産의 販賣	販 賣 者	3.5
第12分類 銀行業	政府에 屬하지 않는 貯蓄銀行, 商業銀行法에 근거하여 商業銀行, 商業銀行과 同一한 去來를 平常의 業으로 하는 者, 즉 貸付의 提供, 保證, 通貨의 交換, 流通證券의 發行, 買入 또는 모든 手段에 의한 外國送金, Poeykwan, huaytua를 包含. 第 1 種		
	受取利子, 割引料, 手段料 또는 서비스 및 流通證券의 賣買에서 얻은	經營者	3.0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 率
	總利益 第 2 種 通貨의 交換, 流通證券의 發行, 外國에의 金錢의 送金으로 얻은 總利益 (註) 銀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나 金融機關 및 金融을 業으로 하는 者(銀行 외에 金融會社, 證券會社, 換錢商)외에 예를 들어 親會社가 子會社에 빌려준 貸付金의 利子도 包含된다. 단, 1982年 12月 21日付 國稅局通達에 의해 25% 以上 出資한 子會社에 대한 貸付金利子는 除外된다. 中國人會社에는 外國送金의 方法으로 銀行 以外를 通하여 送金을 取扱하는 것이 있어 前述의 Poeykwan 등이라고 부르는 業種이 있는 것 같다. Remittance House라고 英譯된다.	經營者	15.0
第13分類	다음에 열거한 事業		

事業의 分類	事 業 의 內 容	納稅義務者	稅率
保險	第 1 種		
	生命保險	保險業者	2.5
	第 2 種		
	其他 種類의 保險	保險業者	3.0
第14分類	다음에 列擧한 事業		
興行	(a) 映畵 및 映畵를 동반한 모든 종류의 娛樂 및 興行	興 業 主	15.0
	(b) 競馬의 開催. 단, 馬券의 賣上을 包含 안함	興 業 主	20.0

Ⅳ. 申告

課稅對象期間은 曆月이다. 즉, 事業主는 各 課稅月마다 그 總收入에 대해 營業稅를 計算하여, 翌月 15日까지 申告書와 함께 納付해야 한다.

Ⅴ. 賦課

(1) 營業稅도 個人所得稅 및 法人稅와 마찬가지로 賦課課稅이다. 當局은 申告書入手後, 必要에 따라 追加資料의 提出을 要求하여 賦課를 하는데, 賦課는 納稅通知書(Notice of the Assessment)의 交付에 의해 遂行한다.

(2) 納稅者는 이 納稅通知書 受領日부터 30日 以內에 要納付額이 있으면 그것을 納付해야 한다. 納付의 結果 領收書가 入手되고 이로써 納稅가 完了된다.

(3) 賦課는 申告書 提出期限(實際의 提出이 늦어진 경우는 그날)에서 5年間에 이루어졌다고 看做된다. 단, 納稅者에게 惡意가 있는 境遇(過失이라도 25% 以上의 脫落을 包含)는 10年間으로 한다.

(4) 認定賦課

下記와 같은 경우에 當局은 自身의 計算에 따라 總收入을 決定하여 營業稅를 賦課할 수 있다.

① 期限內 申告書 不提出(penalty는 要納付額의 2倍)

② 虛僞申告 또는 總收入의 25% 以上의 誤申告(penalty는 要納付額)

③ 在庫管理表와 實在庫의 不一致에 대한 看做賣上(penalty는 要納

付額의 2倍)

(5) 通知된 賦課額에 대해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通知를 受領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하면 된다. 이 境遇에도 稅金은 納付期限內에 納付할 必要가 있다.

(6) 정해진 期限內에 納稅를 등한히 한 事業主는 1個月(끝수 切上)마다 每 1.5%의 延滯料를 支拂해야 한다.

Ⅵ. 外國會社의 納稅義務

(1) 「第3章 法人稅」의 Ⅸ항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駐在員事務所가 課稅對象이 되는 경우 3%의 營業稅와 그의 10% 相當의 地方稅를 支拂하게 된다.

(2) 非居住者인 輸入業者의 特例

泰國에 支店이 있는 非居住者가 第78條의 2에 根據하여 免稅者 等을 注文者로서 輸入할 때에는 營業稅의 對象이 된다.

Ⅶ. 非課稅所得 等

(1) 輸出奬勵를 위해 營業稅率表 第1分類 第1種(a), 第2鍾, 第3鍾, 第4鍾 및 第6鍾에 表示된 物品으로 製造業者 또는 國際的 商社에 의해 輸出된 것은 免稅된다.

(2) 第78條의 2에 適用除外事業으로서 다음과 같은 事業이 例記되어 있으나, 一般的으로 日本系企業에는 關係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

部만을 例示한다.

① 麻類, 豆類, 植物 等의 製造業者

② 政府系敎育機關 및 私立學校法에 의해 登錄된 私立學校의 經營

③ 政府系企業에서 總收入을 國庫에 納付하는 事業

④ Bank of Thailand, Government Saving Bank 等의 事業

(3) 第79條의 3에 一定한 性質의 總收入에 대해서 免稅取扱하는 것으로 다음의 16項目이 例記되어 있다.

① 銀製品, 黑金象嵌細工品(Nielloware) 營業稅率表 第1分類 第7種의 (b)에 提示된 物品의 販賣로 태국에서 生産되어 輸出한 경우.

② 위스키, 담뱃잎, 담배 또는 담배製品의 販賣로 태국에서 生産되어 輸出한 경우.

③ 國際線에만 使用되는 航空用油의 航空會社에 대한 販賣, 단 事業主가 物品을 航空會社에 직접 販賣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團體에 販賣하여, 그것이 航空會社에 再販賣되어도 相關없음.

外國航空會社의 경우 當該 外國航空會社가 登錄 또는 設立된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課稅되지 않았거나, 또는 課稅되었어도 泰國內에서 登錄 또는 設立된 航空會社에 대한 航空油의 販賣에 대하여 免除가 認定된 경우에만 前項의 規定이 適用된다.

前兩項의 規定은 事業主가 事業稅 相當稅 또는 그 以上의 金額을 當該 物品의 價格에서 뺀 것을 明確히 나타내는 證據를 提出한 경우에만 適用한다.

④ 政府에 의해 發行된 慈善敎育 또는 公衆衛生을 위한 郵票의 總收入.

⑤ 쌀의 販賣에서의 總收入으로 米穀課徵金(rice premium)을 이미 政府에 支拂한 것.

⑥ 國債의 利子.

⑦ 주로 뉴스를 記事로 한 新聞으로 一般公衆에 配布된 것의 販賣.

⑧ 다음 事例에 대한 物品 寄附.

㉠ 政府所有의 診療所 및 敎育機關에 對한 寄附.

㉡ 官報에 의해 公布된 省令으로 指定된 公共慈善團體, 機關 또는 ㉠에 나타나지 않은 診療所 및 敎育機關에 대한 公益을 위한 寄附.

⑨ 營業稅率表 第7分類의 (d)에 열거한 레스토랑에서의 淸淨飮料의 販賣.

⑩ 關稅率表에 의해 關稅의 支拂을 免除받은 物品의 輸入 또는 輸出.

⑪ 輸入業者 및 輸出業者 또는 事業稅率表 第3分類에 의한 賣却者 以外의 事業主가 經營하는 事業으로 課稅月 內에 總收入이 2,000바트가 되지 않는 것.

⑫ 關稅法에 의해 保稅倉庫에 保管되어, 關稅 없이 再輸出되는 物品의 輸入.

⑬ ⑫에 提示된 物品의 輸出.

⑭ 關稅法에 의해 關稅가 免稅된 物品의 輸入, 紛失 또는 破損의 理由로 關稅가 還付된 것.

⑮ 第78條 9의 第1項 및 第3項에 의해 營業稅가 還付된 境遇의 物品의 輸出.

⑯ 泰國證券去來所를 통한 證券의 賣却으로 投資信託 회사, 政府 또는 政府機關 發行의 債券에 한함.

Ⅷ. 總收入의 計算

(1) 總收入의 計算上 要求되는 會計處理는 法人稅의 項에서 說明한 것처럼 一般的으로 公正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基準에 따를 것이 要求되고, 그의 變更은 國稅廳長官이 認可했을 때만 認定된다.

(2) 其他 總收入의 計算上 稅法에 規定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總收入의 計算上, 營業稅率表 第1分類의 第2種, 第3種 및 第4種에 列擧한 物品의 販賣契約 또는 할부구입의 境遇에는 그 物品의 價格總額 또는 할부구입의 總價値를 當該 契約締結月의 總收入으로 본다.

② 不良債權이 貸損處理된 때에는 當該 月의 總收入에서 뺄 수 있다.

③ 外貨베이스賣上의 경우

當該 月中에 泰國通貨로 換金한 境遇는 그 金額, 換金하지 않은 境遇는 中央銀行이 月 末日의 計算한 商業銀行 平均買換率에 의해 換算한 金額으로 한다(단, 關稅局이 徵收代行하는 경우는 關稅局에서 適用하는 換算換率에 따른다).

④ 販賣의 時期

國稅廳長官의 認可를 條件으로 製造業者, 輸出業者 및 輸入業者는 물품의 製造, 輸入 및 輸出한 날에 販賣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輸入 및 輸出이란, 輸入 또는 輸出關稅 支拂日 또는 輸入 또는 輸出關稅에 대한 保證 또는 擔保差入日을 말한다. 또 輸入 또는 輸出關稅의 不要物品 또는 免稅物品의 경우에는 輸入 또는 輸出貨物申告書 發行日을 말한다.

⑤ 記錄의 整備, 保管

모든 事業主는 總收入에 관한 記錄을 整備하고 收入日부터 3日 以內에 記帳해야 한다. 또 營業稅率表 第1分類 및 第2分類에 列擧한 物品을 取扱하는 事業主는 國稅廳長官이 定한 樣式에 따라 在庫受拂表를 作成해야 한다.

이들 書類 및 證憑書類는 적어도 5個年間 事業所內에 保管해야 한다.

IX. 營業稅의 源泉徵收制度

(1) 政府機關에 의한 源泉徵收稅

政府 및 關係機關이 營業稅率表 第4分類 第1鍾의 課稅對象收入을 支拂할 때에는 當該 稅率에 根據한 金額 및 地方稅(營業稅의 10% 相當額)를 源泉徵收한다. 이것은 事業主에게 豫納稅金으로 取扱된다.

(2) 泰國證券去來所 加盟員에 의한 源泉徵收稅

營業稅率表 第3分類의 賣却代金을 支拂할 때 泰國證券去來所 加盟員은 當該 稅率에 根據한 金額 및 地方稅(營業稅의 10% 相當額)

를 源泉徵收하여 翌月 7日까지 納付해야 한다. 이 境遇 賣却人은 申告義務를 지지 않는다(일종의 分離課稅 取扱이다).

(3) 非居住者에 대한 支拂에 관한 源泉徵收稅

泰國의 居住者가 非居住者에 대해 營業 稅率表 第4分類 第1種의 課稅對象收入(請負代金)을 支拂할 때는 當該 稅率表에 根據한 金額 또는 地方稅(營業稅의 10% 相當額)를 源泉徵收하여 翌月 7日까지 納付해야 한다.

第 5 章

優 待 制 度

概 要

1. 投資奬勵法에 의해 稅務上의 優待措置 外에도 投資企業의 保護 等도 定해져 있다.
2. 現在 있는 優待措置는 投資奬勵地域에 의한 것으로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Ⅰ. 投資奬勵法에 의한 優待制度

泰國에는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政策的 側面에서 投資奬勵法(Investment Promotion Act, B.E. 2520)이 制定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投資企業의 保護 外에 稅制上으로도 各種의 優待措置가 있다.

1. 保證

(1) 當該 企業을 國有化로부터 保護한다(43條).

(2) 同 企業과 競合하는 國營企業의 新規設立을 不許한다(44條).

(3) 同 業種의 既存 國營企業에 의한 市場獨占을 禁止한다(45條).

(4) 價格統制를 實施하지 않는다(46條).

(5) 製品의 輸出許可를 常時 保證한다(47條).

(6) 政府系機關, 國營企業이 取扱하는 競合製品에 對한 免稅를 禁止한다(48條).

2. 保護

投資委員會(BOI)가 正當性 및 必要性을 認定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保護政策이 취해진다.

(1) CIF價格의 50%를 넘지 않는 範圍에서 競合輸入品에 對해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49條).

(2) 競合製品을 輸入禁止한다(50條).

(3) 投資委員會의 委員長(泰國 首相)이 奬勵 計劃을 위해 援助手段이나 稅金의 輕減措置를 命令할 수 있다(51條, 52條).

3. 許可

(1) 投資關聯活動이 目的인 外國人의 태국 入國을 認定한다(24條).

(2) 奬勵對象企業에 必要한 外國人 熟練勞動者, 技術者 및 그 家族은 投資委員會의 承認이 있으면, 通常의 割當 以外에 태국에서의 居住가 認定된다(25條, 26條).

(3) 奬勵活動實施를 위해 土地를 所有할 수 있다(27條).

(4) 海外로의 外貨搬出 또는 送金이 認定된다(37條).

4. 稅務上의 優待措置

(1) 奬勵對象企業에 對해 法人稅가 3年 以上 8年 以內의 期間에서 免除(註)된다. 또 免稅期間中에 損失이 생긴 경우, 當該 移越損失은 免稅期間 終了後 5年間, 課稅對象利益에서 相殺控除하는 것이 認定된다(31條, 32條).

(2) 奬勵對象企業이 BOI의 承認을 받은 機械類를 輸入하는 경우, 輸入關稅(Import Duties) 및 營業稅(Business Taxes)가 全額免除 또는 半額減免된다(28條, 29條).

(3) 奬勵對象企業이 製造目的으로 BOI의 承認을 받은 原材料를 輸入하는 경우, 輸入關稅 및 營業稅가 90% 限度內에서 減免된다(30條).

(4) 奬勵對象企業이 BOI의 承認을 받은 契約에 根據하여 로열티를 海外에 送金하는 경우, 當該 로열티에 관한 源泉徵收稅가 5年間 免除(註)된다(33條). 또, 受取側이 泰國의 居住法人인 경우, 當該 利益은 免稅된다.

(5) 奬勵對象企業이 上記 ①에 따라 免稅된 利益을 配當하는 경우, 當該 配當金에 관한 源泉徵收稅가 免除(註)된다(34條).

또, 受取側이 泰國 居住法人인 경우, 當該 利益은 免稅된다.

(註) 改正租稅條約 發效後, 이들의 減免措置에 對해 看做外國稅額控除를 適用하도록 되었다(第6章 參照).

Ⅱ. 投資奬勵法에 의한 追加優待制度

1. 投資奬勵地域(The Investment Promotion Zones)에 對한 優待制度

BOI가 정한 投資奬勵地域에 設立된 企業에 對한 追加優待措置는 다음과 같다.

(1) 奬勵對象企業이 前項의 4- (1)에 의해 法人稅의 免除 또는 減免을 받은 경우, 當該 期間 終了後 追加로 5年間에 걸쳐 法人稅의 50%가 減免된다.

또, 當該 企業이 前項 4- (1)의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最初에 課稅對象利益이 計上된 때로부터 5年間에 걸쳐 法人稅의 50%가 減免(註)된다(35條 2項).

(2) 奬勵對象企業이 最初로 營業稅의 課稅對象收益을 計上한 때부터 營業稅가 90% 및 5年을 限度로 하여 減免된다(35條 1項).

(3) 奬勵對象企業은 BOI의 承認을 條件으로 輸送費, 電力·水道費를 課稅對象利益에서 二重으로 控除(註)하는 것이 認定된다(35條 3項).

(4) 奬勵對象企業은 BOI의 承認에 의해 最初로 課稅對象利益이 생긴 때부터 10年間의 任意의 해에 通常의 減價償却 以外에 設備의 建設 또는 設置에 드는 原價의 25%를 限度로 控除(註)가 認定된다 (35條 4項).

2. 輸出指向型 産業에 對한 優待制度

이 優待措置는 原則的으로 最初의 1年間에 한해 주어진다.

(1) 奬勵對象企業이 輸出用 製品의 製造目的으로 原材料를 輸入하는 경

우, 輸入關稅 및 營業稅가 免除된다(36條 1項).

(2) 奬勵對象企業이 再輸出의 目的으로 輸入한 것에 關해 輸入關稅 및 營業稅가 免除된다(36條 2項).

(3) 奬勵對象企業의 製品이 輸出된 경우, 輸出關稅 및 營業稅를 免除한다(36條 3項).

(4) 奬勵對象企業은 BOI의 承認을 얻은 計算方法에 準하여 運賃 및 保險料를 除外한 對前年 輸出增加額의 5% 相當額을 課稅對象利益에서 控除(註)할 수 있다.

(註) 改正租稅條約 發效後, 이들 減免措置에 對해 看做外國稅額控除를 適用하도록 되었다(第6章 參照).

Ⅲ. 優待稅制適用에 있어서의 留意點

1. 法人稅 免除 對象利益의 取扱

(1) 法人稅의 免除는 BOI에서 認可를 받은 條件에 따라 發生하는 利益, 즉 製造業으로 認可를 받은 경우 當該 製品의 販賣에서 생기는 利益이나 認可된 製造能力, 規模 등을 넘어서 生産한 製品의 販賣에서 생기는 利益은 課稅對象이 된다. 半製品 等의 販賣도 이 형식 및 數量에 대해 認可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通常의 營業活動에서 생기는 利益, 例를 들어 利子 等에 對해서는 BOI 및 國稅當局의 承認을 條件으로 免稅對象이 된다.

(3) 奬勵對象企業이 免稅對象 外의 事業을 함께 經營하는 경우 適切한 費用配分下에서 區分計算해야 한다.

2. 奬勵對象企業이 免稅對象 外의 事業을 經營하는 境遇의 取扱

(1) 쌍방의 事業이 利益을 計上한 境遇는 當然하게 免稅對象事業에서 생긴 利益이 免稅의 對象이 된다.

(2) 非對象事業이 利益을 計上하고 對象事業이 損失을 計上한 경우에 前者의 金額이 클 때는 그 差額이 課稅對象利益으로 된다.

(3) 對象事業이 利益을 計上하고 非對象事業이 損失을 計上한 경우는 課稅가 생기지 않는다.

(4) 合算한 結果가 損失이면 설혹 非對象事業에 利益을 計上했어도 課稅는 생기지 않는다.

3. 移越損失의 免稅期間 終了後 5年間의 相殺控除의 取扱

(1) 免稅對象期間中에 생긴 損失은 免稅期間 終了後 5年間 그 相殺控除가 認定되나, 이것은 當該 免稅期間中에 생긴 損失額이 同一期間에 생긴 利益額을 넘는 경우, 그 超過額에 대해서만 認定된다.

(2) 奬勵對象企業이 免稅對象 外의 事業도 經營하는 경우의 移越損失

① 對象事業이 損失을 計上하고, 非對象事業이 利益을 計上한 경우 이 損失은 非對象事業의 利益을 相殺할 수 있다.

② 上記 ①의 경우로 非對象事業에 移越損失이 있는 경우 이 移越損失과의 相殺가 優先하고 그 後에 對象事業이 損失과 相殺할 수 있다.

③ 上記의 相殺後에도 對象事業에 損失이 남아 있는 경우, 免稅期間 終了後 5年間의 利益과 相殺할 수 있다.

4. 奬勵對象企業으로부터의 配當의 取扱

(1) 奬勵對象企業에서의 配當金은 그 源泉인 利益이 免稅對象利益이고, 또 免稅期間中에 支拂된 것(註)에 한하여 受取側이 태국의 住居法人인 경우는 그 課稅所得에 包含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 受取側이 태국의 非居住法人인 경우는 當該 配當에 關한 源泉徵收稅가 免除된다.

(註) 「免稅期間中에 支拂된 것」이란, 免稅期間 終了事業年度後 150日 以內에 配當決議가 된 것을 包含.

(2) 奬勵對象企業이 非對象事業을 謙營하는 경우, 당연히 免稅對象利益에서의 配當에 限하여 受取側의 課稅所得에 包含시키지 않는다. 단, 配當의 源泉이 區分되지 않은 경우에는 各各의 利益比率에 따라 非課稅所得과 課稅所得을 區分한다.

Ⅳ. 投資奬勵 및 稅制上의 優待措置의 認可基準

投資奬勵가 國家經濟 및 社會開發政策의 目的을 支待하고, 이 目的에 부합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明確性을 强化하기 위해 投資委員會(BOI)는 投資奬勵 및 稅制上의 優待措置의 認可基準을 確立하여 그 基準을 公表하였으므로, 以下에 그 全文을 提示한다(원본은 泰國이고, 이 日譯도 BOI에 의한 것이다).

題目 : 投資奬勵 및 稅制上 優待措置의 認可基準

1. 法的 考慮

投資奬勵法 B.E.2520(1977)의 範圍內에서 BOI는 農産物 使用의 産業, 動物飼育業, 漁業, 採鑛, 其他 工業活動이나 서비스業이 以下의 條件을 滿足하는 경우 投資奬勵의 許可를 考慮한다.

1.1 泰國內에 存在하지 않거나 存在하나 不十分, 또는 前近代的인 生産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1.2 經濟, 社會開發, 泰國의 安全保障上 重要하고 有益하다.

1.3 經濟的·技術的으로 健全하고, 環境의 規制·保護에 適切한 手段을 취하고 있다.

2. 投資政策

以上에 記述된 法的 範圍內에서의 投資奬勵에 있어 BOI는 下記의 活動에 特別한 配慮를 한다.

2.1 外貨節約 또는 輸出活動에 의해 多額의 外貨를 獲得한다.

2.2 王國에 存在하는 天然資源의 開發을 援助한다.

2.3 雇用을 增大한다.

2.4 地方에 位置한다.

2.5 輸入에너지를 節約 또는 代替할 수 있다.

2.6 將來 高度 工業發展에 基礎産業이 된다.

2.7 政府가 重要性, 適切性을 認定한다.

3. 프로젝트認可의 基準

BOI는 프로젝트가 經濟的·技術的으로 健全한가 아닌가와 그 生存能力에 대해 考慮한다. 考慮할 점은 다음과 같다.

3.1 市場의 規模와 그와 같은 製品이나 서비스에 대한 需要 擴大余地의 有無

3.2 當初 生産 코스트가 外國과의 競爭에 견딜 만큼 낮고, 또 現在의 水準이 30% 이상의 稅保護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3.3 절반 이상이 輸出用인 경우를 除外하고 적어도 純益의 30%가 附加價値가 있다.

3.4 負債와 剩余財産의 比率이 約 5對1이다.

3.5 BOI의 許可를 얻고 該當 機關의 認可를 받은 경우 以外에는 最近의 生産工程과 最新의 機械設備를 使用한다.

3.6 下記 項目에 該當하는 프로젝트는 投資奬勵를 받을 수 없다.

3.6.1 奬勵를 받지 않고도 成功한 同業, 또는 同種의 活動이 많이 存在한다.

3.6.2 充分히 成長하여 더이상 奬勵할 必要가 없어졌기 때문에 BOI가 投資奬勵의 對象業種에서 除外했다.

3.6.3 輸出用을 除外하고 生産量이 將來 3年間 充分하다.

3.6.4 100% 輸入原材料를 使用하고 대부분이 國內用으로 生産되며 그와 같은 製品의 輸入稅가 이미 40% 以上이 되어 있다.

3.6.5 BOI에서 投資奬勵 中止의 發表가 있었다.

4. 合併事業에 關한 條件

外國投資, 또는 合併企業 奬勵를 위해 다음에 對해 考慮한다.

4.1 주로 國內市場用 製品인 企業은 泰國側이 登錄資本의 51% 以上의 株式을 所有한다.

4.2 農業, 動物飼育業, 漁業, 採鑛, 서비스業에서는 泰國側이 60%의 登錄資本을 所有한다.

4.3 外國投資家는 製品의 50% 以上을 輸出하는 경우는 過半數, 100% 輸出의 경우는 100%의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

4.4 BOI가 適切하다고 認定한 경우는 다음이 考慮된다.

4.4.1 全資本額

4.4.2 技術水準

4.4.3 現地雇用者數

4.4.4 工場의 位置

4.4.5 經濟, 社會開發에의 有益性

4.4.6 其他

BOI가 上記 條件의 緩和 必要性을 認定한 경우는 改正된다.

5. 稅制上의 優待措置

投資奬勵를 위해 BOI는 法律에 따라 다음과 같은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부여할 수 있다.

5.1 法人稅 免除

5.2 輸入機械에 대한 輸入關稅 또는 營業稅의 全額免除 減免

5.3 輸入原材料에 대한 輸入關稅의 減免

5.4 投資奬勵地域에 設立된 企業에 대한 法人稅 等의 免除 또는 減

免

5.5 輸出奬勵를 위해 輸入關稅의 免除, 減免

6. 法人稅 免除의 基準

3~5年間의 法人稅 免除를 할 때 考慮의 基準이 되는 것은 投資額(土地價格과 運轉資本을 除外), 全時間 雇用者數이다. 그 條件은 下記와 같다.

投資額(單位:100만바트)	雇用者數(人)	免稅期間(年)
2~20	또는 50~150	3
20 以上~50	또는 151~300	4
50 以上	또는 300 이상	5

下記의 條件을 滿足하는 경우 法人稅 免除期間이 다시 한번 1年 延長된다.

6.1 操業開始 3年 以內에 50萬달러 以上의 外貨를 獲得한다.

6.2 주된 原材料로서 國産農作物, 製品을 使用 또는 人件費, 利子, 減價償却費, 電氣·水道費를 除外한 全生産 코스트의 50% 以上의 金額을 國産原材料로 充當한다.

6.3 工場이 工業團地 또는 방콕, 사무트프라칸, 사뭇트사콘, 파톰타니, 논타부리, 나콘파톰 이외의 地域에 設立된다.

6.4 프로젝트가 國家經濟에 있어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法人稅 免稅期間은 8年을 넘지 않는다.

7. 機械類 輸入의 輸入關稅, 營業稅의 免除, 減免의 基準

輸入機械類에 對한 輸入關稅, 營業稅의 免除·減免時에 다음의 事項이 考慮된다.

7.1 방콕이나 사무트프라칸에 設立된 경우는 機械類에 대한 稅制上의 優待措置가 認定되지 않는다. 단, 下記의 경우는 例外이다.

7.1.1 全生産高의 80% 以上을 輸出한다.

7.1.2 現在의 工場을 擴張한다.

7.2 輸入機械類에 대한 稅制上의 優待措置는 下記의 경우만 認定된다.

7.2.1 同質의 機械類가 企業의 必要量을 滿足할 만큼 泰國에서 生産되지 않는다.

7.2.2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는다.

7.2.3 商業的으로 보아 人力으로 代替되지 않는다.

7.2.4 生産工程에 使用하는 機械가 最新式이다.

7.2.5 豫備部品이나 낡은 機械의 交換은 包含되지 않는다.

8. 原材料 輸入時의 輸入關稅 減免의 基準

原材料 輸入時의 輸入關稅 減稅認可에 대해서는 下記가 考慮된다.

8.1 優待措置를 받는 企業은 적어도 6個月 操業해야 한다. 단, 下記의 경우는 例外이다.

8.1.1. 奬勵特權 申請時 最初부터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申請했다.

8.1.2 原材料나 完成品에 대한 課稅制度改正에 따라 奬勵活動에 不利하게 되었다.

8.2 다음을 考慮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決定한다.

8.2.1 原材料에 대한 輸入關稅와 完成品에 대한 輸入關稅의 比較

8.2.2 輸入品과의 競爭力

8.2.3 他의 活動이나 政府收入에의 影響

8.2.4 國家財政에 有益

8.2.5 其他 BOI가 適切하다고 認定한 경우

9. 投資奬勵地域에의 投資奬勵를 위한 減稅의 基準

(註) 이것은 1987年 9月 1日付 및 1988年 9月 26日付로 基準의 改正이 이루어졌으므로, 次項「Ⅴ. 投資奬勵地域에 關한 基準의 改正」을 參照할 것.

10. 輸出促進을 위해 주어진 輸入關稅의 免除, 減免의 基準

輸出指向活動에 對한 奬勵特權을 附與할 때 BOI는 以下에 對해 考慮한다.

10.1 다음 條件을 滿足하는 경우, 原材料 輸入時의 輸入關稅, 營業稅 免除가 주어진다.

10.1.1 1年間 生産能力의 30% 以上을 輸出하는 경우, 被奬勵者는 輸入開始로부터 6個月 以內에 關稅法令 19號에 의해 定해진 稅額 相當의 銀行保證金 預託을 申請해야 한다.

10.1.2 輸出用 製品生産을 위해 輸入된 原材料만이 免稅의 對象이 된다.

10.1.3 경우에 따라 1年 以上의 期間延長이 認定된다.

10.2 輸出用 製品의 原材料 輸入에 對한 輸入關稅, 營業稅의 免除는 BOI의 判斷에 따라 變更될 수 있다.

10.3 輸出品에 對한 輸出關稅, 營業稅 免除는 BOI의 判斷에 따라

變更될 수 있다.

10.4 法人稅 納稅에 對前年輸出增加額分의 5% 相當을 控除할 수 있다.

11. 例外

以上은 BOI가 投資奬勵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으로 정한 基準이다. 그러나 下記의 경우는 例外가 認定된다.

11.1 BOI가 특별히 다른 條件을 提示한 경우

11.2 BOI가 特定의 投資活動에 重要性을 認定한 경우

1983年 1月 10日 發表

프렘·티인스라논

위 원 장

Ⅴ. 投資奬勵地域에 關한 基準의 改正(Criteria for Tax and Duty Privileges for Promoted Projects : 1987年 9月 1日)

1987年 9月 1日부터 BOI(投資委員會)는 地方에의 投資를 擴散하기 위해 投資奬勵地域에 관한 基準을 改正하고 그후 1988年 9月 26日付 및 1990年 11月 29日付로 再改正하여 1990年 10月 30日 以後의 申請案件부터 適用한다.

第1地域 : 방콕, 사뭇트프라칸, 사뭇트사콘, 나콘파톰, 논타브리 및 파톰타니의 6縣

(1) 原則的으로 機械類에 관한 稅의 免除 또는 輕減을 認定 안함. 단

下記의 ㉠~㉢ 中 하나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① 機械類에 關한 營業稅(Business Tax)의 免除 및

② 關稅率表 코드 84 및 85類의 品目을 除外한 機械類(昨年 10月 1日부터 適用되는 關稅率의 引下에 關聯하여, 關稅率表 코드 84 및 85類의 品目에 대한 優待處置가 廢止되었으므로)에 關한 輸入關稅의 50% 輕減(단, 輸入關稅率 10% 以下의 것은 除外)이 認定된다.

㉠ 80% 以上을 輸出하는 경우

㉡ BOI 認定對象業種 5.49(輸出用 製品의 製造)의 경우

㉢ 泰國工業團地公社가 運營 또는 BOI가 奬勵하는 工業團地에 立地한 경우

(2) 原則的으로 法人稅의 免除는 認定 안함. 단, 下記의 ㉠, ㉡ 중 하나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3年間에 걸쳐 法人稅를 免除한다.

㉠ 80% 以上을 輸出하는 경우

㉡ BOI 認定對象業種 5.49로 태국 工業團地公社가 運營 또는 BOI가 奬勵하는 工業團地에 立地하는 경우

第2地域 : 사뭇트송그라, 라챠부리, 칸챠나부리, 스판부리, 안통, 아유타야, 사라부리, 나콘나요쿠, 찬첸사오 및 촌부리의 10縣

(1) 機械類에 관한 下記 稅의 免除 또는 輕減이 認定된다.

① 機械類에 관한 營業稅(Business Tax)의 免除 또는,

② 關稅率表 코드 84 및 85類의 品目을 除外한 機械類(昨年 10月 1日부터 適用된 關稅率表의 引下에 관련하여 關稅率表 코드 84 및 85類의 品目에 대한 優待處置가 廢止되었으므로)에 관한 輸

入關稅의 50% 輕減(단, 輸入關稅率 10% 이하의 것은 除外)이 認定된다.

(2) 原則的으로 法人稅를 3年間 免除한다. 그 위에 該當 프로젝트가 泰國工業團地公社가 運營하거나 BOI가 奬勵하는 工業團地에 立地한 경우는 免除期間이 5年間 延長된다.

第3地域 : 其他 57縣 및 렘찬반工業團地

(1) 機械類에 관한 下記 稅의 免稅 또는 輕減이 認定된다.

① 機械類에 관한 營業稅(Business Tax)의 免除

② 關稅率表 코드 84 및 85類의 品目을 除外한 機械類(昨年 10月 1日부터 適用되는 關稅率의 引下에 關聯하여 關稅率表 코드 84 및 85類의 品目에 대한 優待措置가 廢止되었으므로)에 관한 輸入關稅의 50% 輕減(단, 輸入關稅率 10% 以下의 것은 除外)이 認定된다.

(2) 原則的으로 法人稅를 6年間 免除한다. 그 위에 해당 프로젝트가 泰國工業團地公社가 運營하거나 BOI가 奬勵하는 工業團地에 立地한 경우는 免稅期間이 8年間 延長된다.

(3) 輸出用 製品을 製造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原材料의 輸入에 관한 輸入關稅를 5年間에 걸쳐 免除한다.

(4) 投資奬勵法(Investment Promotion Act B.E. 2520) 第35條에 정한 以下의 혜택이 주어진다.

① 奬勵對象企業이 最初에 營業稅(Business Tax)의 對象이 되는 賣上을 計上한 때부터 5年間에 걸쳐 營業稅의 90%가 輕減된다.

② 前記 (2)의 法人稅의 免稅期間 終了後 또다시 5年間에 걸쳐 法人

稅의 50%가 輕減된다.

③ 프로젝트의 內容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下記의 혜택이 주어진다.

㉠ 10年間에 걸쳐 運送費 및 電力, 水道費를 課稅對象利益에서 二重으로 控除하는 것이 認定된다.

㉡ Infrastructure 關係設備의 建設 또는 設置에 관해 通常의 減價償却 外에 當該 原價의 25%를 限度로 控除할 수 있다.

(5) 이 第3地域에서의 新規投資奬勵 프로젝트는 50品目에 이르나 어느 것이든 태국의 資本이 51% 以上일 것이 條件으로 되어 있고, 輸出比率의 條件은 정해져 있지 않다(旣製服만 100% 輸出條件付). 또는 新規投資奬勵 프로젝트의 주된 品目은 다음과 같다.

라디에이터, 燃料탱크, 필터, 플라스틱 部品 等 自動車의 部品, 玩具, 플라스틱 製品, 炊飯器, 扇風機, 에어컨, 冷藏庫, 螢光燈, 커튼, 寢臺 等 住宅用纖維製品, 신발, 靴下, 旣成服, 生理用品 等.

第 6 章

日·泰國租稅條約의 全面改正에 關하여

Ⅰ. 槪 要

現行의 日·泰國租稅條約은 1963년에 締結되어 今日에 이르고 있으나, 泰國側의 强한 改正要求로 改正交涉이 이루어져, 1990年 4月 7日에 改正條約이 兩國政府에 의해 署名되었다. 이 改正條約案은 第118回 特別國會에서 5月 25日 承認되고, 8月 1日에 방콕에서 批准書의 交換이 있었다. 改正條約 第26條에 의하면 本 條約은 批准書의 交換 30日後에 效力이 생기게 되어 日本에서는 이 條約의 效力이 생기는 해의 翌年 1月 1日 以後에 開始하는 各 課稅年度의 所得부터 適用된다. 따라서 1991年 1月 1日 以後 開始하는 課稅年度의 所得부터 適用開始된다. 한편 泰國에서도 이 條約의 效力이 생기는 해의 翌年 1月 1日 이후, 즉 1991年 1月 1日부터 泰國의 非居住者(日本의 居住者)에 대해 支拂 또는 送金된 金額에 대해 源泉徵收된 租稅 및 同日 以後에 開始하는 各 課稅年度 또는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其他 租稅부터 適用된다.

以下, 全面改正된 租稅條約, 즉「所得에 對한 租稅에 관한 二重課稅의 回避 및 脫稅의 防止를 爲한 日本과 泰國과의 條約」에 대해 條文마다 主要한 改正點에 대해 설명한다.

Ⅱ. 主要한 改正點

第1條 人的範圍

現行의 條約에는 規定이 없었던 이 條文이 들어감에 따라, 從來 條約이 適用 안했던 雙方居住者에 대해 後述하는 雙方居住者의 編入과 함께 適用對象이 되도록 하였다.

第2條 對象稅目

改正條約에는 泰國의 石油所得稅가 追加되었다.

第3條 一般的 定義

現行條約에는 이 一般的 定義에 包含되었던「居住者」및「恒久的 施設」이 改正條約에는 獨立한 條項이 된 外에 用語가 整理되었다.

第4條 居住者

現行의 條約에는「第2條 一般的 定義」에 包含되었던 居住者의 定義에 關해 第4條에서 區分하고, 그의 說明과 同時에 第2項에 의해 雙方居住者를 兩國 中 어느 한 나라의 居住者로 하는 規定이 設定되었다.

第5條 恒久的 施設

本條도 現行條約의「第2條 一般的 定義」에서 區分한 것으로 國際課稅에 對한 基本原則은「恒久的 施設(Permanent Establishment, PE)」의 有無에 따라 課稅인가 아닌가를 決定하게 되어, PE가 없으면 課稅도 없다

고 一般的으로 말해지는 重要한 요소이다.

第1項의 定義는 現行條約과 같으나 代表的인 PE의 例示로서 「石油 또는 天然가스의 坑井」 및 「農場 또는 栽培場」이 追加되었다(第2項).

建築工事現場, 建設·据付·組立工事에 대해 現行條約에는 存續期間要件이 明記되어 있지 않으나, 改正條約에는 各各 3個月을 넘는 期間을 存續하는 境遇는 PE로 한다는 趣旨가 明記되어 있다(第3項). 또, 이들에 關聯하는 監督活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個月을 넘는 境遇는 PE로 한다는 趣旨(第3項) 및 컨설팅을 包含하는 勞務의 提供이 12個月을 넘는 경우 PE로 한다는 趣旨가(第4項) 새롭게 規定되었다.

第6條 不動産所得

改正條約에는 獨立된 條項을 設定하여 不動産에서 생긴 所得에 대해서는 當該 不動産의 所在地國에서 課稅되도록 되었다(第1項). 여기서 不動産에서 생긴 所得이란 改正條約 第13條에 規定하는 不動産의 讓渡益을 除外한 모든 不動産所得을 包含한다(第3項).

第7條 事業所得

改正條約에서 새로 規定된 것은 第4項, 第6項, 第7項 및 第8項이다.

PE에 돌아가는 利得을 計算할 때 企業 全體의 利益을 算出하여, 이것을 各 PE에 配分하는 方法으로 計算하는 慣行이 있는 境遇에는 計算의 結果가 個別的으로 計算한 結果와 같다는 條件으로 認定된다(第4項).

PE에 돌아가는 利得의 計算은 第1項에서 第5項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여 每年 同一한 方法에 따라 이루어지고, 正當한 理由가 없는 限 變更해

서는 안 된다고 定해져 있다(第6項). 또, 本條 第2項에서 第4項까지의 規定에 關해 日本의 居住者인 納稅者가 泰國에 있는 PE 課稅上, 實際의 純利得에 따라 泰國에서 課稅할 것을 要求하지 않는 경우 泰國이 當該 PE에 돌아가야 할 利得을 總收入의 一定比率에 의해 決定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는다는 뜻이 議定書 第3項에 明記되었다. 이것은 總收入의 5%를 稅金으로 賦課할 수 있다는 泰國稅法의 認定賦課의 適用을 認定하는 것이다.

第8項의 規定은 現行條約에서 「産業上 또는 商業上의 利得」의 定義에서 「賃貸料」가 除外되어 있어 同一한 取扱을 하기 위해 設定된 것이다.

第8條 國際運輸業所得

用語의 修正 외에 特別한 變更은 없다.

第9條 特殊關聯企業

第1項은 現行條約과 같은 規定이나, 이 移轉價格課稅의 結果 企業 그룹 內의 同一한 所得이 兩國間에서 實質的인 二重課稅가 되므로 이를 排除하기 위해 兩國의 權限있는 當局間의 協議에 따라 適當한 調整, 즉 對應的 調整의 規定이 新設되었다(第2項). 이와 같은 對應的 調整의 規定을 導入하게 된 것은 1986年에 日本이 移轉價格稅制를 導入함으로써 當該 規定(租稅條約實施特例法 第7條)이 整備됨에 따른 것이다.

第10條 配當

配當에 대해 賦課되는 源泉徵收稅의 限度稅率은 다음과 같이 改正되

었다.

	現行條約	改正條約
(1) 親子間		
(決算日 直前 6個月間, 25% 以上의 株式保有)		
① 産業的 事業	15%	15%
② 其他	25%(註)	20%
(1) 親子間 以外		
① 産業的 事業	20%	限度稅率 없음(註)
② 其他	限度稅率 없음(註)	限度稅率 없음(註)

단, 泰國의 稅法에 25%로 되어 있는 配當에 關한 源泉徵收稅率은 1980年의 勅令(Royal Decree No.92)에서 1981年 以後 20%가 되었다.

(註) 稅率은 어느 것이나 20%로 된다.

産業的 事業의 定義에 變更은 없으나 議定書 第4項의 新設에 따라 産業的 事業에는 産業投資의 奬勵에 關한 泰國의 法律에 根據하여 주어진 特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事業이 包含된다.

또 議定書 第5項의 規定에 따라 泰國의 稅法 第70條 2의 規定(外國會社의 泰國支店이 稅後利益을 外國에 送金하는 경우에 法人稅 外에 該當利益送金額의 20%가 追加課稅된다)의 適用이 認定된다.

第11條 利子

利子에 대해 賦課되는 源泉徵收稅의 限度稅率은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다.

	現行條約	改正條約
(1) 政府 및 關係機關 또는 그들이 所有하는 金融機關이 受領하는 利子	免稅	免稅
(2) 法人이 受領하는 利子		
① 金融機關(保險會社를 包含)이 受領하는 것	産業的 事業에 從事하는 會社가 支拂하는 경우 10%	10%
② 其他	限度稅率 없음	25%
(3) 個人이 受領하는 利子	限度稅率 없음	限度稅率 없음

限度稅率이 定해지지 않은 것은 國內法에 따르게 되므로 泰國의 利子에 關한 源泉徵收稅率은 25%이다. 따라서 實質的인 變更은 金融機關이 受領하는 利子에 關해 支拂側이 産業的 事業에 從事하는 會社인가 아닌가를 區分하지 않게 된 점 뿐이다.

또, 第7項이 新設되어 利子가 利害關係者間에 過多하게 支拂된 경우, 獨立企業間에 本來 支拂되었을 만한 金額에 대해서만 本條가 適用되고 超過部分은 다른 條項을 考慮에 넣어 別途 國內法에 의해 課稅하도록 되었다.

第12條 使用料

改正條約에서도 使用料의 定義에 通常 日本에서 締結하는 租稅條約에 包含되어 있는 「産業上 또는 商業上 設備의 使用 또는 使用 權利의 代價로서」의 支拂金이 包含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前述한 第7條 第8項의 規定과 함께 動産의 賃貸料(리스 包含)는 泰國의 國內法에 따라 課稅된

다.

以外에 第7項에 利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利害關係者間 去來에 관한 規定이 있다.

第13條 讓渡收益

改正條約에 新設된 것으로 不動産 및 PE의 事業用 資産에 屬하는 動産의 讓渡收益에 대해서는 그 所在地國에서 課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第14條 人的 勞務所得

改正條約에는 任員報酬(第15條), 藝能人의 報酬(第16條)를 區分하고, 第2項에서 國際運輸業上의 船舶 및 航空機上의 勤務者의 報酬에 關해서는 當該 企業의 居住地國에서 課稅하도록 明記되어 있다.

第15條 任員報酬

任員의 資格으로 稼得하는 報酬는 그 法人의 居住地國에서 課稅하도록 新設되었다.

第16條 藝能人

新設된 條項이고 兩國 政府間에 合議된 文化交流를 爲한 特別計劃에 關한 免稅措置가 있다.

第17條 政府職員

第18條 敎授

第2項이 新設되었다.

第19條 學生

第20條 明示없는 所得

租稅條約 中에 다른 項目에서 取扱하지 않는 所得에 대해 「明示없는 所得」으로 包括的인 規定을 두고 있다. 지금의 改正條約에는 이 規定을 第20條에 相對國에서 생긴 것은 相對國에서, 相對國 以外에서 생긴 것은 居住地國에서, 또 PE에 實質的으로 關聯하는 것은 當該 PE所在地國에서 課稅하는 것이 明記되었다.

第21條 二重課稅의 排除

改正條約 第21條 第1項에서 泰國에서의 二重課稅의 排除方法으로 外國稅額控除方式(直接外國稅額控除)이 採擇되었다.

또 第3項 및 第4項에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取扱을 明示했다.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다.

1. 配當

	源泉徵收稅	看做外國稅額部分
(1) 親子間		
① 産業的 事業	15%	10%
② 其他	20%	5%
(2) 其他	限度稅率 없음	없음

2. 使用料 等

使用料(使用料 및 使用料의 對象이 되는 權利 등의 讓渡收入) 등에 대해서는 現行條約上은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아니나 改正條約에서 이것을 追加했다.

	源泉徵收稅	看做外國稅額部分
使用料 等	15%	10%

3. 投資奬勵法에 根據한 減免額

(1) 現行條約 第14條 第2項(b)에는 1962年의 産業投資奬勵法의 規定에 의해 減免된 泰國의 稅額에 대해 看做外國稅額控除가 定해져 있으나 위의 法은 1972年에 廢止되어 現行의 投資奬勵法(Investment Promotion Act, 1977年)에 關한 交換公文의 改正도 없어 이 投資奬勵法에 關해서는 看做外國稅額控除의 適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改正條約에는 이 投資奬勵法上의 다음 條項을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對象으로 한다.

① 第31條 : 奬勵對象企業에 대해 3年 以上 8年 以內의 期間에 免除된 法人稅

② 第33條 : 奬勵對象企業이 BOI의 承認을 얻은 契約에 根據하여 로열티를 海外에 送金하는 境遇의 當該 로열티에 대해 5年間 免除된 源泉徵收稅

③ 第34條 : 奬勵對象企業이 上記 ①에 의한 免稅利益을 配當하는 境遇에 免除된 源泉徵收稅

④ 第35條(投資奬勵地域에 關한 優待措置) 第2項 : 奬勵對象企業에 대해 5年間 50%로 輕減된 法人稅

⑤ 第35條 第3項 : 奬勵對象企業의 輸送費, 電力·水道費의 二重控除에 따라 輕減된 法人稅

⑥ 第35條 第4項 : 奬勵對象企業에 最初의 課稅對象利益이 생긴 때로부터 10年間의 任意의 해에 通常의 減價償却 以外에 設備의 建設 또는 設置에 關聯된 原價의 25% 相當額의 控除에 의해 輕減되는 法人稅

⑦ 第36條(輸出指向型 産業에 대한 優待措置) 第4項 : 運賃 및 保險料를 除外한 對前年輸出增加額의 5% 相當額 控除에 따라 輕減되는 法人稅

(2) 上記 (1) ①~⑦의 規定 또는 泰國의 經濟開發促進 目的의 奬勵措置로서 이들을 修正 또는 追加한 경우도 兩國政府間의 合議에 따라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第4項(a)(ⅱ)). 또 修正의 境遇에는 特典의 範圍를 變更하지 않는 程度의 境遇는 議定書 第7項의 決定에 의해 또다른 兩國政府間의 合議는 必要없고 自動的으로 外國稅額控除의 繼續對象이 된다.

(3) 上記 (1) ⑤ 및 ⑦은 本則에 適用期間이 定해져 있지 않아 改正條約 第21條 第4項 (b)에 그 期間을 明記했다.

(4) 投資奬勵法에 根據한 減免에 관한 看做外國稅額控除의 適用에 대해서는 泰國側의 要請도 있어 1988年 1月 1日 以後 終了하는 課稅年度부터 始作되었다(議定書 第8項). 따라서 間接稅額控除에 看做外國稅額控除의 適用이 있는 것은 泰國 子會社가 1988年 1月 1日 以後에 終了하는 課稅年度에 輕減 또는 免除된 所得에서 配當을 한 境遇부터이다.

第22條 無差別取扱

現行條約과 基本的으로는 같고 第1項 國籍無差別, 第2項 PE無差別, 第3項 資本無差別 및 第4項 支拂先無差別을 規定하고 있다.

第23條 相互協議

改正條約에는 OECD 모델(model)條約에 準하여 새로이 申立期限을 明示했다(第1項).

第24條 情報交換

第25條 外交官·領事館의 特權

第26條 發效

第27條 終了

〈議 定 書〉

改正條約의 作成에 있어 8項目으로 된 議定書가 作成되었다. 그 중 몇 項目은 各 條項의 說明에 들어가 있으나 여기에 그 全文을 紹介한다.

所得에 대한 租稅에 關한 二重課稅의 回避 및 脫稅의 防止를 위한 日本과 泰國과의 條約(이하 「條約」이라 한다)의 署名에 있어, 다음의 規定을 協定했다.

1. 條約 第5條 7에 關해 「仲介人, 都賣商 그외의 獨立된 地位를 갖

는 代理人」에는 一方의 締約國內에서 주로 他方 締約國의 企業을 위해 또는 이것을 代身해 또는 當該 企業 및 當該 企業이 支配 또는 當該 企業에 支配的 利益을 갖고 있는 다른 企業을 위해 또는 이것을 대신해 同條 6 (a), (b) 또는 (c)에 規定된 活動에 從事하는 者를 包含하지 않는 것으로 諒解한다.

2. 條約 第7條 3에 관하여 企業의 恒久的 施設이 當該 企業의 支店 또는 當該 企業의 다른 事務所에 支拂 또는 送金한 支拂金(實費辨償에 關한 것은 除外)으로 다음에 列擧하는 것에 대해서는 損金에 算入하는 것이 認定되지 않는다.

   (a) 特許權 其他의 權利 使用의 代價로서 支拂되는 使用料, 報酬 其他 이것에 準하는 支拂金

   (b) 特定 役務의 提供 또는 事業 管理의 代價로서 支拂되는 手數料

   (c) 當該 恒久的 施設에 대한 貸付에 關한 利子(當該 企業이 銀行業을 經營하는 企業인 境遇는 除外)

3. 條約 第7條 2, 3 및 4에 關해 日本國의 居住者가 泰國에 있는 恒久的 施設의 實際純利得에 따라 泰國에서의 租稅를 賦課할 것을 要求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의 어떠한 規定도 泰國이 當該 恒久的 施設에 돌아가야 할 利得을 當該 恒久的 施設의 總收入을 一定의 妥當한 比率에 따라 決定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그 結果가 同條에 定해진 原則에 適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條約 第10條 3(b)에 關해 「産業的 事業」이란 産業投資의 奬勵

에 關한 泰國의 法律에 根據하여 주어진 特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事業을 말한다.

5. 條約의 어떠한 規定도 恒久的 施設에 의한 泰國 國外에의 利得의 處分에 대해 泰國이 1938年 泰國稅入法 第70條의 2에 따라 租稅를 賦課하는 것을 妨害하는 것으로 解析되어서는 안 된다.

6. 條約 第16條에 關해 一方 締約國의 企業이 同條 1에 말한 活動으로부터 他方의 締約國에서 取得하는 所得에 대해서는 當該 他方의 締約國에서 同條 2에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賦課할 수 있다고 諒解되었다.

7. 條約 第21條 4(a)에 關해 同條 4(a)(i)에 列擧한 規定으로 條約의 署名日 後에 그 內容이 修正된 것에 대해서는 그 修正이 條約의 署名日에 有效한 이들 규정에 의해 주어진 特典의 範圍를 變更하지 않는 程度의 것인 경우에 限하여 同條 4(a)(i)의 規定을 適用하고 同條 4(a)(ii)의 規定은 適用하지 않도록 諒解되었다.

8. 條約 第26條 2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第21條 4(a)(i)의 規定은 1988年 1月 1日 以後에 終了하는 各 課稅年度의 所得에 관해 適用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各自의 政府에서 正當한 委任을 받아 이 議定書에 署名한다.

1990年 4月 13日 東京에서 英語로 本書 2통을 作成했다.

第Ⅴ篇

말레이시아

第 1 章

租稅의 種類와 特徵

概　要

1. 法人稅率은 35%, 個人所得稅率은 5%～40%의 累進稅率이다. 단, 課稅年度 1991年부터 4%～35%의 累進稅率로 된다.
2. 補完稅인 5% 開發稅가 있으나 賦課年度 1990年부터 每年 1%씩 減少시켜 段階的으로 廢止된다.
3. M$ 300,000를 넘는 個人所得에 대해 5%의 超過利潤稅가 課稅되나 課稅年度 1991年부터 廢止된다.
4. 日本의 住民稅 및 事業稅와 같은 地方稅는 없다.
5. 法人 및 個人 모두 賦課課稅制度이다.
6. 土地, 建物을 除外한 「캐피탈 게인」은 非課稅이다.
7.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政策的 側面에서 여러 種類의 優待措置를 정하고 있다.

Ⅰ. 租稅의 種類

(1) 直接稅

① 所得稅
- 個人所得稅 (Individual Income Tax)
- 法人稅 (Corporate Income Tax)
- 超過利潤稅 (Excess Profit Tax)
- 不動産利得稅 (Real Property Gains Tax)
- 石油所得稅 (Petroleum Income Tax)

② 補完所得稅 (Supplementary Income Tax)

開發稅 (Development Tax)

(2) 間接稅

① 關稅

② 消費稅

③ 販賣稅

④ 서비스稅

⑤ 其他

Ⅱ. 法人稅 및 個人所得稅의 特徵

(1) 法人稅 및 個人所得稅 모두 「Income Tax Act 1967」에 같이 規定되어 있다. Income Tax Act는 第1條에서 第156條까지의 規定이 있고, 日本에서 말하는 國稅通則法, 國稅徵收法,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이 規定되어 있다. 日本의 施行令, 施行規則, 基本通達, 個別通

達 및 租稅特別措置法 등의 詳細한 規定은 없고 또 절대로 모든 것이 Income Tax Act에 根據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詳細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判例나 慣習에 의해 The Director-General of Inland Revenue의 獨自的 判斷을 根據로 稅務行政이 施行되고 있는 것을 各所에서 볼 수 있다.

(2) 法人稅는 法人의 所得에 대해 原則的으로 35%(단 課稅年度 1988年까지는 40%)의 稅率에 의해 補完所得稅인 開發稅가 5%(단 課稅年度 1990年부터 每年 1%씩 階段的으로 廢止된다)의 稅率로 課稅된다. 또, 個人所得稅는 課稅年度 1986年부터 5% ~ 40%의 累進稅率에 의해 課稅되고, 또 M$ 300,000 以上의 所得金額에 대해서는 5%의 超過利潤稅가 課稅된다(課稅年度 1991年부터 4% ~ 35%로 引下되고, 또한 5%의 超過利潤稅도 廢止된다).

(3) 日本의 都道府縣民稅, 市場村民稅 및 事業稅와 같은 地方稅는 없다.

(4) 日本과 같이 稅務調査官이 各 會社에 調査 때문에 訪問하는 일은 거의 없다. 會計事務所의 監査를 信用하고, 申告書 等에 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質問狀이 送付되고 거기에 各 會社 또는 Tax Agent인 會計事務所가 편지로 返答하여 疑問點을 解決하는 形態를 취한다.

(5) 日本은 自主納稅申告制度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納稅者로부터 提出된 申告書 및 資料 等을 근거로 稅務當局이 賦課하는 賦課課稅制度가 採擇되어 있다.

(6) 法人稅의 경우, 課稅年度는 會社의 決算期에 關係없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曆年基準이고, 個人所得도 똑같이 曆年基準이다.

日本에서는 1990年度의 所得에 대한 課稅의 書類는 1990年度라

고 表示되어 있으나 말레이시아에서는 1990年의 所得에 對한 課稅書類는 課稅年度(Year of Assessment) 1991年이라고 表示되어 있어, 1年이 어긋나 있다.

(7) 企業誘致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政策的 側面에서,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이 制定되어 있고, 稅務上 여러 優待措置를 꾀하고 있고, 日本도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로 稅制面에서 말레이시아를 應援하고 있다.

第 2 章

個人所得稅

概　要

1. 原則的으로 60日 未滿의 滯在者는 非課稅, 60日 以上 182日 未滿의 滯在者는 非居住者로 하며 182日 以上 滯在者는 居住者로써 課稅된다.
2. 國外源泉所得은 居住者인 境遇 말레이시아에 送金했을 때에 課稅되나 非居住者의 경우는 送金의 여하에 關係없이 非課稅이다.
3. 外國人으로 企業이 그 所得稅를 負擔하지 않을 경우에는 給與所得에 대한 源泉徵收를 한다.
4. 會社가 個人所得稅를 負擔할 때에는 보너스方式에 의해 所得에 加算된다.

Ⅰ. 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

(1) 納稅義務者는 말레이시아의 「居住」 狀況에 의해 다음과 같은 範疇로 區分되고 各各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의 範疇 및 適用되는 稅率도 틀리다.

「居住」關係에 의한 區分	課稅의 對象이 되는 所得의 範圍	適用稅率	申告 및 納稅方法
1) 居住者 : ㈀ 基準年度(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中에 말레이시아에 182日 以上 滯在하는 者 ㈁ 當該 基準年度의 滯在期間이 182日 未滿이라도 前年부터 또는 翌年으로 繼續되는 滯在期間을 合算한 경우 182日 以上이 되는 者	國內(말레이시아) 源泉所得 및 말레이시아에 送金된 國外(말레이시아) 源泉所得	累進稅率	通常의 方法에 의한다.
2) 非居住者 (外國에 居住하는 말레이시아 法人의 任員을 제외) ㈀ 基準年度中에 말레이시아에 合計 60日 以上 182日 未滿 滯在하는 者 ㈁ 基準年度中에 말레이시아 滯在日數가 60日 未滿인 者	國內(말레이시아) 源泉所得 없 음	35% 非課稅	通常의 方法에 의함 原則的으로 申告 必要없음
3) 非居住任員 (말레이시아 법인의 任員으로 基準年度에 말레이시아 滯在日數가 182日 未滿인 者)	國內(말레이시아) 源泉所得	35%	通常 方法에 의한다.

(2) 2曆年 以上에 걸쳐 滯在하는 境遇의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關係

Income Tax Act에는 曆年에 걸쳐 滯在한 境遇의 居住者 및 非居住者 關係를 보다 詳細하게 規定하고 있으므로 基準年度中의 말레이시아 滯在日數가 60日 未滿이기 때문에 單純히 非課稅라고 一律的으로 말할 수 없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3) 日本·말레이시아 租稅條約 第13條와의 關係

日本과 말레이시아의 租稅條約 第13條에 의해 日本人의 境遇에는,

① 그 個人이 當該 課稅年度를 통해 또는 賦課年度에 關聯된 當該 基準年度를 통해 合計 183日을 넘지 않는 기간을 말레이시아에 滯在하고,

② 그 勞務가 말레이시아 居住者가 아닌 者를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그러한 자 대신 提供하고 또한,

③ 그 所得이 말레이시아 國內에 있는 항구적 시설의 所得에서 直接控除 되지 않은 것이 3개의 條件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課稅를 면제한다.

II. 말레이시아의 國內源泉所得과 國外源泉所得

前述과 같이 個人所得稅 納稅義務者는「居住」狀況에 따라 課稅對象 및 稅率이 다르나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納稅義務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各種 所得 中에서

① 말레이시아에서 생긴 所得 (Accruing in) 또는,

② 말레이시아에서 稼得하는 所得 (Derived from) 및,

③ 말레이시아에서 受領하는 所得 (Received in) (말레이시아 國外源泉所得 中에서 말레이시아에 送金되지 않는 金額은 非課稅)이 課稅對象이 된다.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上記 ① 및 ②가 課稅對象이 된다.

(2) 上記 關係를 日本의 親會社에서 말레이시아의 子會社에 나가 있는

日本人從業員(居住者)을 例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所得의 內譯	所得의 受領地	所得의 源泉地	所得의 말레이시아에의 送金의 有無	말레이시아에서의 納稅義務
本給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있음
不在手當 等	日本	말레이시아	있음	있음
〃	日本	말레이시아	없음	있음
賞與金	日本	말레이시아	있음	있음
〃	日本	말레이시아	없음	있음
預金利子, 受取配當	日本	日本	있음	있음
〃	日本	日本	없음	없음
家賃收入 (不動産所得)	日本	日本	있음	있음
〃	日本	日本	있음	없음

上記에 提示한 대로 이 從業員의 所得 中에서 不在手當 및 賞與金은 所得의 受領地 如何를 不問하고, 그의 말레이시아에서의 人的勞務提供에 대한 代價이며, 말레이시아 國內源泉所得이 되며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送金 有無를 따지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課稅된다.

한편, 日本에서 銀行 등에 預金하여 생기는 利子收入, 株式을 所有함으로써 생기는 受取配當 및 日本의 不在住宅 등을 賃貸함으로써 생긴 動産所得은 日本의 國內源泉所得이고 日本에서 納稅義務가 생기나, 만일 이것이 말레이시아에 送金된 境遇에는 말레이시아에서 課稅對象이 된다. 이 경우 日本에서 納付한 所得稅는 말레이시아의 所得計算上 外國稅額控除對象이 되어 原則的으로 二重으로 課稅되는 일은 없다.

日本에 住所를 가지고 있던 자가 「國外에서 繼續해서 1年 以上 居住할 것을 通常 必要로 하는 職業을 가졌다」라는 前提로 國外에 居住할 경우에 그 者는 日本 國內에 住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推定되어 出國時點에 日本에서 非居住者로 되어 不在住宅手當 및 賞與金은 日本國外源泉所得이기 때문에 日本에서는 非課稅된다.

Ⅲ. 過稅所得의 種類

1. 課稅所得

課稅所得은 「總所得金額 · 各種 控除金額」에 의해 計算된다.

2. 總所得金額의 主된 項目

(1) 給料, 賞與金 등의 合計金額 및 各種 手當

(2) 個人所得稅의 會社負擔分

日系企業에서는 會社가 日本人從業員의 個人所得稅를 負擔하고, 實受領額으로 本人의 給料를 決定하는 경우가 꽤 많다.

會社가 支拂한 個人所得稅는 個人에겐 所得으로 되어, 그것에 대하여 또다시 個人所得稅가 賦課되고 그만큼 이 所得에 算入되어 課稅되는 것이 反復된다.

이와 같이 會社가 從業員의 個人所得稅를 負擔할 경우 個人의 課稅所得計算方法에는 2種類가 있다. Tax on Tax 方式과 보너스(Tax Reimbursement)方式이다.

① Tax on Tax 방식

이것은 本人에게 支拂된 實受領額의 給料를 根據로 그 稅 包含金額을 計算하여(gross up한다), 이것을 根據로 算出된 個人所得稅額을 翌年의 賦課時에 會社가 直接支拂하는 方法이다.

Tax on Tax 方式은 個人所得稅를 發生主義에 의하여 計算하는 方法이다.

② 보너스方式

보너스方式은 現金主義에 根據하여 計算하는 方式으로 예를 들어 1985年은 本人의 實受領額을 總所得金額으로 納付稅額을 計算하여, 1986年에 이것을 個人이 納稅하고 同時에 會社가 個人에게 이 納稅額을 1986年分 보너스로 支給하여 1986年의 給與所得에 包含시키는 方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보너스方式을 採擇한다. 단, 歸國할 때에는 그 해의 個人所得稅는 Tax on Tax方式으로 計算하여 納稅하게 된다.

(3) 現物給與

給料, 賞與金, 手當 等 現金으로 支給되는 項目 以外에 個人이 會社로부터 經濟的 利益 供與를 받고 있다고 看做되는 다음의 項目

① 從業員의 住宅이 會社로부터 支給되는 경우, 즉 會社의 借上社宅을 從業員이 사용하든지 또는 會社所有의 社宅을 從業員이 使用할 境遇 — 下記 ㉠ 또는 ㉡ 중 낮은 金額이 課稅對象이 된다.

㉠ 當該 住宅의 法定評價額 또는 公正한 家賃合計額

㉡ 本人의 總所得金額의 30% 相當額

② 會社가 從業員에게 社宅을 提供하는 대신에 호텔에 宿泊시켜 그

호텔비를 會社가 負擔할 境遇에는 本人의 總所得金額의 3% 相當額(1年間 호텔 生活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 相當額을 日數按分한다)이 課稅對象이 된다.

③ 會社로부터 支給된 住宅에 家具 등이 附屬된 경우 또는 家具 等이 會社로부터 支給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基準으로 算定된 金額이 課稅對象이다.

家具	月 M$ 50
天井扇	月 M$ 5
電氣器具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洗濯機, 세척기를 包含)	月 M$ 50
水道光熱費 및 電話料	實際支拂額
가정부, 庭師	實際支拂額

車 自動車의 取得原價	自動車	휘발유
M$ 40,000以下	月M$100	月M$ 50
M$ 40,001以上 M$ 75,000以下	月M$200	月M$ 75
M$ 75,001以上 M$100,000以下	月M$300	月M$100
M$100,001以上 M$150,000以下	月M$400	月M$125
M$150,001以上 M$200,000以下	月M$500	月M$150
M$200,001以上 M$250,000以下	月M$650	月M$175
M$250,001以上	月M$800	月M$200

④ 從業員 및 그 家族의 home leave 때문에 會社가 支拂한 旅費

1年에 1回 home leave를 위한 旅費는 非課稅이다(1985年 10月

25日 以後).

⑤ 從業員 子女의 敎育費를 會社가 負擔하는 경우 그 全額이 課稅對象이 된다.

3. 各種控除項目

居住者는 總所得金額에서 다음 項目을 控除할 수 있다.

		課稅年度 1991年 以後는 다음과 같이 된다.
① 基礎控除	M$ 5,000	M$ 5,000
② 配偶者控除	M$ 2,000	M$ 3,000
③ 扶養控除(子女)第1子	M$ 650	M$ 800
第2子	M$ 750	M$ 850
第3子	M$ 800	M$ 800
第4子	M$ 800	M$ 800
第5子	M$ 800	M$ 800

단, 子女가 16歲 以上으로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以外의 國家에서 敎育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上記보다 4倍의 扶養控除를 받을 수 있다.

④ 生命保險料控除 및 被雇用者退職積立基金控除 最高 M$ 3,500

4. 非課稅所得

以下 項目은 非課稅이다.

(1) 退職金

退職金이 非課稅所得으로 되기 위해서는 病患에 의하거나 또는 10年以上 같은 會社 또는 같은 그룹 會社內에 勤務하고 55歲가 되어 退職하는 境遇이다.

(2) 말레이시아에서 勤務日數가 60日 未滿인 非居住者

(3) 死亡 또는 障害에 대한 慰勞金

(4) 政府가 發行한 預金證書로부터 생기는 受取利子

(5) 非居住者의 承認론(Approved Loan)으로부터 생기는 受取利子

(6) 다음의 受取利子

① National Savings Bank of Malaysia의 M$ 50,000 以下의 예금에서 생기는 受取利子

② Finance Companies Act 1969에 의해 許可된 商業銀行 또는 金融會社의 貯蓄性預金(Savings Account)에서 생기는 受取利子(M$ 1,000가 上限이다)

③ Bank Simpanan National의 貯蓄性預金에서 생기는 受取利子

④ Registered Cooperative Society(The Bank Pertanian Malaysia, Lembaga Urusan dan Tabung Haji 또는 The Malaysian Building Society Berhad 또는 長官이 承認한 其他 機關)의 貯蓄性預金(M$ 10,000를 넘지 않는 金額)에서 생긴 受取利子

⑤ Banking Act 1973에 根據해 銀行으로부터 非居住者에 支拂되는 支拂利子

⑥ 政府에 의해 發行된 證券 또는 債券에서 생긴 受取利子

(7) 非居住者(非居住會社)가 말레이시아 國外源泉所得을 말레이시아에 送金해온 境遇

(8) 醫療費의 會社負擔分

5. 預金利子에 對한 課稅

前述「4. 非課稅所得」範圍에 들어 있지 않은 個人預金에서 생기는 受取利子에 대해서는 居住者의 경우 1986年 1月 1日 이후, 金融機關에 의해 利子支拂時 5%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個人의 當該利子에 대한 納稅關係는 끝나므로 確定申告額에 包含시킬 必要는 없다.

Ⅳ.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總所得金額	給料·賞與金 等의 合計金額 및 各種手當 個人所得稅의 會社負擔分 現物給與 等

— 差引

各種控除項目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控除 等

(註) 給與所得控除는 없다.

=

課稅所得金額

×

稅率

=

納付해야 할 稅額

1. 計算方法

(1) 居住者인 샐러리맨의 경우, 納付해야 할 稅額은 위와 같이 하여 計算한다.

⑵ 非居住者인 경우는 總所得金額 × 35%가 納付해야 할 稅額이다.

2. 納付稅額의 計算例 (居住者의 境遇)

前提 ① 1988年 1月에 말레이시아에 赴任해왔다.

② 말레이시아에서의 給料手當 M$ 50,000
(1988年度 및 1989年度)

③ 日本에서 받은 賞與金 15,000

M$ 65,000

④ 家賃은 全額 會社負擔 月 M$ 2,500×12個月 = M$ 30,000

⑤ 家具, 天井扇, 쿨러 및 冷藏庫 등이다.

⑥ 稅金은 會社負擔이다.

⑦ 扶養家族, 妻, 子女 2人(그 中 第1子는 日本에서 日本高校에 通學하고 있다)

⑴ 課稅年度 (Year of Assessment) 1989년

給料·賞與金 M$ 65,000

現物給與

家具 M$ 50×12個月 = M$ 600

天井扇 M$ 5×12個月 = M$ 60

쿨러 M$ 50×12個月 = M$ 600 1,260

66,260

家賃 (M$ 30,000와 M$ 66,260 × 30% 중 어느쪽인가? 낮은쪽) 19,878

86,138

控除

基礎控除	M$ 5,000	
配偶者控除	2,000	
扶養控除 第1子 (M$ 650×4)	2,600	
第2子	750	(10,350)
課稅所得		M$ 75,788
納付稅額		
最初의 M$ 70,000	M$ 15,175	
다음의 5,788 × 35%	2,025	M$ 17,200
M$ 75,788		

(2) 課稅年度 (Year of Assessment) 1990년

給料·賞與金	M$ 65,000
個人所得稅 會社負擔分	17,200
現物給與	
家具, 天井扇, 쿨러 等	1,260
	83,460
家賃 (M$ 30,000와 M$ 83,460 × 30% 중 어느 쪽인가? 낮은쪽	25,038
	108,498
控除	(10,350)
課稅所得	M$ 98,148
納付稅額	
最初의 M$ 70,000	M$ 15,175
다음의 28,148 × 35%	9,851
M$ 98,148	M$ 25,026

Ⅴ. 申告書 提出, 納付

1. 申告書 入手

通常의 경우 每年 1, 2月頃 國內歲入廳(Department of Inland Revenue)으로부터 納稅義務者인 個人 앞으로 申告書(Tax Return)가 送付된다. 納稅義務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課稅年度의 3月 31日까지 申告書가 送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4月 14日까지 申告書의 送付를 申請書에 記入하여 請求해야 한다.

使用해야 할 申告書 樣式은

居住者의 境遇　　Form B (CP 4)

非居住者의 境遇　　Form M (CP 54) 이다.

2. 申告書의 作成, 提出

申告書가 到着하면, 西말레이시아에 居住하는 거주자 및 非居住者의 경우에는 申告書 發行日부터 30日 以內(東말레이시아에 居住하는 居住者의 경우에는 60日 以內)에 必要事項을 記入하여 Form C.P.8A(일본의 源泉徵收表에 該當함)및 기타 必要書類를 添附하여 署名 후, The Director-General of Inland Revenue 앞으로 提出해야 한다.

所得의 計算對象期間은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曆年이고, 그 曆年의 所得에 대해 그 다음 年度(이것을 課稅年度 <Year of Assessment>라고 칭함)에 세액이 賦課되어 納付해야 한다.

3. 申告書의 提出延期

給與所得이 全部인 샐러리맨의 경우 The Director-General은 見積課稅所得 數字를 通知한 경우에는 通常 3月 31日(西말레이시아의 경우)까지 申告書 提出延期를 인정해주지만 그 以上의 提出延期를 申請할 경우에는 그 理由를 提示해야 한다.

4. 所得稅 納付

申告書 提出 얼마 후에(이 時期는 各 個人에 따라 제 각각이지만, 通常은 2~3個月後) 課稅通知書(Notice of Assessment)가 送付된다.

이 課稅通知日부터 30日 以內에 記載된 稅額을 納付해야 한다.

納付해야 할 稅額은 반드시 申告額과 同額은 아니고 The Director-General에 의해 어떠한 修正이 있을 수도 있다.

通知된 賦課額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The Director-General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단 稅金納付는 異議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課稅通知日로부터 30日 以內에 納付할 필요가 있다.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의 延滯稅가 붙는다. 또 10% 延滯稅가 붙은 후 60日 以內에 納付하지 않는 경우에는 納付해야 할 稅金과 10% 延滯稅 合計額에 5%의 延滯稅가 추가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給與所得에 대해 日本과 같이 雇用者가 每月 給料에서 源泉徵收하는 制度는 原則的으로 없다. 단 The Director-General은 雇用者가 稅金을 負擔하지 않는 外國人從業員에 대해 源泉徵收를 要求한

다.

5. 分割納稅制度 利用

個人所得稅의 納付는 課稅通知日부터 30日 以內에 納付할 것을 요구하지만, 申請에 의해 分割로 納稅하는 것도 認定된다. 所定의 分割條件이라는 것은 없고 The Director-General의 裁量에 의해 決定된다.

Ⅵ. 着任時와 歸任時의 手續

1. 着任時의 手續

(1) 말레이시아에 새로 赴任해 온 사람은 到着日부터 2개월 이내에 The Director-General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勤務하는 趣旨의 通知를 해야 한다.

(2) 會社는 從業員을 새로 雇用한 境遇에는 雇用開始日부터 3個月 以內에 Form IT22를 The Director－General 앞으로 提出해야 한다.

2. 歸任時의 手續

(1) 말레이시아에서 年度中에 歸國할 境遇에는 그 해의 1月 1日부터 歸國日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를 納付해야 한다.

(2) 會社는 從業員의 歸國豫定日보다 1個月 以上 前에 The Director-General에게 從業員이 歸國한다는 趣旨의 通知 및 所得金額 等을 通知해야 한다.

Ⅶ. 超過利潤稅(Excess Profit Tax)의 課稅

課稅所得(Chargeable Income)이 M$ 300,000를 넘는 個人은, M$ 300,000를 넘는 부분에 대해 5%의 超過利潤稅를 納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1991年度 豫算演說에 의해 課稅年度 1991年부터 廢止되었다.

Ⅷ. 個人所得稅의 減額

課稅所得이 M$ 10,000를 넘지 않는 居住者에 대해서는 納付해야 할 稅額에서 다음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納付하면 된다는 Tax Rebate 制度가 있다.

Ⅸ. 居住者의 稅率表 (課稅年度 1985年 以後)

個人의 課稅所得이 M$ 300,000를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 部分에 대해 5% 超過利潤稅(Excess Profit Tax)가 課稅되나, 課稅年度 1991년부터 廢止되었다.

非居住者(非居住從業員 및 非居住任員)에 대해 給料 等을 支拂하는 경우 … 35%

	課稅所得 (M$)	稅 率 (%)	稅 額 (M$)	(課稅年度 1991年 以後) 稅 率 (%)	稅 額 (M$)
最初의	2,500	5	125	4	100
다음의	2,500	8	200	7	175
最初의	5,000		325		275
다음의	5,000	12	600	10	500
最初의	10,000		925		775
다음의	10,000	15	1,500	12	1,200
最初의	20,000		2,425		1,975
다음의	15,000	20	3,000		2,550
最初의	35,000		5,425		4,525
다음의	15,000	25	3,750	22	3,300
最初의	50,000		9,175		7,825
다음의	20,000	30	6,000	27	5,400

第 3 章

法 人 稅

概 要

1. 居住法人의 判定은 日本의 本店所在地主義와 달리 소위 管理支配地主義이며 設立國 如何를 不問하고 관리와 통제권이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居住法人으로 認定된다.
2. 居住法人의 國外源泉所得은 말레이시아에 送金되지 않는 한 非課稅된다. 또 非居住法人의 경우는 送金 如何에 관계없이 非課稅된다.
3. 曆年 基準을 根據로 한 賦課課稅制度이기 때문에 3月決算인 會社에서는 稅 確定까지 2年 程度의 期間이 걸린다.
4. 企業會計와 稅法이 완전히 分離되어 있어 日本과 같이 企業會計가 稅法을 追從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會計上 損益計算書의 稅前利益에서 始作하여 稅法上의 加算·減算을 하여 課稅所得을 算定한다.
5. 配當金의 國外送金에 대한 源泉徵收制度는 없으나 法人稅 相當額을 控除하는 源泉控除가 있다.
6. 二重課稅 排除는 外國稅額控除制度에 따르나 日本보다 控除範圍는 좁다.

Ⅰ. 納稅義務者

(1) 法人稅의 納稅義務者는 法人이다.

法人이란 말레이시아 또는 外國에서, 말레이시아 또는 當該 外國의 法律을 根據로 設立된 會社이다.

(2) 納稅義務者의 區分

納稅義務者는 管理支配地基準에 따라 居住法人과 非居住法人으로 區分된다.

① 居住法人 : 말레이시아의 會社法을 根據로 設立되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任員會議가 말레이시아에서 開催되며 말레이시아 國內에서 任員이 業務 執行·管理를 하고 있는 경우(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its business are exercised in Malaysia)에는 當該 法人은 말레이시아 稅法上 말레이시아 居住法人이 된다.

② 非居住法人 : 居住法人 이외의 法人이며, 설령 말레이시아의 會社法을 근거로 設立되어 말레이시아에서 營業活動을 하고 있어도 任員會議가 外國에서 開催되고 任員이 外國에서 當該 會社의 業務執行·管理를 할 경우에는 當該 法人은 말레이시아 稅法上 말레이시아 非居住法人이 된다.

Ⅱ. 課稅對象

(1) 居住法人 : ① 말레이시아에서 생긴 所得 (Accruing in), 또는

② 말레이시아에서 稼得하는 所得 (Derived from), 및

③ 말레이시아에서 受領하는 所得 (Received in)(말레이시아 國外源泉所得 中에서 말레이시아에 送金되지 않는 금액은 非課稅이다)이 課稅對象이 된다.

(2) 非居住法人 : 上記 ① 및 ②가 課稅對象이 된다.

Ⅲ. 所得의 種類

(1) 事業所得 (Profits or gains of a trade or business)

(2) 配當, 利子 및 割引料 (Dividends, interest and discounts)

(3) 賃貸料, 使用料 또는 프리미엄 (Rents, royalties or premiums)

(4) 기타 所得의 性質을 가진 利得 또는 利益 (Gains or profits from other sources)(말레이시아에서는 土地, 建物의 賣却益을 제외한 「캐피탈 게인」은 非課稅이다).

Ⅳ. 稅率

法人稅(Income Tax)는 35%(課稅年度 1988年까지는 40%)이다. 단, 會社所得에 대한 租稅이고, 다음의 稅金이 각각 狀況에 따라 課稅된다.

(1) 開發稅 (Development tax) … 5% (단, 課稅年度 1990年부터 每年 1%씩 段階的으로 廢止된다)

(2) 不動産利得稅 (Real property gains tax) … 5% ~ 20%

Ⅴ. 事業年度

會社는 自由롭게 決算日을 選定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親會社에 맞추어 3月 31日을 決算日로 하든지 또는 12月 31日을 決算日로 할 수도 있다. 단, 말레이시아 세법은 曆年基準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12月 31日 이외를 決算日로 한 경우에는 課稅所得 計算上 特別한 手續이 必要하다.

Ⅵ. 賦課課稅

말레이시아 稅法은 日本과 같은 自主納稅申告制度가 아니고 納稅義務者로부터 提出된 資料를 根據로 The Director-General of Inland Revenue가 賦課되는 賦課課稅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이 賦課課稅는 曆年(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基準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事業年度가 1990年 1月 1日부터 1990年 12月 31日인 會社의 경우

이 會社는 12月 31日이 決算日이기 때문에 稅務上 曆年基準과 一致한다. 1990年 12月 31日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해 1991年에 法人稅의 賦課가 이루어진다.

1990年 12月 31日期는 稅務上 基準年度(Basis Year), 1991年은 賦課年度(Year of Assessment)라고 부른다.

(2) 事業年度가 1989年 4月 1日부터 1990年 3月 31日인 會社의 경우

이 회사의 基準年度는 1990年 3月 31日期이고, 賦課年度는 1991

年이다.

이 경우에 基準年度는 1990年 3月 31日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이므로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金額은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1989年 4月 1日부터 1990年 3月 31日期의 事業所得金額에 1990年 1月 1日부터 1990年 12月 31日까지의 曆年에 稼得했다.

① 配當·利子 및 割引料

② 賃貸料, 使用料 또는 프리미엄

③ 其他所得의 性質을 가진 利得 또는 利益의 合計額이다. 즉 事業所得은 曆年基準을 따르지 않고 當該 會社의 事業年度를 근거로 그 다음해에 賦課되나 事業所得 이외의 所得은 當該 會社의 事業年度에 관계없이 曆年基準을 근거로 그 다음해에 賦課된다.

이 때문에 法人稅의 申告書(Form C)上 調整計算이 必要해진다.

Ⅶ. 申告期限

每年 1月이나 2月頃에 The Director-General of Inland Revenue로부터 法人稅申告書(Form C, C.P.5)가 送付된다. 그 Form C가 3月 1日 以前에 發行된 경우에는 3月 30日까지, 3月 2日 以後에 發行된 경우에는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內에 Form C에 監査證明付의 決算書 등 課稅所得金額 및 納付稅額의 計算明細書를 添附하여 The Director-General에 提出해야 한다.

만일 Form C가 3月 31日까지 送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4月 14日까지 Form C의 添附를 請求해야 한다.

申告期限의 延長은 合理的인 理由가 있으면 認定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法人 및 外國法人의 말레이시아 支店은 모두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監査證明付의 決算書를 Form C에 添附해야 한다.

課稅所得金額 및 納付稅額의 計算明細書를 添附하는 것은 稅法上 要求되지 않으나 이것을 添附하는 것은 實務上 慣習이다.

Ⅷ. 法人稅의 納稅

Form C를 提出한 後 수개월이 지나면 課稅通知書(Notice of Assessment)가 送付된다. 이 課稅通知書 發行日에서 30日 以內에 當該 課稅通知書에 記載된 稅額을 納付해야 하는데 만일 課稅通知書에 記載된 稅額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The Director-General에 當該 課稅通知書 發行日부터 30日 이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稅額을 먼저 納付해야 한다.

또한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의 延滯料가 붙는다. 또 10%의 延滯稅가 붙고 60日이 經過한 후 本稅 및 10%의 延滯稅가 未納인 경우에는 그 合計額에 5%의 벌금이 가중된다.

또한 申請에 의해 分割로 納稅할 수도 있다. 所定의 分割條件이란 것은 없고 The Director-General 裁量에 의해 決定된다.

IX. 豫定納稅

決算期가 12月 31日 以外의 會社인 경우 The Director-General은 當該 會社의 決算 終了後 情報를 入手하여 다음해의 正式 賦課課稅 前에 먼저 豫定納稅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以外에, 會社가 原則的으로 豫定納稅를 할 必要가 없다.

X. 課稅所得의 計算

1. 原則

(1) 稅法上 特히 要求되는 會計處理

日本에서는 減價償却費의 損金算入의 경우와 같이 일정 項目을 損金에 算入하기 위해서는 損金經理(確定된 決算에 費用 또는 損失로 經理하는 것)가 要件으로 되어 있어 企業會計가 稅法을 追從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없고 企業會計와 稅法이 완전히 分離되어 있어, 企業會計가 稅法을 追從하는 일은 없다.

Income Tax Act에는 獨自的인 稅法 會計處理는 規定되어 있지 않고 一般的으로 公正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基準에 따라 財務諸表가 作成되고 公認會計士(Certified Public Accountant)가 當該 財務諸表는 適正하게 作成되었다는 趣旨의 意見表明을 하면 當該 會社의 會計處理는 稅法上으로도 適正하다고 看做된다.

(2) 課稅對象

課稅對象은 前述과 같이

居住法人 : ① 말레이시아에서 생긴 所得 (Accruing in), 또는

② 말레이시아에서 稼得하는 所得 (Derived from), 및

③ 말레이시아에서 受領하는 所得 (Received in) (말레이시아 國外源泉所得 中에서 말레이시아에 送金되지 않는 金額은 非課稅이다)이 課稅對象이 된다.

非居住法人 : 위의 ① 및 ②가 課稅對象이 된다.

즉, 上述의 所得金額은 收入合計에서 이 收入을 얻기 위해서만 發生한 支出 및 費用 (Outgoings and expenses wholly and exclusively incurred in the production of the income) 즉 必要經費를 控除하고 算出한다.

具體的으로 損益計算書의 稅前利益부터 始作하여 加算, 減算함으로써 計算된다.

⑶ 配當, 利子 等 收入에 對한 特別課稅制度

前述과 같이 말레이시아는 賦課課稅制度이고 또 課稅年度는 各 會社의 事業年度에 관계없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曆年基準을 採擇하고 있다.

이 曆年基準은 會社의 事業所得에 對해서는 適用되지 않으나,

① 配當, 利子 또는 割引料

② 賃貸料, 使用料 등 資産에서 생기는 所得

에 對해서는 曆年基準에 근거하여 課稅되는 것이 原則이다.

즉, 과세연도가 1989年 4月 1日 ~ 1990年 3月 31日인 會社를 例로 들면, 當該 期 事業所得은 當 會社의 事業年度에 맞춰서 1991年에

賦課되나 上記 利子 等은 會社의 事業年度에 관계없이 1990年 1月 1日부터 1990年 12月 31日까지 稼得한 所得에 對해 1991年에 賦課된다. 이와 같이 利子 等에 對해서는 曆年 基準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課稅所得計算에 對해 特別한 配慮를 할 必要性이 있다.

2. 益金

(1) 未送金 國外源泉所得

居住法人의 경우 말레이시아 國外源泉所得은 말레이시아에 送金된 事業年度에 課稅對象이 된다. 따라서 會計上 國外源泉所得을 收益으로 計上했다고 해도 稅務上으로 送金되지 않으면 課稅되지 않음으로 이 調整을 申告書上에서 하게 된다.

(2) 未實現 換差益(損)

外貨베이스債權·債務에 대해 期末時 레이트에 따라 評價를 바꿈으로 인해 생긴 換差損益은 會計上으로는 그 期의 費用 또는 收益으로 認識되나 稅務上으로는 그 期의 損金 또는 益金으로 認識하지 않고 이것이 實現된 때 즉 現金으로 回收된 때 또는 現金으로 決濟한 때의 損金 또는 益金이 된다. 따라서 未實現 換差損 또는 差益은 當期의 申告書上 加算 또는 減算되고 翌期에 實現되었을 때에 翌期의 申告書上 前期分에 對해 減算 또는 加算된다.

(3) 資本去來에서 생긴 實現 換差益(損)

例를 들어 固定資産을 日本에서 円베이스로 購入한 경우 등 資本的 去來에서 생긴 實現 換差損 또는 差益은 稅務上으로는 損金 또는 益金으로 看做되지 않으므로 申告書上 加算 또는 減算된다.

(4) 「캐피탈 게인(로스)」

말레이시아에서는 例를 들어 固定資産賣却損과 같은 「캐피탈 로스」 및 固定資産賣却益(土地, 建物)과 같은 「캐피탈 게인」은 會計上으로는 損失 또는 利益으로 認識해도 稅務上으로는 損金 또는 益金으로 인식되지 않고 當該 去來는 없었던 것으로 看做하기 때문에 申告書上으로 「캐피탈 로스」는 加算, 「캐피탈 게인」은 減算한다.

3. 損金

(1) 減價償却費

말레이시아에서는 會計上의 減價償却과 稅務上의 減價償却은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 즉 會計上으로는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은 전부 會社 任員의 判斷을 근거로 決定되고 이것을 會計士가 承認하면 當該 會社의 減價償却은 適正하다고 看做되는 것에 對해 稅務上으로는 Income Tax Act에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이 法定지어져 있어 이 稅法에 근거하여 算出된 減價償却費만이 損金에 算入된다.

따라서 會計上의 減價償却費는 稅務上의 課稅所得計算上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고 일단 全額 加算하여 會計上 減價償却費의 計上이 없었던 것으로 看做하며 대신 稅法規定에 準據하여 計算된 金額이 損金에 算入된다. 稅務上의 減價償却制度에 對해서는 後述의 「稅務上의 減價償却制度 (Capital Allowance)」의 項을 參照할 것.

(2)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

日本에서는 取得價格이 20萬円 未滿의 減價償却資産은 使用한 事業

年度에 一時로 損金經理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金額의 基準은 없고 使用可能期間이 1年 以上인 減價償却資産은 稅務上 전부 資産計上하여 稅法의 規定에 따른 減價償却費를 損金에 算入한다.

(3) 貸損充當金과 貸損損失

會計上의 必要性에서 貸損充當金을 計上하는 것은 當然하나 稅務上으로는 實際로 貸損이 確定될 때에 損金으로 認定된다. 따라서 會計上 算入된 貸損充當金은 申告書上 加算된다.

(4) 寄附金

政府 및 特定團體에게 現金에 의한 寄附만이 稅務上에 損金으로 認定된다. 그 以外의 寄附金은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申告書上 加算된다.

(5) 交際費

課稅年度 1989年부터 다음에 提示하는 것을 제외한 交際費는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申告書上 加算한다.

- 福利厚生的인 意味로 從業員에 支給된 것
- 비지니스 提供을 위한 贈答品 및 샘플
- 비지니스 促進을 위하여 일반에 公開한 文化 및 스포츠 이벤트에 對해 支拂한 費用

(6) 賞與金

從業員에 支拂된 보너스 中에서 1人當 M$ 2,000 또는 各 從業員의 給料의 2/12에 稅前利益의 對前期 增加比率의 2倍를 곱한 金額 중 많은 金額을 넘은 部分은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加算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賦課年度 1990年부터 이 制度를 廢止하고 賞與金을 모두 EPF(Employees Provident Fund, 被雇用者退職積立基金) 및 適用對象으로 하는 趣旨의 發表가 있었다.

(7) 創業費 償却額 및 開業費 償却額

日本에서는 創業費(法人 設立 때문에 支出하는 費用) 및 開業費(法人 設立後 營業을 開始할 때까지 開業準備 때문에 特別히 支出하는 費用)는 順廷資産으로 계상하고 任意償却에 의해 또는 支出時에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나 말레이시아에서는 營業 開始까지 드는 費用은 稅務上 一切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加算한다. 단, 授權資本金이 M$ 250,000를 넘지 않는 會社에 대해서는 創業費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8) 新株發行費

會社設立後에 株券을 發行하든지 增資에 의해 新株券을 發行했을 境遇에 드는 費用은 稅務上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는다.

(9) 罰金·延滯稅 等

벌금 等은 稅務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으므로 加算한다.

(10) 기타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發生한 費用

固定資産에 대한 資本的 支出인 데도 불구하고 會計上 修繕費로 계상한 경우(稅務上의 減價償却費는 下段에서 損金에 算入된다), 資本的 去來 때문에 支拂된 辯護士費用, 印紙稅 等 리스契約上 支拂된 프리미엄 等이 收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發生한 費用으로 申告書上 加算된다.

4. 缺損金의 移越

(1) 前期로부터 移越된 稅務上의 減價償却費의 未控除金額(Unabsorbed Capital Allowance Brought Forward) 및 前期로부터 移越된 稅務上 減價償却費 控除 前의 移越缺損金(Unabsorbed Business Loss Brought Forward)

調整後所得(Adjusted Income)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調整後缺損(Adjusted Loss)으로 稅務上의 減價償却費가 控除되지 않게 된다. 이 控除되지 않았던 金額은 다음 期 以後 控除될 때까지 移越되어서 翌期 이후의 課稅所得(Chargeable Income)과 相殺된다. 즉 稅務上 移越缺損金은,

- 稅務上 減價償却費의 未控除金額(Unabsorbed Capital Allowance)
- 稅務上 減價償却費 控除前의 移越缺損金(Unabsorbed Business Loss)의 두 가지로 分類된다. 위 2種類의 移越缺損金 利用에 대해서는 다음의 制限이 있다.

① 稅務上 減價償却費의 未控除金額

이 未控除金額은 翌期 이후의 課稅所得과 相殺할 수 있다. 이월기간의 制限은 없다. 단, 이 控除金額과 翌期 이후의 課稅所得은 같은 비지니스源(same business source)에서 생긴 것이 아니면 안되는 制限이 있다.

② 稅務上 減價償却費 控除前의 移越缺損金

이 移越缺損金을 翌期 以後의 課稅所得과 相殺할 경우에는 이 課稅所得은 事業所得 이외의 所得(예를 들어 受取利子, 受取配當金

等)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즉, 當該 移越缺損金은 翌期以後의 事業所得으로만 相殺할 수 있다.

(2) 設例

A社의 1989年 12月 31日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課稅所得(缺損金)은 다음과 같다.

調整後 缺損金 (事業에서 생긴 것)	(M$ 200,000)
受取利子	5,000
受取配當金	3,000
	(M$ 192,000)

1990年 12月 31日에 終了하는 事業年度는 다음과 같다.

調整後 所得	M$ 100,000
受取利子	6,000
受取配當金	4,000
	(M$ 110,000)

위의 경우 M$ 192,000와 M$ 110,000를 相殺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고, M$ 192,000는 調整後所得 M$ 100,000로만 相殺된다. 따라서 受取利子 M$ 6,000 및 受取配當金 M$ 4,000에 대해서는 法人稅를 納稅해야 한다. 따라서 1990年 12月 31日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移越缺損金 殘高는 M$ 192,000 — M$ 100,000 = M$ 92,000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싱가포르의 "Continuity of Beneficial Ownership Test"와 같은 制限은 없다.

또 말레이시아에는 缺損의 移越 還付制度는 없다.

XI. 稅務上의 減價償却制度(Capital Allowance)

1. 會計上의 減價償却과 稅務上의 減價償却費

前述과 같이 말레이시아에서는 會計上 減價償却과 稅務上 減價償却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한다. 즉 會計上,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은 모두 會社 任員의 判斷을 根據로 決定되고 이것을 公認會計士가 承認하면 當該會社의 減價償却은 적정한 것으로 看做되지만 稅務上 Income Tax Act로 減價償却資産, 減價償却方法, 耐用年數 等이 法定지어져 있고, 이 Income Tax Act에 根據하여 산출된 減價償却費만이 損金에 算入된다. 따라서 會計上의 減價償却費는 稅務上 課稅所得計算上 損金으로 認定되지 않고 그 대신 特定한 範疇에 속하는 固定資産에 대해 Capital Allowance로 불리우는 稅法所定의 償却費를 損金에 算入하는 것은 認定된다.

2. 稅務上의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稅務上, 減價償却(Capital Allowance)은

(1)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

(2) 機械 및 設備

(3)「플랜테이션」(Plantation: 植林)業에 관련된 資本的 支出

(4) 鑛山業에 관련된 資本的 支出

에 대해 認定된다.

3. 減價償却(Capital Allowance)의 種類

(1)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

通常의 償却 — 取得時償却(Initial Allowance)

通常의 償却 — 年次償却(Annual Allowance)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Balancing Allowance or Balancing Charge)

再投資控除(Reinvestment Allowance)

(2) 機械 및 設備

通常의 償却 — 取得時償却

通常의 償却 — 年次償却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

再投資控除

(3) 取替法(Renewal or Replacement Basis)에 의한 償却

小型, 少額工具, 器具, 備品 等 耐用年數가 비교적 짧은 資産에 適用된다.

4.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의 減價償却

(1)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의 定義

① 다음에 기술하는 것같이 「産業用」으로 使用되고 있는 建物 및 構築物을 말한다.

㉠ 工場

㉡ 도크(dock), 桟橋

㉣ 倉庫

㉤ 水道, 電氣 및 通信事業

㉥ 私立病院, 産院 또는 私立療養所

㉦「플랜테이션」(Plantation)

㉧ 鑛山

㉨ 硏究·調査(大藏大臣의 承認이 必要)

㉩ 職業訓練(上同)

㉪ 輸出目的에 使用하는 倉庫(上同)

② 다음에 記述하는 建物 및 構築物에서 上記의 附屬으로 使用되는 物件

㉠ 캔틴, 休憩室, 娛樂室 等 上記에 관련된 企業이 雇用하고 있는 從業員의 福利厚生에 使用되는 建物 및 構築物

㉡「플랜테이션」또는 鑛山에서 일하는 從業員을 위한 住居

㉢ 塀, 橋, 댐, 道路, 排水渠, 펜스(fence), 井戶 및 터널 等 附屬設備로 上記의 目的에 使用되는 物件

③ 따라서 住居, 店鋪, 쇼룸(show room), 호텔 및 事務所 및 그것에 관련하는 건물 및 構築物은「産業用」으로 認定되지 않고, 減價償却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④ 또한 建物의 一部만을 産業用으로 使用하고 나머지를 非産業用으로 使用할 경우(예를 들어 工場建物의 一部에 事務所를 設置하고 있는 경우)로 非産業用으로 使用되는 부분의 비용이 當該 建物 비용의 10% 이하일 경우에는 當該 建物 및 構築物 全體가「産業用」으로 간주된다. 10%를 넘는 경우에는 産業用 部分만 償

却對象이 된다. 또한 産業用 및 非産業用 部分의 비용算定이 實務上 困難한 때에는 全體 비용을 使用面積比로 按分하는 等 代替的인 合理的 方法도 認定된다.

(2) 償却의 對象이 되는 支出

稅法上 規定은 아니지만 通常 아래와 같은 建物 및 構築物 取得에 直接 必要한 支出이 포함된다.

① 建物 및 構築物 建設 때문에 생긴 整地費用

② 建築家에 대한 報酬

③ 建築承認을 얻기 위한 關聯者費用

④ 旣存建物을 허는 費用

⑤ 建物의 建築 비용

⑥ 配管·排水·電氣 等 建物建設에 附隨하는 工事에 대한 支出

⑦ 法的 諸費用, 印紙稅 等으로 當該 建物에 直接關聯하는 것

(3) 償却

① 取得時償却(Initial Allowance)

使用한 事業年度에 取得價格의 10% 取得時償却이 認定된다. 단, 이 取得時償却은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을 購入한 경우에는 認定되지 않는다. 즉, 자기가 발주하여 建設한 것이 아니면 認定되지 않는다. 또한 新建築物에 대한 支出만이 아니고 旣存 建物의 增改築으로 간주된 支出도 取得時償却對象이 된다.

② 年次償却(Annual Allowance)

取得價額의 2%의 年次償却을 定額法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의 償却期間은 50年이다.

또한 償却計算을 할 때 殘存價額을 考慮할 必要는 없다. 또 建物等의 使用開始日에 의한 償却費의 日數按分을 할 必要는 없다. 즉 事業年度 末日 現在 다음 條件을 만족하면 1년분의 償却費 계상이 認定된다.

年次償却을 하기 위한 條件으로

㉠ 事業年度의 末日 現在, 當該 建物 및 構築物이 이미 完成되어 使用되고 있을 것.

㉡ 事業年度 末日에 納稅義務者가 當該 建物 等에 대해 法律上의 權利(Relevant Interest)를 가지고 있을 것. 建築비용이 M$ 1,000,000의 A社 所有 工場用 建物을 B社가 賃借하여 B社가 이것에 M$ 500,000를 더 들여서 改築하여 「産業用」으로 使用한 경우, A社는 M$ 1,000,000에 대해 B社는 M$ 500,000에 대하여 各各 法律上 權利를 가지고 있어 各 所得計算上 自己의 權利持分部分에 대하여 「年次償却」을 할 수 있다.

⑷ 賣却·除却 等을 했을 경우의 稅務上 取扱

다음 事實이 發生한 境遇에는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라고 불리는 조정을 稅務上해야 한다.

· 所有權의 移轉

· Leasehold Interest의 終了

· 建物 및 構築物을 허는 것 等

· 「産業用」으로 使用을 그만둔 경우

① 差額償却(Balancing Allowance)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의 賣·除却收入이 稅務上의 未償却殘高를

下廻할 경우 그 差額은 過年度에서 減價償却不足額으로 간주되어 償却額의 追加計上이 認定된다. 會計上 생긴 固定資産의 賣·除却損益은 稅務上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稅務申告書上에서 調整된다.

② 差額賦課(Balancing Charge)

産業用 建物 및 構築物의 賣·除却收入이 稅務上의 未償却殘高를 넘는 경우 그 超過額은 過年度에 減價償却이 過大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課稅對象이 된다.

5. 機械 및 設備의 減價償却

(1) 機械 및 設備에 包含된 것

機械 및 設備란 무엇인가에 대한 定義는 Income Tax Act上 되어 있지 않으나 通常 機械裝置, 船舶, 航空機, 工具·器具 및 備品 以外에 事務所 器具 및 비품 및 家庭用品(冷藏庫, cooker,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포함된다.

(2) 償却對象이 되는 支出

① 自己營業用에 使用하는 機械 및 設備에 대해 이루어진 支出

② 機械 및 設備의 設置 때문에 생긴 支出

③ 단 機械 및 設備의 設置를 위한 敷地整備費用이 機械 및 設備의 購入價格 및 設置費의 合計額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當該 敷地整備費用은 當該 기계 및 設備의 取得價額에 산입하여 償却의 對象으로 할 수는 없다.

④ 機械 等의 購入에 直接關聯하여 發生한 換差損에 대해서는 본래

「캐피탈 로스」이고 課稅所得에서 控除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機械 등의 取得價額을 구성하여 償却의 대상으로 하므로 損金으로 認定된다. 반대로 換差益이 發生한 경우는 本來 「캐피탈 게인」으로 非課稅所得이나 이 경우는 取得價額에서 控除하여 償却額을 計算하므로 그 換差益分만큼 將來의 償却額이 적어진다.

즉 機械 等을 外國으로부터 購入한 境遇에는 合計上의 帳簿價額을 불문하고 稅務上은 실제의 現金支出額을 取得價額으로 삼아 Capital Allowance의 計算對象으로 한다. 따라서 換差損益의 金額만큼 會計, 稅務上의 取得價額이 다르며 稅務上은 稅務上의 取得價額에 根據하여 Capital Allowance를 計算하게 된다.

(3) 償却

① 取得時償却

支出이 행해진(債務가 確定된) 事業年度에 關聯 賦課年度에 대해 支出額 20% 取得時償却이 認定된다. 단 建設業 및 土木業의 경우에는 60%의 取得時償却이 認定된다.

② 年次償却

事業年度 末日에 機械 等이 當該 事業에 使用되었다는 것을 條件으로 後術하는 ⑧에 提示하는 償却年數表에 따라 定額法에 의한 償却이 認定된다. 또한 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 實施 여부는 企業 任意이다.

또한 償却計算을 할 때 機械 등의 殘存價額을 考慮할 必要는 없고, 또 機械 等의 取得日에 따른 償却額의 日數按分을 할 必要는

없다. 즉 取得이야 어떠하든지 事業年度의 末日 現在 當該 機械 等이 使用되고 있으면 1年分의 償却費 計上이 認定된다.

[設 例]

A社(決算日 12月 31日)는 1988年 11月에 타자기를 購入하여 곧 使用하였다. 取得價額은 M$ 2,000이다. A社는 當該 타자기에 대해 稅務上 取得時償却을 適用하기로 했다

이 說例의 償却計算은 다음과 같다.

取得價額	M$ 2,000
1989賦課年度(1988.1.1~1988.12.31期)	
取得時償却 (M$ 2,000×20%)	(400)
年次償却 (M$ 2,000×12%(註))	(240)
1990賦課年度(1989.1.1~1989.12.31期)	
年次償却	(240)
1990年 1月 1日 現在 稅務上의 未償却殘高	M$ 1,120

(註) 369項 參照

(4) 賣却·除却 등이 이루어진 境遇

다음의 事實이 發生한 境遇,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라고 부르는 調整을 稅務上 實施해야 한다.

· 機械 등이 納稅義務者 所有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 즉 賣却 등
· 機械 等을 所有하는 企業의 事業이 永久히 中止된 경우
· 機械 等을 永久히 事業에 使用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差額償却 (Balancing Allowance)

機械 等의 賣·除却收入이 稅務上 未償却殘高를 下廻하는 경우, 그 差額은 過年度의 減價償却不足額으로 看做되어 償却額의 追加計上이 認定된다.

즉, 前述의 設例에서 當該 타자기를 1990年 10月에 M$ 1,000에 賣却했다고 할 경우

1990年 1月 1日 現在의 稅務上의 未償却殘高	M$ 1,120
1990年 10月의 賣却價額(公正한 市場價格)	1,000
差額償却(1991年 賦課年度에 損金에 算入된다)	M$ 120

② 差額賦課(Balancing Charge)

機械 等의 賣·除却收入이 稅務上의 未償却殘高를 넘는 경우, 그 超過額은 過年度에 減價償却이 過大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看做되어 課稅對象이 된다. 賣·除却收入이 機械 等의 取得價額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部分에 대해서는 「캐피탈 게인」으로 看做되어 非課稅된다.

前述의 設例에서 當該 타자기를 1990年 10月 M$ 2,500에 賣却한 경우

1990년 1월 1일 現在의 財務上의 未償却殘高	M$ 1,120
1990年 10月의 賣却價格(公正한 市場價格)	2,500
	1,380
取得價額(M$ 2,000)을 넘는 部分「캐피탈 게인」	500
差額賦課(1991 賦課年度에 益金으로 算入된다)	M$ 880

⑸ 加速度減價償却(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ance)

1986年 1月 1日 以後 1988年 12月 31日까지 取得된 機械 및 設備는 取得時償却이 20%, 年次償却이 40%, 즉 2年間에 全額 償却이 認定된다. 단, 1989年度 豫算演說에 의해 이 期間은 延長되지 않게 되어 1989年 1月 1日 以後 廢止된다.

(6) 少額資産의 稅務上의 取扱

少額固定資産에 대해 取得時에 費用處理를 認定하는 것과 같은 稅務上의 特別取扱(例를 들어 日本의 20萬円 基準과 같은)은 없다. 原則的으로 支出額의 大小에 關係없이 使用可能期間이 1年 以上인 機械 및 設備는 稅務上 固定資産으로 處理할 必要가 있다.

(7) Hire Purchase條件으로 購入된 機械 等의 減價償却

소위 Hire Purchase條件(最終割賦金의 支拂完了까지 物品의 所有權이 購入者側에 移轉되지 않는 一種의 割賦販賣契約)으로 購入한 機械 等에 대해서는 契約價格 中에서 現金購入價額部分과 手數料部分은 稅務上 取扱을 따로 한다. 즉,

① 取得時償却 : 各各 割賦金이 支拂된 事業年度에 關聯된 賦課年度에서 當該 割賦金內의 現金購入價額部分에 대해 取得時償却을 행할 수 있다.

手數料部分에 대해서는 支拂年度에 費用計上된다.

② 年次償却 : 割賦金의 支拂狀況의 如何를 不問하고, 當該 機械 等의 現金 購入價額을 베이스로 償却된다. 事業年度 末日 現在, 當該 機械 等이 使用되고 있다는 것이 條件이다.

(8) 機械 및 設備 償却率(年次償却)(拔萃)

말레이시아의 特徵은 먼저, 特定한 産業마다 機械 및 設備 法定償

却率이 定해져 있다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機械裝置에 對해 産業種類마다 綜合償却年數가 規定지어져 있으나 이것과 비슷한 制度이다. 또 特定한 産業으로 限定되지 않는 業種에 對해서는 法定償却率이 規定지어져 있고 2段階로 償却率이 規定지어져 있다.

〔A〕 特定産業에 對한 法定償却率 (단위 : %)

1. 航空機業	
· 飛行機	16
· 精密機械 및 設備, 試驗設備, flight simulator 및 flight 訓練器	14
· 其他 機械 및 設備	8
2. 音樂 및 娛樂서비스業	
· 당구 테이블, 볼링 레인 및 設備, 아이스스케이트 링크 및 회전목마	10
· 蓄音機, 쥬크박스 等 기타 娛樂設備	14
· 映畵 및 演劇	
映寫機, 舞臺照明, 音響機器 等	12
撮影機器	12
座席 및 其他 備品	8
게임 設備	8
3. 建設業	
· 불도저, 도랑 파는 機械, 굴착기, 롤러 等	20
· 믹서, 펌프	16
· 압축기, 기중기, 足場 等	12

4. 化學産業

· 암모니아 및 이오우設備	12
· 시멘트製造設備	10
· 유리製造設備	10
· 塗料, 染料製造設備	8
· 化學産業에 使用되는 通常의 機械 및 設備	8

5. 컨테이너, 印刷 및 組立業

· 自動車組立設備	14
· 印刷機械 및 設備	10
· 케이스, 컨테이너, 가방 等 製造設備	8

6. 粘土産業

· 벽돌 및 타일 製造設備	10
· 陶器製造設備	10

7. 食料 및 其他 消費物資業

· 빵, 비스킷, 加工食品, 우유 其他飮料 製造設備	10
· 담배製造設備	10
· 精米設備	8
· 설탕精製設備	8

8. 電氣 및 電子業

· 電氣器具 및 附屬品製造 및 組立設備	12
· 電子製造, 加工 및 試驗設備	14

9. 專門的 및 人的서비스業

· 理髮業用設備	8

・病院, 齒醫者 및 醫療用設備 12

・크리닝設備 10

〔B〕 特定産業에 限定되지 않는 設備의 法定償却率

・화재 및 盜難경보設備 10

・商品 및 旅客用設備(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기중기 等) 12

・地上輸送設備(자동차, 오토바이) 16

・事務所用設備(계산기, 타자기, 現金登錄器, 복사기 等) 12

⑼ 商用車(Business Motorcars)의 減價償却

稅務上 商用車에 對해서는 그 取得價額 全額에 따른 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이 認定되는 것은 아니다. 즉, 取得價額과 M$ 25,000를 比較하여 取得價額이 M$ 25,000를 넘었을 경우에는 M$ 25,000만이 償却對象으로 된다. 또한 이 商用車에는 營業用 트럭 및 乘用車(예를 들어 택시)는 包含되지 않는다. 또한 課稅年度 1991年부터 이 限度額이 M$ 50,000으로 引上되었다.

〔設 例〕

A社는 1988年에 乘用車를 1대 M$ 30,000에 購入하여, 1990年에 이 乘用車를 M$ 25,000에 賣却했다.

取得價額 M$ 30,000와 M$ 25,000 중 낮은 價額, 즉 M$ 25,000가 償却對象額이 된다.

① 賣却對象額 M$ 25,000

課稅年度 1989년 —

取得時償却 (20%) M$ 5,000

年次償却 (16%)	4,000	9,000
1989年 1月 1日 現在의 稅務上의 帳簿價額		16,000

賦課年度 1990年 —

年次償却	4,000
1990年 1月 1日 現在의 稅務上의 帳簿價額 M$	12,000

② 1990年의 賣却價額 M$ 25,000를 實際의 取得價額과 償却對象額으로 按分한다.

$$25{,}000 \times \frac{25{,}000}{30{,}000} = 20{,}833$$

1990年 1月 1日 現在의 稅務上의 帳簿價額	M$ 12,000
賣却價額	20,833
差額賦課	M$ 8,833

6. 取替法 (Renewal or Replacement Basis)

實務上, 小型工具, 양탄자, 커튼, 鑄型, 金型, 유니폼 등 比較的 耐用年數가 짧은 것에 대해서는 稅務上 通常의 償却을 대신하여 取替法의 適用이 인정된다.

7. 減價償却實施의 任意性

(1) 原則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 機械設備에 대해 稅法 所定의 償却, 즉 取得時償却 및 年次償却의 실시 여부는 企業에 따라 다르다.

(2) 파이어니어企業과 減價償却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에 의해 인정된 소위 파이어니어企業에 관한 파이어니어利益(免稅所得)의 計算上, 産業用建物 및 構築物, 機械 및 設備의 雙方에 대해 稅法 所定의 減價償却을 해서는 안 된다. 이 減價償却을 實施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파이어니어利益의 增加로 파이어니어企業 및 그 投資會社 또는 個人에게 큰 利益이다.

단, 1989年度 豫算演說에 의한 稅制改正에 따라 1991年 1月 1日 以後에 파이어니어 企業의 認可申請을 하는 企業은 稅務上 通常의 減價償却 義務가 있고 또 缺損 때문에 未控除의 減價償却이 發生해도,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에 移越相殺하는 것이 認定되지 않게 되었다.

XII. 源泉徵收制度

源泉徵收稅는 다음의 項目을 非居住者 또는 非居住法人에 對해 支拂하는 경우에 要求되며 當該 項目 支拂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納付해야 한다.

1. 利子

(1) 原則 20%

(2) 다음의 利子를 受領할 때에는 免稅된다.

① National Savings Bank의 預金(M$ 50,000를 넘지 않는 金額에 限함)에서 생기는 利子

② 말레이시아政府가 發行한 預金證書(Saving Certificate)에서 생기

는 利子

③ 承認 론(Approved Loan)에서 생기는 利子. 1985年 10月 25日에 행하여진 豫算演說에 의해 承認 론의 範圍가, 聯邦政府, 州政府 및 그외 政府機關에 對한 것이고 또 말레이시아政府에 의해 保證된 것으로 改正되어 그 範圍가 限定되었다.

④ 말레이시아의 銀行이 말레이시아에 恒久的 施設을 가지고 있지 않은 銀行에 支拂하는 利子

⑤ Finance Companies Act, 1969에 의해 許可된 商業銀行 또는 金融會社에 普通預金하여 생긴 利子(M$ 1,000를 限度로 함)

⑥ Bank Simpanan Nasional에 普通預金하여 생긴 利子

⑦ 協同組合, Bank Pertanian Malaysia, Lembaga Urusan dan Tabung Haji 또는 Malaysian Building Society Berhad 또는 大臣이 承認한 그외의 機關에 普通預金하여 생긴 利子(M$ 10,000를 넘지 않는 金額에 한함)

⑧ 外國銀行의 말레이시아 支店이 本店에 支拂하는 Inter Bank Charge

⑨ 長期 론으로 1985年 10月 25日 以前에 締結된 契約에 根據한 利子

(3) 産業的 事業에 從事하는 法人이 日本 居住者 또는 居住法人에 支拂하는 경우는 10%로 輕減되고 간주 外國稅額控除가 適用된다.

日本·말레이시아 租稅條約에 의하면 産業的 事業이란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① 製造業, 組立業 및 加工業

② 建設業, 土木業 및 造船業

③ 電氣(水力電氣를 포함), 가스 또는 물의 供給事業

④ 栽培業, 農業, 林業 및 漁業

⑤ 그외의 事業으로 締結國의 權限 있는 當局이 이 條의 規定의 適用上 産業的 事業이라고 認定하는 것

2. 使用料

(1) 原則 15%

여기에서 使用料라는 것은

① 著作權, 美術 또는 學術上의 著作物, 特許權, 意匠 또는 模型, 圖面, 秘密工程 또는 秘密方式, 特許權 또는 라디오放送用 또는 텔레비전放送用 테이프 또는 그와 같은 種類의 資産, 權利使用 또는 使用權利의 代價

② 産業上, 商業上 또는 學術上의 經驗에 關한 情報代價로써 受領하는 모든 種類의 支拂

③ 賣却한 機械 및 設備使用에 관한 서비스 提供의 代價

④ 技術援助, 또는 科學的·産業的·商業的 事業에 대한 서비스 提供의 代價

⑤ 動産의 使用料(필름은 제외)로 受領하는 모든 種類의 支拂을 말한다.

(2) 日本의 住居者 또는 住居法人에 支拂하는 경우에 使用料가 日本·말레이시아 租稅條約의 第10條 2項에 定義되어 있는 「使用料」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10%로 輕減되고 간주 外國稅額控除가 適用된

다.

또, 이들 權利 또는 財産을 讓渡한 경우의 讓渡收益에 대해서도 똑같은 취급이 인정되는 租稅條約의 使用料 定義는 다음과 같다.

「使用料」란, 學術上으로는 著作物의 著作權, 特許權, 商標權, 意匠 또는 模型, 圖面, 秘密方式 또는 秘密工程의 使用 또는 使用權利의 代價로서, 産業上·商業上 또는 學術上으로는 設備使用 또는 使用權利의 代價로서 또는 産業上·學術上의 經驗에 관한 情報의 代價로서 받는 모든 種類의 支拂金을 말한다. 다만,「使用料」에는 文學上 또는 美術上의 著作物의 著作權, 映畵필름 또는 라디오放送用 또는 텔리비전放送用 테이프의 使用, 使用權利의 代價로서 또는 鑛山, 油井, 採石場 그외 天然資源, 木材 또는 森林生産物을 採取하는 場所의 經營代價로써 받는 어떠한 種類의 支拂金도 포함하지 않는다.

3. 非居住者인 建設業者에 對한 支拂

(1) 原則 ① + ②의 20%

① 非居住者에는 建設業者(non-resident contractor)에 對한 契約金額의 支拂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代價인 部分金額(使用料部分을 除外)에 대해 15%

② 非居住者인 建設業者의 從業員 個人所得稅에 關聯하는 것으로 契約金額의 서비스 代價인 金額에 對해 5%

(2) The Director-General과의 個別交涉으로 源泉徵收가 不必要로 認定될 수 있다.

(3) 이것은 豫定納稅이고 最終決定稅額은 아니다. 따라서 申告書를 提出하여 過納額의 還付請求를 할 수 있다.

XIII. 配當課稅制度

(1) 말레이시아의 支拂配當金에 對한 課稅는 日本과 많이 다르다. 말레이시아의 法人稅는 法人擬制稅의 立場을 취한다. 즉, 法人稅는 주주인 個人이 支拂해야 할 所得稅의 先拂이라고 하는 생각, 바꾸어 말하면 法人稅는 最終的으로 配當에 對한 課稅制度를 통해 株主인 個人에 轉嫁한다는 制度이다.

日本에서는 法人이 稼得한 利益은 먼저 法人 그 자체에 課稅된다. 이 課稅 後의 利益에서 配當을 支拂한다. 配當을 받은 株主는 이 受取配當金에 對해 더 課稅되는 것과 같이 企業이 稼得한 利益에 對해 法人段階와 個人段階인 二重으로 課稅된다. 단, 法人이 配當을 받은 경우에는 受取配當金의 益金不算入制度, 個人의 경우에는 配當控除制度에 의해 二重課稅를 排除하고는 있으나 완전히 排除되지는 않는다.

단, 말레이시아에서는 완전히 二重課稅가 排除된다.

(2) 配當에 관한 會社法(The Companies Act, 附則 第4)上의 規定

第98條 會社는 그 定期總會에서 配當을 宣言할 수 있다.

단, 任員이 勸告한 金額을 超過할 수는 없다.

→Final Dividends

第99條 任員은 언제나 株主에 對해 會社의 利益에 비추어 適當하

다고 認定되는 期中 配當을 할 수 있다.

→Interim Dividends

第100條 어떤 配當도 會社의 利益 以外를 源泉으로 支拂할 수는 없다.

→會社法上의 配當可能利益

(3) 配當에 關한 法人稅法(The Income Tax Act)上의 規定 (拔萃)

第108條

① 말레이시아居住者인 모든 法人은 株主에 支拂되는 配當金에서 35%의 稅率에 의한 稅額을 控除할 權利가 있다.

② 配當支拂을 하려고 하는 會社는 實際로 稅金이 控除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各 株主에 對해 配當支拂金額 및 會社가 이 配當에서 控除했든가 또는 控除할 權利를 가진 稅額을 표시한 證書(Certificate)를 各 株主에게 發行해야 한다.

③ 配當支拂을 한 會社는 各 課稅年度末에서부터 3個月 以內에 稅務當局에 當該 課稅年度中에 株主에게 支拂된 모든 配當에서 控除된 稅額의 合計額을 표시한 所定의 樣式에 의한 計算書를 提出해야 한다(Statement of Dividends Paid).

稅務當局은 이것을 根據로 다음의 (a) 및 (b)를 比較한다.

(a) 上記 計算書에 제시된 配當에서 控除된 稅額의 合計額

(b) 配當의 支拂이 일어난 課稅年度에 對해 會社에 支拂義務가 생긴 法人稅의 金額과 ⑤에 나타낸 前課稅年度로부터의 移越額

④ ③의 比較結果, (a)가 (b)를 넘는 境遇, 그 超過額에 對해 會社는

The Director-General에 追徵稅를 納付해야 한다.

⑤ ③의 比較結果, (b)가 (a)를 넘는 境遇, 그 超過額은 다음 課稅年度에 이월되고 다음 課稅年度 以後에 支拂되는 配當에서 控除되는 稅額과의 相殺에 利用된다.

⑥ 稅金을 控除하지 않고 配當이 支拂된 경우 支拂額은 稅金控除後의 金額으로 간주된다.

(단, 파이어니어 利益 等의 免稅所得에서의 配當에 對해 108條의 適用은 없다)

(4) 具體的 課稅方法

① 108條 (1)에 規定되어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法人이 配當을 支拂할 경우에는 그 支拂할 때 支拂配當額에서 35%의 稅率로 稅金을 控除할 權利가 주어진다. 이것은 「源泉控除」라고 하며 日本의 「源泉徵收」와는 전혀 다른것이다.

② 「源泉控除」를 하는 理由

말레이시아에서는 株主總會의 配當支拂決議는 決算日 以後 6個月以內에 實施하기 때문에, 通常은 當該 決算年度의 法人稅 賦課에 앞서 實施한다. 따라서 配當宣言을 하는 時點에서 最終的인 課稅通知書(Notice of Assessment)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會計上의 稅前利益을 根據로 配當決議가 이루어진다. 즉, 法人稅를 포함한 配當宣言을 한다. 이래서 配當支拂時에 하는 35%의 源泉控除는 法人이 納付해야 할 法人稅를 확보한다는 意味를 갖는다.

③ 法人稅와 源泉控除와의 關係

말레이시아에서는 法人이 支拂하는 法人稅는 最終的으로 配當에

대한 課稅制度를 통해 株主에게 轉嫁한다는 견해에 있고 法人稅와 源泉控除와의 關係, 즉 上記 ⑶108條 ③④⑤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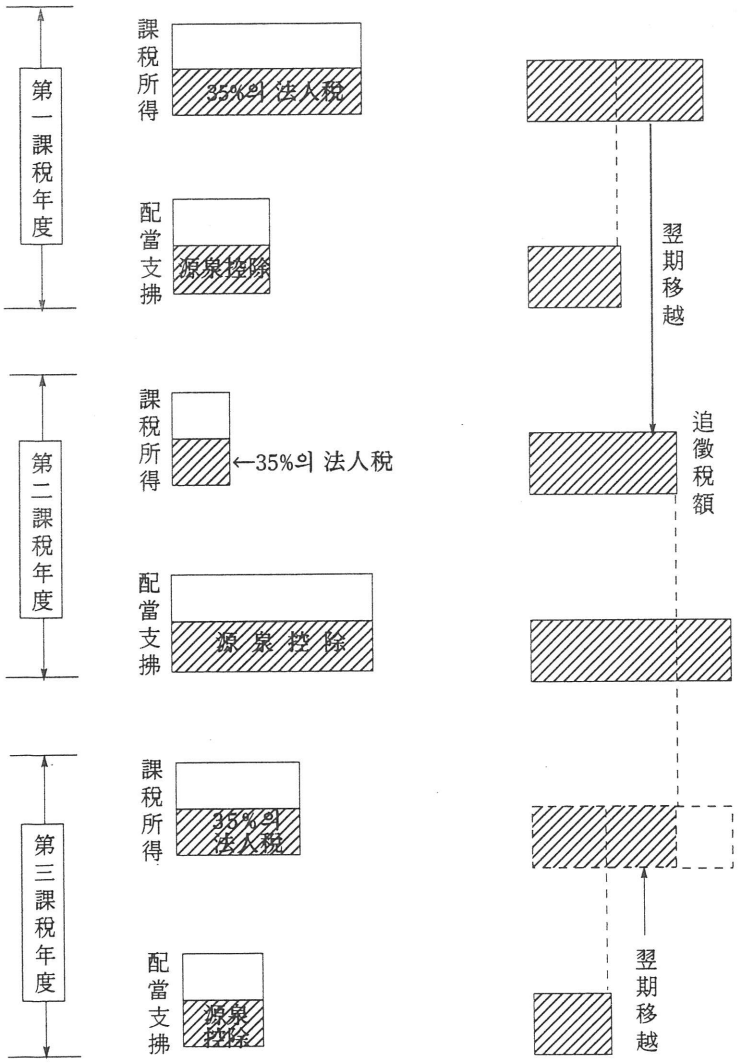

㉠ 第一課稅年度

納付한 法人稅는 配當에 의한 源泉控除額보다 많으므로 差額은 翌期以後에 이월한다.

㉡ 第二課稅年度

納付한 法人稅는 配當에 의한 源泉控除額보다도 적으므로, 納付한 法人稅에 前期 以前에서 이월된 法人稅의 超過納付額과 當期의 源泉控除額을 比較하여 後者가 많으면 그 差額을 The Director-General에 追徵稅로 納付해야 한다.

㉢ 第三課稅年度

第一課稅年度와 같다.

단 第二課稅年度의 追徵稅額은 第3課稅年度에 移越하여 第3課稅年度의 納付해야 할 法人稅額과 相殺할 수는 없다.

과거에 支拂한 法人稅와 이미 源泉控除된 金額과의 差額을 Section 108 Balance라고 하며, Section 108 Balance에 맞도록 配當金額을 決定하는 것이 二重課稅를 피하는 意味에서 중요한 일이다. 會社法 第100條는 「어떠한 配當도 會社利益 以外를 源泉으로 支拂할 수는 없다」고 規定하고 있고, 會社法에는 會計上의 未處分利益이 配當可能限度額이나 稅法上 Section 108 Balance를 「그로스 업」(gross up)한 金額, 즉 0.35(단 課稅年度 1988年까지는 0.4)로 나눈 金額이 二重課稅를 피한다는 觀點에서의 配當可能限度額으로 된다.

④ 以上을 例題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例 題)

·會社設立日　　1989年 2月 1日

·第1回 決算日　　1989年 9月 30日

·會計上의 純利益 M$ 1,000,000

·法人稅의 納付　會社는 1990年 2月에 1990課稅年度의 課稅通知書(Notice of Assessment)를 받고 M$ 280,000 法人稅를 納付했다.

Case A

會社는 1990年 3月 定期株主總會의 決議를 根據로 M$ 500,000의 配當을 實施하여 M$ 325,000(M$ 500,000 × 35% = M$ 175,000 ⇐ 法人稅, M$ 500,000 — M$ 175,000 = M$ 325,000)를 日本의 親會社에 送金했다.

1989課稅年度中의 源泉控除額	M$	0
1989課稅年度의 法人稅確定額		0
Section 108 Balance	M$	0
1990課稅年度中의 源泉控除額	M$	175,000
1990課稅年度에 관련된 法人稅確定額		280,000
Section 108 Balance	M$	105,000

(1990年 12月 31日 現在)

(註) 問題없음. M$ 105,000는 1990課稅年度中의 中間配當 (M$ 105,000÷0.35= M$ 300,000까지 配當된다) 또는 1991課稅年度 以後에 實施되는 源泉控除와의 相殺에 利用된다.

Case B

會社는 1990年 1月 定期株主總會의 決議를 根據로 M$ 500,000의

配當을 實施하여 M$ 325,000를 日本의 親會社에 送金했다.

1989課稅年度中의 源泉控除額	M$	0
1989課說年度의 法人稅確定額		0
Section 108 Balance	M$	0
1990課稅年度中의 源泉控除額	M$	175,000
1990課稅年度에 관련된 法人稅確定額		280,000
Section 108 Balance	M$	105,000

(1990年 12月 31日 現在)

(註) 配當의 支拂이 稅額確定 (1990年 2月) 以前에 實施되었기 때문에 위험은 있으나 最終的으로 源泉控除≤確定稅額이 되므로 問題없음.

Case C

會社는 1989年 12月에 定期株主總會의 決議를 根據로 M$ 500,000의 配當을 實施하여 M$ 325,000를 日本의 親會社에 12月中에 送金했다.

1989課稅年度中의 源泉控除額	M$	175,000
1989課稅年度에 관련된 法人稅確定額		0
追徵稅額	M$	175,000
1990課稅年度中의 源泉控除額	M$	0
1990課稅年度에 관련된 法人稅確定額		280,000
Section 108 Balance	M$	280,000

(1990年 12月 31日 現在)

(註) 追徵稅額 M$ 175,000와 1990課稅年度 法人稅額 M$ 280,000의 相殺는 認定되지 않아 結果的으로 二重支拂이 된다. 會社는 1990年 1月 以後에 配

當金을 送付하면, Case B와 같아져서 M$ 175,000를 納稅할 必要가 없었다. 그러므로 問題있음. 말레이시아에서는 配當 宣言日이 아니라 配當金 支拂日이 基準이 된다.

⑤ 파이어니어企業 等의 配當에 관한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上의 波及

- 各 賦課年度의 所得에 관한 計算書를 The Director-General에서 各 파이어니어企業 等에 發行한다. 이 計算書는 法人稅法上 課稅通知書와 똑같이 取扱된다.
- 當該 計算書에 提示된 稅額은 免稅가 된다.
- 上記의 免稅所得에서 支拂된 配當에 對해서는 株主의 所得稅 計算上 非課稅가 된다. The Income Tax Act Section 108은 免稅所得에서 支拂되는 配當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XIV. 外國稅額控除

1. 外國稅額控除制度란

企業이 國際化하여 世界 各國에서 營業活動을 하고 있는 現在, 各 나라들이 課稅權을 主張하여 同一 所得에 對해 2個國 以上으로부터 課稅를 당한다면 企業으로서는 過重한 租稅負擔을 招來하여 나아가서는 國際貿易의 發展을 妨害하게 된다. 이러한 國際的인 二重課稅를 排除하는 方法의 하나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있다.

2. 日本의 外國稅額控除制度

(1) 概要

① 外國稅額의 直接稅額控除制度

日本의 企業이 外國에 있는 支店 等에서 생긴 事業所得에 對해, 當該 外國에서 課稅된 法人稅 및 外國의 會社에서 받은 利子·配當 等에 對해, 當該 外國에서의 源泉徵收稅額과 같이 自身의 國外所得에 對하여 自身이 外國에서 納稅者가 되어 外國에서 納付한 稅金에 對해 日本에서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② 外國稅額의 間接稅額控除制度

日本의 企業이 外國에 子會社를 설립하여 그 子會社로부터 配當을 受領한 境遇에 그 外國子會社에 課稅된 外國稅額 中 受領한 配當에 對應하는 部分에 대해 親會社인 日本의 企業이 스스로 納付한 것으로 간주하여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③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 (Tax Sparing Credit System)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經濟促進法에 의해 파이어니어企業은 그 企業所得에 대해 非課稅되며, 이 非課稅所得에서 配當으로서 日本에 送金한 境遇, 日本에서 課稅된다고 하면 말레이시아에서의 特別한 免稅措置는 그대로 日本에서의 稅收增加가 되어 인센티브로서의 意味가 없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特別減免稅額에 對해 설혹 말레이시아에서 稅金을 支拂하지 않았어도 支拂한 것으로 간주하여 日本에서 外國稅額控除를 認定하고자 하는 制度이다. 이 看做外國稅

額控除制度는 國際的인 二重課稅의 排除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日本에서 後進國으로의 投資를 稅制面에서 積極的으로 促進하기 위한 制度이다.

④ 「택스 헤이븐」(Tax Heaven)制度의 一環으로의 外國稅額控除制度

「택스 헤이븐」에 있는 子會社나 孫會社의 留保所得에 對해서는 一定한 要件 아래서 이것을 親會社인 日本法人의 所得에 合算하여 日本에서 課稅하나, 이 경우 特定 外國子會社 等이 納付한 外國法人稅에 對해 外國稅額控除를 받는 制度이다.

(2) 直接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① 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

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는 法人의 所得(income)에 對해 課稅되는 稅이고 말레이시아의 境遇에는 支店이 支拂한 法人稅, 利子, 로열티 및 Management Fee 等에 對한 源泉徵收額이 該當된다.

② 外國稅額의 控除金額

外國稅額의 控除는 外國法人稅의 納付가 確定된 날을 포함하는 事業年度에 適用받을 수 있다. 단, 納付한 外國稅額 全額이 控除되는 것이 아니고 一定한 限度가 設定되어 있으며, 具體的으로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된 金額을 한도로 한다.

$$\text{當該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한 法人稅額} \times \frac{\text{當該事業年度의 國外所得金額(단,外國에서 非課稅되는 國外所得의 2분의 1을 除外)}}{\text{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

(註) 1. 1989년 4月 1日～1991년 3月 31日 사이에 開始하는 事業年度에서는 이 算式의 2分의 1의 部分은 3分의 1로 된다.

2. 또 여기에서 國外所得의 金額이란 다음 중 큰 金額이다(法令 第142條 第3項 단서, 第142條의 2).

①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國內所得과 國外所得의 合計額)의 100分의 90에 相當하는 金額…全所得 $\times \frac{90}{100}$

②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 期末에 國外使用人 比率을 곱한 金額…全所得 $\times \frac{\text{國外使用人數}}{\text{全使用人數}}$

③ 全所得 — (全所得 — 外國稅額)÷外國稅額/(全所得×50%) $\times \frac{20}{100}$

또한 當期에 納付가 確定된 外國稅額이 當期 法人稅의 控除限度額보다 많아서 全額 法人稅에서 控除할 수 없을 경우에는 地方稅의 控除限度額의 範圍內에서 地方稅에서 控除되며, 그러고도 提供되지 않는 金額은 그후 3年 以內에 控除限度額에 餘裕가 생긴 경우에 그 餘裕額의 範圍內에서 控除된다.

(3) 間接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① 外國稅額의 間接控除制度는 外國子會社로부터 配當支拂을 받은 親會社인 內國法人이 그 配當支拂確定日 以前 6個月 以上 繼續하여 그 外國子會社의 發行濟株式 總數의 25% 以上의 株式을 가지고 있는 外國子會社로부터 利益配當支拂을 받은 경우에 適用된다. 단 優先株式에 對한 優先配當은 適用이 안 된다.

② 말레이시아에서는 前述과 같이 配當에 對해서는 源泉徵收制度는 없고, 源泉控除方式을 採擇한다. 따라서 日本의 株主로서는 直接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外國法人稅에는 該當이 없고 말레이시아

子會社가 法人稅의 納付가 確定된 段階에서 間接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 이 경우의 間接稅額控除對象이 되는 配當金額은 源泉控除後의 實受領金額에 의해 計算하게 된다.

③ 親會社인 日本法人이 納付한 것으로 看做되는 外國法人稅額

$$\text{外國子會社의 配當에 關聯된 事業年度의 外國法人稅額 (A)} = \text{(A)} \times \frac{\text{親會社인 日本法人이 外國子會社로부터 받은 配當額}}{\text{外國子會社의 配當事業年度의 所得金額}}$$

이 金額이 外國稅額控除의 適用對象이 된다.

(4)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의 具體的 說明

① 日本과 말레이시아의 租稅條約은 1970年 1月 30日에 締結되어, 1970年 12月 23日부터 效力이 發生했다. 또 1970年 1月 30日에 「말레이시아의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特別 奬勵措置에 關한 書簡의 交換」이 이루어져 日本이 말레이시아에 對한 다음 項目에 對해 看做外國稅額控除를 認定하는 趣旨의 確認이 있었다.

1968年 말레이시아의 投資奬勵法이 다음 各條에서 정한 措置

㉠ 第21條 (파이어니어企業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의 免除)

㉡ 第22條 (파이어니어企業의 免稅所得에서 支拂되는 配當에 對한 所得稅의 免除)

㉢ 第26條 (파이어니어企業 以外의 法人의 投資에 관련된 所得控除에 의한 所得稅의 免除 및 그 免稅所得에서 支拂되는 配當에 對한 所得稅의 免除)

② 租稅條約에 根據한 減免

㉠ 利子…産業的 事業에 從事하는 말레이시아의 企業이 日本法人

에 支拂할 境遇에는 日本·말레이시아租稅條約 第9條 第3項에 의해 10%의 稅率로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日本에서는 同 租稅條約 第18條 第3項 및 第4項에 의해 20%의 稅率로 支拂된 것으로 看做되어 10%의 看做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 使用料 및 著作權, 特許權 等의 讓渡益…日本·말레이시아租稅條約 第10條 第1項 및 第3項에 의해 10%의 稅率로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日本에서는 15%의 稅率로 源泉徵收된 것으로 看做되어 5%의 看做外國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다.

③ 1968年 投資奬勵法(Investment Incentives Act, 1968)을 根據로 減免에 관한 留意事項

前述과 같이 上記 投資奬勵法에 의해 ㉠ 파이어니어企業의 法人稅의 免除, ㉡ 파이어니어企業의 免稅所得에서 支拂되는 配當에 對한 法人稅의 免除 및 ㉢ 投資稅額控除에 對하여 日本에서 看做稅額控除(間接稅額控除의 境遇에도 認定된다)를 認定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1968年 投資奬勵法은 現在 廢止되고, 賦課年度 1987年부터 投資促進法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68」이 施行되었으나 이 새로운 法律에 對해서는 日本에서 看做外國稅額控除를 認定하는 趣旨의 交換公文을 交換하지 않았기 때문에 1970年 1月 30日의 交換公文이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68」에도 適用되는가는 不明하였지만, 1989年 3月 30日付로 새로운 書簡의 交換이 이루어져 1968年 投資奬勵法의 第21條, 第22條 및 第26條, 즉 1986年 投資促進法의 第22

條, 第23條 및 第29條에 對해서는 遡求的으로 看做外國稅額控除를 認定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미 申告한 것에 對해서도 實施特例法省令 第14條에 의해 更正請求가 可能하게 되었다.

3. 말레이시아의 外國稅額控除

말레이시아와 租稅條約을 締結하고 있는 다음 國家에 納付된 法人稅等에 對해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1) 租稅條約締結國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韓國,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및 독일

(2) 外國稅額控除

① 當該 外國所得을 申告所得에 포함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法人稅를 上限으로 外國稅額控除가 認定된다.

② 當該 控除는 對象이 된 外國所得에 對한 말레이시아의 法人稅를 限度로 하여 認定된다. 즉 所得의 源泉國別로 計算하게 된다.

③ 外國所得에 對應하는 말레이시아의 稅金計算에 있어서 合理的인 方法에 의해 費用配分을 해야 한다.

④ 控除하고도 남는 外國稅額의 順延은 안 된다.

第 4 章

其他의 主된 稅制

概 要

1. 開發稅가 5% 賦課되고 있으나 課稅年度 1990年부터 每年 1%씩 減少되어 段階的으로 廢止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超過利潤稅는 個人所得이 M$ 300,000를 넘는 경우는 5% 課稅된다. 단 課稅年度 1991年부터 廢止된다.
3. 不動産利得稅는 不動産賣買益에 對해 그 保有期間에 따라 課稅된다.
4. 稅金은 아니지만 被雇用者退職積立基金의 會社負擔이 從業員의 給與에 對해 11% 必要하다.

Ⅰ. 開發稅 (Development Tax)

1. 課稅標準

(1) 居住法人 — 事業所得 및 賃貸料에 關한 所得, 즉 受取配當金, 受取利子 및 割引料는 非課稅이다.

(2) 非居住法人 — 上同, 단 源泉徵收의 對象이 된 項目은 除外

(3) 個人 — 雇用에 關聯된 給料手當 等 受取配當金, 受取利子 및 割引

料, 年金 等은 非課稅된다. 따라서 通常 日本人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開發稅는 課稅되지 않는다.

2. 課稅標準의 計算方法

事業所得 및 賃貸料에 關聯된 所得에 關하여 通常의 法人稅를 計算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計算한다.

3. 稅率

5% (1989年度의 豫算演說에 의해 法人에 對한 開發稅는 賦課年度 1990年부터 每年 1%씩 段階的으로 廢止되게 되었다)

4. 非課稅法人

通常 法人稅가 免稅되고 있는 法人은 開發稅도 똑같이 免稅된다.

II. 超過利潤稅 (Excess Profit Tax)

超過利潤稅는 1975年에 導入되고 1988年度 豫算演說에 의한 改正에 의해 現在는 個人所得이 M$ 300,000를 넘는 경우에 5%가 課稅되나, 1991年의 豫算演說에 의해 課稅年度 1991年부터 廢止되게 되었다.

III. 不動產利得稅 (Real Property Gains Tax)

不動產利得稅는 不動產(土地, 建物 및 構築物)의 處分(業으로 하는 者

는 除外)에 對해 다음 稅率에 의해 課稅된다.

	個人	法人
取得後 2年 以內에 處分한 경우	20%	20%
取得後 3年 以內에 處分한 경우	15	15
取得後 4年 以內에 處分한 경우	10	10
取得後 5年 以內에 處分한 경우	5	5
取得後 6年 以後에 處分한 경우	0	5

단 非居住者 個人의 경우에는 一律的으로 20% 課稅된다.

Ⅳ. 株式(土地基調會社)讓渡稅(Share 〈Land Based Company〉 Transfer Tax)

株式讓渡稅는 1984年 10月 19日 以後,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지 않은 土地基調會社(Land Based Company)의 株式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價額(M$ 1,000,000 초과 株式의 讓渡에 限함)에 對해 2%를 課稅하는 것으로 土地基調會社를 設立하여 不動産利得稅의 課稅를 피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設置한 것이나, 1989年度의 豫算演說에서 이 防止規定을 不動産利得稅에 넣음으로 인해 1988年 10月 21日付로 廢止되었다.

Ⅴ. 被雇用者退職積立基金(Employees Provident Fund; EPF)

稅制는 아니나 말레이시아에는 從業員이 55歲가 되었을 때 全額 支拂을 받는 强制據出年金에 對해 規定한 1951年 被雇用者退職積立基金法이

있어 雇用者 및 被雇用者는 모두 被雇用者 給與의 11% 및 9%를 各各 同 基金에 據出하는 것이 義務로 되어 있다.

第 5 章

優 待 制 度

概 要

1. 投資促進法에 定해진 여러 가지 인센터브 중에서 日系企業이 享受하는 것은 「파이어니어 스테이터스」(Pioneer Status)와 投資稅額控除이다. 파이어니어企業은 一定期間 法人稅 等이 免除되기 때문에 操業 當初부터 利益計上이 豫見되는 企業에는 有利하며, 投資稅額控除는 一定金額의 法人稅 等이 免除되기 때문에 資本集約的인 프로젝트 또는 利益計上까지 相當 期間을 要하는 企業에 有利하다.
2. 輸出企業優待制度는 前述의 파이어니어나 投資稅額控除의 特典을 받고 있지 않는 企業에 對해 그 輸出比率의 50% 相當額을 課稅所得에서 控除하는 것이다.
3. 그 外에도 硏究, 開發 및 訓練을 위한 優待制度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優待措置로서는 1968年의 投資奬勵法(Investment Incentives Act)의 廢止에 의해 1986年에 새로 發表된 投資促進法(Investment Promotion Act) 및 稅法(Income Tax Act, 1967)에 規定되어 있다.

優待措置는 製造業 外에 農業 및 觀光業에 미치고 있으나 여기서는 製造業에 對한 것을 說明한다.

Ⅰ. 一般的인 優遇制度

1. 「파이어니어 스테이터스」(Pioneer Status)

말레이시아 發展에 貢獻한다고 하여 「파이어니어 스테이터스」의 認定을 받은 企業은 35%의 法人稅 및 5%(단, 課稅年度 1990年부터 每年 1%씩 段階的으로 廢止된다)의 開發稅가 全額 免除된다.

(1) 認可要件

通産大臣에 의해 奬勵活動(Promoted Activities) 또는 奬勵製品(Promoted Products)으로 指定되어 이들 營業活動을 修行하려고 하는 會社는 通産大臣에게 파이어니어企業으로서의 認可를 申請할 수 있다.

通産大臣 및 大藏大臣은 이 申請에 對해 該當 會社가 大衆의 便益에 도움이 되고 그 外 將來 發展할 양호한 展望이 있다고 認定할 경우 파이어니어企業으로 認可한다.

(2) 파이어니어 證明書

파이어니어企業으로 認可된 會社는 그 認可된 날부터 原則的으로 6個月 以內에 파이어니어 證明書(Pioneer Certificate)의 發行을 要求한다. 이 경우에는 ① 파이어니어 證明書를 要求하기 이전에 그 工場에 의해 製造된 當該 奬勵製品의 商業的 規模의 量, ② 그 工場의 該當 奬勵製品의 商業的 規模에 의한 生産開始日 및 그 生産比率, ③ 其他를 提示해야 한다. 通産大臣은 上記의 要求에 對해 모든 條件에 滿足

한 境遇에는 ① 當該 會社는 奬勵活動 또는 奬勵製品에 關한 파이어니어會社(Pioneer Company)이며, ② 그 工場은 奬勵活動을 實行하고 또는 奬勵製品을 製造하는 파이어니어工場(Pioneer Factory)이며, ③ 파이어니어會社의 生産開始日(Production Day) 等을 記載한 파이어니어 證明書를 發行한다.

(3) 免稅期間

파이어니어會社의 免稅期間은 生産開始日부터 5年間이다.

단, 5年 經過時에 다음의 어느 要件이건 滿足시키면 다시 5年間 延長이 認定된다.

① 土地를 除外한 固定資産額이 M$ 2,500萬 以上일 것.

② 말레이시아인 從業員이 500人 以上일 것.

③ 通産大臣에 의해 國家의 經濟的·技術的·革新促進 및 强化에 貢獻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프로젝트일 것.

(4) 免稅期間中 課稅所得의 計算

免稅期間中의 課稅所得은 免稅措置를 받지 않는 一般會社와 똑같이 Income Tax Act, 1967을 根據로 計算한다. 단, Capital Allowance의 計算은 하지 않는다. 즉, 稅務上의 減價償却費를 計上하지 않고 免稅所得을 計算한다. 단, 1989年度의 豫算演說에 의해 1988年 10月 21日 以後에 파이어니어 企業의 認可申請을 하는 企業에 對해서는 通常의 減價償却의 計上을 義務的으로 해야 한다(註).

(5) 免稅期間中에 생긴 缺損金의 移越

파이어니어會社의 파이어니어期間中에 생긴 缺損金은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로 移越할 수 있다. 단, 이것도 1989年度의 豫算演說에 의

해 1988年 10月 21日 以後에 파이어니어 企業의 認可申請을 하는 企業에 對해서는 이 移越은 認定하지 않는다(註).

(註) 1989年度의 豫算演說에 들어 있는 稅制改正 中에서 (4) 및 (5)의 단서를 붙인 部分에 對해서는 그 適用에 있어서 猶豫期間(Grace Period)을 設定하여 1991年 1月 1日 以後에 適用되고 1990年 12月 31日까지 파이어니어 企業 認可申請을 한 法人에 對해서는 從來 그대로이다.

(6) 免稅期間中의 營業에 關한 制限

파이어니어會社는 免稅期間中에 파이어니어로서 認可되지 않은 營業을 할 경우에는 通産大臣에게 그 趣旨를 通知해야 하며 또 파이어니어와 논파이어니어(non-pioneer)에 對해 各各 別途로 帳簿를 作成해야 한다.

(7) 免稅所得으로부터의 支拂配當

파이어니어會社가 한 免稅所得으로부터의 配當金을 受領한 株主에겐 非課稅이다. 日本의 親會社가 말레이시아의 파이어니어 子會社에서 免稅所得으로부터의 配當金을 受領한 경우에는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 Income Tax Act 第108條(源泉控除)의 規定은 免除所得에서의 配當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또 免除所得에서의 配當支拂에 對한 期間의 制限은 없다. 즉 파이어니어會社는 언제나 當該 免稅所得으로부터의 配當支拂을 할 수 있다.

(8)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의 固定資産의 引繼

① 파이어니어期間 前에 取得하고 또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에도 使用하고 있는 경우

파이어니어期間 直前의 未償却殘高는 파이어니어期間 終了直後의 未償却殘高로 看做된다. 즉 파이어니어期間中에는 稅務上의 減

償償却費를 計上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어니어期間 直前과 直後는 同額의 未償却殘高로 된다.

② 파이어니어期間 前에 取得한 固定資産을 파이어니어期間中에 除却한 경우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 當該 固定資産에 對해 差額償却 또는 差額賦課의 計算을 한다.

③ 파이어니어期間中에 取得하여 파이어니어期間 後에도 使用하고 있는 경우

파이어니어期間 終了直後에 取得한 것으로 看做되어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 一般會社와 똑같이 Capital Allowance의 計算을 할 수 있다.

④ 前述과 같이 1989년 豫算演說의 稅制改正에 의해 1991年 1月 1日 以後에 파이어니어企業의 認可申請을 하는 企業에 對해서는 파이어니어 期間中 通常의 減價償却의 計上을 强制했기 때문에 위의 ①, ②, ③과 같은 特殊한 計算은 存在하지 않게 된다.

2. 投資稅額控除制度 (Investment Tax Allowance)

奬勵活動(Promoted Activities) 또는 奬勵製品(Promoted Products)의 製造를 위한 資本的 支出에 對해 그 100% 以內의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다.

(1) 認可要件

奬勵活動 또는 奬勵製品의 製造 等의 營業活動을 修行하려고 하는 會社는 通産大臣에게 「投資稅額控除」의 承認申請을 할 수 있다.

(2) 投資稅額控除를 받는 時期 및 期間

投資稅額控除는 資本的 支出이 일어난 때에 調整後 所得과 相殺하는 것으로 納付稅額을 제로로 하든가 또는 減少시킬 수가 있다. 調整後 所得이 投資稅額控除額보다 적기 때문에 投資稅額控除額을 全額利用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未利用額은 다음달 以後로 移越할 수 있다.

또 投資稅額控除는 通産大臣 및 大藏大臣으로부터 承認된 날부터 5年 以內에 있었던 資本的 支出에 限하여 받을 수 있다.

(3) 免稅所得에서 나온 支拂配當

投資稅額控除를 承認받은 會社가 當該 投資稅額控除를 받은 免稅所得으로부터의 配當金은 受領한 株主에게는 非課稅이다.

日本의 親會社가 말레이시아의 投資稅額控除를 받고 있는 會社로부터 當該 免稅所得에서 나온 配當金을 受領한 경우에는 看做外國稅額控除의 對象이 된다. Income Tax Act 第108條의 規定은 免稅所得에서 온 配當에는 適用이 안된다. 또 免稅所得에서 온 配當支拂에 對한 期間의 制限은 없다. 즉 投資稅額控除를 받고 있는 會社는 언제나 當該 免除所得에서 온 配當支拂을 할 수 있다.

(4) 資本的 支出의 內容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資本的 支出이란 製造業에 있어서는 奬勵活動 또는 奬勵製品의 製造를 위한 工場建物 및 機械·設備에 대한 것으로 限定된다.

(5)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없는 會社

파이어니어會社는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에 파이어니어로 認可된

奬勵活動 또는 奬勵製品 以外에 關한 것만 投資稅額控除의 申請을 할 수 있다.

(6) 파이어니어企業과 投資稅額控除의 比較

파이어니어企業과 投資稅額控除의 認定取得을 比較하면 파이어니어는 一定期間의 法人稅 等이 免除되기 때문에 操業 當初부터 利益計上이 豫見되는 企業에게 有利하고 投資稅額控除는 一定金額의 法人稅等이 免除되기 때문에 資本集約的인 프로젝트 또는 利益計上까지는 相當期間을 必要로 하는 企業에게 有利하다.

따라서 會社의 事業計劃, 利益計劃에 비추어 어느 인센티브를 申請할지 判斷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調整後 所得의 減額 (Abatement of Adjusted Income)

前述의 「파이어니어 스테이터스」 및 投資稅額控除의 어느 適用도 받지 않는 製造業을 위한 制度로 以下에 該當하는 경우 5年間 調整後 所得의 5%를 減額한 金額에 稅率을 곱하여 納付해야 할 稅額을 計算한다.

(1) 投資奬勵指定地域에 立地하는 居住者인 製造業

(2) 資本金 M$ 50萬 以下의 小規模 居住者인 製造業

(3) 1986年 1月 以後 新經濟政策을 根據로 政府의 政策에 適合한 製造業

4. 加速度減價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ance)

1986年 1月 1日부터 1988年 12月 31日 사이에 取得한 機械 設備는 取得時償却이 20%, 年次償却이 40%로 되어 2年間에 全額 償却이 된다.

즉, 現在 말레이시아에서는 稅法上 機械 設備의 範疇에 屬하는 固定資産(車輛, 事務所用 設備·器具·備品(컴퓨터를 除外)을 除外)에 對해서 取得年度에 60%, 第2年째에는 40%로 2年間에 全額 減價償却하는 것을 認定하였으나 1989年度의 豫算演說에서 이 期間의 延長을 認定하지 않게 되어 1989年 1月 1日에 廢止되었다.

5. 再投資控除 (Reinvestment Allowance)

말레이시아의 居住會社로 1990年 12月 31日까지의 期間(1991年度의 豫算演說에 의해 1995年 12月 31日까지 5年間 延長되었다)에 承認된 製造 또는 加工 프로젝트에 對해 工場建物, 機械 設備 및 其他 裝置에 資本的 支出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資本的 支出의 40%를 調整後 所得(Adjusted Income)에서 控除하는 것을 認定한다. 그 再投資控除는 投資促進法上의 優待措置를 받고 있지 않는 旣存의 製造會社에게는 設備의 擴張 및 近代化를 促進하는 데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再投資控除로서 課稅所得에서 控除된 免除所得에서 나온 配當金을 受領한 株主에게는 當該 受取配當金은 非課稅로 되고 또 Income Tax Act 108條(源泉控除)의 適用도 없다.

6. 中小企業(Small Scale Companies)에 對한 稅務上의 優待措置

(1) 여기에 中小企業이란 課稅年度의 最初日 現在의 資本金이 M$ 500,000 以下인 것을 말한다.
(2) 이 中小企業은 1986年 投資促進法에 의한 優待措置의 適格會社일 것.

(3) 위 (1) 및 (2)에 該當하는 會社에 대해 以下의 優待措置가 適用된다.

① 特定條件을 滿足하는 中小企業에 파이어니어企業으로서의 認可

② 再投資提供을 40%에서 50%로 引上

③ 材料, 部品 및 機械裝置에 賦課되는 關稅의 免除

④ 當該 中小企業으로부터 部品을 購入하는 企業에 對한 調整後 所得의 減額

⑤ 政府系 硏修機關에서의 硏修費用의 二重控除

(4) 이 優待措置는 製造業에 限定되고 課稅年度 1990年부터 適用된다.

II. 輸出企業優待制度

前述의 一般的 優待制度에 追加로 輸出市場用 製品의 製造業에 對해 다음의 優待措置가 適用된다.

1. 輸出에 對한 調整後 所得의 減額 (Abatement of Adjusted Income for Export)

(1) 適用對象會社

1986年 1月 1日 以後 말레이시아 製品을 直接으로 또는 代理店을 통해 輸出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居住會社. 단 파이어니어會社 및 投資稅額控除를 받고 있는 會社를 除外.

(2) 調整後 所得의 減額

① 總賣上高에서 차지하는 輸出賣上高의 50%, 즉 100% 輸出企業에

게는 調整後 所得의 50%가 減額되므로 法人稅 및 開發稅의 40%는 20%가 되고, 開發稅의 段階的 廢止에 따라 課稅年度 1994年에는 17.5%로 된다.

② 輸出品 製造에 使用된 純 말레이시아 國産材料價額의 5%

2. 輸出促進을 위한 控除 (Deductions for Promotion of Exports)

(1) 1986年 1月 1日 以後에 發生한 다음의 輸出促進을 위한 費用은 課稅所得計算上 二重으로 控除할 수 있다.

① 말레이시아 國外에서의 廣告宣傳費

② 말레이시아 國外의 顧客에 對한 無償샘플費

③ 輸出「마켓 리서치」(Market Research) 또는 마켓情報入手費用

④ 말레이시아 國外의 顧客에 對한 商製品 販賣를 위한 入札準備費

⑤ 말레이시아 國外에 商用을 위한 出張費 및 通算大臣에 의해 承認된 展示會에의 參加費用 等

⑥ 말레이시아 國外의 顧客 等에 對해 技術情報를 授與하기 위한 費用

⑦ 輸出에 關聯한 社交費

⑧ 海外에서의 販賣事務所費

(2) 파이어니어會社의 實際 輸出促進費用은 파이어니어期間中은 通常의 경우와 같이 發生한 때의 費用에 計上한다. 한편 그 同額은 파이어니어期間 終了後까지 移越하고 파이어니어 終了後에 파이어니어期間中에 發生한 위의 輸出促進費用을 控除할 수 있다.

3. 工業用 建物控除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倉庫 및 輸出用 製品을 保管하기 위한 積荷保管施設로써 使用되는 建物에 對해서는 取得時償却 10%, 年次償却 2%가 認定된다.

Ⅲ. 研究·開發을 위한 優待制度

(1) 企業 또는 그 代理人이 한 事業에 關聯하여 科學的 研究에 使用한 費用은 大藏大臣의 承認에 의해 課稅所得의 計算上 二重으로 控除할 수 있다.

(2) 承認된 研究에 使用되는 建物은 取得時償却 10%, 年次償却 2%의 工業用 建物控除가 認定된다.

(3) 承認된 研究에 使用된 「플랜트」(Plant) 및 機械는 資本控除의 對象이 된다.

Ⅲ. 訓練을 위한 優待制度

技能 및 生産性 向上을 위하여 다음의 優待制度가 있다.

(1) 訓練에 使用되는 建造物에 出資한 企業에는 工業用 建造物控除制度가 適用된다.

(2) 訓練에 드는 費用은 課稅所得의 計算上 二重으로 控除할 수 있다.